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발 간 사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 한 해 동안 선고된 언론 관련 판결에 대한 통계와 분석을 통해 경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보고서는 언론분쟁을 겪는 당사자나 관심 있는 국민 모두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분석대상은 2018년 각급 법원이 선고한 언론 관련 민사 판결 224건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2015년부터 계속되어 온 기준에 따라 청구별로 사례를 구분하고 손해배상청구 항목에서는 명예훼손 외에 음성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을 법익 침해유형별로 각각 분류하였습니다. 침해유형별 대표 사건을 다룸으로써 법원이 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잘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경향은 성추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이나 기사삭제를 청구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법무관이 외국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다수 언론사에 대해, 원고가 성추행범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였으니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문인들, 정부 관료가 엮인 사건들도 상당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소송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2018년 초 사회 전반에서 일어난 ‘미투운동’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현직 검사의 폭로, 유력 정치인의 비서가 공개한 내용은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여기저기서 고발과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언론은 사회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 거대한 사회적 이슈는 곧 앞다투어 보도되었고 언론 관련 판결의 흐름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폭로를 받아쓰기에 바빴고 그 결과 성범죄 의혹을 제기한 보도들에서 진실성이 부인되어 패소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보도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지 않으면서도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언론사에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는 위와 같이 언론분쟁의 원인이 된 보도의 흐름이나 사회적 현상을 파악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습니다. 최근의 법리적 기준과 판결 동향을 확인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대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고서에 소송제기 현황 및 결과, 유형별 원고승소율과 손해배상청구 사건 인용액, 청구별 기각사유 등 다양한 분석을 담았습니다.

본보고서에 실린 통계분석과 주요 판례가 언론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7월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CONTENTS

제1부 언론 관련 판결 분석

1장 분석 목적 및 내용

1. 분석 목적 / 3
2. 자료수집 방법 / 3
3. 분석 대상 / 4
4. 분석 내용 / 5
5. 분석을 위한 코딩 항목 및 코딩 방법 / 6

제2장 소송제기 현황

1. 심급별 소송건수 / 9
2. 상소율 / 10
3. 청구별 소송건수 / 10
4.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 12
5.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 13
6.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 14
7. 보도유형별 소송건수 / 15
8. 직위별 피고 분류 / 16

제3장 소송 결과

1. 심급별 결과 / 18
2.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 여부 / 19
3. 청구별 결과 / 20
4. 침해유형별 결과 / 21
5. 원고유형별 결과 / 22
6. 매체유형별 결과 / 23
7. 보도유형별 결과 / 25
8. 소송기간 / 26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1.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 결과 / 27
2. 청구액 / 28
3. 인용액 / 29
4. 인용액 분포 / 30
5. 침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 31
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 32
7.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 33
8.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 결과 / 34
9.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 35

제5장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사건

1. 정정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 36
2.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 37
3. 반론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 38
4.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 39
5.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보도등의 형식 / 40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1. 조정경유 비율 / 43
2.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조정액과 인용액 비교 / 44
3.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 결과와 법원 소송 결과 비교 / 44

표 목차

〈표 1〉 코딩 항목	6
〈표 2- 1〉 심급별 건수	9
〈표 2- 2〉 상소율	10
〈표 2- 3〉 청구별 건수	11
〈표 2- 4〉 청구별 건수(각 청구권별 합산)	11
〈표 2- 5〉 침해유형별 건수	12
〈표 2- 6〉 원고유형별 건수	13
〈표 2- 7〉 매체유형별 건수	14
〈표 2- 8〉 방송 매체의 보도유형별 건수	15
〈표 2- 9〉 방송 외 매체의 보도유형별 건수	15
〈표 2-10〉 직위별 피고 구성	16
〈표 2-11〉 직위별 피고 분류(언론사 및 언론인 직위별 합산)	17
〈표 3- 1〉 심급별 결과	18
〈표 3- 2〉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여부	19
〈표 3- 3〉 청구별 결과	20
〈표 3- 4〉 침해유형별 결과	21
〈표 3- 5〉 원고유형별 결과	22
〈표 3- 6〉 매체유형별 소송 결과	23
〈표 3- 7〉 일간신문 유형별 소송 결과	24
〈표 3- 8〉 방송 유형별 소송 결과	24
〈표 3- 9〉 인터넷 매체 유형별 소송 결과	24
〈표 3-10〉 방송 외 매체의 보도유형별 소송 결과	25
〈표 3-11〉 방송 매체의 보도유형별 소송 결과	25
〈표 3-12〉 심급별 소송기간 분포	26
〈표 3-13〉 보도계재청구 사건의 심급별 소송기간 분포	26

〈표 4- 1〉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 결과	28
〈표 4- 2〉 손해배상 청구액	28
〈표 4- 3〉 손해배상 인용액	29
〈표 4- 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30
〈표 4- 5〉 침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31
〈표 4- 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32
〈표 4- 7〉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	32
〈표 4- 8〉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33
〈표 4- 9〉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피고 언론인 승소 여부	34
〈표 4-10〉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35
〈표 5- 1〉 정정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36
〈표 5- 2〉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37
〈표 5- 3〉 반론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38
〈표 5- 4〉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39
〈표 5- 5〉 매체별 정정보도등의 인용건수	40
〈표 5- 6〉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지면(프로그램)	41
〈표 5- 7〉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위치	41
〈표 5- 8〉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42
〈표 5- 9〉 인용된 정정보도문등의 본문 길이	42
〈표 6- 1〉 조정경유 비율	43
〈표 6- 2〉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44
〈표 6- 3〉 위원회와 법원 소송결과 비교	45
〈표 6- 4〉 조정을 거친 사건의 소송 결과 전체 목록	45
분석 판결 목록(민사 224건)	54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제1장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사례

1. ‘검은 거래’, ‘이면합의’와 같은 표현은 주관적인 평가 내지 의견으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A vs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가합5468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1. 선고 2018나2010324 판결 63
2. 제보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언론사가 진실성 검증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A vs 주식회사 뉴스1 외 2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가합515522 판결(확정) 82
3. ‘종북’, ‘종북성향’은 사회적인 평가를 객관적으로 떨어뜨리는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A 외 1명 vs C 외 2명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가단247349(본소),
2016가단30848(반소) 판결 95
4. 원 보도에 비해 전파가능성이 낮은 반론보도는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방송하는 것이 상당하다
A vs 주식회사 제이티비씨(JTBC)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1. 선고 2017가합312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065044 판결 105
5. 특정한 1인에게 알린 피의사실을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다면 이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A vs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4. 선고 2017가단518377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36945 판결 115

6. 방송보도 내용을 검증할 기회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상당성을 결여한 보도에 해당한다
A vs 주식회사 채널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가합556776 판결 126
7. 언론인은 공인으로서 자신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 공개토론을 감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초상 보도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
A vs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8가합3165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나2038346 판결(확정) 137
8. 발언 일시나 장소 등 지엽말단적 부분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워크숍에서 “천황폐하 만세”라고 발언했다는 전체 보도의 진실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A vs 주식회사 아시아경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가합17052, 2016가합17069(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13. 선고 2017나2057722, 2017나2057739(병합) 판결 149
9. 신빙성이 낮은 SNS 게시물을 근거로 기사를 게재하면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도는 상당성이 없다
A vs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가합504355 판결 165
10.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의 가치관, 세계관도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사회적 평가의 저하는 신축성 있게 수인되어야 한다
A vs 주식회사 조선방송 외 8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6가단5205864 판결 186
11. ‘전문 시위꾼’, ‘억지 선동’ 등의 표현은 모멸적인 표현으로 언론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
A vs 뉴데일리경제 주식회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6가단521973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7나84664 판결 193
12. ‘총체적 부실’, ‘영망’이라는 표현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A 외 2명 vs 한국방송공사 외 1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7가합111384 판결(확정) 206

13. 트위터에서 리트윗은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그와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
A vs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외 2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7가합566094 판결 214
14. ‘종북’, ‘주사파’ 등의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A 외 1명 vs C 외 10명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판결 228
15. 수사기관의 불기소결정에도 성추행 사실 확인을 위한 별도의 취재노력을 하지 않아 상당성이 없다
A vs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2명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가합32463 판결 249

음성권 침해 사례

16. 공익을 목적으로 할지라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는 통화내용의 보도는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
A vs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548478 판결 259

사생활 침해 사례

17. 주한미군의 불륜관계에 대한 보도는 사적 영역에 관한 사항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A vs 주식회사 한국미디어네트워크 외 7명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7가단233620 판결(확정) 272

재산권 침해 사례

18.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은 기사형 광고와 광고에 따른 독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언론사는 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
A 외 35명 vs 주식회사 한경닷컴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확정) 278

제2장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1. 생방송 중 출연자의 발언은 인터뷰를 통한 언론사의 사실 적시로 보아야 한다
주식회사 채널에이 vs 재단법인 씨비에스 외 1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가합107637 판결 283
2. 반론보도 게재를 조건으로 소 취하를 합의했다면, 반론보도 게재로 소 취하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대한민국 vs 주식회사 통일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6가합571037 판결(확정) 299
3. 직접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게 아니라면 사과문을 게시했다고 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반론을 구할 정당할 이익이 없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A vs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가합105720 판결 308

제3장 기사삭제청구 등

1.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할 별도의 취재노력 없이 성추행 혐의를 사실인 것처럼 암시한 보도는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A vs 주식회사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가합5465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나2007953 판결(확정) 314
2. 전 대통령의 아들인 원고의 마약류 투약혐의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고, 검찰의 수사권 행사에 감시와 비판기능을 수행한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A vs 한국방송공사 외 4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가합108418 판결(확정) 324
3. 시일이 지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실명을 밝히며 보도한 경우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차단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식회사 A vs 주식회사 한국증권신문사 외 2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110978 판결(확정) 330

4. 원고의 반론을 확인하지 않고 익명의 제보와 간접적 정황만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면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A 주식회사 vs 주식회사 기호일보 외 1명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가합30405 판결 337
5. 검찰 수사관과 통화를 했음에도 제보자의 주장에 경도되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주식회사 A저축은행 외 2명 vs 주식회사 위클리오늘신문사 외 2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7가합589370 판결 347
6. ‘한심한 언론’ 등의 표현은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뉴시스 vs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외 2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가합538126 판결 363
7. 유명 작가인 원고가 공인에 해당할지라도 ‘과거에 문학소녀들과 혼숙을 하였고 혼외자를 두었다’는 허위 사실의 적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A vs 주식회사 뉴스타운 외 1명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가합22446 판결 371

제1부

언론 관련 판결 분석

제1장 분석 목적 및 내용

제2장 소송제기 현황

제3장 소송 결과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제5장 정정 · 반론 · 추후보도청구 사건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제1장

분석 목적 및 내용

1. 분석 목적

언론 관련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할 때 사법부가 어떠한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언론 관련 판결을 분석한 데이터는 언론분쟁의 양상과 추이를 파악하는 객관적 자료가 되며, 언론분쟁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및 기타 인격권(초상권·성명권·사생활 등) 침해 관련 판결을 수집하여 통계적 분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소송제기 현황, 소송 결과, 손해배상 인용액 등 판결 내용에 포함된 다양한 정보들을 목록화하여 양적 분석을 실시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언론분쟁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 및 제도 개선이나 언론분쟁 예방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자료수집 방법

분석 대상 판결은 대법원 법원도서관에 마련된 판결문 검색·열람 특별창구를 통해 검색¹⁾하여 수집했다.

판결 검색 시 ①정정보도 ②반론보도 ③추후보도 ④보도&명예훼손&손해배상 ⑤보도&초상 ⑥보도&음성 ⑦보도&사생활 ⑧보도&성명 ⑨보도금지 ⑩언론중재위원회 등을 검색어로 사용했다. 형사판결 등을 제외한 민사판결이 분석대상이며, 판결 선고가 아닌 화해권고결정·강제조정·조정성립 등으로 종결된 사건은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 법원은 2006년 5월 1일부터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분석 대상

가. 2018년도 분석 대상 언론 관련 판결은 민사 224건

분석 대상은 선고 일자를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법익 침해를 이유로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방송사닷컴 등) 또는 언론인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판결로서 총 224건이 수집되었다.

나. 분석 대상 판결은 심급, 확정 여부와 관계없어

심급 및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수집된 모든 언론 관련 판결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선고일을 기준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선고된 판결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소심 없이 하급심만 존재하거나 하급심 없이 상소심만 존재하는 판결²⁾도 포함되어 있다.

다. 매체별 분석 대상 총 건수는 363건

다수 매체가 공동으로 피소된 사건의 경우, 매체별로 보도 내용이나 형식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법원의 인용여부·인용내용·손해배상청구액 및 인용액 등이 다를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한 사건이더라도 피고가 다수 매체인 경우 매체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기도 했다. 비록 소송 건으로는 한 건이지만 통계분석의 목적상 매체 수에 따라 여러 건으로 분할한 결과 분석대상 총 건수는 363건이었다.

라. 청구권별 재분류 총 건수 606건

분석 대상 판결은 대체로 정정보도청구+손해배상청구나 손해배상청구+기사삭제청구와 같이 여러 청구가 병합된 형태를 보였다. 이에 일부 분석 항목에서는 매체별 총 건수 363건을 청구권별로 재분류하여 분석을 시도했다. 이 경우의 청구권별 총 건수는 606건이다.

2) 2018년에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2019년 현재 상소심 사건이 진행 중인 사건을 의미하거나 2018년 이전에 하급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을 의미한다.

4. 분석 내용

본 보고서는 2018년도 언론 관련 판결의 소송제기 현황, 소송 결과,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의 소송 결과, 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의 비교 분석 결과 등을 담고 있다. 항목별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송제기 현황

심급별 소송건수, 상소율, 청구별 소송건수,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보도유형별 소송건수, 매체별 피고구성

나. 소송 결과

심급별 처리 결과,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청구별 소송 결과, 침해유형별 소송 결과, 원고유형별 소송 결과, 매체유형별 소송 결과, 보도유형별 소송 결과, 소송기간

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청구액 및 인용액, 인용액 분포, 침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라.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사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소송 결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문의 형식

마.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

분석 대상 소송사건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사건의 비율,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 결과와 법원 소송 결과 비교

5. 분석을 위한 코딩 항목 및 코딩 방법

가. 코딩 항목

〈표 1〉 코딩 항목

구 분	코딩 항목	
일 반 사 항	01. 판결번호	04. 심급
	02. 접수일자 및 선고일자	05. 청구의 종류
	03. 법원명	06. 침해유형
원 고	07. 원고명	09. 공적인물 분류
	08. 대표 원고 분류	
피 고	10. 사건 피고명	13. 매체별 피고 분류
	11. 사건 피고구성	14. 피고 언론인 개인 승소 여부
	12. 매체명	
매 체 분 류	15. 매체분류	
보도내용 분류	16. 보도내용 분류	
	16-1. 방송 외 기사유형	16-2. 방송 프로그램 유형
청 구 별 처리결과	17. 청구별 처리결과	
	17-1. 정정보도	17-4. 손해배상
	17-2. 반론보도	17-5. 기사삭제
	17-3. 추후보도	17-6. 보도금지
원 · 상소심 결 과	18. 심급별 결과	
	18-1. 1심	18-4. 환송후심
	18-2. 2심	18-5. 재상고심
	18-3. 3심	
기 타	19. 원고 원심유지 여부	21. 조정신청 결과
	20. 조정청구명	22. 조정을갈음하는결정(직권조정) 결정액
손 해 배 상	23. 사건 청구액	26. 매체별 인용액
	24. 사건 인용액	27. 손해배상 기각사유
	25. 매체별 청구액	
정 정 보 도	28. 정정 기각사유	29. 정정 각하사유
반 론 보 도	30. 반론 기각사유	31. 반론 각하사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형식	32. 보도의 인용 여부	35. 보도위치
	33. 보도시기	36. 보도제목
	34. 보도지면(프로그램)	37. 보도본문 길이

나. 코딩 방법

수집된 판결을 코딩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모호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은 기존 판결분석 보고서의 분석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분류했다.

1) 대표 원고 분류

- ① 다수 원고 사건 중 개인 및 단체가 함께 청구한 경우에는 단체로 분류했다.
- ② 공인이란 고위 공직자와 공적 인물을 말한다. 판결에서 고위 공직자나 공적 인물이라고 직접 언급하거나 암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판례나 학설에서 꾸준히 공인으로 분류한 인물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 ③ 고위 공직자는 판결에서 언급된 경우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 상의 공직자³⁾를 말하며, 공적 인물이란 정치인·전문인·언론인·기업인·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물 또는 단체의 대표 등으로서 그 활동 사항이 공적 관심사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④ 공인 여부 판단에서는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도 고려했다. 전직이라 함은 원고의 재직 당시 일어난 사건을 보도했지만 소송이 진행될 당시에는 그 직을 그만둔 경우를 말한다.
- ⑤ 일반인과 공인이 함께 신청한 경우 공인으로 분류했다.

2) 매체명 분류

- ① 오프라인과 별도로 언론사닷컴을 상대로 한 청구(기사삭제 등)가 있거나 오프라인과 함께 언론사닷컴 기사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언론사닷컴을 별도의 매체로 보고 코딩했다.
예) 사건 피고는 (주)A신문사 단독이나, 청구취지에 A신문, A신문 홈페이지를 상대로 각 정정보도 등을 청구했다면 2개의 매체로 각각 코딩함
- ② 피고가 언론인 개인인 경우 해당 언론인 소속 매체를 기준으로 코딩했다.

3) 매체별 피고 분류

- ① 소송에 연루된 언론인들을 직위별로 파악하고자 하는 항목이다.
- ② 피고의 직위가 대표이사나 부장 등이라도 기사를 직접 쓴 사람이라면 담당으로 분류했다.

4) 언론인 개인에 대한 판결 결과

언론인이라 함은 피고 중 언론사 대표, 기자, 프로듀서 등을 말한다. 언론사 소속이 아니거나 보도에 관여하지 않은 외주 제작사 직원 등은 언론인에 포함하지 않았다.

3) 국무위원·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등

5) 방송 분류

- ① 지상파방송에는 지상파방송사의 지역방송총국 및 계열사를 포함했다.
- ② 고발 성격이 짙은 프로그램만을 시사·고발로 분류했다.
예)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등
- ③ 뉴스 프로그램 내의 고발 코너(현장추적 등)는 뉴스로 분류했다.
- ④ 다큐멘터리나 생활정보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교양·정보로 분류했다.
예) 「모닝와이드」, 「리얼스토리 눈」 등

6) 청구별 처리결과

- ① 원고 승소 또는 원고 승소율에는 원고 일부승 사건을 포함했다.
(원고 일부승 사건 : 손해배상액 또는 정정보도문 등이 청구(항소)취지보다 금액 또는 감축된 경우, 여러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된 경우, 1개의 사건에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손해배상만 인용되고 정정보도는 기각된 경우 등)
- ② 2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항소기각 또는 원심취소의 형태로 나타나고, 3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상고기각이나 원심파기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준 삼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이라면 원고 승소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면 원고 패소로 분류했다.

7) 원고 원심유지 여부

2심의 원심은 1심, 3심의 원심은 2심을 말한다. 상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심의 취지와 같다면 ‘승유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과 달리 상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면 ‘승변복’ 등으로 코딩했다.

8) 매체별 청구액 및 인용액

- ① 피고가 다수인 경우 청구취지액 및 주문 인용액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청구액 및 인용액으로 기재했다.
- ② 매체별로 별도 법인이 있거나 매체별로 각자(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 및 인용한 경우에는 매체별로 동일한 금액을 기재했다.
예) 조선일보 - 조선닷컴 연대하여 2,000만원 → 조선일보 : 2,000만원 / 조선닷컴 : 2,000만원
- ③ 피고가 단일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매체분류상 2개로 나누어진 경우는 청구취지액 및 주문 인용액을 반액으로 나누어 청구액 및 인용액을 각각 기재했다.
예) ㉸경향신문사에 2,000만원 청구한 경우, 경향신문 : 1,000만원 / 경향닷컴 : 1,000만원
- ④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 소속 매체에 대한 청구액 및 인용액에 합산했다.
- ⑤ 항소심과 상고심도 1심의 청구취지액을 기재하되, 상소심에서 청구취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을 기재했다.

제2장 소송제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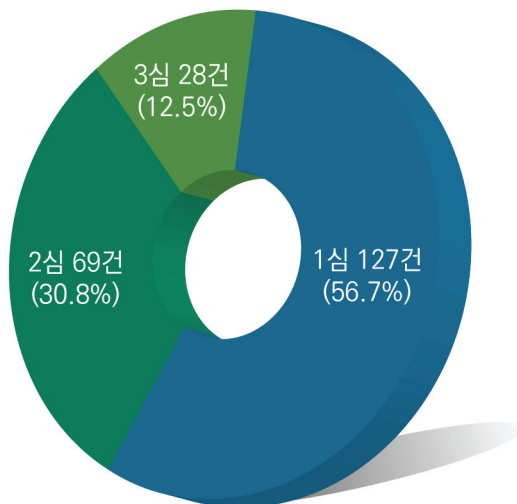
2018년도에 선고된 언론 관련 판결을 대상으로 심급별 소송건수, 상소율, 청구별·침해유형별·매체유형별 소송건수 등 소송 일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급별 소송건수

1심 56.7%, 2심 30.8%, 3심 12.5%

분석 대상 판결의 심급별 소송건수를 살펴보면 1심 판결이 127건(56.7%), 2심(환송 후 심리 포함)이 69건(30.8%), 3심이 28건(12.5%)이다.

〈표 2-1〉 심급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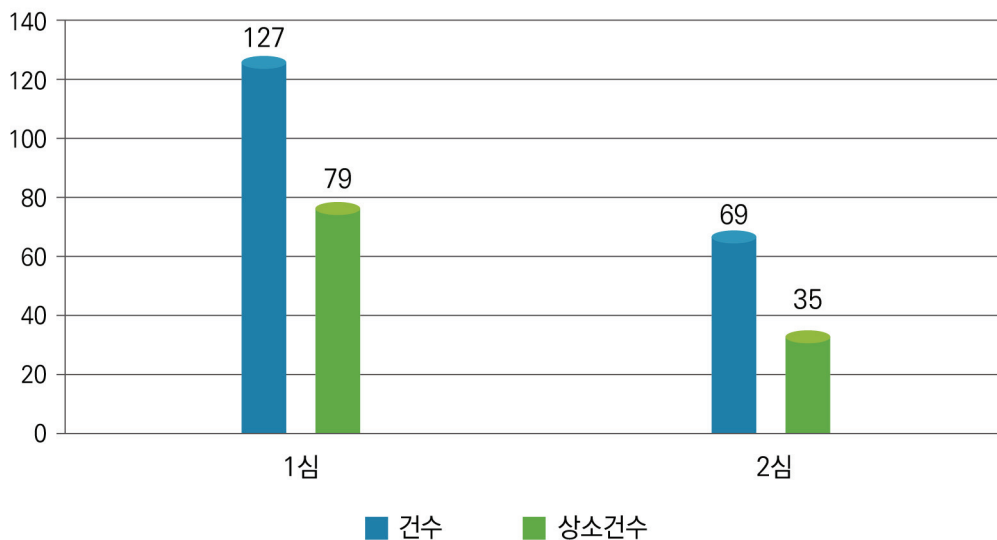


2. 상소율

항소율 62.2%, 상고율 50.7%

분석대상 판결 중 1심 사건과 2심 사건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가 상소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그 비율을 살펴보았다. 1심 판결 127건 중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은 79건으로 항소율은 62.2%로 나타났다. 2심 판결 69건 중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은 35건으로 상고율은 50.7%였다.

〈표 2-2〉 상소율



3. 청구별 소송건수

원고가 가장 선호하는 피해구제 방법은 손해배상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눈 후 각 매체별로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분석해 선호하는 피해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청구한 경우가 142건(39.1%)으로 가장 많았고,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병합해 청구한 경우가 133건(36.6%)으로 뒤를 이었다.

〈표 2-3〉 청구별 건수

청구명	건수	비율(%)
정 정	10	2.8
정정/반론	4	1.1
정정/반론/손배	25	6.9
정정/반론/손배/기사삭제	1	0.3
정정/손배	133	36.6
정정/손배/기사삭제	6	1.7
정정/손배/기사삭제/보도금지	2	0.6
정정/기사삭제	1	0.3
반 론	5	1.4
반론/손배	3	0.8
기사삭제	1	0.3
기사삭제/보도금지	6	1.7
보도금지	1	0.3
손 배	142	39.1
손배/기사삭제	21	5.8
손배/기사삭제/보도금지	2	0.6
합 계	363	100.0

한 사건에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을 청구권별로 나누어 재합산해 살펴본 결과, 손해배상청구가 335건(55.3%)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정정보도청구 182건(30.0%), 기사삭제청구 40건(6.6%), 반론보도청구 38건(6.3%), 보도금지청구 11건(1.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청구별 건수(각 청구권별 합산)

청구명	건수	비율(%)
정정보도	182	30.0
반론보도	38	6.3
추후보도	0	0.0
손해배상	335	55.3
기사삭제	40	6.6
보도금지	11	1.8
합 계	606	100.0

4.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침해유형별 최다 소송 유형은 명예훼손

소송건수를 기준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 법익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명예훼손이 183건(81.7%)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밖에 명예 및 신용훼손과 명예훼손 및 모욕이 각 8건(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5〉 침해유형별 건수

침해유형	건수	비율(%)
명 예	183	81.7
명예/신용	8	3.6
명예/모욕	8	3.6
명예/초상	2	0.9
명예/초상/성명	1	0.4
명예/음성	1	0.4
명예/음성/사생활	1	0.4
명예/성명	6	2.7
명예/성명/사생활	4	1.8
명예/사생활	6	2.7
초상/사생활	2	0.9
성명/사생활	1	0.4
재 산	1	0.4
합 계	224	100.0

5.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언론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하는 원고유형은 일반인

언론 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이 청구한 사건은 152건(67.9%), 단체가 청구한 사건은 72건(32.1%)이었다. 전체 원고유형 가운데 일반인이 91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적 인물 42건(18.8%), 기업 36건(16.1%), 공직자 19건(8.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표 2-6〉 원고유형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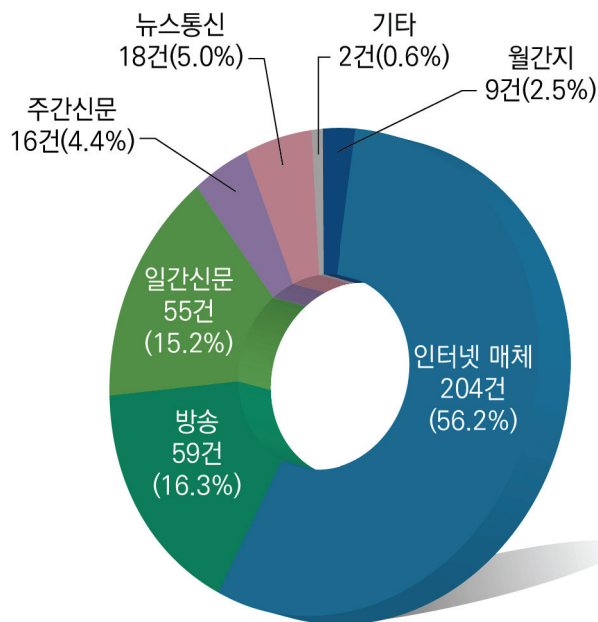
원고유형		건수	비율(%)
개인	고위 공직자	19	8.5
	공적 인물	42	18.8
	일반인	91	40.6
	소 계	152	67.9
단체	언론사	5	2.2
	국가기관	4	1.8
	지자체	4	1.8
	기업	36	16.1
	공공단체	3	1.3
	종교단체	6	2.7
	시민단체	3	1.3
	일반단체	10	4.5
	정당	1	0.4
	소 계	72	32.1
합 계		224	100.0

6.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언론사닷컴을 상대로 한 소송이 가장 많아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눈 후 매체유형별 건수(총 363건)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매체가 204건(56.2%)으로 가장 많았고, 방송 59건(16.3%), 일간신문 55건(15.2%), 뉴스통신 18건(5.0%), 주간신문 16건(4.4%), 월간지 9건(2.5%), 기타 2건(0.6%)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2-7〉 매체유형별 건수



사건수가 가장 많은 인터넷 매체(204건)의 경우, 방송사 홈페이지를 비롯한 언론사닷컴이 149건(73.0%)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인터넷신문은 55건(27.0%)으로 파악됐다. 방송(59건)은 지상파방송 33건(55.9%), 종합편성채널 등 케이블방송 24건(40.7%) 외에 라디오 2건(3.4%)이 있었다. 일간신문(55건)은 중앙종합일간지 35건(63.6%), 경제일간지 12건(21.8%), 지역종합일간지 8건(14.5%)으로 집계됐다.

7. 보도유형별 소송건수

가장 많이 문제 된 보도유형은 뉴스(방송)와 스트레이트 기사(방송 외 매체)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눈 후 각 매체별로 문제가 된 보도유형을 살펴봤다. 방송 매체(59건)에서는 뉴스가 27건(45.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고발 21건(35.6%), 교양 10건(16.9%), 토론 1건(1.7%)이 뒤를 이었다.

〈표 2-8〉 방송 매체의 보도유형별 건수

보도유형	건수	비율(%)
뉴 스	27	45.8
고 발	21	35.6
교 양	10	16.9
토 론	1	1.7
합 계	59	100.0

방송을 제외한 매체에서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293건(96.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 2-9〉 방송 외 매체의 보도유형별 건수

보도유형	건수	비율(%)
스트레이트	293	96.4
광 고	1	0.3
만 평	1	0.3
사 설	4	1.3
칼 럼	5	1.6
합 계	304	100.0

8. 직위별 피고 분류

언론소송의 피고 구성 언론사 단독이 가장 많아

매체유형별로 분류한 363건에 대한 피고들을 직위별로 분석한 결과, 언론사만 피소된 건이 186건(51.2%)으로 가장 많았고, 언론사와 담당 기자(또는 PD)가 함께 피소된 사건이 106건(29.2%)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2-10〉 직위별 피고 구성

직위별 피고 구성	건수	비율(%)
언 론 사	186	51.2
언론사/대표	5	1.4
언론사/대표/국장/부장/담당	6	1.7
언론사/대표/담당	9	2.5
언론사/국장/부장/담당	6	1.7
언론사/국장/담당	4	1.1
언론사/담당	106	29.2
언론사/담당/비언론	1	0.3
언론사/비언론	1	0.3
대 표	15	4.1
대표/담당	6	1.7
국 장	1	0.3
담 당	17	4.7
합 계	363	100.0

직위별 피고 분류를 다시 각 직위별로 나누어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언론사 324건(58.8%), 담당 기자(또는 PD) 155건(28.1%), 대표이사 41건(7.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언론사, 담당자, 대표에 대한 청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표 2-11〉 직위별 피고 분류(언론사 및 언론인 직위별 합산)

직위별 피고 구성	건수	비율(%)
언 론 사	324	58.8
대표이사	41	7.4
국 장	17	3.1
부 장	12	2.2
담당 기자(또는 담당 PD)	155	28.1
비 언 론	2	0.4
합 계	551	100.0

제3장 소송 결과

이 장에서는 분석 대상 판결의 소송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심급별, 청구별, 침해유형별, 원고유형 및 매체유형별, 보도유형별, 소송기간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급별 결과

원고 승소율 46.4%로 절반에 못 미쳐

2018년도 전체 언론 관련 소송의 원고 승소율은 46.4%로 나타났다. 심급별로 원고 승소율을 살펴보면, 1심 원고 승소율 45.7%, 2심(환송후심 포함) 44.9%, 3심 53.6%로 3심 승소율이 하급심에 비해 약간 높았다.

〈표 3-1〉 심급별 결과

심 급	원고승	원고패	계
1 심	58 (45.7)	69 (54.3)	127 (100.0)
2 심	31 (44.9)	38 (55.1)	69 (100.0)
3 심	15 (53.6)	13 (46.4)	28 (100.0)
합 계	104 (46.4)	120 (53.6)	224 (100.0)

※ ()안의 숫자는 %

2.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 여부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되는 비율 92.7%

분석 대상 판결 224건 중 2심 68건(환송후심 1건 제외)과 3심 28건을 합산한 96건을 대상으로 원심 판결 유지 여부를 조사해 보았다. 원고의 청구취지가 인용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일부 인용 포함)으로 승패소를 분류한 결과, 상소심이 원심의 판결결과를 그대로 유지한 비율은 92.7%(89건)였다. 이를 심급별로 살펴보면, 항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비율은 91.2%였고, 상고심(대법원)의 원심 판결 유지비율은 96.4%로 집계되어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 결과가 번복될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3-2〉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여부

구 분	건 수	원심판결 유지		원심판결 번복	
		원고승소판결 유지	원고패소판결 유지	원고승소판결 번복	원고패소판결 번복
2 심	68 (100.0)	25 (36.8)	37 (54.4)	3 (4.4)	3 (4.4)
3 심	28 (100.0)	15 (53.6)	12 (42.9)	1 (3.6)	0 (0.0)
합 계	96 (100.0)	40 (41.7)	49 (51.0)	4 (4.2)	3 (3.1)
		89 (92.7)		7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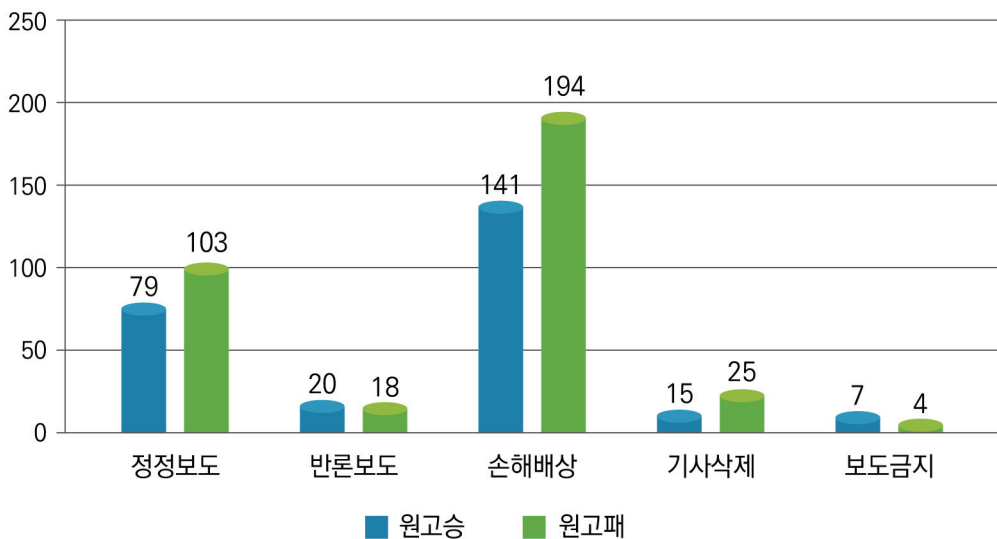
※ ()안의 숫자는 %

3. 청구별 결과

원고 승소율은 보도금지청구 사건이 63.6%로 가장 높아

224건의 소송건을 매체별로 우선 분류한 후, 이를 다시 청구권별로 재분류하여 청구별 원고 승소율을 살펴보았다. 재분류된 606건 중 보도금지청구 사건(11건)의 원고 승소율이 63.6%(7건)로 가장 높았고, 반론보도청구 사건(38건)은 52.6%(20건), 정정보도청구(182건) 43.4%(79건), 손해배상청구(335건) 42.1%(141건), 기사삭제청구(40건) 37.5%(1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 청구별 결과



4. 침해유형별 결과

명예훼손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48.6%

원고의 청구취지를 토대로 원고가 주장했던 침해유형별 승소율을 분석한 결과, 언론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명예훼손에서의 원고 승소율은 48.6%로 나타났다. 그 외 침해유형에서의 원고 승소율은 해당 건수가 소수에 불과해 유의미한 통계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명예·초상·성명 또는 명예·음성·사생활이 함께 침해된 경우 및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원고 승소율은 100%로 나타났지만 해당 건수가 각 1건이어서 통계로서의 의미는 크지 않다.

〈표 3-4〉 침해유형별 결과

침해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명 예	89 (48.6)	94 (51.4)	183 (100.0)
명예/신용	1 (12.5)	7 (87.5)	8 (100.0)
명예/모욕	5 (62.5)	3 (37.5)	8 (100.0)
명예/초상	0 (0.0)	2 (100.0)	2 (100.0)
명예/초상/성명	1 (100.0)	0 (0.0)	1 (100.0)
명예/음성	0 (0.0)	1 (100.0)	1 (100.0)
명예/음성/사생활	1 (100.0)	0 (0.0)	1 (100.0)
명예/성명	0 (0.0)	6 (100.0)	6 (100.0)
명예/성명/사생활	0 (0.0)	4 (100.0)	4 (100.0)
명예/사생활	4 (66.7)	2 (33.3)	6 (100.0)
초상/사생활	2 (100.0)	0 (0.0)	2 (100.0)
성명/사생활	0 (0.0)	1 (100.0)	1 (100.0)
재 산	1 (100.0)	0 (0.0)	1 (100.0)
합 계	104 (46.4)	120 (53.6)	224 (100.0)

※ ()안의 숫자는 %

5. 원고유형별 결과

시민단체의 승소율이 가장 높아

원고유형에 따른 승소율은 개인의 경우 공적 인물 50.0%, 고위공직자 47.4%, 일반인 46.2%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체의 경우에는 1건에 불과한 정당을 제외하면 시민단체의 승소율이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해당 건수가 3건에 불과했다. 한편 언론사가 원고인 사건의 승소율은 40.0%로 분석됐다.

〈표 3-5〉 원고유형별 결과

원고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개인	고위 공직자	9 (47.4)	10 (52.6)	19 (100.0)
	공적 인물	21 (50.0)	21 (50.0)	42 (100.0)
	일 반 인	42 (46.2)	49 (53.8)	91 (100.0)
	소 계	72 (47.4)	80 (52.6)	152 (100.0)
단체	언 론 사	2 (40.0)	3 (60.0)	5 (100.0)
	국가기관	3 (75.0)	1 (25.0)	4 (100.0)
	지 자 체	0 (0.0)	4 (100.0)	4 (100.0)
	기 업	12 (33.3)	24 (66.7)	36 (100.0)
	공공단체	1 (33.3)	2 (66.7)	3 (100.0)
	종교단체	2 (33.3)	4 (66.7)	6 (100.0)
	시민단체	3 (100.0)	0 (0.0)	3 (100.0)
	일반단체	8 (80.0)	2 (20.0)	10 (100.0)
	정 당	1 (100.0)	0 (0.0)	1 (100.0)
	소 계	32 (44.4)	40 (55.6)	72 (100.0)
합 계		104 (46.4)	120 (53.6)	22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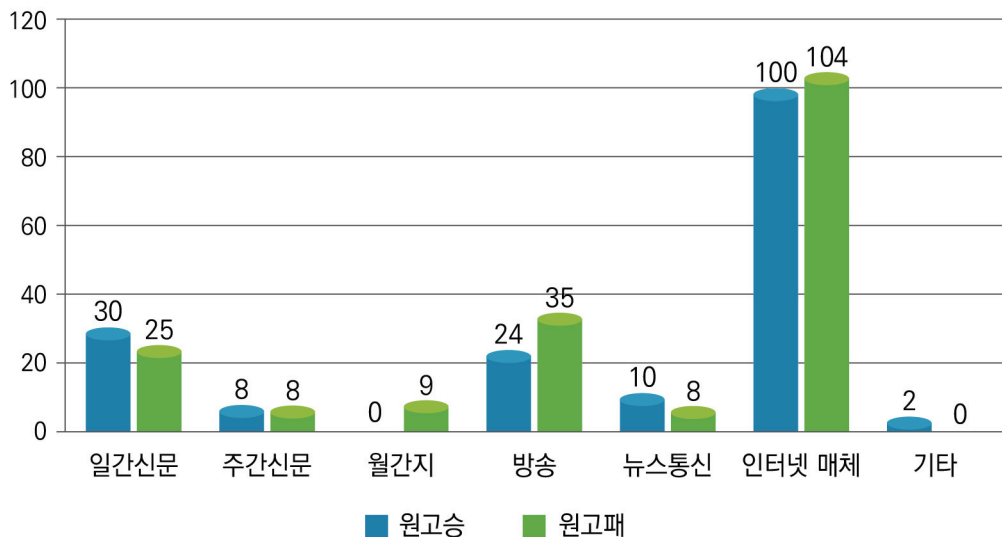
※ ()안의 숫자는 %

6. 매체유형별 결과

인터넷 매체 상대 사건의 원고 승소율 49.0%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눈 363건을 대상으로 매체유형에 따른 소송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사건 수가 가장 많은 인터넷 매체 관련 소송(204건)의 원고 승소율은 49.0%(100건)로 나타났다. 뉴스통신(18건)을 상대로 한 사건의 원고 승소율이 55.6%로 가장 높았고, 월간지(9건)를 상대로 한 사건의 승소율은 0.0%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표 3-6〉 매체유형별 소송 결과



세부 유형별로 원고 승소율을 살펴보면 일간신문(55건)을 상대로는 중앙종합일간지 54.3%(19건), 지역종합일간지 62.5%(5건), 경제일간지 50.0%(6건)로 조사됐다.

방송의 경우, 지상파방송에 대한 원고 승소율은 24.2%(8건)로 낮았지만, 케이블방송은 58.3%(14건), 라디오는 100.0%(2건)로 나타났다.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인터넷신문 52.7%(29건), 언론사닷컴 47.7%(71건)로 각 조사됐다.

〈표 3-7〉 일간신문 유형별 소송 결과

일간신문 유형별	원고승	원고패	계
중앙종합	19 (54.3)	16 (45.7)	35 (100.0)
지역종합	5 (62.5)	3 (37.5)	8 (100.0)
경제일간	6 (50.0)	6 (50.0)	12 (100.0)
합 계	30 (54.5)	25 (45.5)	55 (100.0)

※ ()안의 숫자는 %

〈표 3-8〉 방송 유형별 소송 결과

방송 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지상파방송	8 (24.2)	25 (75.8)	33 (100.0)
케 이 블	14 (58.3)	10 (41.7)	24 (100.0)
라 디 오	2 (100.0)	0 (0.0)	2 (100.0)
합 계	24 (40.7)	35 (59.3)	59 (100.0)

※ ()안의 숫자는 %

〈표 3-9〉 인터넷 매체 유형별 소송 결과

인터넷 매체 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인터넷신문	29 (52.7)	26 (47.3)	55 (100.0)
언론사닷컴	71 (47.7)	78 (52.3)	149 (100.0)
합 계	100 (49.0)	104 (51.0)	204 (100.0)

※ ()안의 숫자는 %

7. 보도유형별 결과

스트레이트 기사(방송 외) 48.1%, 뉴스(방송) 상대 원고 승소율 55.6%

매체별로 분류된 363건을 방송 외 매체 304건, 방송 매체 59건으로 다시 나눈 후, 각 매체에 따른 보도유형별 소송 결과를 살펴보았다. 방송 외 매체의 경우,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스트레이트 기사를 상대로 한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48.1%로 절반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방송 매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뉴스 프로그램의 원고 승소율은 55.6%를 기록했지만 고발 프로그램(38.1%)이나 교양 프로그램(10.0%) 등 다른 보도유형에서는 원고 승소율이 낮았다.

〈표 3-10〉 방송 외 매체의 보도유형별 소송 결과

보도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스트레이트	141 (48.1)	152 (51.9)	293 (100.0)
광고	1 (100.0)	0 (0.0)	1 (100.0)
만평	0 (0.0)	1 (100.0)	1 (100.0)
사설	4 (100.0)	0 (0.0)	4 (100.0)
칼럼	4 (80.0)	1 (20.0)	5 (100.0)
합계	150 (49.3)	154 (50.7)	304 (100.0)

※ ()안의 숫자는 %

〈표 3-11〉 방송 매체의 보도유형별 소송 결과

보도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뉴스	15 (55.6)	12 (44.4)	27 (100.0)
고발	8 (38.1)	13 (61.9)	21 (100.0)
교양	1 (10.0)	9 (90.0)	10 (100.0)
토론	0 (0.0)	1 (100.0)	1 (100.0)
합계	24 (40.7)	35 (59.3)	59 (100.0)

※ ()안의 숫자는 %

8. 소송기간

3개월 이내 판결이 선고된 1심 보도게재청구 사건 0건

언론소송에서는 소송 진행의 신속함이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29조에서는 “법원은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 제1항에서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 취지가 실제 소송에서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소송 개시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 즉 소송기간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⁴⁾

그 결과, 1심과 2심 사건 상당수가 6개월을 초과해서 판결이 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심급별 소송기간 분포

구 분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년 이내	1년 이상 2년 이내	2년 초과	계
1심	2 (1.6)	18 (14.2)	63 (49.6)	36 (28.3)	8 (6.3)	127 (100.0)
2심	3 (4.3)	28 (40.6)	34 (49.3)	4 (5.8)	0 (0.0)	69 (100.0)
3심	12 (42.9)	11 (39.3)	0 (0.0)	0 (0.0)	5 (17.9)	28 (100.0)
합 계	17 (7.6)	57 (25.4)	97 (43.3)	40 (17.9)	13 (5.8)	224 (100.0)

※ ()안의 숫자는 %

특히, 법률에서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1심 보도게재청구 사건에서도 법정 기한을 준수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가 단 1건도 없었다. 접수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선고한 사건이 46건(83.6%)으로 대다수였다.

〈표 3-13〉 보도게재청구 사건의 심급별 소송기간 분포

구 분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년 이내	1년 이상 2년 이내	2년 초과	계
1심	0 (0.0)	9 (16.4)	27 (49.1)	14 (25.5)	5 (9.1)	55 (100.0)
2심	2 (6.3)	16 (50.0)	13 (40.6)	1 (3.1)	0 (0.0)	32 (100.0)
3심	8 (42.1)	8 (42.1)	0 (0.0)	0 (0.0)	3 (15.8)	19 (100.0)
합 계	10 (9.4)	33 (31.1)	40 (37.7)	15 (14.2)	8 (7.5)	106 (100.0)

※ ()안의 숫자는 %

4) 이 분석에서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일환으로 보도문 게재를 청구하는 사건도 대상에 포함하였음을 밝혀둔다.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술한 바와 같이, 분석 대상 판결을 매체별로 나눈 후 다시 청구별로 재분류하여 합산한 건수는 606건이다. 606건 중 손해배상청구 사건 335건만을 대상으로 원고 승소율, 청구액 및 인용액, 공동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등을 분석했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청구액 및 인용액 분석 시에는 소수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사건이 전체 평균값의 상승 또는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청구액 및 인용액의 중앙값⁵⁾과 최빈액⁶⁾을 함께 조사했다.

원고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고들 각각의 청구액이나 인용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으며, 피고가 다수인 경우에는 피고를 매체별로 구분하여 산출된 매체별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또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에는 해당 언론인이 소속된 매체의 청구액과 인용액에 언론인에 대한 청구액과 인용액을 합산했다.

1.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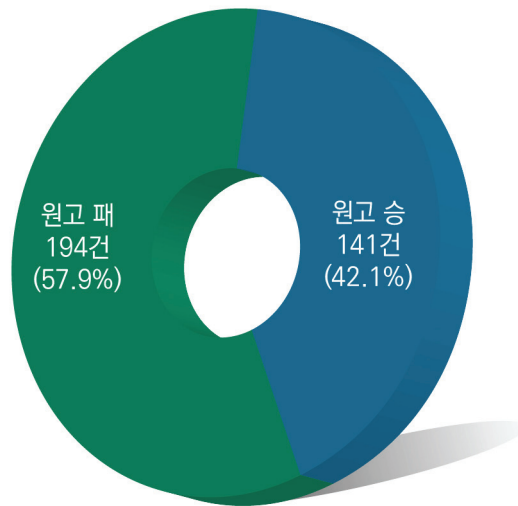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의 원고 승소율 42.1%

분석 대상 손해배상청구 사건 335건 중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141건으로 원고 승소율은 42.1%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언론소송(224건)에서의 원고 승소율(46.4%)보다는 낮은 수치다.

5) 중앙값이란 사례를 순위대로 배열하여 사례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사례의 액수를, 짝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 위치한 두 개 값의 평균을 말한다.

6) 최빈액은 전체 사례 중 건수가 가장 많은 값이다.

〈표 4-1〉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 결과



2. 청구액

평균 손해배상청구액 1억 9,468만 원, 중앙값 5천만 원
 청구액 기준 1억 원 이상 사건 비중 37.6%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 청구액을 평균과 중앙값, 최빈액 등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청구액 평균은 약 1억 9,468만 원이었고, 중앙값과 최빈액은 모두 5천만 원이었다.

전체 손해배상청구 335건 중 1억 원 이상의 고액 청구 사건이 126건(37.6%)을 차지하였으며, 최고 청구액은 335억 4천만 원, 최저 청구액은 1원이었다.

〈표 4-2〉 손해배상 청구액

청구액(원) 건수	평균액	중앙값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335	194,683,021	50,000,000	50,000,000	1	33,540,000,000

3. 인용액

손해배상 평균 인용액 약 1,420만 원, 인용 최고액 4억 2,730만 원

손해배상청구 사건(335건) 중 청구가 인용되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건수는 141건(42.1%)이다. 이들 사건의 평균 인용액은 약 1,420만 원, 중앙값은 350만 원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가장 빈번하게 선고한 액수는 250만 원으로 조사됐다. 손해배상 인용 최고액은 약 4억 2,730만 원으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언론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건이었다.⁷⁾

한편, 손해배상청구 인용 사건 중 2심 판결은 33건, 3심 판결은 24건이었다. 위 상소심 판결 57건을 대상으로 상소심 법원이 원심에서 인용한 손해배상액을 증액 또는 감액했는지를 살펴보았다. 2심 법원이 원심 판결의 인용액을 유지한 경우는 24건이었고, 증액한 경우(원심의 원고 패소판결을 번복한 경우 포함) 1건, 감액한 경우 8건으로 나타났다. 3심의 경우, 대법원은 24건 모두 원심 인용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표 4-3〉 손해배상 인용액

인용액(원) 건수	평균액	중앙값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141	14,207,844	3,500,000	2,500,000	750,000	427,30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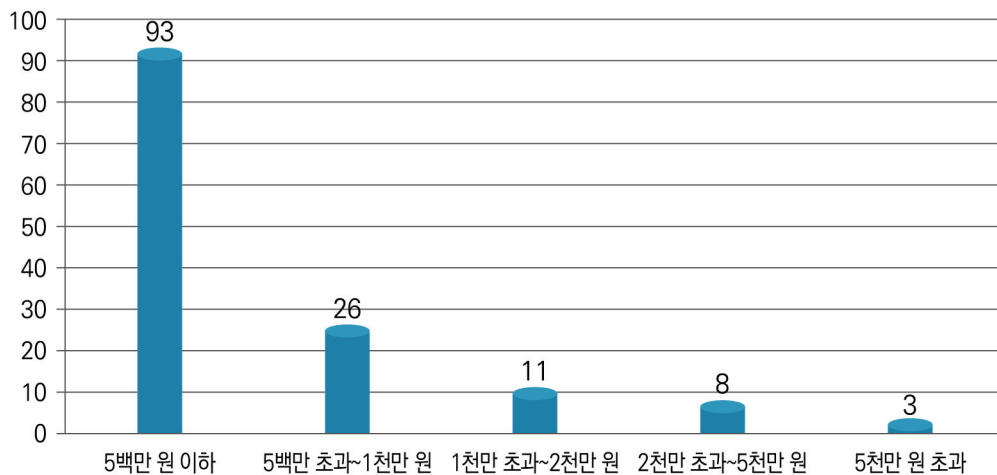
7)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4. 인용액 분포

절반 넘는 사건의 손해배상 인용액은 5백만 원 이하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인용된 사건 141건의 인용액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5백만 원 이하가 93건(66.0%)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5백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가 26건(18.4%),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가 11건(7.8%),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가 8건(5.7%), 5천만 원 초과가 3건(2.1%)으로 나타났다.

〈표 4-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5. 침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명예훼손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한 사건의 원고 승소율 43.5%

손해배상청구 사건 335건을 침해유형별로 분류하여 원고 승소율과 인용액을 분석한 결과, 건수가 가장 많은 명예훼손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43.5%로 나타났다. 명예훼손만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인용액 평균값은 약 880만 원, 인용액 중앙값은 3백만 원이었다.

명예훼손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명예와 신용이 함께 훼손되었다고 주장한 사건들로, 이 경우 승소율은 7.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4-5〉 침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침해유형	건수	원고승	원고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명 예	283	123	43.5	8,845,528	3,000,000
명예/신용	13	1	7.7	300,000,000	300,000,000
명예/모욕	10	6	60.0	10,833,333	10,000,000
명예/초상	2	0	0.0	-	-
명예/초상/성명	1	1	100.0	45,000,000	45,000,000
명예/음성	1	0	0.0	-	-
명예/음성/사생활	1	1	100.0	4,000,000	4,000,000
명예/성명	6	0	0.0	-	-
명예/성명/사생활	4	0	0.0	-	-
명예/사생활	10	6	60.0	10,000,000	10,000,000
초상/사생활	2	2	100.0	7,000,000	7,000,000
성명/사생활	1	0	0.0	-	-
재 산	1	1	100.0	427,306,000	427,306,000
합 계	335	141	42.1	14,207,844	3,500,000

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언론사의 손해배상청구 승소율은 20.0%에 그쳐

원고유형별로 살펴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비록 1건이지만 정당이 100%로 가장 높게 파악됐다. 이어 일반단체(82.4%), 시민단체(50.0%), 일반인(46.4%) 등의 순이었다.

원고가 언론사인 경우 승소율은 20.0%로 낮게 조사됐다. 원고가 종교단체인 사건은 마찬가지로 승소율이 20%에 그쳤지만 인용액 중앙값은 1억 5,1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표 4-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	건수	원고승	원고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개 인	고위 공직자	37	15	40.5	4,200,000	3,500,000
	공적 인물	53	23	43.4	7,217,391	4,000,000
	일 반 인	151	70	46.4	13,875,800	4,500,000
단 체	언 론 사	5	1	20.0	3,000,000	3,000,000
	국가기관	0	0	0.0	-	-
	지 자 체	4	0	0.0	-	-
	기 업	45	12	26.7	33,666,667	3,250,000
	공공단체	6	0	0.0	-	-
	종교단체	10	2	20.0	151,000,000	151,000,000
	교육기관	0	0	0.0	-	-
	시민단체	6	3	50.0	13,666,667	20,000,000
	일반단체	17	14	82.4	3,714,286	2,500,000
	정 당	1	1	100.0	1,000,000	1,000,000
	합 계	335	141	42.1	14,207,844	3,500,000

〈표 4-7〉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

공적 인물 유형	건수	원고승	원고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정치인	1	0	0.0	-	-
전문인	21	13	61.9	7,769,231	5,000,000
언론인	16	6	37.5	3,333,333	1,500,000
연예인	1	1	100.0	30,000,000	30,000,000
기 타	14	3	21.4	5,000,000	2,500,000
합 계	53	23	43.4	7,217,391	4,000,000

7.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 승소율, 월간지 상대로 낮고 지역종합일간신문 높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율은 1건에 불과한 기타 매체를 제외하면 지역종합일간신문이 62.5%로 가장 높았다. 사건수가 가장 많은 인터넷신문(45.7%)과 언론사닷컴(44.8%) 등 인터넷 매체의 원고 승소율은 45.0%로 절반에 못 미쳤고 월간지의 원고 승소율(0.0%)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매체유형별 인용액 평균값은 방송이 약 4,12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표 4-8〉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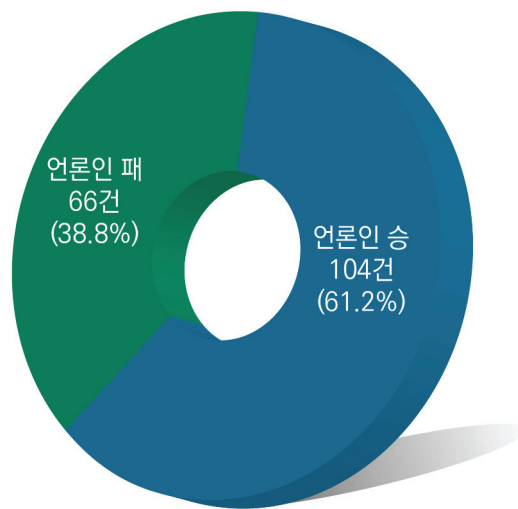
매체유형		인용액	건수	원고승	원고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일 간	중앙종합		34	15	44.1	3,500,000	3,000,000
	지역종합		8	5	62.5	2,450,000	2,500,000
	경제일간		12	6	50.0	4,583,333	3,750,000
	소 계		54	26	48.1	3,548,077	2,750,000
방 송	지상파방송		27	4	14.8	81,500,000	11,500,000
	케 이 블		22	8	36.4	21,062,500	22,500,000
	소 계		49	12	24.5	41,208,333	17,500,000
주간신문			16	7	43.8	3,428,571	3,500,000
월 간 지			7	0	0.0	-	-
뉴스통신			17	9	52.9	5,944,444	1,500,000
인터넷	인터넷신문		46	21	45.7	23,214,286	7,000,000
	언론사닷컴		145	65	44.8	13,054,708	3,500,000
	소 계		191	86	45.0	15,535,535	3,750,000
기 타			1	1	100.0	3,000,000	3,000,000
합 계			335	141	42.1	14,207,844	3,500,000

8.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 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의 언론인 승소율은 61.2%

손해배상청구 335건 중 언론인이 공동 피고로 제소된 사건은 170건(50.7%)이었다. 이 중 피고 언론인(대표, 담당자 등)이 면책되어 승소한 경우는 104건(61.2%)이었다. 이는 전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피고승소율 57.9%보다 다소 높은 수치다.

〈표 4-9〉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피고 언론인 승소 여부



9.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명예훼손 사건에서 언론사 승소 원인의 상당수는 보도의 공익성과 진실성

손해배상청구 335건 중 기각(원고 패소)된 194건의 침해유형별 기각 사유를 살펴보았다. 명예훼손의 경우⁸⁾, 보도의 공익성 및 진실성이 인정되어 기각된 경우가 53건(27.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도의 공익성 및 진실성과 상당성이 모두 인정되어 기각된 사례가 37건(19.1%)이었고, 공익성과 상당성이 인정된 경우가 34건(17.5%)이었다.

당사자 불특정을 이유로 기각된 사생활 침해 사건은 원고의 불륜에 대한 보도에서 원고가 주한미군 고위인사, 50대 후반 유부남, 한국에서 근무한 지 10년이 넘었다는 등의 정보만으로는 원고의 지인이나 주변인들이 기사 내용의 인물이 원고라는 것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아 기각되었다.

〈표 4-10〉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기각 사유		건수	비율(%)
명예훼손	불 특 정	1	0.5
	불특정/공익/진실성	3	1.5
	불특정/사실적시 없음	2	1.0
	사실적시 없음	19	9.8
	사실적시 없음/공익	1	0.5
	사실적시 없음/공익/진실성	1	0.5
	사실적시 없음/공익/상당성	1	0.5
	사실적시 없음/진실성	5	2.6
	사실적시 없음/평가저하 아님	2	1.0
	평가저하 아님	1	0.5
	평가저하 아님/진실성	6	3.1
	공 익	12	6.2
	공익/진실성	53	27.3
	공익/진실성/상당성	37	19.1
	공익/상당성	34	17.5
	진 실 성	9	4.6
	상 당 성	1	0.5
	기 타	4	2.1
사생활	불 특 정	2	1.0
합 계		194	100.0

8) 명예를 포함하여 복수의 인격권 침해를 호소한 경우 주된 침해유형인 '명예훼손'에 분류하여 집계했다.

제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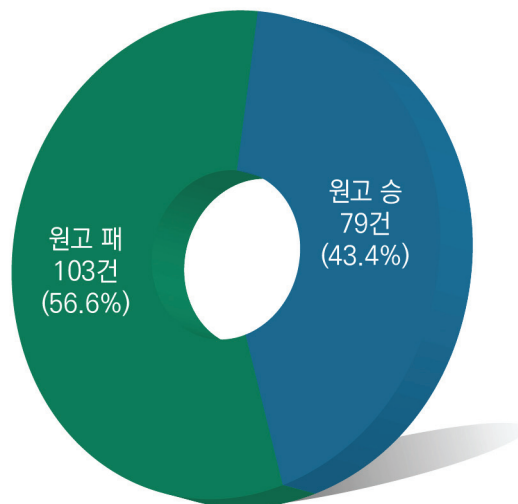
정정 · 반론 · 추후보도청구 사건

1. 정정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정정보도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율 43.4%

분석대상 판결을 매체별로 나눈 후, 다시 청구권별로 나눈 건수 606건 중 정정보도청구 사건은 182건이었다. 정정보도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79건으로 원고 승소율은 43.4%로 나타났다. 이 중 정정보도를 단독으로 청구한 건수는 10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반론보도, 손해배상 또는 기사삭제 등과 병합하여 청구했다.

〈표 5-1〉 정정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2.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정정보도청구 사건의 주된 기각 사유는 ‘보도의 진실성’

정정보도청구 사건 중 원고가 패한 사건(103건)에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4건을 제외한 99건의 기각 사유를 분석한 결과, 보도의 진실성을 인정하여 기각한 사례가 49건(49.5%)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적 주장이 아니거나 보도가 진실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건이 24건(24.2%)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는 사유로 기각된 경우가 17건(17.2%)을 차지하여, 주로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되거나 문제되는 표현에 대해 사실적 주장이 부정되어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표 5-2〉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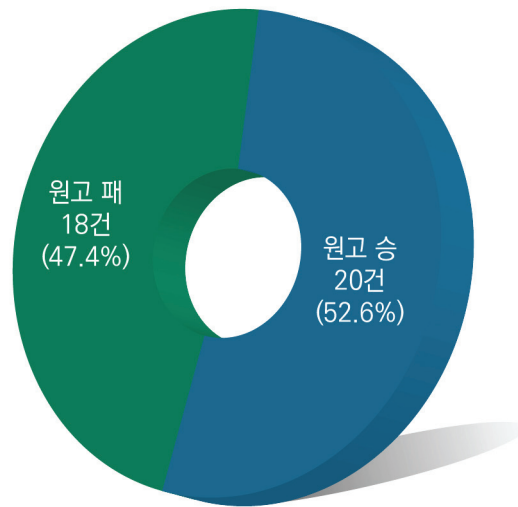
기각 사유	건수	비율(%)
개별연관 부정	3	3.0
사실주장 아님	17	17.2
사실주장 아님/지엽말단	1	1.0
사실주장 아님/진실성	24	24.2
지엽말단/진실성	1	1.0
진 실 성	49	49.5
기 타	4	4.0
합 계	99	100.0

3. 반론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반론보도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율 52.6%

분석대상 판결 중 반론보도청구 건수는 38건으로 원고 승소 사건은 20건, 원고 승소율은 52.6%로 나타났다. 반론보도만을 단독으로 청구한 사건은 5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등과 병합하여 청구했다.

〈표 5-3〉 반론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4.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보도내용이 사실적 주장이 아닌 경우 반론보도청구 기각

반론보도청구 사건 38건 중 각하 2건을 제외하면 기각된 사건은 16건이었다. 대체로 보도내용이 사실적 주장이 아닌 경우에 기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 5-4〉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기각 사유	건수	비율(%)
개별연관부정	2	12.5
사실주장 아님	3	18.8
사실주장 아님/지엽말단	1	6.3
사실주장 아님/지엽말단/사실에 반함	2	12.5
지엽말단/사실에 반함	1	6.3
기반론행사	1	6.3
원보도와 같음/사실에 반함	1	6.3
사실에 반함	2	12.5
기 타	3	18.8
합 계	16	100.0

5.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보도등의 형식

법원에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한다) 게재를 명한 사건은 총 89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10건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동시에 게재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별로 분류한 기준으로 집계한 보도 게재 건수는 총 99건이다.

이를 매체유형별로 분류하면 일간신문 22건, 주간신문 6건, 방송 19건, 인터넷 매체 50건, 기타 1건⁹⁾ 등이다. 인용한 보도의 유형은 정정보도가 79건, 반론보도가 20건이었다.

〈표 5-5〉 매체별 정정보도등의 인용건수

매체유형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	계
일간신문	20	2	-	22
주간신문	5	1	-	6
월 간 지	0	-	-	0
방 송	10	9	-	19
뉴스통신	1	-	-	1
인터넷 매체	42	8	-	50
기 타	1	-	-	1
합 계	79	20	0	99

한편, 법원이 정정보도등을 명하는 때에는 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게재위치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언론중재법 제27조 제2항). 이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법원이 인용한 보도문의 위치, 제목, 본문 길이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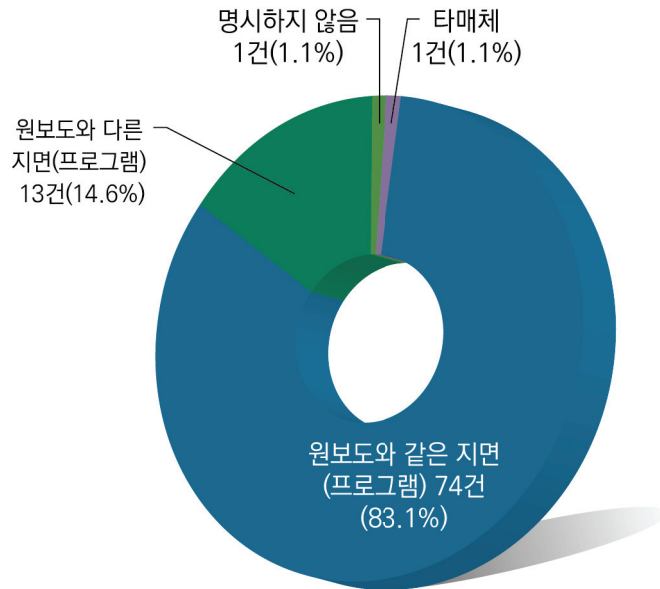
가. 정정보도등의 게재위치

대부분 원보도와 동일한 위치에 보도하도록 판결

법원이 인용한 정정보도등의 위치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원보도와 같은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것으로 조사됐다(74건, 83.1%). 원보도와 다른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는 13건(14.6%)에 불과했다. 보도지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건 있었고, 타 매체 게재를 명한 1건은 피고의 언론사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유에 따른 것이었다.

9) 한국방송공사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외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사내통신망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선고(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87266)

〈표 5-6〉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지면(프로그램)



매체유형 중 ‘기타’ 1건을 제외한 88건의 매체별 보도위치를 조사한 결과, 일간신문,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1면 게재가 10건, 방송의 경우 첫머리가 15건, 뉴스통신 및 인터넷 매체의 경우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가 초기화면에 게시되도록 한 사례가 36건으로 나타났다.

〈표 5-7〉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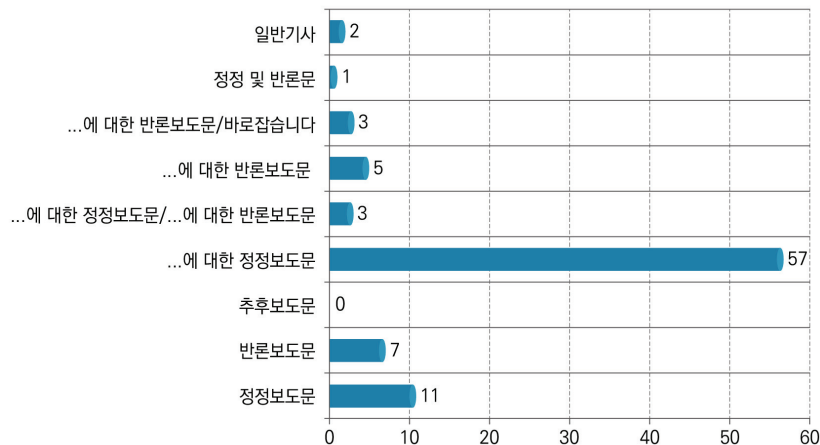
구분	보도위치	건수	비율(%)
정기간행물	1면	10	37.0
	1면 외	17	63.0
합 계		27	100.0
방송	첫머리	15	88.2
	후반	2	11.8
합 계		17	100.0
인터넷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가 초기화면에 노출	36	81.8
	초기화면에 노출되는 것이 없음	7	15.9
	명시하지 않음	1	2.3
합 계		44	100.0

나.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본문 길이

대체적으로 원보도의 핵심 내용을 함께 기재하는 제목 형식 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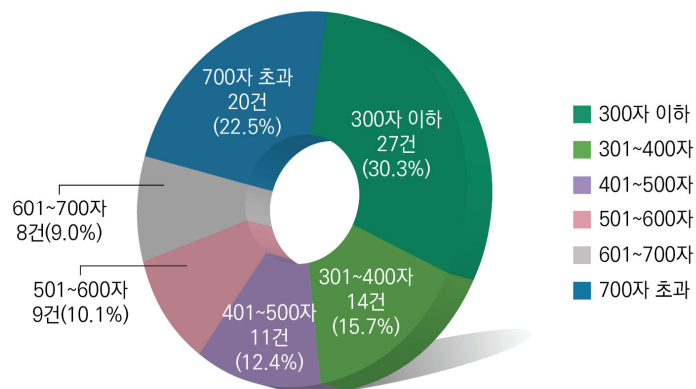
법원이 인용한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 길이 등 형식을 분석했다. 보도 제목의 경우, ‘...에 대한 정정 보도문’이나 ‘...에 대한 반론보도문’ 또는 두 보도문을 결합한 형식이 65건(73.0%)으로 집계되어 전년도(67.6%)보다 그 비율이 다소 상승했다.

〈표 5-8〉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본문의 길이는 글자 수 기준으로 300자 이하가 27건(30.3%)으로 가장 많았으나, 그 뒤를 700자 초과 20건(22.5%)이 이어 인용 보도문이 장문인 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9〉 인용된 정정보도문등의 본문 길이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1. 조정경유 비율

전체 언론분쟁 사건 중 법원에서 처리되는 비율 8.4%

2018년 분석대상 판결의 매체별 건수 363건을 청구권별로 재분류한 606건 중에서 기사삭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정·반론·추후·손배 네 가지 청구권 관련 사건(총 555건)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정을 거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언론분쟁 중에서 8.4%의 사건만이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조정경유 비율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전체 언론분쟁 건수 (A+B)	3,523 (100.0)	3,540 (100.0)	3,890 (100.0)	10,953 (100.0)
조정 건수 (A)	3,170 (90.0)	3,230 (91.2)	3,562 (91.6)	9,962 (91.0)
조정을 거치지 않은 판결 건수 (B)	353 (10.0)	310 (8.8)	328 (8.4)	991 (9.0)
조정을 거친 판결 건수 (C)	165 (4.7)	173 (4.9)	227 (5.8)	565 (5.2)
법원 판결 건수 (B+C)	518 (14.7)	483 (13.6)	555 (14.3)	1,556 (14.2)

※ ()안의 숫자는 %

* 건수 산정 : 정정·반론·추후·손배 청구권별 산정 (기사삭제, 게재금지 등 제외)

* 전체 언론분쟁 건수 : 판결 수집 건수를 전수조사로 전제한 경우임

* 법원 판결 건수는 기사삭제, 게재금지 청구 등을 포함할 경우 더 많아질 수 있음

2.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조정액과 인용액 비교

위원회 평균 조정액 약 196만 원, 법원 평균 인용액 약 1,420만 원

2018년 위원회가 처리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조정성립 등을 통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사건의 조정액과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인용액을 비교,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위원회 평균 조정액은 약 196만 원, 중앙값은 1백만 원이고, 법원 평균 인용액은 약 1,420만 원, 중앙값은 350만 원이었다.¹⁰⁾ 위원회의 평균 조정액은 전년도(약 136만 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법원 평균 인용액 또한 전년도(약 853만 원)에 비해 증가했다. 법원 평균 인용액은 3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선고한 고액 인용 사건들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표 6-2〉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구분	건수	평균액(원)	중앙값(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조정액	59	1,960,417	1,000,000	250,000	9,000,000
인용액	141	14,207,844	3,500,000	750,000	427,306,000

3.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 결과와 법원 소송 결과 비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피신청인이 이의제기한 경우 원고 승소율은 100%, 신청인이 이의제기한 경우 원고 승소율은 34.5%

2018년 언론 관련 판결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227건¹¹⁾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정 결과와 법원 소송 결과를 원고 승소율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보았다.

위원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37건으로 이 사건들에서 원고 승소율은 48.6%(18건)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경우의 원고 승소율은 100.0%(8건)로, 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의 원고 승소율 34.5%(10건)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두 기관의 결과 비교가 보다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차이를 비교,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 분석은 두 기관이 각기 다른 사건을 심리하여 판단한 결과이므로 분석 결과를 단순 비교하여 위원회와 법원의 손해배상액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고, 두 기관의 손해배상액의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는 데에 의미가 있다.

11) 위원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이루어진 경우를 비롯하여 조정불성립결정이나 조정성립, 취하 등 위원회 조정 이후 별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조정을 취하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원고 승소율은 80.6%(29건)로, 조정불성립결정(151건)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승소율 46.4%(70건)보다 높게 조사됐다.

〈표 6-3〉 위원회와 법원 소송결과 비교

위원회 조정결과		판결 결과	계	원고일부승	원고패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신청인 이의신청		29	10	19
	피신청인 이의신청		8	8	0
	신청인, 피신청인 이의신청		0	-	-
조정불성립결정			151	70	81
각 하			1	-	1
취 하			36	29	7
합 의			2	0	2
합 계			227	117	110

손해배상을 명한 자동 소 제기 사건 법원에서 기각

2018년에는 위원회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명했지만 분쟁 당사자의 이의신청으로 법원에 자동 소 제기된 사건이 1건 있었다. 해당 사건은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제기한 것인데,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다.

〈표 6-4〉 조정을 거친 사건의 소송 결과 전체 목록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1	2015대구조정 64·66 (각 손해)	A	주식회사 한길뉴스	신청인이 다단계 사기 주범인 ○○○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불성립	인용 1,500만 원 (김천지원 2016가단 1010)	인용 700만 원 (대구지법 2016나 15172)	인용 700만 원 (대법 2018다 11640)	-
2	2016서울조정 1534·1536 (정정·손배)	A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철거상가의 공동토지 소유자인 신청인이 토지매입을 제안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직권결정 정정·반론	기각 (서울중법 2016가합 35081)	기각 (서울고법 2017나 2048377)	기각 (대법 2018다 211907)	-
3	2017서울조정 769·770 771·772 (각 정정·반론)	주식회사 채널에이	재단법인 씨비에스	신청인 회사의 방송프로그램에서 대왕카스테라 제조에 식용유가 과다 사용된다고 방송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정정 (서울남법 2017가합 107637)	조정성립 (서울고법 2018나 2011488)	-	-

순번	사건번호 (정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4	2017서울조정 265·266 (각 정정)	A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화학의 생산직 근로자 자동진급제도가 폐지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직권결정 -정정	인용-정정 500만 원 (서울중법 2017가합 13552, 13569)	인용-정정 500만 원 서울고법 (2018나 2007977, 2007984)	-	-
5	2016서울조정 1587·1588 1692·1693 (각 정정·손배)	A	국민일보 주식회사	○○○당 성희롱 예방교육에 서 강사인 신청인이 성희롱 은 참는 것이 미덕이라 취지 로 강연했다는 보도는 사실 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중법 2017가합 505907)	취하 (서울고법 2018나 2012764)	-	-
6	2015경기조정 134 (정정)	주식회사 A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시가 신청인 회사에게 공원시설인 야영장을 영리목 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 가한 것이 잘못된 법률 규정 을 적용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직권결정 -반론	기각 (인천지법 2015가합 5909)	-	-	-
7	2016서울조정 1520 (정정)	A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경찰인 신청인이 고리의 사 채불이를 했다는 보도는 사 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정정 300만 원 (서울남법 2017가합 110190)	인용-정정 300만 원 (서울고법 2018나 2013224)	-	-
8	2017경남조정 1·2 (정정·반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거제타임즈	신청인이 스스로 부담해야할 상수도 요금을 유람선사에 떠넘기는 갑질 횡포를 부리 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 르다.	직권결정 -정정·반론	인용 정정·반론 (통영지원 2017가합 76)	인용 정정·반론 (부산고법 -창원 2018나 10817)	인용 정정·반론 (대법 2018다 244983)	-
9	2017전북조정 39·40 (정정·손배)	A	주식회사 부안독립 신문	신청인이 사업장 설립을 위 해 지역주민들 몰래 동의서 를 작성하고 생산설비도 중 고기계로 구입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정정 10만 원	기각 (정읍지원 2017가합 143)	-	-	-
10	2016서울조정 2136·2137 (각 정정)	A	주식회사 문화방송	고 유병언씨가 대포폰 300대 를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 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서법 2017가합 32954)	기각 (서울고법 2017나 2061301)	-	-
11	2015서울조정 3526 (정정)	한국방송공사	전국언론 노동조합 KBS본부	KBS가 이사장의 개인용무 해외출장에 공금을 집행했 고, 이사장의 압력을 받고 이 사장 출연 프로그램에 제작 비를 투입했다는 보도는 사 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정정·반론	인용-정정 300만 원 (서울남법 2015가합 6709)	인용-정정 300만 원 (서울고법 2016나 2071745)	인용-정정 300만 원 (대법 2017다 287266)	-
12	2017서울조정 8 (정정)	A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신청인이 '반기문 전 UN사무 총장이 태광실업 회장으로부 터 돈을 받았다고 발언했 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남법 2017가합 57)	기각 (서울고법 2018나 2019307)	-	-
13	2017서울조정 806·807 808·809 (각 정정·손배)	A	주식회사 문화방송	무속인인 신청인이 사기 또 는 협박으로 곳을 하게하고 수심억 원을 갈취했다는 보 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서법 2017가합 34998, 38877)	기각 (서울고법 2018나 2019390, 2019406)	기각 (대법 2018다 258760, 258777)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14	2016경남조정 78·80 (각 손해)	A	주식회사 남해시대	신청인이 진행 중인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지역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정정판론	기각 (진주지원 2017가단 30374)	-	-	-
15	2017서울조정 263 (손배)	주식회사 A 외 1명	주식회사 미디어실크 에이치제이	신청인 회사 대표가 범죄수익금으로 회사를 인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 200만 원 (서울남법 2017가단 233423)	인용 200만 원 (서울남법 2018나 54895)	인용 200만 원 (대법 2018다 280675)	-
16	2016서울조정 378 (손배)	A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신청인이 불법 기부금 모금 및 횡령 혐의로 조사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재판 결과 무죄판결을 받았다.	불성립	기각 (서울중법 2017가합 5261)	기각 (서울고법 2018나 9250)	-	-
17	2017서울조정 450 (정정)	A	주식회사 데일리안	신청인 업체가 외환 및 선물 거래를 위장하여 사행성 게임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남법 2017가합 106757)	기각 (서울고법 2018나 2019314)	기각 (대법 2018다 265508)	-
18	2016서울조정 856 (정정)	A	B (예정뉴스)	신청인의 정관 개정 승인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신청인이 총회 산하기관으로 총회의 재산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기각 (서울동법 2016가합 106078)	기각 (서울고법 2017나 2048032)	기각 (대법 2018다 200167)	-
19	2017서울조정 1498 (손배)	주식회사 A	주식회사 골프 다이제스트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충분한 근거 없이 국내 베스트 코스 18위로 선정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기각 (서울서법 2017가합 36550)	기각 (서울고법 2018나 2026138)	-	-
20	2016서울조정 2119 (손배)	A	주식회사 문화방송	신청인과 해외입양 보낸 딸 사이에 불화가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불성립	기각 (제주지법 2017가합 137)	기각 (광주고법 -제주 2018나 10373)	-	-
21	2016경기조정 47·48 49·50 (각 정정·손배)	A	오비에스 경인티브이 주식회사	호텔 경영자인 신청인이 호텔 편의시설을 무단 사용하고 직원들을 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기각 (성남지원 2016가합 206846)	기각 (서울고법 2017나 2036510)	-	-
22	2017서울조정 1149·1150 1158·1159 (각 정정·손배)	A	주식회사 문화방송	남성 동성애로 AIDS가 발병한다는 신청인의 설교내용이 허위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불성립	기각 (서울서법 2017가합 36925)	-	-	-
23	2016서울조정 1334 (손배)	A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박물관장인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장애인의 박물관 입장을 제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반론 (서울서법 2017가합 31234)	인용-반론 (서울고법 2017나 2065044)	인용-반론 (대법 2018다 240998)	-
24	2017서울조정 1046·1048 1099·1100 (각 정정·손배)	A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신문	2007년 당시 ○○사 주지였던 신청인이 과거 ○○사가 소유했던 토지의 개발권 계약을 통해 개인적으로 5백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정정 1,000만 원 (서울중법 2017가합 549907)	인용-정정 1,000만 원 (서울고법 2018나 2028813)	계류 (대법 2019다 208984)	-

순번	사건번호 (정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25	2016서울조정 1297 · 1298 1299 · 1300 1301 · 1302 (각 정정 · 손배)	A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외 1명	신청인 기관이 액체엔진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한국 형발사체의 시험발사를 의도 적으로 연기한다는 등의 보 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 정정 · 반론 1,000만 원 (서울중법 2016가합 563739)	인용 정정 · 반론 (서울고법 2017나 2059209)	-	-
26	2017서울조정 1819 · 1820 (정정 · 반론)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조선 뉴스프레스	서울시가 헌법재판관 후보에 서 자진사퇴한 변호사에게 물아주기 식으로 대량의 사 건을 맡겼다는 보도는 사실 이 아니다.	직권결정 -반론	기각 (서울서법 2017가합 2083)	강제조정 (서울고법 2018나 2032294)	-	-
27	2016서울조정 1228 · 1229 1290 · 1291 (각 정정 · 손배)	A	B (뉴스앤조이)	신청인이 조직을 사유화하고 독선과 전횡을 일삼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기각 (서울중법 2016가합 556687)	기각 (서울고법 2017나 2075577)	-	-
28	2017서울조정 123 (손배)	A	주식회사 채널에이	신청인이 축산물 판매 허가 를 받지 않고 소고기를 판매 했다고 보도했으나 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불성립	인용 3,000만 원 (서울중법 2017가합 556776)	인용 3,000만 원 (서울고법 2018나 2036074)	-	-
29	2015제주조정 32 · 33 · 34 (정정 · 손배 · 정정)	사단법인 A	주식회사 제주신문사	신청인 협회가 공표한 2014 년도 제주지역 일간지 발행 부수가 허위라는 보도는 사 실과 다르다.	불성립	기각 (제주지법 2016가합 10601)	인용-정정 500만 원 (광주고법 -제주 2017나 10789)	인용-정정 500만 원 (대법 2018다 250810)	-
30	2016서울조정 464 · 466 467 · 469 (각 정정 · 손배)	A	B (현대종교)	신청인 교단이 기도가 불필 요하다고 가르치는 등 성경 교리를 임의적으로 해석한 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북법 2017가합 24513)	기각 (서울고법 2018나 2038032)	-	-
31	2017서울조정 1718 (정정)	A	주식회사 기독교 텔레비전	신청인 교단이 오대양 사건 과 세월호 사고를 유발한 사 이비중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중법 2018가합 507559)	기각 (서울고법 2018나 2040608)	기각 (대법 2018다 304366)	-
32	2017서울조정 2293 · 2294 (정정 · 손배)	A	주식회사 문화방송	신청인이 MBC 시사제작국 장 재직 당시 국정원과 공모 하여 <PD수첩> 프로그램 작 가들을 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서법 2018가합 31651)	기각 (서울고법 2018나 2038346)	-	-
33	2017서울조정 1068 (손배)	A 주식회사 외 1명	주식회사 아시아경제	신청인 회사 회장이 역대 대 통령 일가 및 정관계 인사에 로비를 했다는 취지의 부정 적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불성립	기각 (서울중법 2017가합 558529)	기각 (서울고법 2018나 2040790)	기각 (대법 2019다 204562)	-
34	2016서울조정 926 · 927 (정정)	A	주식회사 아시아경제	신청인이 환경문제 관련 위 크숍에서 "천황폐하 만세"를 세 번 외쳤다는 보도는 사실 이 아니다.	직권결정 -후속보도	인용-정정 3,000만 원 (서울중법 2016가합 17052)	기각 (서울고법 2017나 2057722, 2057739)	기각 (대법 2018다 262479, 262486)	-

순번	사건번호 (정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35	2017서울조정 317·318 (정정·손배)	A	주식회사 문화방송	여교사인 신청인이 이혼경력을 숨기고 결혼하고 시부모로부터 돈을 뺏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서법 2017가합 537)	기각 (서울고법 2017나 2074826)	기각 (대법 2018다 256443)	-
36	2017서울조정 255·256 (정정·반론)	A	B (인터넷 크리스찬 연합신문)	목사인 신청인이 법리도 모른 채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총회 진행을 방해하는 소란을 피웠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직권결정 -반론	기각 (고양지원 2017가합 490)	기각 (서울고법 2018나 2041755)	계류 (대법 2019다 226425)	-
37	2014서울조정 1021 (정정)	A	주식회사 채널에이	신청인이 닭을 비위생적으로 해동하여 가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직권결정 -정정	기각 (서울중법 2014가합 45640)	인용-정정 5,000만 원 (서울고법 2015나 2009002, 2009019)	기각(파기) (대법 2015다 256374, 256381)	인용-반론 (서울고법 2017나 2053027) ¹²⁾
38	2017서울조정 452·666 (정정·손배)	A	주식회사 뉴스스	○○○대 체육강사인 신청인이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게 학점 취득에 관한 상담을 해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 100만 원 (서울중법 2017가합 530781)	-	-	-
39	2017서울조정 453·657 (정정·손배)	A	주식회사 동아닷컴	○○○대 체육강사인 신청인이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게 학점 취득에 관한 상담을 해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 100만 원 (서울중법 2017가합 530781)	-	-	-
40	2017서울조정 455·658, 504·659 (각 정정·손배)	A	주식회사 중앙일보	○○○대 체육강사인 신청인이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게 학점 취득에 관한 상담을 해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정정 300만 원 (서울중법 2017가합 530781)	-	-	-
41	2017서울조정 456·661 (정정·손배)	A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콘텐츠허브	○○○대 체육강사인 신청인이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게 학점 취득에 관한 상담을 해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정정 300만 원 (서울중법 2017가합 530781)	-	-	-
42	2017서울조정 457·667 (정정·손배)	A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콘텐츠허브	○○○대 체육강사인 신청인이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게 학점 취득에 관한 상담을 해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정정 300만 원 (서울중법 2017가합 530781)	인용-정정 300만 원 (서울고법 2018나 2048121)	-	-
43	2017서울조정 503·656 (정정·손배)	A	주식회사 동아일보	○○○대 체육강사인 신청인이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게 학점 취득에 관한 상담을 해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정정 500만 원 (서울중법 2017가합 530781)	-	-	-

12) 이후 재상고심에서 반론보도를 선고 (대법원 2018다258784)

순번	사건번호 (정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44	2017서울조정 505·655 (정정·손배)	A	주식회사 한국일보	○○○대 체육강사인 신청인이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게 학점 취득에 관한 상담을 해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정정 300만 원 (서울중법 2017가합 530781)	인용-정정 300만 원 (서울고법 2018나 2048121)	-	-
45	2017서울조정 506·662 (정정·손배)	A	주식회사 매일방송	○○○대 체육강사인 신청인이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게 학점 취득에 관한 상담을 해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정정 300만 원 (서울중법 2017가합 530781)	-	-	-
46	2017서울조정 508·660 (정정·손배)	A	주식회사 제이티브이씨	○○○대 체육강사인 신청인이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게 학점 취득에 관한 상담을 해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정정 300만 원 (서울중법 2017가합 530781)	-	-	-
47	2017서울조정 524·665 (정정·손배)	A	주식회사 연합뉴스	○○○대 체육강사인 신청인이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게 학점 취득에 관한 상담을 해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 100만 원 (서울중법 2017가합 530781)	-	-	-
48	2017서울조정 1286 (정정)	A	한국방송공사	전직 대통령의 아들인 신청인이 마약을 투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남법 2017가합 108418)	-	-	-
49	2017서울조정 1917·1919 (각 정정)	거제시 외 1명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거제시장인 신청인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 동생 및 측근들이 보상금 차익을 누릴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정정 700만 원 (서울서법 2017가합 40788)	인용-정정 700만 원 (서울고법 2018나 2049551)	-	-
50	2017서울조정 277 (정정)	방송통신 위원회	한국탐사 저널리즘 센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사업자의 부당경품 제공사실을 알고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직권결정 -반론	인용-정정 (서울중법 2017가합 13705)	인용-정정 (서울고법 2018나 2006066)	인용-정정 (대법 2018다 268118)	-
51	2015서울조정 3838·3839 (정정·손배)	A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신청인이 (주)○○미디어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으로부터 수주한 글로벌 기술정보 용역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취하	인용-반론 (서울중법 2015가합 575711)	계류 (서울고법 2018나 2049544)	-	-
52	2017서울조정 1743 (손배)	A	주식회사 엠탐	한국도로공사 사장 물망에 오른 신청인이 과거에 7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기각 (서울서법 2018가합 32739)	기각 (서울고법 2018나 2057545)	계류 (대법 2019다 233225)	-
53	2018서울조정 189·191 192·194 (각 정정·손배)	A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KBS가 프리랜서 작가에게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서법 2018가합 33107)	-	-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54	2018충북조정 13·14 (정정·손배)	A 외 2명	주식회사 충북인뉴스	충북도의원인 신청인들이 충 북교육청 제주수련원 이용 자격이 없음에도 신분을 내 세워 편법으로 이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청주지법 2018가합 2384)	-	-	-
55	2017서울조정 1600·1767 (정정·손배)	A	주식회사 아시아경제	육군 대령인 신청인이 부당 한 지시를 거부한 여군 소령 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보복성 징계를 했다는 보도 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인용-정정 200만 원 (서울중법 2017가합 568847)	-	-	-
56	2017서울조정 1601·1768 (정정·손배)	A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육군 대령인 신청인이 부당 한 지시를 거부한 여군 소령 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보복성 징계를 했다는 보도 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인용-정정 200만 원 (서울중법 2017가합 568847)	-	-	-
57	2017서울조정 1645·1763 (정정·손배)	A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육군 대령인 신청인이 부당 한 지시를 거부한 여군 소령 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보복성 징계를 했다는 보도 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인용-정정 200만 원 (서울중법 2017가합 568847)	-	-	-
58	2017서울조정 1646·1764 (정정·손배)	A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육군 대령인 신청인이 부당 한 지시를 거부한 여군 소령 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보복성 징계를 했다는 보도 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기각 (서울중법 2017가합 568847)	-	-	-
59	2017서울조정 1647·1769 (정정·손배)	A	주식회사 천지일보	육군 대령인 신청인이 부당 한 지시를 거부한 여군 소령 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보복성 징계를 했다는 보도 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인용-정정 200만 원 (서울중법 2017가합 568847)	-	-	-
60	2017서울조정 1657·1773 (정정·손배)	A	케이비에스 미디어 주식회사	육군 대령인 신청인이 부당 한 지시를 거부한 여군 소령 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보복성 징계를 했다는 보도 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인용-정정 (서울중법 2017가합 568847)	-	-	-
61	2017서울조정 1661·1771 (정정·손배)	A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유한회사	육군 대령인 신청인이 부당 한 지시를 거부한 여군 소령 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보복성 징계를 했다는 보도 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인용-정정 200만 원 (서울중법 2017가합 568847)	-	-	-
62	2017서울조정 1663·1762 (정정·손배)	A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콘텐츠허브	육군 대령인 신청인이 부당 한 지시를 거부한 여군 소령 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보복성 징계를 했다는 보도 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기각 (서울중법 2017가합 568847)	-	-	-

순번	사건번호 (정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63	2017서울조정 1770 (손배)	A	B (뉴스에듀)	육군 대령인 신청인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여군 소령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보복성 징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인용 200만 원 (서울중법 2017가합 568847)	-	-	-
64	2016제주조정 6 (손배)	A	한국방송공사	신청인이 해양수산연구원장 재직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각하	기각 (제주지법 2017가단 53813)	계류 (제주지법 2018나 13165)	-	-
65	2016서울조정 1033 · 1034 (정정 · 손배)	우병우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청와대 민정수석인 신청인이 처가의 부동산 거래를 주선하고, 현직 감사장의 거래 주식 보유를 눈감아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정정 (서울중법 2016가합 542312)	계류 (서울고법 2018나 2059435)	-	-
66	2017서울조정 2006 · 2008 (정정 · 손배)	A 외 1명	주식회사 기독교 헤럴드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가 교인들의 동의 없이 건물을 불법 매각했고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정정 200만 원 (서울중법 2017가합 588230)	-	-	-
67	2017서울조정 1346 · 1347 (정정 · 손배)	복지법인 A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신청인 시설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애 반대 동영상 상시 시청하도록 강요해 물의를 빚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남법 2018가합 103793)	취하 (서울고법 2018나 2063953)	-	-
68	2017서울조정 117 · 118 (각 정정)	국방부	한국방송공사	군의 의료조치가 미흡하고 진단이 늦어져 군인 형제가 희귀병인 복합부위통증후군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직권결정 -정정 · 반론	기각 (서울남법 2017가합 514)	인용-정정 (서울고법 2018나 2001405)	인용-정정 (대법 2018다 285649)	-
69	2017경기조정 314 · 315 316 · 317 (각 정정 · 손배)	A 주식회사	주식회사 기호일보	아파트를 건설 중인 신청인 회사가 공사장 내 토석을 무단 반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 700만 원 (서울서법 2018가합 30405)	조정성립 (서울고법 2018나 2069265)	-	-
70	2016서울조정 1320~1328 (각 정정 · 반론, 손배)	A 외 1명	주식회사 조선방송 외 1명	신청인 부부가 편법으로 수십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았고 그 배후에 정권 실세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인용 정정 · 반론 2,300만 원 (서울중법 2016가합 565162)	계류 (서울고법 2018나 2072421)	-	-
71	2016서울조정 1246 (정정)	국방부	주식회사 동일뉴스	사드(THAAD) 도입으로 우리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배치 지역은 전 자파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는 등의 만평은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각하 (서울중법 2016가합 571037)	-	-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72	2016서울조정 1651~1656 (각 정정·반론, 손배)	A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신청인 산하 노조들의 파업 이 불법이고 기득권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반론 (서울중법 2017가합 500346)	인용-반론 (서울고법 2017나 2068081)	인용-반론 (대법 2018다 302698)	-
73	2016서울조정 1657·1658 1659·1660 (각 정정·손배)	A	주식회사 서울경제 신문	○○노조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이 민주노총 지원을 위 한 정치파업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정정 500만 원 (서울중법 2017가합 500346)	인용-정정 500만 원 (서울고법 2017나 2068081)	-	-
74	2018서울조정 1076·1077 1078 (정정·반론· 손배)	A	주식회사 아이엠비씨	교수인 신청인의 대학원생 성추행혐의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 을 하자, 신청인이 보복 차원 에서 대학원생을 무고로 고 소한 것처럼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취하	인용 정정·반론 2,000만 원 (서울서법 2018가합 32463)	계류 (서울고법 2019나 2002139)	-	-
75	2018서울조정 960·961 (정정·손배)	A 외 3명	B (인터넷 더군뉴스)	신청인들이 교회 노회법과 총회헌법 등에 규정된 적법 한 절차 없이 장로로 임명되 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 다.	불성립	기각 (서울북법 2018가합 873)	-	-	-

* 진하게 표시된 사건은 2018년도에 선고된 것임

* 사건번호는 하나이지만 피고가 복수이고 조정신청건도 복수인 경우 결과를 각각 코딩

분석 판결 목록(민사 224건)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	2018-01-05	2017나47054	서울중법	2심	손배	정○○ 외 1명	기각
2	2018-01-11	2016나15172	대구지법	2심	손배	(주)한길뉴스 외 1명	인용
3	2018-01-11	2017다269497	대법	3심	정정/손배	(주)한국일보사 외 1명	인용
4	2018-01-12	2017나2048377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일요신문사	기각
5	2018-01-12	2017나2050431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경인일보 외 1명	기각
6	2018-01-17	2017가합540771	서울중법	1심	손배	강○○ 외 1명	기각
7	2018-01-17	2017가합546519	서울중법	1심	손배/기사삭제	(주)뉴스1	인용
8	2018-01-17	2017가합555421	서울중법	1심	손배	(주)디오데오	인용
9	2018-01-18	2017가합107637	서울남법	1심	정정/반론	(재)씨비에스 외 1명	인용
10	2018-01-18	2017가소312348	서울중법	1심	손배	(주)머니투데이	기각
11	2018-01-19	2017가단5089199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세계일보 외 1명	기각
12	2018-01-19	2017가합13552, 2017가합13569(병합)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머니투데이	인용
13	2018-01-19	2017가합505907	서울중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사삭제	국민일보(주) 외 1명	기각
14	2018-01-25	2017가합100771	동부지원	1심	손배	(주)문화방송	인용
15	2018-01-25	2015가합5909	인천지법	1심	정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각
16	2018-01-25	2015다210231	대법	3심	손배	(주)한경닷컴	인용
17	2018-01-25	2017가소315323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조선일보 외 1명	기각
18	2018-01-26	2017가단5056021	서울중법	1심	손배	박○○	기각
19	2018-01-26	2017가합505082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동아일보 외 4명	인용
20	2018-01-26	2017가합545448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미디어오늘 외 1명	인용
21	2018-01-26	2017가합546861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한국일보사	인용
22	2018-01-31	2017가합5032	서울중법	1심	정정/반론	(주)채널에이	인용
23	2018-01-31	2017나56553	서울중법	2심	손배	(주)더팩트 외 2명	인용
24	2018-01-31	2017카합80823	서울중법	1심	기사삭제	(주)뉴스1	기각
25	2018-02-01	2017가합110190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주)에스비에스	인용
26	2018-02-01	2017가합76	통영지원	1심	정정/반론/손배	(주)거제타임즈	인용
27	2018-02-02	2017가합528689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채널에이 외 2명	기각
28	2018-02-07	2017가합36574	서울서법	1심	손배	(주)제이티브이 외 1명	기각
29	2018-02-07	2016가단5124224	서울중법	1심	손배	조○○	기각
30	2018-02-07	2017가합143	정읍지원	1심	정정/손배	(주)부산독립신문	기각
31	2018-02-08	2017가단84309	고양지원	1심	손배	(주)경기일보 외 2명	기각
32	2018-02-09	2017나2059773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시사저널사 외 4명	기각
33	2018-02-09	2017나2061301	서울고법	2심	정정	(주)문화방송 외 1명	기각
34	2018-02-09	2017가합515522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뉴스1 외 2명	인용
35	2018-02-13	2016가단247349(본소) 2016가단30848(반소)	서울서법	1심	손배	손○○ 외 2명	인용
36	2018-02-13	2016가합552234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채널에이	인용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37	2018-02-21	2017가단216541	서울남법	1심	손배	(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외 2명	인용
38	2018-02-21	2017나24532	서울중법	2심	손배	(주)동아일보사 외 1명	기각
39	2018-02-28	2017다287266	대법	3심	정정/손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외 3명	인용
40	2018-03-14	2017카합10090	안양지원	1심	기사삭제/보도금지	(주)경기뉴스인 외 1명	인용
41	2018-03-15	2016가합106245	서울동법	1심	손배	황○○	기각
42	2018-03-15	2018다11640	대법	3심	손배	박○○	인용
43	2018-03-22	2017가합57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주)씨비에스아이 외 1명	기각
44	2018-03-28	2017가합34998, 2017가합38877(병합)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문화방송 외 1명	기각
45	2018-03-28	2017가단30374	진주지원	1심	손배	(주)남해시대 외 1명	기각
46	2018-03-30	2017가합538990	서울중법	1심	손배/기사삭제	(주)문화일보	인용
47	2018-04-03	2017가단233423	서울남법	1심	손배	이○○(선정당사자) 외 1명	인용
48	2018-04-03	2017가소309861	서울중법	1심	손배	(주)동아일보 외 1명	기각
49	2018-04-04	2018다211907	대법	3심	정정/손배	(주)일요신문사	기각
50	2018-04-04	2016가합2970	서울서법	1심	손배	한겨레신문(주) 외 2명	기각
51	2018-04-04	2017가합5261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조선일보사	기각
52	2018-04-04	2017가합536123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스크린골프뉴스사 외 1명	기각
53	2018-04-05	2017가합106757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주)데일리안	기각
54	2018-04-05	2017가단5067564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세계일보 외 1명	인용
55	2018-04-06	2017나2062762	서울고법	2심	반론	한국방송공사	기각
56	2018-04-06	2017가단5078144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중앙일보	인용
57	2018-04-12	2018다200167	대법	3심	정정	유○○	기각
58	2018-04-12	2015다45857	대법	3심	정정/손배	김○○ 외 3명	인용
59	2018-04-18	2018가합20142	서울남법	1심	보도금지	한국방송공사	기각
60	2018-04-18	2017나81498	서울중법	2심	손배	칠곡신문방송사(주) 외 1명	인용
61	2018-04-20	2017가합20075	서울남법	1심	기사삭제/보도금지	(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외 1명	기각
62	2018-04-25	2017가단532978	광주지법	1심	정정/손배	(주)방송문화미디어텍 외 6명	기각
63	2018-04-25	2017가합36550	서울서법	1심	손배	(주)골프다이제스트	기각
64	2018-04-26	2017가합137	제주지법	1심	손배	(주)문화방송 외 1명	기각
65	2018-04-27	2017가합538242	서울중법	1심	손배	(주)뉴스1 외 1명	기각
66	2018-05-02	2017나73923	서울중법	2심	손배	정○○	인용
67	2018-05-04	2017나2036510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기각
68	2018-05-09	2017가합36925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외 1명	기각
69	2018-05-11	2017나2065044	서울고법	2심	반론/손배	(주)제이티비씨	인용
70	2018-05-14	2017가단5183770	서울중법	1심	손배	(주)문화방송 외 1명	기각
71	2018-05-16	2017가합539757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한국교육방송공사 외 3명	기각
72	2018-05-16	2017가합549907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신문 외 3명	인용
73	2018-05-17	2015가단5198990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조선방송 외 3명	기각
74	2018-05-18	2017나2059209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주)동아일보사 외 1명	인용
75	2018-05-25	2018가합20132	서울남법	1심	기사삭제/보도금지	(재)씨비에스 외 1명	인용
76	2018-05-30	2017가합2083	서울서법	1심	정정/반론	(주)조선뉴스프레스	기각
77	2018-05-31	2018나10817	부산고법 (창원)	2심	정정/반론/손배	(주)거제타임즈	인용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78	2018-06-01	2018나2010324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한국일보사	기각
79	2018-06-08	2017나2031942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권○○	인용
80	2018-06-15	2018다217998	대법	3심	손배	(주)더팩트 외 2명	인용
81	2018-06-15	2018다220888	대법	3심	정정/손배	(주)시사저널사 외 4명	기각
82	2018-06-15	2018다221652	대법	3심	손배	(주)동아일보사 외 1명	기각
83	2018-06-15	2017나2075577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강○○(선정당사자) 외 1명	기각
84	2018-06-15	2017가합37980	서울서법	1심	정정/반론/손배	(주)조선뉴스프레스 외 2명	기각
85	2018-06-15	2018가합30368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주)제이티비씨	기각
86	2018-06-15	2017가합556776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채널에이	인용
87	2018-06-15	2017가합568878	서울중법	1심	손배/기사삭제	(주)메디씨앤씨 외 1명	인용
88	2018-06-20	2017나10789	광주고법 (제주)	2심	정정/손배	(주)제주신문사	인용
89	2018-06-20	2017가합541309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엠케이그룹 외 1명	인용
90	2018-06-20	2017가합555438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세계일보	인용
91	2018-06-21	2017가단5079796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세계일보 외 2명	인용
92	2018-06-22	2018나2018069	서울고법	2심	손배	황○○	기각
93	2018-06-28	2018다229328	대법	3심	반론	한국방송공사	기각
94	2018-06-28	2017나60756	서울남법	2심	손배	배○○	기각
95	2018-07-02	2017가단5202169	서울중법	1심	손배	(주)한국경제신문 외 2명	인용
96	2018-07-04	2017가합34837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문화방송	기각
97	2018-07-04	2017가합555445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일요시사	인용
98	2018-07-05	2017가합24513	서울북법	1심	정정/손배	탁○○	기각
99	2018-07-06	2018나2011907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미디어오늘 외 1명	인용
100	2018-07-06	2017가합548478	서울중법	1심	반론/손배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외 1명	인용
101	2018-07-06	2018가합507559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기독교텔레비전	기각
102	2018-07-10	2017가단5147460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여성신문사	인용
103	2018-07-11	2018가합31651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기각
104	2018-07-11	2017가합558529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아시아경제 외 5명	기각
105	2018-07-12	2017가단70059	순천지원	1심	손배	양○○	인용
106	2018-07-12	2018나31068	서울서법	2심	손배	나○○외 1명	인용
107	2018-07-13	2017나2057722, 2017나2057739(병합)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아시아경제	기각
108	2018-07-13	2017나2074826, 2017나2074833(병합)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문화방송 외 3명	기각
109	2018-07-13	2018나2019390, 2018나2019406(병합)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문화방송 외 1명	기각
110	2018-07-13	2017가합490	고양지원	1심	정정/반론/손배	지○○	기각
111	2018-07-18	2017가합504355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한국일보사 외 1명	인용
112	2018-07-19	2017나2053027, 2017나2053034(병합)	서울고법	2심 (환송후심)	정정/반론/손배	(주)채널에이	인용
113	2018-07-19	2017나79136	서울중법	2심	손배	(주)조선방송 외 3명	기각
114	2018-07-20	2018나2019727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스크린플러스사 외 1명	기각
115	2018-07-20	2012가합71942	서울중법	1심	손배	(주)문화일보 외 2명	인용
116	2018-07-25	2017가합530781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동아일보사 외 9명	인용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17	2018-07-27	2017가합109176	서울남법	1심	손배/기사삭제	(주)뉴아시아일보	기각
118	2018-08-10	2016가단36214	진주지원	1심	손배	조○○ 외 1명	기각
119	2018-08-16	2017가합108418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한국방송공사 외 4명	기각
120	2018-08-17	2018나2013224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에스비에스	인용
121	2018-08-17	2018나2019314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데일리안	기각
122	2018-08-21	2018나15030	서울중법	2심	손배	(주)조선일보사 외 1명	기각
123	2018-08-22	2017가합40788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주)시사저널사	인용
124	2018-08-24	2018나2006066	서울고법	2심	정정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인용
125	2018-08-24	2015가합575711	서울중법	1심	정정/반론/손배	(주)경향신문사 외 1명	인용
126	2018-08-24	2018나11342	서울중법	2심	손배	(주)머니투데이	기각
127	2018-08-29	2018가합32739	서울서법	1심	손배/기사삭제	(주)엠타 외 1명	기각
128	2018-08-30	2018다26635	대법	3심	손배	칠곡신문방송사(주) 외 1명	인용
129	2018-08-30	2018다241557	대법	3심	정정/손배	(주)한국일보사	기각
130	2018-08-30	2017가합110978	서울남법	1심	손배/기사삭제	(주)한국증권신문사 외 2명	인용
131	2019-09-03	2018가합10033	안양지원	1심	기사삭제/보도금지	이○○	기각
132	2018-09-05	2018가합33107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주) 외 1명	기각
133	2018-09-05	2018가합2384	청주지법	1심	정정/손배	(주)충북인뉴스 외 1명	기각
134	2018-09-07	2017가합535410	서울중법	1심	손배	정○○ 외 2명	기각
135	2018-09-07	2017가합568847, 2018가합523377(병합)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씨비에스아이 외 9명	인용
136	2018-09-07	2017가합584764	서울중법	1심	손배/기사삭제	(주)일요신문대전세종충청 (선정당사자) 외 5명	기각
137	2018-09-13	2018다244983	대법	3심	정정/반론/손배	(주)거제타임즈	인용
138	2018-09-13	2018다247142	대법	3심	손배	황○○	기각
139	2018-09-14	2018나2026138	서울고법	2심	손배	(주)골프다이제스트	기각
140	2018-09-14	2017나2073854	서울고법	2심	반론	(주)골프다이제스트	기각
141	2018-09-14	2018나2015435	서울고법	2심	손배	(주)채널에이 외 2명	기각
142	2018-09-14	2017가단5113634	서울중법	1심	손배	박○○ 외 1명	기각
143	2018-09-14	2017가단53813	제주지법	1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1명	기각
144	2018-09-18	2017나52063	서울중법	2심	손배	(주)디지탈데일리	인용
145	2018-09-19	2018가단2946	서울서법	1심	손배	(주)헤럴드	기각
146	2018-09-19	2018가합20620	서울중법	1심	기사삭제/보도금지	(주)톱데일리 외 1명	기각
147	2018-09-20	2018나2007977, 2018나2007984(병합)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머니투데이	인용
148	2018-09-21	2018나10195	대전고법	2심	손배	(주)서산시대 외 1명	기각
149	2018-09-21	2018나2014814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동아일보 외 4명	인용
150	2018-09-21	2018나2019307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씨비에스아이 외 1명	기각
151	2018-09-21	2016가합542312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조선일보사 외 3명	인용
152	2018-09-21	2017가합588230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기독교헤럴드 외 1명	인용
153	2018-10-04	2018다240998	대법	3심	반론/손배	(주)제이티비씨	인용
154	2018-10-05	2018가합794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주)제이티비씨 외 1명	기각
155	2018-10-11	2018다250810	대법	3심	정정/손배	(주)제주신문사	인용
156	2018-10-11	2018가소193186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조선일보	기각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57	2018-10-11	2018나36945	서울중법	2심	손배	(주)문화방송 외 1명	기각
158	2018-10-11	2017가합2914	전주지법	1심	정정/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9명	인용
159	2018-10-11	2018나54895	서울남법	2심	손배	이○○(선정당사자) 외 1명	인용
160	2018-10-12	2014다51855	대법	3심	정정	(주)조선일보사	인용
161	2018-10-16	2018가단50364	서산지원	1심	손배	굿모닝충청 외 2명	인용
162	2018-10-16	2016가단5205864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조선방송 외 8명	기각
163	2018-10-16	2017나84664	서울중법	2심	손배	뉴데일리경제(주)	인용
164	2018-10-18	2018가합103793	서울남법	1심	정정/반론/손배	(주)에스비에스	기각
165	2018-10-19	2018나2001405	서울고법	2심	정정/기사삭제	한국방송공사	인용
166	2018-10-19	2018나2038346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기각
167	2018-10-24	2017나51508	춘천지법	2심	손배/기사삭제	(주)충북일보 외 1명	기각
168	2018-10-25	2017가합111384	서울남법	1심	정정/반론/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1명	기각
169	2018-10-25	2018나202355	의정부지법	2심	손배	(주)경기일보 외 2명	기각
170	2018-10-25	2018다256047	대법	3심	손배	나○○ 외 1명	인용
171	2018-10-26	2017가단5035451	서울중법	1심	손배	황○○(선정당사자) 외 8명	인용
172	2018-10-26	2017가합566094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조선일보사 외 2명	인용
173	2018-10-30	2014다61654	대법	3심	정정/손배	변○○ 외 10명	기각
174	2018-10-31	2018가합32753	서울서법	1심	손배/기사삭제	한겨레신문(주) 외 1명	기각
175	2018-11-01	2018가합103694	서울남법	1심	손배/기사삭제/ 보도금지	(재)씨비에스 외 3명	인용
176	2018-11-02	2018나2020710	서울고법	2심	손배	한겨레신문(주) 외 2명	기각
177	2018-11-02	2018나2007069	서울고법	2심	손배	강○○ 외 1명	기각
178	2018-11-02	2018나24782	서울중법	2심	손배	(주)동아일보 외 1명	기각
179	2018-11-07	2018가합30405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기사삭제/보도금지	(주)기호일보 외 1명	인용
180	2018-11-07	2016가합565162	서울중법	1심	정정/반론/손배	(주)조선방송 외 2명	인용
181	2018-11-08	2018다256443, 2018다256450(병합)	대법	3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문화방송 외 3명	기각
182	2018-11-08	2018다258760, 2018다258777(병합)	대법	3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문화방송 외 1명	기각
183	2018-11-09	2015다240829	대법	3심	손배	국민일보(주) 외 9명	인용
184	2018-11-09	2016가합571037	서울중법	1심	정정	(주)통일뉴스	각하
185	2018-11-14	2018나2035804	서울고법	2심	손배	(주)세계일보	인용
186	2018-11-14	2018나2038025	서울고법	2심	손배	(주)일요시사	인용
187	2018-11-14	2017가단5058195	서울중법	1심	손배	씨네이십일(주) 외 1명	기각
188	2018-11-15	2018가합100862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주)씨비에스아이 외 3명	기각
189	2018-11-15	2017가단5191504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와이티엔 외 2명	인용
190	2018-11-15	2018다258784, 2018다258791(병합)	대법	3심 (재상고심)	정정/반론/손배	(주)채널에이	인용
191	2018-11-21	2018나10373	광주고법 (제주)	2심	손배	(주)문화방송 외 1명	기각
192	2018-11-22	2018가합105720	서울남법	1심	반론	(주)에스비에스	인용
193	2018-11-23	2018나54773	광주지법	2심	정정/손배	(주)방송문화미디어텍 외 6명	기각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94	2018-11-23	2018나32863(본소) 2018나32870(반소)	서울서법	2심	손배	손○○ 외 2명	인용
195	2018-11-23	2017나2068081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주)서울경제신문 외 1명	인용
196	2018-11-23	2018나9250	서울고법	2심	손배	(주)조선일보사	기각
197	2018-11-27	2017가단99085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중소기업신문 외 1명	기각
198	2018-11-28	2016가합33387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주)사사저널사 외 5명	인용
199	2018-11-28	2017가합589370	서울중법	1심	손배/기사삭제	(주)위클리오늘신문사 외 2명	인용
200	2018-11-28	2018나24829	서울중법	2심	손배	(주)중앙일보	인용
201	2018-11-29	2018다262479, 2018다262486(병합)	대법	3심	정정/손배	(주)아시아경제	기각
202	2018-11-30	2018나2036074	서울고법	2심	손배	(주)채널에이	인용
203	2018-11-30	2018나2038032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탁○○	기각
204	2018-11-30	2018가합538126	서울중법	1심	손배/기사삭제	(주)미디어오늘 외 2명	기각
205	2018-12-05	2018가합32463	서울서법	1심	정정/반론/손배	(주)문화방송 외 2명	인용
206	2018-12-05	2018가소183547	서울중법	1심	손배	(주)경향신문사	기각
207	2018-12-07	2018나2040608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주)기독교텔레비전	기각
208	2018-12-13	2018다265508	대법	3심	정정/손배	(주)데일리안	기각
209	2018-12-13	2018가단21165	통영지원	1심	손배	(주)연합뉴스	기각
210	2018-12-14	2018나2040790	서울고법	2심	손배	(주)아시아경제 외 5명	기각
211	2018-12-14	2018나53823	서울남법	2심	손배	(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외 2명	인용
212	2018-12-14	2017가단233545	서울서법	1심	손배	(주)한국미디어네트워크 외 7명	인용
213	2018-12-14	2018가합501216	서울중법	1심	손배/기사삭제	(주)뉴스시스	인용
214	2018-12-18	2017가단233620	서울서법	1심	손배	(주)한국미디어네트워크 외 7명	인용
215	2018-12-20	2018가단200497	동부지원	1심	손배	(주)아이티조선 외 1명	기각
216	2018-12-20	2018나2006233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주)머니투데이	인용
217	2018-12-20	2018나2007953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주)뉴스1	인용
218	2018-12-20	2018나2007960	서울고법	2심	손배	(주)디오데오	인용
219	2018-12-20	2018가합103205	서울남법	1심	손배	송○○ 외 1명	인용
220	2018-12-20	2018가합22446	서울북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뉴스타운 외 1명	인용
221	2018-12-21	2017나613	대구고법	2심	정정/손배	(주)뉴스코리아네트워크 외 2명	인용
222	2018-12-26	2018가합873	서울북법	1심	정정/손배	김○○	기각
223	2018-12-27	2018다268118	대법	3심	정정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인용
224	2018-12-28	2018다267047	대법	3심	손배	(주)머니투데이	기각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제1장 손해배상청구

1. 명예훼손 사례
2. 음성권 침해 사례
3. 사생활 침해 사례
4. 재산권 침해 사례

제2장 정정 · 반론 · 추후보도청구

제3장 기사삭제청구 등

제1장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가합5468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1. 선고 2018나2010324 판결

‘검은 거래’, ‘이면합의’와 같은 표현은 주관적인 평가 내지 의견으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2017년 4월 20일자 일간지 <한국일보>와 인터넷 <한국일보>에 ‘XX대병원 의료원 소속 간호사로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였던 원고 A가 당해 의료원과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비밀리에 협약을 맺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 A는 피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의료원과 이 사건 별도합의를 비공개로 체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위 적시 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검은 거래”, “이면합의”와 같은 표현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3심 재판부 또한 이를 받아들여 기각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8다241557 판결).

[판결요지]

□ 이 사건 기사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가 ‘원고가 이 사건 의료원과 이 사건 별도합의를 비공개로 체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

하였다.’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부속합의 체결 직후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원고가 복직하지만, 이 사건 의료원의 본래 근무지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노조활동에만 전념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으므로 “검은 거래”, “이면합의” 등 단정적인 어휘를 사용한 위의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가 별도합의 내용을 그대로 게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별도합의에 따라 원고가 그 후부터 18년간 이 사건 의료원에서 일하지 않고도 매달 수백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해명까지 게재하였으며, “검은 거래”, “이면합의”와 같은 표현은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에 대한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이라고 하여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7가합546861	정정보도 등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2. 20.
			2018. 1. 26.

주 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 가. 한국일보 제12면 중 광고란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1-1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2 기재 기사와 동일한 지면, 크기, 활자체로 1회 게재하고,
 - 나. 위 가항의 정정보도문 게재와 동시에 인터넷 한국일보(<http://www.hankookilbo.com>) 초기화면의 오른쪽 부분에 별지1-1 기재 정정보도문 중 제1항 ‘제목’란 기재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통상 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로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위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이 별지2 기재 기사와 동일한 크기,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별지2 기재 기사의 하단에 별지1-1 기재 정정보도문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여 별지2 기재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2. 피고가 위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한국일보 제12면 광고란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1-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2 기재 기사와 동일한 지면, 크기, 활자체로 1회 게재하고, 위 게재와 동시에 인터넷 한국일보(<http://www.hankookilbo.com>) 초기화면의 오른쪽 부분에 별지1-2 기재 정정보도문 중 제1항 '제목'란 기재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통상 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이 별지2 기재 기사와 동일한 크기,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별지2 기재 기사의 하단에 별지1-2 기재 정정보도문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고, 이후로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만약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XX대병원 의료원(이하 '이 사건 의료원'이라 한다) 소속 간호사로서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 피고는 신문 발행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일간지인 '한국일보'를 발행하고, '인터넷 한국일보(<http://www.hankookilbo.com>,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며, B는 피고 소속 기자이다.

나. 이 사건 의료원과 XX대학교 의료원 노동조합, 원고 사이의 별도합의

- 이 사건 의료원과 XX대학교 의료원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1998. 9.

15. ‘21세기로 향한 노사 화합 공동선언’(이하 ‘이 사건 선언’이라 한다)을 발표하면서 그에 따른 부속합의(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선언 이전에 원고는 이 사건 의료원에서 노조활동 등을 사유로 해고된 상태였는데, 이 사건 부속합의 제3조 제1항에서는 “이 사건 의료원은 해고자 원고를 복직발령하되, 임금호봉, 연차휴가일 산정시에만 해고기간을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를 산별노동조합연맹 등 상급단체에 파견하여 상급단체의 노조활동·업무에만 전담하도록 한다.”고 정하였다.

- 이 사건 의료원과 이 사건 노동조합, 원고는 1998. 9. 15. 이 사건 부속합의 제3조 제1항에 따라 별도합의(이하 ‘이 사건 별도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별도합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의료원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의 복직을 노사관계의 화합의 계기로 삼으며, 당해자는 이 사건 의료원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산별노련 등 상급단체에서 그 업무에만 전임하되, 상급단체 업무 중에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에 관련된 업무는 취급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의료원은 원고의 제1항 파견기간 동안 이 사건 의료원의 직원으로서 임금 또는 임금 상당액 전액을 지급한다.
4. 이 사건 별도합의서의 내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노·사 및 원고는 각각 날인한다.

다. 피고의 별지2 기재 기사 게재

- 피고 소속 기자 B는 2017. 4. 20. “보건노조 대모 A, XX대 의료원과 검은 거래(이하 ‘① 부분’이라 한다)”라는 제목의 별지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가 발행하는 한국일보 12면과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이 사건 기사에는 “XX대학교 의료원이 노동조합과 맺은 별도 합의서. 강성노조원의 업무 미복귀를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강성노조원”이라는 표현은 지면 기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는 포함되어 있다)”(이하 ‘② 부분’이라 한다), “보건의료노조의 대모로 알려진 A 전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조위원장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학병원 측과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이하 ‘③ 부분’이라 한다), “병원 측이 ‘무노동임금’을 대가로 노조활동을 무력화 해온 정황이 드러난 사례이지만 이를 알고도 대가를 받은 A 전 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이하 ‘④ 부분’이라 한다), “임금을 전액 보전할 테니 의료원에 나오지 말라는 이면합의를 한 셈이다”(이하 ‘⑤ 부분’이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이하 별도의 가지번호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기사 중 ①, ④, ⑤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별도합의는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 첨부되어 공개되었고, 합의 당시의 관련 법령에 의하면 위법할 소지가 전혀 없었다. ②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별도합의서에 원고를 ‘강성 노조원’이라고 표현한 적도 없고, 원고가 이른바 ‘강성 노조원’도 아니었으며, ③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의료원과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는 당사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를 ‘강성 노조원’라고 적시하고, 마치 원고가 직접 당사자로서 이 사건 의료원과 사이에 이 사건 별도합의를 비공개로 체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하여 한국일보와 이 사건 사이트에 별지1-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구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행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며,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1) 사실의 적시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① 내지 ⑤ 부분이 강성노조원인 원고가 이 사건 의료원과 사이에 위법한 이 사건 별도합의를 비공개로 체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해당 각 부분이 원고가 이 사건 별도합의를 체결한 것에 대한 의견을 보도한 것일 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참조). 또한,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

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등 참조).

가) ①, ③, ⑤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이 사건 기사를 접근하는 방법을 전제로 위 기사 전체적인 내용과 인상 등을 함께 고려할 경우 ①, ③, ⑤ 부분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의료원과 사이에 위법한 이 사건 별도합의를 비공개로 체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별도합의와 관련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③, ⑤ 부분은 ‘원고와 이 사건 의료원이 이 사건 별도합의상 원고는 이 사건 의료원의 병원 업무에 복직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의료원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위 내용은 이 사건 별도합의서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①, ⑤ 부분에서는 ‘검은 거래’, ‘이면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관용적인 표현은 이 사건 기사의 다른 부분 즉, ‘2010년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6~9억 원 상당의 회사 돈이 무노동 근로자에게 나간 것으로 추산된다.’, ‘문건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A 전 위원장은 일하지 않는 이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인정하였다.’는 부분과 결합하여 ‘이 사건 별도합의의 내용은 현행 관련 법령에 의하면 위법한데, 2016. 12.경까지 이러한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금액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나) ②, ④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② 부분 중 원고가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주장하는 ‘강성 노조원’이라는 표현은 원고의 노조원으로서의 성향에 대한 평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기사에서 위와 같은 표현 외에 원고의 노조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 ④ 부분 중 원고가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주장하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표현은 원고의 이 사건 별도합의 체결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별도합의와 관련하여 앞서 본 ①, ③, ⑤ 부분의 내용과 다른 새로운 사실관계를 내포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이 사건 기사를 접근하는 방법을 전제로 위 기사 전체적인 내용과 인상 등을 함께 고려할 경우 ②, ④ 부분은 원고의 성향이나 행동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해당할 뿐,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또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331 판결 등 참조).

가) ③ 부분

갑 5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별도합의서에는 이 사건 의료원 의료원장 C,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D, 이 사건 의료원 노동조합장 E가 날인하였고, 원고는 날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별도합의서의 서두에 ‘이 사건 의료원, 이 사건 노동조합 및 당해자 원고는 이 사건 선언에 따른 이 사건 부속합의 제3조 제1호 단서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합의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별도합의서는 원고의 이 사건 의료원 복직과 임금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 제4항에서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노사 및 A는 각각 날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별도합의서가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당사자인 원고의 동의가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 중 ③ 부분이 적시한 ‘원고가 이 사건 의료원과 사이에 위 의료원의 병원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이 사건 별도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가사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부분에 있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나) ①, ⑤ 부분

갑 5, 6, 10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 중 ①, ⑤ 부분이 적시한 ‘원고가 이 사건 의료원과 사이에 이 사건 별도합의를 비공개로 체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의료원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가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의료원에서 해고되는 등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1998. 9. 15. 노사간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이 사건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사건 선언에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부속사항’을 합의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른 이 사건 부속 합의서 제3조 제1호에도 “이 사건 의료원은 해고자 원고를 복직발령하되, 임금호봉, 연차휴가일 산정시에만 해고기간을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를 산별노동조합연맹 등 상급단체에 파견하여 상급단체의 노조활동·업무에만 전담하도록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 이 사건 선언서, 이 사건 부속합의서, 이 사건 별도합의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가 제출한 정보공개청구결과(을 4호증)에 의하면, 위 서류에 원고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이 사건 별도합의가 이 사건 부속합의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의료원에 복직하되, 이 사건 의료원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업무만을 전임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부속합의 체결 직후인 1998. 9. 17.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원고가 복직하지만, 이 사건 의료원의 본래 근무지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노조활동에만 전념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3) 정정보도청구권의 성립

가) 이 사건 기사 중 ③ 부분은 허위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고, ①, ⑤ 부분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①, ⑤ 부분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건전한 노사관계의 확립이라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원고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정정보도에 기재된 내용과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①, ⑤ 부분의 내용, 위 각 부분이 이 사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원고의 명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①, ⑤ 부분이 원고가 이 사건 별도합의를 체결하게 된 과정과 경위에 관련하여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이 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그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 이 사건 각 기사 중 해당 부분의 내용과 분량 및 그 표현방식,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별지1-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1-1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 활자의 크기, 게재방법, 간접강제방법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다만, 그 정정보도의 시기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한국일보 및 이 사건 사이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청구하나, 이는 이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정정보도 의무를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판결확정 후 7일 이내에 한국일보 및 이 사건 사이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명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명예훼손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기사 중 ①, ⑤부분에서 ‘원고가 이 사건 의료원과 사이에 이 사건 별도합의를 비공개로 체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되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언론사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①, ⑤ 부분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등 참조).

(3)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

이 사건 기사는, 전 전국보건노조위원장이었던 원고가 이 사건 선언 당시 이 사건 의료원과 사이에 병원 업무에 복직하지 않고, 노동조합 상급단체에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기로 하는 이 사건 별도합의를 비공개로 체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비판하는 내용인바,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상당성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별도합의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집에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가 제출한 정보공개청구결과 서류에도 이 사건 별도합의가 이 사건 선언 및 이 사건 부속합의에 기초하여 체결되었음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 원고가 이 사건 별도합의 체결 직후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 별도합의의 내용과 그 체결 사실을 스스로 밝힌 점, ○ 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별도합의가 체결된 때로부터 약 20년 후에 작성되었고, 노사관계의 긴급한 현안과 직접적인 연관도 없으므로, 피고 소속 기자인 B로서는 이 사건 별도합의에 관하여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임에도 위와 같이 공개된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 사건 의료원과 사이에 ‘검은 거래’, ‘이면합의’를 체결하였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기사 중 ①, ⑤ 부분이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 이 사건 기사 전체에서 ①, ⑤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게 된 경위, 원고가 ①, ⑤ 부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5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1-1〉 정정보도문

제목 : “보건의료노조 대모 A, XX대 의료원과 검은 거래(계약)” 관련 정정보도문

본문 : 본 신문은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었던 A 씨가 XX대학교 의료원과 임금을 전액 지급받되 XX대학교 의료원에서 근무하지 않겠다는 ‘이면합의’를 체결하는 ‘검은 거래(계약)’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XX대학교 의료원과 XX대학교 의료원 노동조합이 1998. 9. 15. 발표한 ‘21세기로 향한 노사 화합 공동선언’ 당시 위 선언서에 첨부된 ‘부속합의서’ 및 ‘별도합의서’에서 ‘원고는 XX대학교 의료원에 복직하되, XX대학교 의료원 업무가 아닌 산별노련 등 상급단체의 업무에만 전임하고, XX대학교 의료원은 원고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고 약정하였고, 위 약정은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별지1-2〉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2〉 대상기사 생략

2심 판결문

사 건 2018나2010324 정정보도 등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가합546861 판결
변 론 종 결 2018. 4. 13.
판 결 선 고 2018. 6.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한국일보 제12면 광고란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2 기재 기사와 동일한 지면, 크기, 활자체로 1회 게재하고, 위 게재와 동시에 인터넷 한국일보(<http://www.hankookilbo.com>) 초기화면의 오른쪽 부분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중 제1항 '제목'란 기재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통상 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이 별지2 기재 기사와 동일한 크기,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별지2 기재 기사의 하단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고, 이후로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만약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이 건 소로써, 피고가 보도한 별지2 기재 기사 중 “보건노조 대모 A, XX대 의료원과 검은 거래”(이하 ‘① 부분’이라 한다)라는 제목 부분, “XX대학교 의료원이 노동조합과 맺은 별도 합의서. 강성노조원의 업무 미복귀를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이하 ‘② 부분’이라 한다)는 부분, “보건의료노조의 대모로 알려진 A 전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조위원장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학병원 측과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작성하였다”(이하 ‘③ 부분’이라 한다)는 부분, “병원 측이 ‘무노동임금’을 대가로 노조활동을 무력화 해온 정황이 드러난 사례이지만 이를 알고도 대가를 받았온 A 전 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이하 ‘④ 부분’이라 한다)는 부분, “임금을 전액 보전할 테니 의료원에 나오지 말라는 이면합의를 한 셈이다”(이하 ‘⑤ 부분’이라 한다)는 부분이 각 허위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이행강제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⑤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명하고, 이행강제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에서 인용된 ①, ⑤ 부분에 관한 정정보도 청구 부분과 이행강제금 및 손해배상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2쪽 제14행부터 제5쪽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제1행의 “1998. 9. 15.” 뒤에 “고용안정, 징계철회, 손해배상청구·가압류 철회, 임금인상 등을 합의하고”를 추가한다.
- 제4쪽 표 안 “4.” 앞에 “3. 이 합의서 효력은 이 사건 의료원과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원고의 갱신 합의가 없을 때에는 계속 유지되며, 당사자 일방이 파기할 시에는 상대방은 그 책임을 묻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기사 중 ①, ⑤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별도합의는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 첨부되어 공개되었고, 합의 당시의 관련 법령에 의하면 위법할 소지가 전혀 없었으며, 나아가 당시 원고는 원하지 않았지만 노동조합의 활동보장과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수용한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의료원과 무슨 거래를 했다고 볼 여지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마치 원고가 이 사건 의료원과 사이에 이 사건 별도합의를 비공개로 체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하여 한국일보와 이 사건 사이트에 별지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구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행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며,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기사의 ①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의료원과 체결한 이 사건 별도합의의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고 석연치 않다는 의미이고, ⑤ 부분은 임금 전액 보전을 조건으로 별도의 합의를 했는데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인바, ①, ⑤ 부분을 합쳐 ‘원고가 이 사건 의료원과 사이에 이 사건 별도합의를 비공개로 체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이는 피고의 주관적 의견 내지 평가를 기재한 것일 뿐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또한 ①, ⑤ 부분을 합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인 ‘원고와 이 사건 의료원이 미출근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작성했고, 18년 동안 매달 수백만 원이 원고에게 지급됐다는 것’이 진실이므로 이 사건 기사는 전체적 취지에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거나 피고에게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별도합의 비공개 체결 여부는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의 ①, ⑤ 부분은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니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등 참조).

- 2) 위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 3)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 4) 신문기사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므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이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 5) 언론매체의 기사가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경우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그 기사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허위 여부의 판단에서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아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어떤 사실을 기초로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등 참조).

- 6) 보도내용 중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보도내용 중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 중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현행위자의 내심의 의도나 상대방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보도의 객관적 표현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도가 비판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한 다음 그 표현행위자로 하여금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 7)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등 참조).

나.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및 그 취지, 문구의 연결방법, 사회적 배경, 일반 독자에게 주는 인상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의 ①, ⑤ 부분은 전체적·기본적으로 이 사건 별도합의에 대한 피고의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원고 주장과 같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므로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의 ①, ⑤ 부분은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1)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 이 사건 별도합의의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고, 이 사건 별도합의에 따라 원고가 그 후부터 18년간 이 사건 의료원에서 일하지 않고도 매달 수백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

아 온 사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해명까지 게재하면서 이 사건 의료원 측이 무노동 임금을 대가로 노조활동을 무력화해 온 정황이 드러난 사례이지만 원고의 처신도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 2) 이러한 기사 내용을 반영하여 기사의 제목을 “보건노조 대모 A, XX대 의료원과 검은 거래”라고 한 것은 이 사건 별도합의와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의료원에 일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계속 받아온 것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다는 피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 3) 원고가 검은 거래를 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취지도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별도합의에 따라 이 사건 의료원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의료원으로부터 매달 임금을 수령하여 온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것이 위법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4) 이 사건 기사에 이 사건 별도합의서의 내용 부분을 그대로 게재하고 “이 사건 의료원은 원고가 의료원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대신 원고는 상급단체 등에서 전임자로 활동하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에 관련한 업무는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 사건 별도합의의 내용을 적시한 다음 이는 “원고에게 임금을 전액 보전할 테니 의료원에 나오지 말라는 이면합의를 한 셈이다”라는 표현을 덧붙인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 사건 별도합의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이거나 사실관계를 압축 또는 강조하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수사적 과장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5) “이면합의를 한 셈이다”라는 표현은 비공개로 합의를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보기는 앞서 본 1998. 9. 15.자 합의와 이 사건 선언을 하기 위하여 별도로 합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이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10,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언에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부속사항’을 합의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른 이 사건 부속합의의 제3조 제1항에서도 “이 사건 의료원은 해고자 원고를 복직발령하되, 임금호봉, 연차휴가일 산정시에만 해고기간을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를 산별노동조합연맹 등 상급단체에 파견하여 상급단체의 노조활동·업무에만 전담하도록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선언서, 이 사건 부속합의서, 이 사건 별도합의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서 모음집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부속합의가 체결된 후 병원노련 긴급속보와 매일노동뉴스, 내일신문에 ‘원고를 복직시키되 상급단체에 파견하여 상급단체의 노조활동·업무에 전담한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속합의 체결 직후인 1998. 9. 17.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원고가 복직하지만, 이 사건 의료원의 본래 근무지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노조활동에만 전념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의료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월 수백만 원의 임금을 계속 지급받는다'는 내용까지 분명하게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표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6)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의 복직과 관련된 별도합의서를 체결하여야 노동조합의 현안을 수용하겠다는 이 사건 의료원의 입장을 수용하여 원고의 복직과 관련한 별도합의를 체결하였고 그 반대급부로 조합원의 고용안정,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노조간부들 징계철회,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별도합의가 위 1998. 9. 15.자 합의와 이 사건 선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의료원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합의를 하기 위한 조건이 되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면합의'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7)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원고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비공개로 이 사건 의료원과 '무노동 임금' 합의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의료원으로부터 복직을 거부당한 바 없음에도 복직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일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받는 특혜를 계속 누렸다거나 이 사건 별도합의의 내용이 위법하여 이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우회적, 암시적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 8) 이 사건 기사의 전제되는 사실은, 원고와 이 사건 의료원이 원고가 의료원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2010년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타임오프제'가 시행되었음에도 2016년까지 원고가 매달 수백만 원의 임금을 받아왔으며 이를 인지한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면서 이러한 사정이 드러났는데 노동위원회는 원고가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요청을 기각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설령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 1)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사 중 ①, ⑤ 부분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 한편, 사실을 전제한 의견의 표현으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나,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사는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이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조위원장이었던 원고가 사용자인 이 사건 의료원과 의료원 업무에 복귀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계속 임금을 받아온 것을 비판하는 것이므로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것이며, 그 목적도 건전한 노사관계의 확립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검은 거래, 이면합의'라는 표현 자체로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

공격에 해당하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기사 중 ①, ⑤ 부분은 불법행위로 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2〉 대상기사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가합515522 판결(확정)

제보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언론사가 진실성 검증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뉴스1 외 2명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뉴스1은 뉴스통신사로, 2017년 1월 3일부터 2017년 1월 1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 C가 근무하는 차량정비업체의 대표자인 원고가 피고 C에게 장기간에 걸쳐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뉴스1, 소속 기자인 피고 B, 제보자이자 원고가 운영 중인 업체의 소속 직원인 피고 C를 대상으로 허위보도로 인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심리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의 허위성을 인정하여 정정보도하도록 판결하였다. 그러나 피고 B가 원고와 주변인,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 C의 제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혐의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은 점 등 상당성을 인정하여 피고 C와 달리 피고 주식회사 뉴스1과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 및 피고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요지]

□ 이 사건 보도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판단

피고 C의 제보 내용 중에는 허위라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또 피고 B는 이 사건 견인차의 할부금 등을 공제하였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적이 있다는 피고 C의 말을 처음부터 그대로 믿은 것은 아니고,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원고 및 주변인에게 전화로 문의하는 방법으로 피고 C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였다. 2017년 1월 12일 전에 보도된 이 사건 기사에서는 원고의 착취 또는 부당한 대우에 관하여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과 달리 2017년 1월 12일자 기사에서는 원고의 폭행 및 사기 혐의에 관하여 원고가 폭행 또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바가 없으며, 원고의 입장을 기사에 싣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 B로서는 피고 C가 D와 공모하여 제보한 내용이 허위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 회사 등이 이 사건 기사 중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문

사	건	2017가합515522	정정보도 청구 등의 소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뉴스1 2. B 3. C	
변론종결		2018. 1. 24.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뉴스1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1의 인터넷 사이트(<http://www.news1.kr>)의 '전국'면 중 '전북'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통상의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로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위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이 통상의 기사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별지3-1 내지 3-4 기재 각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위 각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뉴스1이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뉴스1은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뉴스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뉴스1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뉴스1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뉴스1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1의 인터넷 사이트(<http://www.news1.kr>)의 뉴스부문 첫 부분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내용은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초기화면 기사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여 이를 72시간 동안 게재하며, 이후로는 기사 DB에 이를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이후로는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피고 주식회사 뉴스1이 위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뉴스1은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유한회사 □□□□□□의 대표자로서 XX시 △△구에서 ‘○○○○○○○○’라는 상호로 차량 정비업을 하면서, 동부화재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와 프로미서비스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동부화재의 긴급출동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 피고 주식회사 뉴스1(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뉴스1 인터넷신문 사이트(<http://www.news1.kr>)를 운영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B는 피고 소속 기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다.
- 피고 C와 D는 ‘○○○○○○○○’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제보한 사람이다.
- 피고 회사는 2017. 1. 3.부터 2017. 1. 12.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뉴스1 인터넷신문 사이트의 ‘전국’면 중 ‘전북’면에 “8,000만 원 빚으로 옴아매 10년간 노예정비” 등의 제목으로 “원고가 피고 C에게 차량을 구매하게 하거나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C에게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시킨 다음 이를 피고 C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피고 C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피고 C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3-1 내지 별지3-4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피고 회사,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 B(이하 이 둘을 통틀어 ‘피고 회사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기사에서 ① “원고는 회사 소유의 견인차를 구매하면서 피고 C에게 지입차라고 속여서 위 견인차 구입비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이하 ‘① 부분’이라 한다), ② “원고는 피고 C가 회사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그 수리비 1,3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이하 ‘② 부분’이라 한다), ③ “원고는 견인차 구입비 5,000만 원, 교통사고로 인한 회사차 수리비 1,35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다음 위 채무액을 피고 C의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이유로 최근 1년여 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지각 또는 출동 지연 등을 이유로 피고 C의 급여를 삭감하였다.”(이하 ‘③ 부분’이라 한다), ④ “원고가 피고 C로 하여금 쪽방에서 24시간 대기하거나 끼니를 거르는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게 하였다.”(이하 ‘④ 부분’이라 한다), ⑤ “동부화재에서 감사를 한 결과 원고의 부당대우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었다.”(이하 ‘⑤ 부분’이라 한다), ⑥ “원고가 상습적으로 피고 C를 폭행¹³⁾하였고, 피고 C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이하 ‘⑥ 부분’이라 한다)라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C가 구입한 견인차는 피고 C의 적극적인 구입의사에 의하여 구입한 지입차이고, 회사차 수리비를 피고 C에게 부담시킨 적이 없으며, 차량 구입비, 회사차 수리비 등을 공제한다는 이유로 1년여 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차량 구입 할부금, 대여금의 변제, 위약금 명목의 돈을 피고 C의 급여에서 공제하였을 뿐 지각 또는 출동 지연 등을 이유로 피고 C의 급여를 삭감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 C는 이 사건 기사에 게재된 사진에 나타난 쪽방이 아닌 큰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하는 등 근무여건이 양호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은 원고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해지된 것이며, 원고는 피고 C를 폭행하거나 피고 C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 피고 회사 등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바, 피고 회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별지2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 등은 피고 C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3) 원고가 구하고 있는 별지2 정정보도문에는 ‘폭행’ 이외에 ‘폭언’도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폭언’ 부분에 관하여는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기사 중 ① 부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갑 3호증, 갑 5호증의 5, 갑 9호증, 갑 15호증의 1, 갑 18호증의 4,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가 할부금을 납부한 견인차는 외부적으로는 회사 명의로 등록하되 내부적으로는 피고 C가 소유하면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지입차에 해당하고, 피고 C가 위 견인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C를 상대로 위 견인차가 지입차라고 기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기사 중 ① 부분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기사 중 ① 부분은 2015. 7. 21. 유한회사 □□□□□ 명의로 등록된 전북XX사 XXXX 제이에스로드스터2언더리프트 견인차(이하 ‘이 사건 견인차’라 한다)에 관한 내용인데, 피고 C가 △△지방고용노동부 ○○지청에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C는 모두 “이 사건 견인차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 C다.”라고 진술하였다.

○ 원고는 위 진정사건에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견인차를 구입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피고 C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구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 C도 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 C 자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견인차의 구입을 요청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 C와 함께 ‘○○○○○○○○’에서 일했던 E도 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 C가 먼저 원고에게 이 사건 견인차를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 C가 “원고가 2015.경 이 사건 견인차를 5,000만 원에 구입하여 명의는 회사로 하고 이 사건 견인차에 대한 이익금을 배분하지 않고 차량 할부금과 수리비용은 원고 본인의 차량이면서 전액 모두 피고 C에게 부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으니 원고를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바 있는데, 그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위 피고가 ○○지방법원에 2017고단1125호로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7. 11. 2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고 C는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페널티, 이 사건 견인차 할부금, 보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자백하였다.

2) 이 사건 기사 중 ② 부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원고가 2016. 2. 5. 회사차에 관한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금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배상금 60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 C로부터 2016. 2. 7. 60만 원, 2016. 3. 4. 199만 9,000 원, 2016. 5. 13. 330만 원 합계 589만 9,000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위 60만 원은 원고가 대신 납부했던 피고 C의 RC카 구입 대금을 받은 것이고 위 199만 9,000원과 330만 원은 이 사건 견인차 할부금을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위 사기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을 7호증의 기재, 피고 B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 내용의 내용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차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 C의 급여에서 공제한 1,350만 원’은 위 고소 사건에서 회사차 수리비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589만 9,000원과는 별개의 돈으로서, 원고가 회사차 수리비 상당액을 피고 C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그 수리비를 피고 C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 중 ② 부분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위 고소 사건에서 할부금 등을 급여에서 공제하면 남은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2016. 2.부터 2016. 12.까지 총 11개월 동안 피고 C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 원고는 2017. 1. 3. 피고 B와 통화할 당시 2016. 2.부터 피고 C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은 다음 피고 C의 급여에서 공제된 항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견인차 할부금 외에도 “차를 운행하는 중에도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차도 손해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을 얘기했더니, ‘자기가 공제를 하겠다’고 말해서 일단은 공제를 한 상태인데.”라고 답변하였다.

○ 원고는 2017. 1. 3. 피고 B와 통화할 당시 피고 C의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아 “할부금액이 110만 원씩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계속 사고 났던 거, 보험료 할증부분은 공제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은 한 170, 180 정도.”, “그리고 …… 올해도 한 대를 더 사고를 내서 폐차를 시켰어요. 그 차 때문에도 1,500만 원 이상 손해를 보고.”라고 답변하여 원고가 피고 C에게 회사차 수리비 상당액을 부담시킨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기사 중 ③ 부분에 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갑 18호증의 14,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이 사건 기사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 중 ③ 부분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기사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가 그 소속 직원인 피고 C에게 장기간에 걸쳐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인데, 피고 회사 등은 그 부당한 대우의 내용으로서 ‘원고가 그 소속 직원인 피고 C에게 큰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다음 그 채무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피고 C에게 장기간에 걸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원고가 지각 또는 출동 지연 등을 이유로 피고 C의 급여를 삭감한 사실’을 이 사건 기사 중 ③ 부분을 통하여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이 사건 전인차 구입비에 관한 할부금으로 매달 110만 원을 피고 C의 급여에서 공제한 것을 비롯하여 회사차 수리비, 차용금 등을 피고 C의 급여에서 공제하였다.
- 원고는 2017. 3. 24. △△지방고용노동부 ○○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이 사건 전인차 구입비에 관한 할부금, 4대 보험료, 차용금, 전화비 등을 급여에서 공제하면 남은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2016. 2.부터 2016. 12.까지 총 11개월 동안 피고 C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비록 이 사건 기사에는 “최근 1년여 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피고 C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실제 기간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약 1년 정도의 장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C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사실에 부합한다.
- 원고는 피고 C를 비롯한 직원들이 준수사항을 1일당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5만 원을, 정비 불량 등으로 대외 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 20만 원을 각 페널티 명목으로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하였다.
- 비록 이 사건 기사에는 “고객에게 항의를 받으면 30만 원, 지각을 하면 5만 ~ 10만 원, 출동시간 지연에 따라 출동점수가 하락하면 2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피고 C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실제로 부과한 페널티의 사유, 금액 등 세부 사항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 C를 비롯한 직원들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원고가 일정액을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삭감하였다’는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사건 기사 중 ④ 부분에 관하여

-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을 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 중 ④ 부분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제보한 D로부터 쪽방을 촬영한 사진(이 사건 기사에 게재된 사진인 을 2호증의 영상과 같다)을 전송받은 다음 2016. 12. 말경 ‘○○○○○○○’에 방문하여 직접 그 쪽방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 C의 동료인 F와 원고의 아들이 ‘그 쪽방에서 피고 C가 잠을 잔다’고 설명해주었다.
 - 원고는 그 후에도 피고 C로부터 위 쪽방에서 자신이 생활한다는 말을 들었다.

○ 비록 피고 C가 원고를 상대로 다수의 허위 고소를 하였다가 나중에 그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여 허위로 고소하였음을 자백하였으나, 이 사건 기사 중 ④ 부분은 위와 같이 피고 C가 고소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피고 C가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했던 진술이 허위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는 ‘피고 C에게 바닥에 보일러가 시공되어 있고 샤워장도 구비되어 있는 넓은 면적의 사무실을 숙소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기사에 게재된 사진에 나타난 쪽방은 위 사무실 뒤쪽에 있는 작은 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쪽방 옆에 보일러가 시공되어 있고 샤워장도 구비된 사무실이 존재하고 그곳을 피고 C가 숙소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5) 이 사건 기사 중 ⑤ 부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 중 ⑤ 부분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기사 중 2017. 1. 4.자 기사에는 ‘동부화재가 감사팀을 파견하여 원고를 상대로 조사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7. 1. 11.자 기사에는 ‘동부화재 감사팀이 원고의 업체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를 일부 확인해 이 사건 대리점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고, 그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며, 원고는 동부화재에 13일부로 지점 폐쇄를 알린 상태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7. 1. 12.자 기사에는 ‘원고는 동부화재로부터 이 사건 대리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뒤 개인 사정을 이유로 동부화재에 13일부로 지점 폐쇄를 알린 상태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경찰에서, “동부화재가 먼저 이 사건 대리점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원고가 계약 해지 요청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위와 같이 동부화재가 감사팀 조사를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의 해지 방침을 통보한 상태였던 이상, 그 이후에 원고가 동부화재에 계약 해지 요청을 하였더라도 이를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해지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6) 이 사건 기사 중 ⑥ 부분에 관하여

가) 사실의 적시 여부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

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참조). 또한,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 등은 이 사건 기사 중 ⑥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상습적으로 피고 C를 폭행하였고, 피고 C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피고 회사 등은 2017. 1. 3.부터 2017. 1. 12.까지 4회에 걸쳐서 ‘노예정비사’ 등의 문구가 포함된 제목으로 원고가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왔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 ‘원고가 상습적으로 피고 C를 폭행하였고, 피고 C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이 사건 기사 중 2017. 1. 12.자 기사에 기재되어 있는데, 비록 피고 회사 등은 위 기사에서 “폭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위 2017. 1. 12.자 기사의 제목이 “10년간 착취당한 ‘노예정비사’… 경찰 수사 착수”이고, 그 본문에도 “10년 동안 착취를 당한 ○○의 노예정비사 사건”이라는 단정적인 표현과 함께 ‘원고가 피고 C에게 8,000만 원 상당의 빚을 부담하게 하였다거나 1년 넘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 원고의 폭행 혐의와 편취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비위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 반면에, 원고의 폭행 혐의와 편취 혐의에 관한 원고의 반론 또는 그에 관하여 원고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일반의 독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혐의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9, 10, 15,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 중 이 부분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기사에 보도된 원고의 편취 금액 4,500여만 원은, ㉠ 원고가 피고 C를 속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전인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그 할부금 명목으로 매달 110만 원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편취한 1,700만 원, ⑤ 원고가 차량 취득등록세 및 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편취한 760만 원, ㉠ 원고가 피고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고 C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빌리는 방식으로 편취한 2,23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전인차를 지입차라고 속여서 피고 C로 하여금 이를 구입하게 하였다는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차량 취득등록세 및 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받은 760만 원은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전인차의 취득등록세 및 보험료로 납부하였다.
- 원고가 피고 C로부터 받은 대부업체의 대출금 2,230만 원¹⁴⁾은, 피고 C의 부탁에 따라 피고 C의 동료인 F의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 합의금을 원고가 피고 C 대신 빌려준 다음 나중에 피고 C로부터 변제받은 돈이었다.
- 피고 C는 수사기관에서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 증거로는 ‘○○○○○○○○’에 설치된 CCTV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그 CCTV를 확인한 결과 원고가 피고 C를 폭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았다.
- 피고 C는 원고의 폭행 및 편취 사실에 관하여 고소하였다가 그 사실이 모두 허위임이 증명되어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7)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기사 중 ①, ⑥ 부분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부분의 내용과 분량 및 그 표현방식,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 활자의 크기, 게재방법, 간접강제방법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다. 피고 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이 사건 기사 중 ①, ⑥ 부분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4) 이 사건 기사에는 2,2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에 대한 불기소이유서(갑 10호증의 1),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갑 15호증의 1)에 의하면 그 정확한 액수는 2,212만 3,320원인 것으로 보인다.

2)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가) 피고 회사 등의 주장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보도한 것이고,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또한,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가 그 소속 직원인 피고 C에게 장기간에 걸쳐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의 권리 또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기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 회사 등이 이 사건 기사 중 ①, ⑥ 부분이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 등이 이 사건 기사 중 ①, ⑥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 B는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취재하면서, 피고 C 또는 그 동료인 D, F 등과 ‘○○○○○○’ 또는 외부에서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의 제보 내용 중에는 허위라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 B는 이 사건 전인차의 할부금 등을 공제하였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적이

있다는 피고 C의 말을 처음부터 그대로 믿은 것은 아니고, 피고 C에게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여 그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고 C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였다.

- 피고 B는 이 사건 견인차의 할부금 등을 피고 C의 급여에서 공제한 이유와 공제한 금액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그에 관한 원고의 입장을 들었고, 원고의 반론 내용을 이 사건 기사 말미에 함께 보도하였다.
- 위 전화통화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견인차가 지입차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들은 피고 B는 D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견인차가 지입차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D로부터 지입차의 경우 수익분배약정이나 그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견인차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그러한 약정이나 계약서가 없다는 등의 설명을 듣고서 이 사건 견인차가 지입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
- 피고 B는 원고의 폭행 및 사기 혐의에 관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피의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기사 중 2017. 1. 12.자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2017. 1. 12. 전에 보도된 이 사건 기사에서는 원고의 착취 또는 부당한 대우에 관하여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과 달리 2017. 1. 12.자 기사에서는 원고의 폭행 및 사기 혐의에 관하여 원고가 폭행 또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바는 없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의 폭행 및 편취 사실을 적시하였다.
- 피고 C는 D로부터 ‘D가 시키는 대로 하면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D와 공모하여 피고 B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B로서는 피고 C와 D가 공모하여 제보한 내용이 허위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 등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C는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피고 B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바, 피고 C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1〉 정정보도문

제목 : ○○시 노예정비사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본문 : 뉴스1은 2017. 1. 3.부터 2017. 1. 12.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뉴스1 인터넷신문 사이트의 ‘전국’면 중 ‘전북’면에 “8,000만 원 빚으로 몰아매 10년간 노예정비” 등의 제목으로, ① “대기업인 X보험사 출동서비스를 맡고 있는 전북 ○○의 한 지점 업주 A 씨가 회사 소유의 출동차량을 구매하면서 정비사 C 씨에게 지입차라고 속여서 그 출동차량 구입비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② “업주 A 씨가 상습적으로 정비사 C 씨를 폭행하였고, C 씨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① 정비사 C 씨의 의사에 따라 출동차량을 지입차로 구입하면서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였고, 그 과정에서 업주 A 씨가 정비사 C 씨에게 위 차량을 지입차라고 속인 적은 없습니다.
- ② 업주 A 씨가 상습적으로 정비사 C 씨를 폭행하였다는 것과 C 씨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별지2〉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3~1~4〉 대상기사 생략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가단247349(본소), 2016가단30848(반소) 판결

‘종북’, ‘종북성향’은 사회적인 평가를 객관적으로 떨어뜨리는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 원고 : 사단법인 A 외 1명
- 피고 : C 외 2명

[사실관계]

피고 C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의 발행인으로, 2015년 5월 21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뉴스타운〉 사이트에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인 원고 A에 대한 종북 의혹을 다룬 기사를 다수 게재하였다. 한편 피고 E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와 관련한 글을 2016년 10월경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종북, 종북좌익활동 등이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뜨리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보았다. 또 이 사건 기사가 진실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였으며, 피고들의 의견표명이 모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 또한 1심의 판결을 인용하였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나32863, 2018나32870 판결), 피고의 상고 역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며 위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018다299266 판결).

[판결요지]

□ ‘종북’, ‘종북성향’이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고문, 진정서로 인하여 원고 B를 비롯한 지휘부와 원고 A가 마치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이적단체 또는 불법단체라는 의심을 자아내게 하여 이후 일반 여론의 지지 및 원고들의 활동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점,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단체나 개인이 북한 및 간첩과 연루되어 있다거나, ‘종북’, ‘종북성향’ 세력으로 인식되는 경우 국가적·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어 사회의 평가가 저하될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에 따른 형사적 처벌의 위험성까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및 간첩과 연루되어 있다거나, 종북, 종북성향 세력으로 지칭되는 경우 그 단체나 개인에게 주어질 사회적인 평가가 객관적으로 침해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문

사	건	2016가단247349(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단30848(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1. 사단법인 A 2. B
피고(반소고)		1. C 2. D 3. E
변론종결		2017. 12. 12.
판결선고		2018. 2. 1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C, D는 공동하여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8. 2. 13.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반소원고) C, E는 공동하여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8. 2. 13.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반소원고) E는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2018. 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3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C, D는 공동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C, E는 공동하여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E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원고 사단법인 A(이하 ‘A’라 한다)는 일본제국주의하에 저질러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생존자) 등의 명예회복, 전시하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방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저지,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원고 B는 2007년경부터 A 상임대표로 활동 중인 사람이다.
- 2) 피고 C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피고 D, E는 원고들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뉴스타운에 각 기고하고, 피고 C는 뉴스타운 홈페이지 ‘뉴스, 사설 /칼럼’ 란에 해당일자에 각 글을 게재하였다.

가) 2015. 5. 21., 작성자 피고 D

제목 : ‘A와 언론의 반역행위’, 부제 ‘한·미·일 안보공조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내용 : (생략) 단순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문제 개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다면 왜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매달릴까? A를 이끌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그런 의심을 하게 된다. B 상임대표의 남편 F 씨는 1994년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간첩이었다. G 대외협력위원장은

40여 차례 방북을 했고, △△당 해산 결정 반대시위를 했고, 김정일 조문을 주장했던 전력이 있다. 그리고 G의 남편 H 씨는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 각종 반미투쟁을 주도하여 실행을 선고받은 바 있는 인물이다. A의 이런 속성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그들의 선동에 속아서 한미일 안보동맹의 중요성을 잊고 일본만 욕하고 있는 현상이 참으로 안타깝다. A는 그들의 성향에 따라 간첩의 편에 서서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한·미·일 동맹을 깨는 역적질을 한다 치고, 그러나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잘 알만한 언론은 왜 종군위안부 관련 내용을 연일 보도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국익에 손해를 끼치고 있을까? 이 시점에서 필자는 다시 한 번 언론의 성향을 깨닫게 되었다. 역시 한국의 언론은 반역을 일삼을 정도로 좌편향 되어 있구나!

나) 2016. 1. 9., 작성자 피고 D

제목 : ‘위안부 할머니나 북핵 위협 대처냐’, 부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막아내는 한미일 군사동맹 중요’

내용 : 위안부 할머니 문제로 여러 해 동안 한·일간에 드리워졌던 먹구름이 박근혜 대통령의 끈질긴 고집으로 마침내 아베 총리의 양보를 이끌어 내어 타결을 보게 된 것은 참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잘못된 타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와서 이 글을 쓰게 된다. (생략) 그런데 북한을 추종하는 좌익세력이 좌익정권 시절부터 미군철수를 주장해 왔는데, 그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한·미·일 공조를 깨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는데 그 목표에 딱 맞는 미끼가 바로 ‘위안부 할머니’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었다. ‘위안부’는 국내적으로 선동하기도 좋고, 일본정부가 시인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미국의 역할도 컸지만 한·일 양국 간에 원만하게 잘 타결되었다. 그러나 한·미·일 공조를 깨려는 종북 좌익(특히 A)으로서 는 절호의 미끼를 놓치게 되어 쉽게 물러서지 않고 계속적인 선동을 할 것이다. 좌익야당과 좌편향 언론도 선동에 동조할 것이다(이하 생략).

다) 2015. 5. 23., 작성자 피고 E

제목 : ‘A가 벌이는 불순한 위안부 놀음 중단시켜야’, 부제 ‘위안부 문제를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깨기 위해 악용하고 있다’

내용 : 조선의 부모가 딸들을 위안부로 내몬 대표적 사례 (생략), I : A가 매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주최하는 시위에 늘 참가하는 여성이다. 이 여인이 매주 수요일 12시에 일본대사관 앞에 나와 일본이 자기를 강제로 연행해 가서 위안부로 삼았다며 사죄와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위안부 놀음은 간첩의 처이자 A의 상임 대표인 B가 꾸러가고 있다. 문제는 이 여인에 있는 게 아니라 A에 있다. (생략) 더구나 A 지휘부는 북한과 간첩에 깊이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지 아니한가. 당장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벌이는 수요일집회부터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창피해 못 살겠다.

라) 2015. 12. 30., 작성자 피고 E

제목 : ‘A라는 붉은 단체에 끌려 다닌 한심한 정부’, 부제 ‘대한민국은 위안부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을 때 성장했다’

내용 : 위안부라는 주제는 위안부의 권익문제나 역사규명의 문제가 아니라 반일감정을 끝없이 증폭시키기 위한 정치 목적에 악용돼왔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표현 능력은 극히 제한돼 있다.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위안부를 정치적 앵벌이로 삼은 사람들이 A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A를 움직이는 간부들 대부분이 사상적으로 북한에 경도돼 있다. 한국의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위안부를 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안부를 악용하여 이 땅에 반일감정을 끝없이 확산시키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친일파로 몰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반면 김일성을 위대한 존재로 부각시키고,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허물고, 미국과 일본을 의미하는 ‘외세’를 배격하여 적화통일의 전제 조건을 만들어 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시산업선교회가 길러낸 위장취업자들이 기업에 가면 그 기업은 도산한다. 그 위장취업자가 내거는 요구사항은 그 요구가 진짜로 필요해서 내거는 것이 아니라 파국적 결투를 통해 기업을 도산시키기 위해 내거는 것이었다. 위안부 문제를 독점하고 있는 A 역시 위장취업자들의 수법과 똑같은 수법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한다. 그들은 지금 정부나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요구사항을 내건다. 정부는 이제까지 A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들에 휘둘려 오면서 국제망신을 너무 많이 당했다. 대미외교의 주도권을 일본에 완전히 내주었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 오늘날 경제가 위기로 내몰린 이유는 바로 일본과 반목했기 때문에 야기된 바가 크다. 대한민국은 위안부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을 때 성장했다. 세계 최고의 제철공장 포항제철도 위안부 문제가 없었을 때 건설됐다. 허허벌판 모래밭에 일본의 자본, 일본의 기술, 일본의 기술지도, 일본의 소재로 지어진 것이 포항제철이다. 만일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A와 같은 단체를 살려주었다면 포항제철은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때 빨갱이들을 탄압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경제는 없었을 것이다. 이 나라의 원수는 북한이라기보다는 빨갱이들인 것이다. 소리만 들어도 짜증나고 창피하고 불쾌한 이 위안부라는 단어를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국민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소녀상을 보고 싶지 않다. 그 상은 거룩한 상이 아니라 혐오의 상이다. 매주 수요일마다 자랑스럽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 대사관 앞에 데려다가 곱판을 벌이는 모습도 수치(shame)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빨갱이들의 부끄러운 놀음일 뿐이다.

마) 2015. 12. 30., 작성자 피고 E

제목 : ‘경제와 안보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위안부 문제’, 부제 ‘양국은 특히 안보와 경제적 손해를 참으로 많이 보았다’

내용 : (생략) 이 나라에서 위안부 문제라면 A가 원조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여론은 사실상 A가 주도한다. A를 운영하는 사실상의 리더는 B다. 그의 남편은 F, 김영삼 시절에 걸려든 남매간첩단 사건의 오빠다. B는 평양도 다녀왔다. 나는 지금까지의 위안부 문제가 순수하게 주도돼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B의 이념적 색깔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위안부 문제가 북한의 핵심 전략인 외세배격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3월 J 교수의 논문 중 ‘일제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따다가 그를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노무현은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동조했다. 이런 구도에서 다뤄온 것이 이제까지 위안부 운동이었다고 생각하기에 순수하지 못한 것이었다. A의 목적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본을 적대시 하는 것에 더 큰 목표를 두었다고 생각한다. △△△연구소를 생각해보자. 그들이 얼마나 일본을 증오했고 그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이승만과 박정희를 친일파로 몰아넣었는가? A의 집요한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들의 권익보다는 △△△연구소와 쌍벽을 이룰 정도의 이념적 도구로 악용됐다고 생각한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이 친일파의 굶판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위안부 문제가 반일굶판의 무당으로 전략해온 부끄러운 과거가 이를 계기로 영원히 청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3) 피고 E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co.kr)’의 운영자인데, 이 사건 소 제기된 이후, 2016. 10.경 위 E의 □□□□□에 ‘정서’라는 제목으로 앞서의 뉴스타운에의 기고문과 유사한 내용으로, ‘A가 위안부들의 권익과 명예를 위해 활동하기보다는 소수의 할머니들을 나눔의 집에 수용해 놓고 전투적 성향을 보이는 할머니들을 앞세워 반국가, 반미, 반일, 종북 활동, 종북, 이적행위를 저질러왔다(이하생략)’ 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하여 유폐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불법행위 여부

1) 관련 법리

- 가)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 및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 31356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 나)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판결 등 참조)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2)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의 각 기고문, 진정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고문, 진정서’라 한다) 문언의 객관적 내용, 선택한 어휘, 전·후 문장관계, 문맥, 제목과 본문의 내용, 배치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의 전체적인 의미는, 원고 A의 주요 구성원, 특히 그 지휘부를 종북, 종북좌익세력으로 단정 짓고, 북한 및 간첩과 깊이 연루된 B 등의 지휘부가 장악한 A가 실제로는 위안부 할머니의 권익과 명예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일 동맹 체제를 깨고, 대한민국에 반미, 반일감정을 확산시키는 등 반국가·종북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그것이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아래 다.항 ‘진실성 여부’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적시 사실은 진실성을 결여하였다.

- 나) 원고 A와 같은 시민운동 단체는 자유민주주의적 헌법 체제에서 용인되는 적법성, 업무집행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그 존립의 중요한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고문, 진정서로 인하여 원고 A의 상임대표인 원고 B를 비롯한 지휘부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 A가 마치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이적단체 또는 불법단체라는 의심을 자아내게 하여 이후 일반 여론의 지지 및 원고들의 활동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점,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단체나 개인이 북한 및 간첩과 연루되어 있다거나, ‘종북’, ‘종북성향’ 세력으로 인식되는 경우 그 단체나 개인의 주장이나 견해, 지향하는 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나 검증을 불문하고 국가적·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어 사회의 평가가 저하될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에 따른 형사적 처벌의 위험성까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및 간첩과 연루되어 있다거나, 종북, 종북성향 세력으로 지칭되는 경우 그 단체나 개인에게 주어질 사회적인 평가가 객관적으로 침해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는 이 사건 기고문을 게재한 뉴스타운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서, 피고 D, E는 각 기고문 작성자로서 C와 공동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나아가 피고 E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추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지에 이 사건 진정서를 게재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나아가 이 사건 기고문, 진정서 내용 중 ‘위안부 놀음, 정치적 앵벌이, 수치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빨갱이들의 부끄러운 놀음’ 등의 표현을 통한 피고들의 의견표명은 원고들에 대한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 1) 피고들은, 이 사건 기고문, 진정서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룬다.
-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가) 공공성 여부

이 사건 기고문, 진정서의 내용은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진실성 여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A의 대표자인 B 등 구성원 일부가 정부의 허가를 얻어 북한을 방문한 적 있다거나, 국제행사 일환으로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북측과 교류활동을 한 사실, B 및 G의 배우자 등이 과거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 등이 인정될 뿐, 그러한 사정을 넘어서 ‘원고들이 북한 및 간첩과 깊이 연루되어 있다’거나, ‘원고들이 위안부를 이용하여 반국가, 종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B의 배우자 등은 A의 임원, 구성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들은 A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다. B의 배우자 F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관하여도, 불법구금상태에서의 수사에 터 잡아 공소제기된 사정이 밝혀져 2014년경 무렵 이미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재심사건이 진행 중이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이미 언론을 통해 일반에 널리 알려진 상태였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기고문, 진정서에서 ‘A 지휘부는 북한과 간첩에 깊이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 ‘A는 그들의 성향에 따라 간첩의 편에서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한미일 동맹을 깨는 역적질을 한다’, ‘북한을 추종하는 좌익세력이 한미일 공조를 깨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는데 그 미끼가 위안부 할머니를 내세우는 것이다’, ‘한미일 공조를 깨려는 중북좌익(특히 A)’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들이 중북 활동을 목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다는 내용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은 진실성을 결여한 것이다.

더불어 피고들이 자신들이 공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으며¹⁵⁾,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표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기고문 등이 게재된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 피고 E 운영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영향력, 전파력, 게재물의 내용,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C, D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피해자 원고들에 대하여 각 5,000,000원씩, 피고 C, E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피해자 원고들에 대하여 각 5,000,000원씩, 피고 E의 이 사건 진정서 작성 및 게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피해자 원고들에 대하여 각 3,000,000원씩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원고들에게, 피고 C, D는 공동하여 각 5,000,000원, 피고 C, E는 공동하여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6. 10. 1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10. 31.부터 피고 E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5) 피고 E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0. 31. 유사한 내용으로 이 사건 진정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본소청구 판단과 같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1. 선고 2017가합312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065044 판결

원 보도에 비해 전파가능성이 낮은 반론보도는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방송하는 것이 상당하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제이티비씨(JTBC)

[사실관계]

피고는 2016년 6월 17일자 <JTBC 뉴스룸>에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박물관 관장인 원고가 박물관에 비치된 유모차로 갈아탈 것을 거절한 장애 아동의 박물관 입장을 제지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폄하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방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반론보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반론보도청구만을 인용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피고는 보도와 배치되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고,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방송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상고 또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다240998).

한편, 원고는 소 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불성립결정된 바 있다(2016서울조정1333·1334).

[판결요지]

□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를 방송하는 것이 과도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심하게 저하된 점,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박물관장인 원고가 장애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무능력에 대한 폄하 발언을 하였다'고 하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서 큰 전파가능성을 가진 것인 반면에 이 사건 반론보도의 내용은 그와 같이 큰 전파가능성을 가진 것은 아닌 점 등 이 사건 반론보도를 <JTBC 뉴스룸>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방송하는 것이 상당하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7가합31234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제이티비씨(JTBC)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결	선	고
선	고	2017. 9. 20.
고		2017. 10. 11.

주 문

1. 피고는,
 - 가.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방송되는 'JTBC 뉴스룸'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인용)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되, 낭독하는 동안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과 위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크기와 속도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고,
 - 나. 피고가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그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방송되는 'JTBC 뉴스룸'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청구)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3. 피고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 □□구 XX로XX길 X에 위치한 □□□□□박물관(이하 ‘이 사건 박물관’이라고 한다)의 박물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종합편성채널 JTBC에서 ‘JTBC 뉴스룸’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송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박물관 관련 보도

- 1) 뇌병변 장애를 가진 6세 어린이(이하 ‘장애 아동’이라고 한다)와 그 가족은 2016. 6. 12. 이 사건 박물관을 방문하였는데, 이 사건 박물관 측은 내부 지침에 따라 장애 아동이 사용하는 유모차 대신 이 사건 박물관에 비치된 유모차로 갈아타도록 하였고, 부모가 이를 거절하자 장애 아동의 전시관 입장을 제지하였다.
- 2) 피고는 2016. 6. 17. ‘JTBC 뉴스룸’ 프로그램에서 <“유물을 보나요?”...‘장애 유모차’ 못 들어 간다는 박물관>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박물관의 장애 아동 유모차 출입제지 문제에 관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은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방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아래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청구)과 같은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아울러 원고는 반론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 ① 이 사건 보도에서는 ‘원고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박물관의 장애 아동 유모차 출입제지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이하 ‘이 사건 ① 부분’이라 한다)을 적시하였으나, 이 사건 박물관의 직원이 장애 아동의 유모차뿐만 아니라 모든 유모차의 출입을 제지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일 뿐, 장애 아동의 유모차에 대한 출입제지는 원고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 ② 이 사건 보도에서는 ‘장애 아동은 특수 유모차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박물관에 비치된 유모차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이하 ‘이 사건 ② 부분’이라 한다)을 적시하였으나, 장애 아동이 사용하는 유모차는 이 사건 박물관에 비치된 일반 유모차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장애 아동이 이 사건 박물관에 비치된 유모차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1) 이 사건 ① 부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박물관의 장애 아동 유모차 출입제지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박물관에서는 다른 관람객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모든 유모차와 전동휠체어의 전시실 출입을 금지하면서 자체적으로 비치한 간이 유모차와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두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보조기구인 전동휠체어의 사용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위 지침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유모차의 경우에도 장애 아동이 사용하는 특수 유모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박물관 직원이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할 여지는 없었다고 보인다.

②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보도를 취재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동휠체어나 유모차가 노약자 등 다른 사회적 약자의 관람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자를 만족할 수 있도록 슬림형 유모차와 수동휠체어를 준비한 것이다.”, “준비해 놓은 휠체어도 안 타겠다, 유모차도 안 타겠다, 오로지 내 것만 갖고 들어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한 대를 허용하면 다른 유모차들이 다 들어와서 민원이 발생한다.”라고 발언함으로써 장애 아동이 사용하는 유모차라고 하더라도 출입 제한에 예외를 허용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③ 또한 원고는 위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 보도에 인용된 발언 외에도 “그 어린이는 유물을 못 봐요.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가 그 어린이를 붙잡고 있었고, 엄마하고 언니만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꾸 장애인 핑계대지 말란 얘기에요, 나는.”, “장애인 차별금지에 따라서 부모들이 요구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나요?”라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 맥락이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 내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의식 부재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박물관의 개관 시부터 박물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전시관에 유모차 및 전동휠체어의 출입을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지침이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이 지시·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박물관의 직원들이 위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장애 아동의 유모차 출입제지 문제에 관하여 책임을 피할 수 없다.

2) 이 사건 ② 부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 6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에서 ‘장애 아동은 특수 유모차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박물관에 비치된 유모차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장애 아동이 사용하는 유모차는 이 사건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간이 유모차와 달리 목 받침대, 몸 지지대, 발 받침대 및 몸통 전체를 고정할 수 있는 벨트가 있는데,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장애 아동은 위와 같은 받침대와 지지대 등이 없는 간이 유모차를 이용할 경우 몸을 가누거나 지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② 6세인 장애 아동은 통상적으로 유모차를 이용하는 영·유아에 비하여 신체가 성장한 상태에서 간이 유모차를 이용할 경우 발이 바닥에 닿는 등 크기가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 ③ 이 사건 보도에서는 장애 아동이 원래 사용하는 특수 유모차와 통상 사용되는 간이 유모차를 이용할 경우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실제로 이 사건 박물관에 비치된 간이 유모차를 촬영한 영상도 보도하고 있는데, 위 비교에 사용된 간이 유모차와 이 사건 박물관에 비치된 간이 유모차의 구조나 형태, 크기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보도에 의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피고 소속 기자는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을 만나고, 이 사건 박물관에 방문하였으며, 직접 원고와 약 20분 간 통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보도를 취재한 점, 이 사건 보도에서는 위 통화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발언 중 일부를 음성 그대로 인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보도는 공공시설인 이 사건 박물관이 장애인의 보조기구 이용을 제한하여 발생한 장애인 차별 문제를 널리 알리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의식의 제고 및 문제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보도에 관한 취재 과정에서 피고 소속 기자가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 소속 기자와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자신도 녹음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고,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그 맥락이나 의사를 왜곡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도에 관한 취재 과정이나 보도 방법이 위법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4.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반론보도의무의 성립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 없이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언론사는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반론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5조 제4항). 이때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라 함은 반론보도의 내용이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어서 일반적 교양을 갖춘 통상적인 시청자라면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허위임을 즉각 알 수 있는 경우이거나, 법원이 해당 사건이나 다른 사건의 처리를 통해서 지득한 현저한 사실로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원고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보도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위와 같은 보도의 근거가 된 “그 장애 어린이가 유물을 보나요?”라는 발언의 취지에 관하여 ‘장애 아동 가족의 박물관 방문 목적이 장애 아동이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의 관람에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이라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청구하고 있는바,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문을 방송할 의무가 있다.

나.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식

나아가 피고가 방송할 반론보도문의 내용과 방식 등에 관하여 본다.

반론보도의 내용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지만, 여기서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에는 원보도에서 직접적으로 기술한 사항은 물론 원보도가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전체적인 보도의 취지, 경위, 내용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도 포함되고, 이에 대한 반론내용은 원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 원보도를 보충하는 내용, 원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 반론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정당성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나 증빙으로서의 새로운 사실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다만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고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도의 내용, 분량, 형식과 표현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청구)의 내용을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인용)과 같이 수정하여 방송하도록 하고, 그 방송 방법과 간접강제금 등은 주문 제1항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2016년 6월 17일 “‘유물을 보나요?’...‘장애 유모차’ 못 들어간다는 박물관”이라는 제목으로, □□□□□박물관이 박물관에 비치된 유모차를 이용하지 않은 장애 어린이의 박물관 출입을 제지하였고, 이에 대해 박물관장은 “장애 어린이가 관람이 가능하겠냐”라는 해명을 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시 □□□□□박물관장은 “장애 어린이가 유물을 보나요?”라고 말한 것은, 장애 어린이의 가족이 박물관을 방문한 목적이 장애 어린이가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의 관람을 위한 것이고, 보호 목적으로 장애 어린이를 대동하였음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다고 밝혀왔으므로, 이를 알려드립니다.

〈별지2〉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생략

〈별지3〉 대상기사 생략

2심 판결문

사 건 2017나2065044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제이티비씨(JTBC)
제 1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1. 선고 2017가합31234 판결
변 론 종 결 2018. 4. 13.
판 결 선 고 2018. 5.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방송되는 'JTBC 뉴스룸'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청구)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3. 피고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시까지 매일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보도와 배치되는 이 사건 반론 보도를 거부할 수 있고, 설령 피고가 반론보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반론을 ‘JTBC 뉴스룸’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방송하도록 하는 것은 그 형식이 과도한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언론사등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 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반론 보도의 내용 또한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나(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제2호)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함은 반론보도의 내용이 널리 사회 일반에 걸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지의 사실로 되어 일반적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허위임을 즉각 알 수 있는 경우, 혹은 사회일반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에까지 이르지 않는 아니하였을지라도 법원이 당해 사건이나 다른 사건의 처리를 통해서 지득한 현저한 사실로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반론 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반론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6항), 법원이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할 때에는 청구취지에 적힌 반론보도문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는바(제27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심하게 저하된 점,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박물관장인 원고가 장애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무능력에 대한 폄하 발언을 하였다’고 하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서 큰 전파가능성을 가진 것인 반면에 이 사건 반론보도의 내용은 그와 같이 큰 전파가능성을 가진 것은 아닌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반론보도를 ‘JTBC 뉴스룸’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방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4. 선고 2017가단518377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36945 판결

특정한 1인에게 알린 피의사실을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다면 이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1명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2014년 10월 19일자 <시사매거진 2580>에서 경찰관 B와의 전화 통화를 바탕으로 ‘원고 A가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환자들을 차례로 여러 병원에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게 하여 수익을 얻었고,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으며 노숙인을 환자로 유치하거나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방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B의 사용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하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보도의 공익성을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B가 공소제기 전에 원고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 사용자인 대한민국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원고 및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 역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며 위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018다285274 판결).

[판결요지]

□ 공소제기 전 B가 피의사실을 유포한 데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사용자책임 여부 판단

B는 기자인 C가 원고에 대하여 취재를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알면서도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C에게 전화통화로 말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피의사실이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방송되었으므로 원고는 B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에 대한 공표 목적의 공익성,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도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에 비추어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인 위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 문화방송으로서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피고 문화방송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보도 중 ‘검찰이 A 원장을 병원 이중 개설 혐의로 기소한 상태이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만 원고는 위 보도 후인 2014. 12. 29. 위 보도와 유사

한 내용으로 기소된 점에 비추어 보면, C가 이 사건 보도 당시 원고가 기소되었다고 착각하였고, 원고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보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7가단5183770	손해배상(언)
원	고	A	
피	고	1. 대한민국	
		2. 주식회사 문화방송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3. 26.
			2018. 5.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XX XX구 XX동 소재 ○○병원을 2011. 8. 17.부터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B는 XXX 소재 □□□병원의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행위 등을 수사하였던 경찰관이며,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 한다)은 공중파 방송사이다.

나. 피고 문화방송의 기자 C가 취재하여 위 피고는 2014. 10. 19. '시사매거진 2580'에서 '이상한 병원, 수상한 원장님'이라는 원고에 관한 방송(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방송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¹⁶⁾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보도 중 원고가 □□□병원의 실질 소유자로서 위 병원의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 원고가 수익을 얻으려고 6개월마다 의도적으로 환자들을 ○○병원, □□□병원 등에 차례로 퇴원과 입원을 반복시켜 30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 원고가 □□□병원 환자들의 처방기록을 조작하여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내용, 원고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노숙인을 환자로 유치하거나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다. B는 원고가 환자들을 순회 입원시켜 수익을 얻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문화방송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즉 사람의 품성,德行,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 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인바,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참조).

16) 별지 기재 내용 중 △△ ☆병원은 □□□병원, ☆병원 X모 원장은 D, □□ ★병원은 ○○병원, X모씨는 원고, 수사담당 경찰관은 B다.

2) 판단

을가 1~4, 을나 1~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지위 및 사안의 성격, C의 취재 경위 및 방법, 취재 결과, 구체적인 기사 내용 및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문화방송으로서는 ‘원고가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환자들을 차례로 여러 병원에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게 하여 수익을 얻었고,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으며 노숙인을 환자로 유치하거나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 문화방송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되고 갑 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① 이 사건 보도 중 B의 발언 부분은 C가 B와의 통화 내용을 B의 허락 없이 방송한 것이므로, B가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외부로 누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② □□□병원에 대한 수사기록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작성의 자료에는 ‘○○병원, ☆☆병원, □□□병원에 2011. 1.~2014. 2.까지 환자를 돌려가면서 이송 입원시킴’이라는 내용이 있고 이를 확인한 B가 C와의 통화에서 위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 ③ 이 사건 보도 중 ‘검찰이 A 원장을 병원 이송 개설 혐의로 기소한 상태이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만 원고는 위 보도 후인 2014. 12. 29. ‘D와 원고가 □□□병원을 개설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노숙인들을 입원시켜 허위의 치료 내용을 근거로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점에 비추어 보면, C가 이 사건 보도 당시 원고가 기소되었다고 착각하였다는 점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④ 이 사건 보도 이전에 피고 문화방송의 기자가 원고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원고는 ‘입원이 6개월 넘어가면 입원비가 깎인다. 입원할 필요성이 있으면 협력병원인 ☆☆병원, □□□병원에 가도록 권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원하였던 환자들을 퇴원 후 위 병원들에 입원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 ⑤ 이 사건 보도는 ○○병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병원의 원무과장이었던 E, ○○병원의 환자였던 F, □□□병원의 보호사였던 G와의 인터뷰 내용에 상당 부분 바탕을 두고 있는데 위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가 인터뷰 당시 E나 G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C가 입수한 □□□병원의 차량운행일지에는 위 차량으로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⑥ 원고가 D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이종으로 개설·운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지방법원 2014고합532 등) 위 재판에서 ‘□□□병원의 건물 소유자가 원고인 사실, □□□병원 개원 당시 원고가 운영하던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약 20명이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중 일부도 □□□병원으로 옮겨 근무하였던

사실, D는 □□□병원이 2013. 5. 23.부터 2014. 2. 7.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아온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임대료 외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위 공소사실에 유죄의 의심이 든다'는 판단이 있었다.

- ⑦ 이 사건 보도는 보험급여의 부정 수령 가능성,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개설하였을 의혹, 병원에서의 인권침해 의혹 등을 제기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대상기사 생략

2심 판결문

사	건	2018나36945 손해배상(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대한민국 2. 주식회사 문화방송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4. 선고 2017가단5183770 판결
변 론 종 결		2018. 9. 4.
판 결 선 고		2018. 10.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0.부터 2018. 10.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였고, 원고가 3개 병원을 운영하며 3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 문화방송의 이 사건 보도 중 원고가 □□□병원의 실질 소유자로서 위 병원의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 원고가 수익을 얻으려고 6개월마다 의도적으로 환자들을 ○○병원, □□□병원 등에 차례로 퇴원과 입원을 반복시켜 30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 원고가 □□□병원 환자들의 처방기록을 조작하여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내용, 원고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노숙인을 환자로 유치하거나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피고 문화방송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B가 C 기자에게 개인적으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녹음하거나 방송될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 또한 B의 발언이 허위라고 할 수도 없다.

다.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원고 주장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은 피고 문화방송이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사실로 적시한 바 없고, 일부 해당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여도 위 사실을 진실로 믿고 공익을 위하여 보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3. 판단

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관련법리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 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 684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2호증, 을가 제2 내지 4호증, 을나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2014. 3. 11. □□□병원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여 2017. 7. 31.경 원고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실, B는 2014. 10. 15. C와 전화통화하면서 “환자가 보통 한 500-600명이 고정적으로 돌았죠. 2011년부터 순회입원이 되면서 받은 돈이 30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A 원장 호주머니로 다 들어간 거죠”라는 등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등을 하였고, 이 사건 발언이 이 사건 보도에서 방송된 사실, 이후 원고는 영리유인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기자에게 전화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말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피의사실이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방송되었으므로 원고는 B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인 위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개인적인 대화를 한 것에 불과하여 공표에 해당하지 않으며 B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표란 불특정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고, 특정한 1인에게 알리는 행위도 이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을 때는 공표에 해당하는바, B는 C가 원고에 대하여 취재를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알면서도 C와 통화를 하면서 원고의 피의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으며, B의 이 사건 발언을 포함한 C와의 대화 내용, 위 내용을 공개한 방식 등을 볼 때 원고에 대한 공표 목적의 공익성,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도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에 비추어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B의 발언 등이 공표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 피의사실공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허위 사실로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에 관하여

1) 관련법리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즉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 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인바,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참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적시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전체적·객관적인 내용에 비추어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사실 중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참조).

2) 판단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지위 및 사안의 성격, C의 취재 경위 및 방법, 취재 결과, 구체적인 기사 내용 및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문화방송으로서는 ‘원고가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환자들을 차례로 여러 병원에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게 하여 수익을 얻었고,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으며 노숙인을 환자로 유치하거나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피고 문화방송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

단되고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① 이 사건 보도 중 B의 발언 부분은 □□□병원에 대한 수사기록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작성의 자료에 기재된 ‘○○병원, ☆☆병원, □□□병원에 2011. 1.~2014. 2.까지 환자를 돌려가면서 이송 입원시킴’이라는 내용, 입원중복(□□□, ○○, ☆☆) 순회입원 현황 등을 근거로 B가 C와의 통화에서 위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거나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② 이 사건 보도 중 ‘검찰이 A 원장을 병원 이중 개설 혐의로 기소한 상태이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만 원고는 위 보도 후인 2014. 12. 29. ‘D와 원고가 □□□병원을 개설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노숙인들을 입원시켜 허위의 치료 내용을 근거로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점에 비추어 보면, C가 이 사건 보도 당시 원고가 기소되었다고 착각하였고, 원고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보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이 사건 보도 이전에 피고 문화방송의 기자가 원고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원고는 ‘입원이 6개월 넘어가면 입원비가 깎인다. 입원할 필요성이 있으면 협력병원인 ☆☆병원, □□□병원에 가도록 권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원하였던 환자들이 퇴원 후 위 병원들에 입원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 ④ 이 사건 보도는 ○○병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병원의 원무과장이었던 E, ○○병원의 환자였던 F, □□□병원의 보호사였던 G와의 인터뷰 내용에 상당 부분 바탕을 두고 있는데 위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가 인터뷰 당시 E나 G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C가 입수한 □□□병원의 차량운행일지에는 위 차량으로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⑤ 원고가 D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개설·운영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는데(□□지방법원 2014고합532호 등) 위 재판에서 ‘□□□병원의 건물 소유자가 원고인 사실, □□□병원 개원 당시 원고가 운영하던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약 20명이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중 일부도 □□□병원으로 옮겨 근무하였던 사실, D는 □□□병원이 2013. 5. 23.부터 2014. 2. 7.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아온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임대료 외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위 공소사실에 유죄의 의심이 든다’는 판단이 있었다.
- ⑥ 이 사건 보도는 보험급여의 부정 수령 가능성,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개설하였을 의혹, 병원에서의 인권침해 의혹 등을 제기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연령, 직업, 신분, 이 사건 보도의 경위, 내용,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0. 20.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10.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문화방송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문화방송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방송보도 내용을 검증할 기회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상당성을 결여한 보도에 해당한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채널에이

[사실관계]

피고는 2015년 4월 17일자 <먹거리X파일> 프로그램에서 1)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구매한 소고기가 유통기한이 이미 지난 상태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고, 2) 원고에게 축산물판매업 신고필증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다. 이 사건 보도 이후 원고는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의 허위성을 인정했으며, 피고가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다만 이 사건 보도 후 식당 매출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볼 수 없어 재산상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2심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고가 없어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36074 판결).

한편, 원고는 소 제기 전 언론중재위원회에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불성립결정된 바 있다(2017서울조정122·123).

[판결요지]

□ 피고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측 취재진은 원고의 식당에서 구매한 소고기의 라벨에 표시된 한우 개체 식별번호를 근거로 이 사건 방송보도에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구매한 소고기가 유통기한이 이미 지났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소고기의 포장지 라벨에 표시된 한우 개체 식별번호가 잘못 표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고 소속 B는 추가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취재 당시 C 등 경찰관들이 동행하였음에도 경찰관들 또는 △△중부경찰서 측에 이 사건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취재일자는 2015년 3월 20일이었고 방송보도는 2015년 4월 17일경 이루어졌는데, B는 이 사건 방송보도 전에 보도 내용에 대해 경찰에 확인·취재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 방송보도를 제작하였고, 피고는 이를 그대로 방영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가 판매되었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문

사	건	2017가합556776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채널에이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5. 16.
			2018. 6.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6,984,7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시 □□구 ○○○○○로 111 XXXXXXXX 107호 내지 11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영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케이블 TV 방송 ‘채널A’를 운영하는 방송사업자이다.
- 피고는 2015. 4. 17. 방송된 채널A ‘먹거리X파일’ 프로그램에서 [정육식당의 꿈수]라는 제목의 방송을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송보도’라 한다). 이 사건 방송보도에는 ‘먹거리X파일’ 프로듀서 B 등이 2015. 3. 19. 및 2015. 3. 20. 이 사건 식당에서 취재(이하 ‘이 사건 취재’라 한다)한

내용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식당에 관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도 포함되었고, 이 사건 방송보도에 이 사건 식당 내부 모습이 보도되었으며, 이 사건 방송이 보도된 후 시청자들이 이 사건 방송보도가 이 사건 식당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챘다.

- 이 사건 방송보도 중 이 사건 식당에 관한 부분에는 ■ 이 사건 취재 당시 이 사건 식당에서 구매한 소고기의 한우 개체 식별번호로 검색한 결과 유통기한이 이미 지난 상태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다는 내용, ■ 이 사건 취재 당시 B와 동행한 △△시청 축산행정팀 담당자가 원고에게 축산물판매업 신고필증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2015. 5. 8.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1, 2호증의 각 영상,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음식점업만 영위하였을 뿐 식육판매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허위로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를 판매하고 있고’,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받지 않고 식육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피고의 이 사건 방송보도 행위는 보도내용의 진실성, 공공성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적시된 사실의 특정

피고는 이 사건 방송보도가 이 사건 취재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 뿐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방송보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도 설회할 수 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의견 또는 논평이라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유통기한 준수 및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 여부에 관한 이 사건 취재 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B와 원고 측과의 대화 등을 그대로 이 사건 방송보도에 담았다고 하더라도, 갑 4호증의 기재, 을 1, 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방송보도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를 팔고 있다는 내용(이하 ‘① 내용’이라 한다), ② 원고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내용(이하 ‘② 내용’이라 한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방송보도에는 B가 “(원고는) 유통기한으로부터 무려 한 달이 지난 고기를 판매하고 있던 셈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판 업체, 문제는 없을까”, “정육코너를 따로 운영할 경우 일반 식당 영업허가 외에 정육 판매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요, 이곳은 아직까지 정육 판매 허가조차 하지 않은 채 고기를 팔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①, ② 내용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소고기의 라벨에 개체 식별번호가 틀리게 표시되었을 뿐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방송보도 중 이 사건 식당에 관한 부분의 2/3 가량을 이 사건 식당이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를 판매하고 있고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축산물판매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할애하고, 원고 측의 위와 같은 의견 직후에 원고가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내용과 ‘소비자는 개체 번호를 믿고 고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보통의 주의를 가진 일반의 시청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방송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성방식의 영향으로 원고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축산물판매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를 판매하고도 별다른 근거 없이 이를 부인한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방송보도의 제목은 [정육식당의 꼼수]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방송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위 제목을 더하여 보면, 일반의 시청자들로서는 원고가 유통기한 및 영업신고에 관하여 부당한 일을 저지르고도 이를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하다.

2) ①, ②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언론 보도에 의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원고가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①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갑 4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갑 11호증, 을 2호증의 각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①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는 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소명자료로 2015. 3. 20.경 원고의 식당에서 구매한 소고기의 라벨에 표시된 한우 개체 식별번호가 이미 유통기한이 경과한 한우의 개체 식별번호라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른 소고기의 개체 식별번호가 잘못 표시되었을 뿐 원고가 판매한 소고기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식당에서 판매되는 양송이 등 채소의 라벨에도 정상적인 경우라면 표시되어 있지 않을 한우 개체 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한우의 개체 식별번호를 잘못 표시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달리 B가 구입한 한우 포장지의 라벨에 표시된 개체 식별번호가 실제로 그 한우의 개체 식별번호가 맞다는 근거가 없다.
- B가 2015. 3. 20. 당시 이 사건 식당 밖에 있던 소고기 포장상자에서 확인한 도축일은 2015. 3. 16.이었고, 유통기한은 그로부터 60일 후인 2015. 5. 14까지로서, 아직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였다.
- 이 사건 취재 당시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수사에 착수할 목적으로 △△중부경찰서 수과 과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C 등 경찰관들이 B와 동행하였다. 위 경찰관들은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를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식당 뒤쪽 창고 방면의 냉장고 및 식당 안쪽 냉장고에 있는 소고기 및 테이블 위에 있던 영수증을 조사하였는데, 조사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의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다) ②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갑 1,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②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2013. 5.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식당 외에 ‘○○○○’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도 함께 영위하다가, 2013. 11. 28. ‘○○○○’을 폐업하고 이 사건 식당만 운영하였다.

○ 피고의 이 사건 보도행위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식육부장 D와 공모하여 2014. 7.경부터 2015. 4. 6.까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정육식당에서 도매 업체로부터 받은 한우, 돼지고기 등을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축산물 판매업을 하였다’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위 항소심 판결에서는 「㉠ 원고 및 D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식당에 방문한 손님들에게만 고기를 제공, 판매하여 일반음식점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위와 같은 ○○○○ 영업 및 폐업 경위에 비추어 진열대와 고기를 구워 먹는 식당이 구분되어 있거나 소포장된 고기에 가격 등 표시가 붙어 있었던 점, 상차림 비용을 별도로 받은 것 등은 식육판매업과 일반음식점업을 동시에 운영하였을 때의 영업방식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인터넷 네이버블로그에 이 사건 식당을 홍보한 글에서 “고기를 사 가신 후 10분이 지나면 교환 및 환불이 안 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는 주문한 고기의 환불을 요구한 손님들에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고 측의 변소가 일부 일리가 있는 점, ㉣ 이 사건 식당의 인근에 정육점이 있어 일반인들이 이 사건 식당에 고기만을 구입하기 위하여 방문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및 D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축산물 판매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3) 이 사건 방송보도의 위법성 조각사유 존부

가) 관련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

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공익성

이 사건 방송보도는 식당 운영의 위생과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 소비자들의 권리보장 등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상당성

(가) ① 내용에 관하여

을 3, 4, 10호증의 각 기재, 갑 11호증, 을 1, 2, 11호증의 각 영상, 증인 C, 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가 판매되었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 측 취재진은 2015. 3. 20.경 ‘식품처리 전문가’ E와 함께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하여 소고기를 먹어본 결과 E로부터 ‘고기에서 오래된 냄새가 나므로 원고가 도축한지 오래된 소고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견을 받았고, 이를 이 사건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가 판매되고 있다고 믿은 근거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E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식품처리 전문가인지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 B가 위와 같이 2015. 3. 20.경 원고의 식당에서 구매한 소고기의 라벨에 표시된 한우 개체 식별번호로 검색한 결과, 2014. 12. 26. 도축된 한우의 개체 식별번호인 것으로 나왔는데, 그 유통기한 60일은 위 2015. 3. 20.경 이전에 이미 경과한 상태였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방송보도에 ① 내용을 포함시켰다.

○ 그러나 원고는 위 개체 식별번호가 틀리게 표시된 것일 뿐 소고기의 유통기한

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B에게 소고기 거래 장부를 제시하였고, B가 이 사건 식당 밖에 있던 소고기 포장상자에서 확인한 유통기한은 아직 경과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식당에서 판매되는 채소의 포장지 라벨에도 정상적인 경우라면 표시되어 있지 않을 한우 개체 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취재 당시에도 B가 구입한 소고기의 포장지 라벨에 표시된 한우 개체 식별번호가 잘못 표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B는 개체 식별번호에 의하여 검색된 유통기한이 맞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증한 바 없고, 원고가 반대증거로 제시한 자료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 위 2)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취재 당시 C 등 경찰관들이 B 등 피고 측 취재진과 동행하였다. 그런데 B 등은 동행한 경찰관들이 이 사건 식당의 냉장고를 조사할 때도 이에 참여하거나 이를 취재하지 않았고, 이후 위 경찰관들 또는 △△중부경찰서 측에 이 사건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C 등 경찰관들은 이 사건 취재 당시 B 등과 동행하였으므로 B가 위 경찰관들에게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수사 경과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B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취재한 것은 2015. 3. 20.이었고 이 사건 방송보도는 2015. 4. 17.경 이루어졌는데, B는 이 사건 방송보도 전에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고기 판매의 점에 관하여 적발·입건되었는지 여부를 경찰에 확인·취재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조사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이 사건 방송보도를 제작하였고, 피고는 이를 그대로 방영하였다.

(나) ② 내용에 관하여

갑 2, 4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을 1, 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이 사건 식당 영업에 대한 △△시청 축산행정팀 담당자의 단속 경위, 감사의 공소 제기 및 제1심에서의 유죄 판결, 항소심 판결의 구체적 판단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이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정육식당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취재 당시 △△시청 축산행정팀 담당자는 B 등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식당의 영업형태를 보고 원고에게 축산물 판매업 신고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인 이) 오늘 신고를 하러 갔다’라는 변명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취재 당

- 시 B 뿐 아니라 원고와 △△시청 축산행정팀 담당자도 이 사건 식당이 축산물 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영업 형태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검사는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축산물 판매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원고를 기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이 사건 취재 당시 이 사건 식당은 고기를 판매하는 진열대와 고기를 구워 먹는 식당이 구분되어 있고, 진열대에 진열된 고기는 소포장되어 가격 등 표시가 붙어 있었으며, 이 사건 식당에서는 상추 등의 상차림 비용을 별도로 받았고,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이 사건 식당을 홍보한 글에서는 ‘고기를 사 가신 후 10분이 지나면 교환 및 환불이 안 됩니다’라고 기재된 안내문을 찍은 사진이 게재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식당의 상호 또한 ‘□□□□□□’이었으므로, 이 사건 식당은 외관상의 영업 형태가 축산물 판매업과 일반 식당을 함께 영업하는 ‘정육 식당’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항소심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식당의 영업 형태에 더하여, “원고가 단속 당일인 2015. 4. 6. △△시청에 이 사건 식당의 식육판매점 신고를 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신고서가 반려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던 것은 아닌 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D가 이 사건 식당을 이용하기 위하여 방문한 손님 외에 일반인에게 고기를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방송보도 중 ① 내용을 보도한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방송보도 중 ② 내용을 보도한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는 해당하나 그 위법성이 조각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방송보도 중 ② 내용 보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매출이 감소함으로써 이를 폐업하게 되어, 이 사건 식당 개업을 위

하여 지출한 인테리어비용 148,984,721원, 조명·전기공사 45,000,000원, 탁자와 의자 18,000,000원 합계 211,984,721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원고는 이 사건 식당 영업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이 120,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하게 됨으로써 2015. 5.경 F로부터 35,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시설 전부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시설 비용 211,984,721원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에서 F로부터 지급받은 35,000,000원을 공제한 296,984,721원이다.

2)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손해의 발생 및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2517 판결 등 참조).

갑 2,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방송보도 행위와 원고의 이 사건 식당 폐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0호증의5, 을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을 F에게 매도한 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5,000만 원 및 F가 이 사건 식당 시설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XXX' 식당의 이익의 50%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식당의 이 사건 방송보도 전 10일간 매출액과 이 사건 방송보도 이후 10일간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이 사건 방송보도 이후 10일간 매출액이 이 사건 방송보도 전 10일간 매출액에 비하여 1일 평균 85,264원 감소한데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2)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나 신용도가 저하되고 명예가 실추됨으로써 그 사업수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그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방송보도를 하게 된 경위, 보도의 형식, 내용, 표현방법, 이 사건 방송보도 중 허위부분이 차지하는 정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가 이 사건 방송보도 당시 사실확인의 노력을 어느 정도로 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사회적 지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보도일인 2015. 4.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대상기사 생략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8가합3165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나2038346 판결(확정)

언론인은 공인으로서 자신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 공개토론을 감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초상 보도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사실관계]

피고는 2017년 12월 12일자 <PD수첩>에서 ‘국정원 문건’에 ‘PD수첩’ 작가 전면 교체라는 내용이 존재하였고 그 내용대로 원고가 실행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거나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며, 공인으로서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 또한 원고와 보도내용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소 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불성립결정된 바 있다(2017서울조정2293·2294).

[판결요지]

□ 원고의 초상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오랫동안 피고에 근무한 언론인으로서 공인으로 볼 수 있고, 피고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문제제기를 허용하고 공개토론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 원고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8가합31651	정정보도 등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6. 20.
			2018.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 서두 혹은 말미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원래의 프로그램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게 하라.
2. 만약 피고가 위 1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이행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MBC TV’를 방영하는 지상파 방송사이고, 원고는 1984년 교양PD로 입사한 이후 MBC

시사제작국 국장, 경인 MBC 지사장, MBC 편성제작본부 본부장을 거쳐 2018. 1.경 목포 MBC 사장에서 해임될 때까지 피고에 근무하였다.

나. 방송 보도 내용

피고는 2017. 12. 12. 방송된 ‘PD수첩’ 프로그램에서 “MBC 몰락, 7년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보도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25. 당시 ‘PD수첩’ 프리랜서 작가들을 교체할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직원과 만나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해 원고가 마치 국정원의 하수인으로 공모하여 작가들을 교체하고 그 대가로 승진을 한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면서, 일반인인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담긴 사진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아울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3. 판단

가.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사실적시 여부

이 사건 보도 내용에 원고가 국정원과 공모하여 ‘PD수첩’ 프리랜서 작가들을 교체하고 그 대가로 승진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보도 내용 중 원고가 국정원과 공모하여 ‘PD수첩’ 프리랜서 작가들을 교체하고 그 대가로 승진을 한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① 2012. 7. ‘PD수첩’ 작가 교체 당시 그 이유가 “제작진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는 원고의 녹취음성 장면 뒤에 “‘PD수첩’ 등 좌편향 프로 제작진의 경우 프리랜서 작가외부 출연자까지 전면 교체”라고 쓰인, 2010. 3. 2.에 작성되었다는 소위 ‘국정원 문건’을 이어 붙여 편집 구성하면서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PD수첩’ 작가 교체 역시 국정원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라는 내레이션, ② “A 국장은 편성제작본부장을 거쳐 목포 MBC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라는 내레이션 다음에 담당 PD가 원고와 인터뷰를 시도하면서 “‘PD수첩’ 작가들 6명을 한꺼번에 해고하셨는데 그것도 혹시 국정원과 공모하신 겁니까? 거의 7년 가까이 MBC의 주요 보

직을 맡고 계신데”라는 질문, ③ “국정원과 그 공범자들이 벌인 범죄가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정원 문건이 나온 2010년 이후 7년 동안 악역을 맡았던 인사들은 대부분 승진을 거듭하며 영달을 누렸습니다.”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원고의 사진과 이력을 보도한 부분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부분만으로 ‘원고가 국정원과 공모하여 ‘PD수첩’ 프리랜서 작가들을 교체하고 그 대가로 승진을 한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① 이 사건 보도 내용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국정원 문건’에 ‘PD수첩’ 작가 전면 교체라는 내용이 존재하였고 그 내용대로 원고에 의해 실행되었다는 것이다.
- ② 이에 피고 제작진은 원고를 만나 당시 국정원 직원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 ‘PD수첩’ 작가 교체를 국정원과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하며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인터뷰를 거부하였고, 제작진의 문제제기에 대해 모두 부정한다는 내용의 원고의 답변 또한 그대로 보도하였다.
- ③ “국정원과 그 공범자들이 벌인 범죄가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라는 내레이션은, 당시 피고 전 경영진들이 국정원 문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과정에서 B 사장 재임 당시 기획조정실장과 보도본부장을 지낸 C가 국정원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보도된 것을 언급하며 나온 것으로서 위 내레이션은 B 사장 등 검찰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④ “국정원 문건이 나온 2010년 이후 7년 동안 악역을 맡았던 인사들은 대부분 승진을 거듭하며 영달을 누렸습니다.”라는 표현과 원고의 사진과 이력을 보도한 부분은 원고가 국정원 문건의 내용 중 일부를 실행한 사람으로서 전임 사장 체제에서 시사제작국장, 편성제작본부장, 목포 MBC 사장 등 영전과 승진을 거듭한 사실을 근거로 한 제작진의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2)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가사 이 사건 보도 내용에 원고가 국정원과 공모한 피고 전 경영진들의 지시에 따르거나 그들의 의사에 동조하여 ‘PD수첩’ 프리랜서 작가들을 교체하고 그 대가로 승진을 하였다는 표현이 간접적으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0. 3. 2. 작성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이라는 제목의 국정원 문건이 존재하고, 위 문건이 당시 피고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이던 D, 당시 피고의 신임 사장 B, 그리고 앞서 본 C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위 문건의 내용 중 하나인 ‘PD수첩’ 프리랜서 작가 전면 교체를 원고가 실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적시사실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보도에 적시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실은 이 사건 보도에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거나 설령 적시되었다고 보더라도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보도에 적시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이 사건 보도에 적시되었고 그것이 허위라고 보더라도 피고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① 이 사건 보도는 국정원 문건이 발견되어 지난 정권에 의해 공영방송인 MBC를 장악하려는 방안이 실행된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과정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MBC 구성원들의 반성적 성찰을 보여줌으로서 공영방송 나아가 언론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양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② 국정원 문건이 작성되고 그 내용 대부분이 실행된 것은 사실이고, 위 문건이 당시 피고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이던 D, 당시 피고의 신임 사장 B, 그리고 C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결국 B는 이와 관련하여 불구속 기소되었다.
- ③ 국정원 문건에는 ‘PD수첩’ 등 좌편향 프로 제작진의 경우 프리랜서 작가 전면 교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원고는 MBC 파업 이후 ‘제작진 분위기 쇄신’을 이유로 ‘PD수첩’ 작가들 모두를 교체하였다.

2) 초상권침해 부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인격권의 하나로서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 원고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국정원 문건이 발견되어 지난 정권에 의해 공영방송인 MBC를 장악하려는 방안이 실행된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과정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MBC 구성원들의 반성적 성찰을 보여줌으로서 공영방송 나아가 언론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양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
- ② 원고는 오랫동안 피고에 근무한 언론인으로서 공인으로 볼 수 있고, 피고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문제제기를 허용하고 공개토론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2〉 방송내용

시 간	비 디 오	오 디 오
갑 제1호증 영상 기준	자막 <PD수첩>작가 전원해고 2012.7.25. 작가들 모습 E <PD수첩>작가 국장실 간판 + A 얼굴	급기야 피디수첩 작가들까지 해고됐습니다. 길게는 12년 짧게는 4,5년 이상 피디수첩을 집필해 온 작가를 한꺼번에 전원 해고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뒤쪽이 17년 동안 제 일터였습니다.” A 당시 시사교양국장은 작가들을 해고한 사유가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작가를 교체하게 된 이유는 제작진 분위기 쇄신” “기존 작가들이 있으면 분위기 쇄신하는 데에 뭐가 해가 되나요?”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니까” “재고를 요청 드리고 싶어요. 재고를 요청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은 재고가 안 돼. 결정된 사항이야” “저희들은 끝까지 재고를 요청 드릴 생각입니다.” “복귀 투쟁을 하겠다는 거야?”
1분17초	구성작가 규탄대회 국정원문건 좌편향 프로 제작진의 경우	방송사상 초유의 사태에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라디오 등 전체 장르의 방송작가들이 집회를 열고 합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피디수첩 작가교체 역시 국정원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시 간	비 디 오	오 디 오
2분20초	프리랜서작가, 외부출연자까지 전면교체 F 전 이사장 한국방송작가협회	“어떻게 국가권력에 의해서 방송사 내부인원도 아닌 비정규직 작가들까지 일시에 그 만두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분노. 그 다음에는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나? 작가교체까지 신경을 쓸 정도로 국가정보기관이 이렇게 할 일이 없나? 엄청나게 꼼꼼하시군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하면 권력 에 대해서 비판을 한 언론에 대해서 그만큼 공포를 느꼈다는 뜻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왜 언론이 살아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반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포MBC 외경	A 국장은 편성제작본부장을 거쳐 목포MBC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목포MBC 복도, 계단, 현관	“사장님, A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국정원 직원 몇 번 만나셨습니까? 국정원 직원 만난 적 없으십니까? “인터뷰 할 생각 없습니다.” ”
	A와 인터뷰 시도하는 G PD	“피디수첩 작가들 6명을 한꺼번에 해고하셨는데 그것도 혹시 국정원과 공모하신 겁니 까? 거의 7년 가까이 MBC의 주요 보직을 맡고 계신데” “비켜야지” “피디들 작가들 다 쫓아내고 지방사 사장까지 오셨는데” “폭력행위예요, 이렇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해 주세요. 피디수첩 피디도 하셨잖아 요.”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 모든 주장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지 금 가야돼요, 바쁩니다.” “피디수첩 피디생활 오래 하셨는데”
	〈PD수첩〉 자료화면	제작진 교체, 방송소재 통제 등의 압력을 받으면서 피디수첩은 위축됐습니다. “주사 한 방이면 당신도 젊어질 수 있다.”
	CG 아이템 분석	국정원 문건이 작성된 이듬해인 2011년을 기점으로 피디수첩의 방송 소재를 비교해 봤습니다. 프로그램이 연성화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H 교수 □□대학교 언론정보학과	“2011년 말까지는 MB정부 시절이긴 했지만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같은 정책 검증 ‘검사와 스폰서’, ‘총리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처럼 권력 오남용 문제를 자주 다뤘습니다. (2012년)파업 이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다뤄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시민 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현안을 피디수첩이 담아내지 못하면서 관심에서 멀어지 게 된 거죠.”
	CG 국민이 가장 믿는 제보 프로그램	국민이 가장 믿는 제보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JTBC 뉴스룸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 았고 피디수첩은 신뢰를 크게 잃었습니다.
	자막 MBC 아카데미 서울시 송파구	국정원의 또 다른 계획이 201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MBC뉴스 앵커를 하던 중 파업 에 동참했던 I 기자 파업이 끝난 후 재교육 발령을 받았습니다.
	자막 I 전 MBC뉴스데스크 앵커 강의실에서 PD와 I 대화	“저는 말레이 공에게 이런 말 해 주고 싶어요. 자꾸 도망 다니지 말레이.” “여기 혹시 기억나세요?” “아이고, 기억나죠. 여기가 지역 주민이나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아카데미이기 는 하지만 저희들은 아우슈비츠라고 불렀잖아요. 유배지라고 그랬고”

시 간	비 디 오	오 디 오
	교육생 사진들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은 3개월에서 5개월까지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각자 자기분야에서 최고라는 평을 받던 기자와 피디 아나운서들은 허접한 내용의 재교육을 받으며 모멸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I 전 MBC뉴스데스크 앵커	“참 비참하더라고요. 저만 그랬겠습니까? 그때 저는 주말 앵커를 하다가 파업을 해서 가끔가다 제 얼굴을 알아보는 것 같아서 그때만 해도 모자를 뒤집어쓰고 다녔거든요.”
	국정원문건 좌편향 간부진과 기자, PD들을 격리시킬 수 있는 외곽조직 신설	이러한 조치 역시 국정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기자, 피디들을 격리할 외곽 조직을 새로 만들라고 주문한 겁니다.
	자막 MBC 스케이트장 J 모습	실제로 재교육을 받은 피디와 기자 아나운서 등은 수도권 여러 곳에 마련된 별도 조직으로 분산 수용됐습니다. 피디수첩을 제작하던 J 피디는 겨울엔 스케이트장에 배치돼 눈을 치우고 동전을 바꿔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J MBC시사고양PD	“그때 (스케이트장에) PD 3명, 기자 3명, 아나운서 3명 이렇게”
	K MBC아나운서	“스케이트장 관리도 합니다. 용인 세트장 발령 받았고 그 다음에 사회공헌실에 갔다가 아나운서국에 잠시 복귀했다가 다시 신사업개발센터로 발령 났습니다.”
	자막 MBC아나운서 27명, 부당노동행위 폭로 기자회견 2017.8.22.	보복성 인사와 업무배제가 지속되면서 MBC의 조직이 붕괴됐습니다. 아나운서국의 경우 전체 선 명 가운데 11명이 부당 전보 당했고, 12명이 MBC를 떠났습니다.
	L MBC아나운서	“그 다음 차례는 누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다음은 나일까, 아니면 내 옆 자리에 있는 선배님일까”
	국정원문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2010.3.2.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기획한 MBC 장악 시나리오가 MBC 경영진들에 의해 실행되면서 공영방송 MBC는 급격히 몰락했습니다. 그것은 국가권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M 대기자/CBS	“MB 시대에 들어서서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곳이 MBC를 건드리기 시작한 것은 엄청난 민주주의의 퇴행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문건을) 가지고 언론을 통제하고 그 언론 통제를 바탕으로 집권연장을 더 수월하게 하는 그 커다란 구도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전임경영진 모습	현재 MBC 전 경영진들은 국정원 문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정원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N 전MBC부사장 모습	“없습니다.” “국정원 직원 만난 적 있으세요?” “문화방송에서는요...”
	B 전MBC사장	“제가 문건을 본 적도, 들은 적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O 원장이 혼자 만든 거란 말씀이세요?”

시 간	비 디 오	오 디 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언론사 기자이고 PD이지 않습니까?” “본 적이 없는 데도 일어난 건가요?” “본 적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 관계자가 있으면 저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국정원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실입니다.”
	C MBC C&I 사장	최근 B 사장 당시 기획조정실장과 보도본부장을 지낸 C 씨가 국정원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8분37초	자막 C “국정원과 얘기한 내용 모두 사장에게 보고했다”	“지시는 어떻게 받으신 건가요?”
	C 걷는 모습	국정원과 그 공범자들이 벌인 범죄가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부다 혐의를 부인하셨나요?”
8분47초	CG B 사진과 이력 P, N 사진과 이력 C, Q 사진과 이력 R 사진과 이력 A 사진과 이력 S 사진과 이력	국정원 문건이 나온 2010년 이후 7년 동안 악역을 맡았던 인사들은 대부분 승진을 거듭하며 영달을 누렸습니다.
	M 대기자/CBS	“거대한 카르텔을 힘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자기들과 지역적 연고를 갖고 있는 사람, 학교 연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채워 넣는 거죠”

2심 판결문

사 건 2018나2038346 정정보도 등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제 1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8가합31651 판결
변 론 종 결 2018. 9. 7.
판 결 선 고 2018. 10.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 서두 혹은 말미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원래의 프로그램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게 하라. 만약 피고가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항 말미의 [인정근거]에 을 제5호증의 1, 2의 기재를 추가함
- 제2항의 제목을 “원고의 주장의 요지”로, 본문을 아래와 같이 고침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원고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PD수첩 작가들을 교체하고 그 대가로 승진하여 영달을 누렸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 피고가 일반인인 원고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내보냄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허위사실의 보도에 따른 [별지 1] 정정보도문과 같은 정정보도와 그 간접강제를 구함과 아울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 제3의 가. 1)항 본문을 아래와 같이 고침
 - 가) 텔레비전 방송보도에서 적시된 사실이 무엇인지 확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고,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나) 이 사건 방송을 보면, 그 초반부에 2012년 당시 시사교양제작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의 국장실과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원고가 PD수첩 작가들을 해고한 이유가 제작진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는 음성을 들려주는 장면이 이어, “방송작가들이 집회를 열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피디수첩 작가교체 역시 국정원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라는 내레이션이 나온 다음, 제작진이 원고를 만나 당시 국정원 직원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 국정원과 PD수첩 작가 교체를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하고, 이에 원고가 인터뷰를 거부하거나 제작진이 제기하는 문제를 모두 부정하는 취지로 답변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방송중반부에 배경화면이 전임 경영진들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현재 MBC 전 경영진들은 국정원 문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이 나오고, 전임 경영진 일부에게 국정원 직원을 만난 적이 있는지 인터뷰를 한 다음, B가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기획조정실장과 보도본부장을 지낸 C가 국정원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보도된 것을 언급하면서, “국정원과 그 공범자들이 벌인 범죄가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라는 내레이션이 나온다. 그 에 이어지는 방송 후반부에 다시 배경화면이 B, P, N 등 전임 경영진들의 사진과 약력으로 순차로 바뀌면서, “국정원 문건이 나온 2010년 이후 7년 동안 악역을 맡았던 인사들은 대부분 승진을 거듭하며 영달을 누렸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이 나오는데, 그 뒤 배경화면으로 원고의 사진과 약력을 보여준다.
 - 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방송에 원고가 국정원과 공모하여 PD수첩 프리랜서 작가들을 교체하고 그 대가로 승진을 하였음을

의미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고, ② 이 사건 방송에서 PD수첩 작가의 해고가 국정원의 계획이라는 언급 뒤에 원고가 국정원과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는 인터뷰 장면이 있는 점, 전 경영진들의 범죄 관련 내레이션은 그들이 국정원 문건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데 C를 통하여 국정원의 공범자임이 드러났다는 내용이지 원고가 그들 중 하나라는 사실까지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거듭된 승진 관련 부분은 국정원 문건의 실행 관련 악역을 맡았던 인사들이 거듭 승진하였고 원고도 그 인사들 중 하나라는 내용인 점, 악역을 맡았다거나 영달을 누렸다는 표현은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국정원의 계획에 따라 PD수첩 작가들을 해고한 사실, 전 경영진들이 국정원의 공범자로서 국정원 문건의 실행 관련 범죄를 저지른 뒤 승진을 거듭하였다는 사실과 원고가 PD수첩 작가 해고라는 역할을 맡은 뒤 승진을 거듭한 사실을 넘어서, 원고가 국정원과 PD수첩 작가들의 해고를 공모한 사실까지 적시되었다거나 또는 원고가 그 대가로 승진하여 영달을 누린 사실까지 보도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제3의 가. 2)항 본문 제1항 앞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함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원고가 국정원과의 공모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국정원의 계획에 따라 PD수첩 작가들을 해고한 뒤 승진을 거듭한 사실을 적시하였는데,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3의 나. 1)항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였음을 전제로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도록 하는 등의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공범자들이 벌인 범죄”, “악역을 맡은 인사” 또는 “영달을 누렸다”는 모욕적 표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가 위법하다고 다투나, 먼저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보도한 내용과 공적인 사안에 관하여 의견표명의 자유가 비교적 넓게 허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악역을 맡은 인사” 또는 “영달을 누렸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1〉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2〉 대상기사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가합17052, 2016가합17069(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13. 선고 2017나2057722, 2017나2057739(병합) 판결

발언 일시나 장소 등 지엽말단적 부분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워크숍에서 “천황 폐하 만세”라고 발언했다는 전체 보도의 진실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아시아경제

[사실관계]

피고는 2016년 6월 23일자 <아시아경제> 지면과 <아시아경제닷컴> 사이트에 ‘한국□□□□□연구원 ○○○○○○ ○○센터장인 원고가 한국□□□□□연구원 주최로 열린 워크숍에 참석하여 “천황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쳤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보도가 원고를 해하려는 의도로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무조정실의 진상조사에서 원고의 “천황폐하 만세” 발언을 인정하는 제보자가 있었으며, 취재기자가 원고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해당 발언 여부에 대해 질문했을 때 원고가 명확히 부정하지 않고, 음주상태였음을 인정한 점을 종합하면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번복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상고 역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며 위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018다262479, 2018다262486(병합) 판결).

한편, 원고는 소 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후속보도)이 내려졌으나 원고 측의 이의신청으로 자동 소 제기된 바 있다(2016서울조정926, 2016서울조정927(병합)).

[판결요지]

□ 이 사건 기사 내용의 입증책임의 전환여부에 대한 판단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의 경우에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이 사건과 같이 기사 내용의 수정이 있거나, 일시와 장소를 추측하여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최초 보도부터 원고가 “천황폐하 만세”라고 건배사를 한 장소가 워크숍이 진행된 곳이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판단

전달자를 통해 제보자와 피고 소속 기자 사이에 이루어진 메시지를 통한 의사소통과정을 보면 원고를 해하려는 의도로 악의적으로 이 사건 보도내용을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무조정실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면분석,

일대일 문답조사, 무기명 설문조사를 차례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무기명 설문조사에서 참석자 가운데 2명이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는 전달자가 피고 소속 기자에게 2명의 내부제보자가 있다고 한 것과 일치하는 점, 원고가 피고 소속 기자 B와 전화통화한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 따르면 '천황폐하 만세 구호까지 나와 워크숍 참석자들이 당황했다던데?'라는 기자의 질문에 원고가 명확하게 부정하는 답변을 하지 않은 점, 국무조정실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징계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한국□□□□□□연구원 소속 ○○○○○○○○센터장인 원고가 한국□□□□□□연구원 주최로 열린 워크숍에 참석하여 "천황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쳤다.'는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6가합17052 정정 청구 2016가합17069(병합) 정정 청구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아시아경제
변 론 종 결		2017. 8. 16.
판 결 선 고		2017. 9. 8.

주 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 가. 아시아경제 1면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내용은 별지3 표 순번 1 기재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로 하고,
 - 나. 아시아경제 인터넷신문 홈페이지(<http://www.asiae.co.kr/news/>)의 초기 화면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통상의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로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위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이 통상의 기사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별지3 표 기재 각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위 각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2.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7. 9.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아시아경제 1면에 상자기사로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덕 활자로, 내용은 18급 명조 활자로 3단에 걸쳐 게재하고, 아시아경제 인터넷신문 홈페이지(<http://www.asiae.co.kr/news/>)의 초기 화면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며, 48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별지3 표 기재 각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각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보도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한국□□□□□연구원 △△△△연구본부 ○○○○○○○○센터장이었다가 2016. 7. 13. 부터 ○○연구본부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고는 ‘아시아경제’라는 일간지를 발행하고 아시아경제 인터넷신문 홈페이지(<http://www.asiae.co.kr/news/>)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 피고 소속 기자 B, C는 2016. 6. 23. “정부 연구센터장이 ‘천황폐하 만세’”라는 제목으로 “한국□□□□□연구원 ○○○○○○○○센터장인 원고가 한국□□□□□연구원 주최로 열린 워크숍에 참석하여 ‘천황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쳤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일간지 아시아경제 1면 및 아시아경제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8.까지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여 일간지 아시아경제 및 아시아경제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4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8, 16 내지 20, 32, 36호증(가치번호 있는 것은 각 가치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원고가 한국□□□□□연구원 주최로 열린 워크숍(이하 ‘이 사건 워크숍’이라 한다)에 참석하여 ‘천황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쳤다.”라는 내용(이하 ‘이 사건 보도 내용’이라 한다)의 허위사실을 보도하였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바, 피고는 별지2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갑 7, 10, 11, 22, 30, 45, 46호증, 을 1 내지 3,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증인 E, F,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워크숍은 원고가 센터장으로 있는 한국□□□□□연구원 △△△△연구본부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D가 센터장으로 있는 한국□□□□□연구원 △△△△연구본부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공동으로 개최한 것인데, 이 사건 워크숍에 참석한 ○○○○센터 소속인 증인 E, F는 “원고가 이 사건 워크숍에서 건배사로 ‘천황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워크숍에 참석한 ○○○○센터 소속의 다른 직원 19명과 ☆☆☆☆센터 소속 직원 18명도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이 사건 워크숍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센터 소속 직원 24명과 ☆☆☆☆센터 소속 직원 18명이 참석하였는데,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최초로 보도된 직후에 한국□□□□□연구원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2016. 6. 23. 원고 등 직원 9명에 대한 1차 조사를, 2016. 6. 24. 2차로 이 사건 워크숍에 참석한 직원 중 31명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였고, 국무조정실은 위 자체 진상조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워크숍 참석자들을 비롯하여 환경 관련 외부기관 직원, 자체 진상조사단 등 71명을 대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워크숍에서 건배사로 ‘천황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쳤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면분석, 일대일 문답조사, 무기명 설문조사를 차례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서면분석과 일대일 문답조사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워크숍에서 건배사로 ‘천황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쳤다는 것을 들었다는 답변이 없었으나, 무기명 설문조사에서는 2명이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건배사로서 공개적으로 ‘천황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쳤다면 이 사건 워크숍 참석자의 대부분이 해당 발언을 들었을 것인데, 이 사건 워크숍에 참석한 40여 명의 직원들 중에는 원고가 센터장으로 있는 ○○○○센터 소속 직원들뿐 아니라 ☆☆☆☆센터 소속 직원들도 다수 있었음에도, 단 2명만이 무기명 설문조사에서 해당 발언을 들었다고 답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증인 E,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무기명 설문조사 중 이 사건 보도 내용과 관련된 설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자세히 읽고 고민한 다음 답변하였다는 것인바, 위 2명이 착오 등으로 잘못 답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무기명 설문조사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2명의 답변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에 관하여 취재를 한 피고 소속 기자 C, B가 이 사건 워크숍에 참석한 ○○○○센터 소속 직원 2명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 B가 위 2명의 제보자를 직접 만나지는 않은 점,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C가 위 2명의 제보자와 직접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C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제3자가 위 2명의 제보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C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C는 위 2명의 제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자신의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없어서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와 위 2명의 제보자가 취재원 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보도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대화를 나누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명의 제보자는 모두 C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제3자와 함께 한 모임에서 이 사건 보도 내용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위 제3자가 이를 듣고서 위 2명의 제보자를 C에게 소개하였는바, 위 2명의 제보자를 독립된 복수의 제보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보도 내용은 40여 명이 참석한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난 것이었음에도 C는 위 2명 이외의 다른 워크숍 참석자들에게는 이 사건 보도 내용에 관하여 확인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명의 제보 내용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워크숍에서 ‘천황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워크숍에 참석한 증인 E, F의 각 증언과 그 밖의 직원들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워크숍 당시 “○○센터 만세” 또는 “A 만세”, “☆☆센터 만세” 또는 “D 만세”라는 구호가 나왔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도 이 사건 워크숍 개최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다.”, “원고의 할아버지가 일제 강점기에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일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무기명 설문조사에서 원고가 ‘천황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쳤다고 답변한 2명 또는 C에게 연락한 제보자 2명은 착오에 의하여 진술하였거나 C에게 해당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이 사건 각 기사 중에는 원고가 2016. 6. 23. 피고 소속 기자 B와 전화통화를 할 당시 ‘천황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친 사실을 원고 스스로 인정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다수 존재하고, 증인 C도 “통상적인 경우 비리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제보된 사람이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비리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원고가 B와 전화통화 당시 일본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을 인정하면서 송구스럽다고 사과까지 하였기 때문에 당사자가 맞다고 최종 확인을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소속 기자 B와 전화통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을 3호증)에 의하면, B는 원고에게 ‘2016. 1. 14.경 ○○도에서 개최된 이 사건 워크숍’이 아닌 ‘2016. 3. 내지 4.경 □□시에서 다른 환경단체와 개최한 워크숍’(이하 ‘□□시 워크숍’이라 한다)에 관하여 질문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 원고가 자신이 친일파라고 인정하는 말을 하였는지와 ‘천황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도 모두 이 사건 워크숍이 아닌 □□시 워크숍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워크숍에서 ‘천황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하게 질문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가 □□시 워크숍에서 ‘천황폐하 만세’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B는 “참석자들이 이게 보면은 무슨 뭐 거기서 천황폐하 만세 이런 구호까지 나와 가지고 되게 당황했다고 하던데, 그건 약간”이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음~ 아휴, 제가 왜, 제가 왜요?”라고 답변하였고, 이어서 B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농담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잘못 듣거나 이랬을 수 있겠네요?”라고 질문하자, 원고는 “그럴 수도 있, 예,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좀 많이 와전된 것 같은데요.”라고 답변하였는바, B의 질문 자체가 애매해서 원고의 답변 태도 또한 완곡하기는 하나 원고의 위 답변은 ‘천황폐하 만세’라는 발언을 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 국무조정실에서 2016. 6. 24.부터 2016. 7. 25.까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된 특정감사 결과를 기재한 ‘특정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이하 ‘감사결과서’라 한다)에는, “①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 직원 2명이 원고가 건배사로 ‘천황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치는 것을 들었다고 답변한 점, ② 원고가 피고 소속 기자 B와 전화통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을 3호증)에 따르면 ‘천황폐하 만세 구호까지 나와 워크숍 참석자들이 당황했다던데?’라는 기자의 질문에 원고가 명확하게 부정하는 답변을 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워크숍 회식 당일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취했었다고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건배사로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외쳤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무기명 설문조사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2명의 답변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② 원고와 B 사이의 전화통화 당시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워크숍에서 ‘천황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하게 질문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천황폐하 만세’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지도 않았다. 또한, ③ 원고가 이 사건 워크숍의 회식 장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관하여 원고는,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워크숍 회식 당일 평소 주량이 한 병에서 한 병 반 정도인데, 이 사건 워크숍 당일에는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을 뿐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취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음에도 감사결과서는 장시간의 조사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진술 내용을 왜곡하여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E, F는 “이 사건 워크숍 회식 장소가 많이 추웠고 안주가 부족했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평소보다 술을 적게 마셨다.”, “원고가 많이 취했던 것 같지는 않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신빙하기 어렵거나 불충분한 근거들을 이유로 원고가 건배사로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외쳤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감사결과서 자체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국무조정실은 감사결과서의 기초가 된 특정감사 사건 기록에 관한 이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하여 응하지 않고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워크숍의 개최 시기와 장소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기사 중 2016. 6. 23.자 각 기사(별지3 표 순번 1, 2 기재 각 기사를 의미한다)에서는 ‘최근 □□시’에서 개최되었다고 보도하였다가 2016. 6. 24.자 기사(별지3 표 순번 4 기재 기사를 의미한다)에서는 ‘2016. 1. 경 □□시’에서 개최되었다고 보도하였고, 2016. 6. 27.자 및 2016. 6. 28.자 각 기사(별지3 표 순번 7, 8 기재 각 기사를 의미한다)에서야 실제 이 사건 워크숍의 개최 시기와 장소인 ‘2016. 1.경 ○○도’에서 개최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C가 위 2명의 제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워크숍이 개최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에 관하여 질문하였으나 위 2명의 제보자는 그 사실까지 밝히면 자신들의 신원이 밝혀질 확률이 매우 높아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였고, 이에 C는 취재원 보호를 위하여 더 이상 그 점에 관하여 묻지 않았으며,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워크숍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유추하여 보도하였는데,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최초로 보도된 직후에 제보자 중 한 명이 C에게 연락하여 “한국□□□□□□연구원에서 제보자를 색출하겠다고 난리다.”, “그동안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여 그동안 이 사건 워크숍의 구체적인 일자와 장소를 자세히 제보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워크숍이 개최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그 일시와 장소를 수정하여 추가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C도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워크숍이 개최된 구체적인 일시와

다. 소결론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인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56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최초로 보도된 2016. 6.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1〉 정정보도문

제목 : 천황폐하 만세 발언 관련 정정보도문

본문 : 본지는 2016. 6. 23.경부터 2016. 6. 28.경까지 8차례에 걸쳐 한국□□□□□연구원(XXX)의 A ○○○○○○○○센터장이 XXX 주최로 열린 환경문제 관련 워크숍에 참석하여 “천황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쳤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가 XXX 주최로 열린 환경문제 관련 워크숍에 참석하여 “천황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법원의 판결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정정보도를 통하여 이를 바로잡습니다.

〈별지2〉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3~4〉 대상기사 생략

2심 판결문

사	건	2017나2057722 정정청구 2017나2057739(병합) 정정청구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아시아경제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가합17052, 17069(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8.
판 결 선 고		2018. 7.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아시아경제 1면에 상자기사로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덕 활자로, 내용은 18급 명조 활자로 3단에 걸쳐 게재하고, 아시아경제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http://www.asiae.co.kr/news/>)의 초기 화면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며, 48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별지2 표 기재 각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각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2.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보도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7. 9.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 ‘별지4’를 ‘별지3’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원고가 한국□□□□□연구원 주최로 열린 워크숍(이하 ‘이 사건 워크숍’이라 한다)에 참석하여 “천황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쳤다.’라는 내용(이하 ‘이 사건 보도 내용’이라 한다)의 사실을 보도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바, 피고는 별지1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참조).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등 참조).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또한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입증책임 전환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고,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의 경우에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2016. 6. 23.자 기사에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일시를 ‘최근’이라고 기재하여 그 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가 2016. 6. 24.자 기사에서 ‘1월’이라고 수정하였고, 2016. 6. 23.자 기사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시 워크숍’이라고 보도하였다가 2016. 6. 27.자 기사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 유력시 되는 곳이 ‘○○도’라고 수정하여 보도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보도 내용은 특정되지 아니한 일시와 장소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천황폐하 만세”라는 건배사를 했다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기사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천황폐하 만세”라는 건배사를 했다는 사실의 존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기사 내용의 수정이 있었거나, 일시와 장소를 추측하여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센터장으로 참가한 한국□□□□□연구원(XXX)이 주최한 워크숍에서 “천황폐하 만세”라는 건배사를 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는 2016. 1. 1.부터 2016. 7. 13.까지 ○○○○○○○○센터장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최초 보도부터 원고가 “천황폐하 만세”라고 건배사를 한 장소가 워크숍을 하던 곳이라고 특정하고 있고, 다만, 워크숍이 있던 구체적인 장소에 대하여 최초 보도 때에는 “□□시”로 보도되었으나 그로부터 4일이 지나 유력한 장소는 “○○도”라고 적시되었고, 그 이유가 제보자의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전달자를 통해 이 사건 보도내용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일시, 장소의 특징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천황폐하 만세”라는 건배사를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이 사건 기사의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갑 제7, 21, 30호증(이하 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센터장으로 참가한 한국□□□□□연구원(XXX)이 주최한 워크숍에서 “천황폐하 만세”라는 건배사를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워크숍에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있다.

그러나 갑 제10, 11, 16, 22, 37, 45, 46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8, 10 내지 12, 15, 1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의 소속 기자인 C가 비록 제보자를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전달자를 통해 원고가 참가한 워크숍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개략적인 내용을 전달 받았고, 그 전달과정 역시 제보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달자의 의사에 의해 위 C에게 전달된 것인 점, ② 전달자를 통해 제보자와 피고 소속 기자 사이에 이루어진 메시지를 통한 의사소통과정을 보면 원고를 해하려는 의도로 악의적으로 이 사건 보도내용을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이 최초로 보도된 직후 한국□□□□□연구원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2016. 6. 23. 원고 등 직원 9명에 대한 1차 조사를, 2016. 6. 24. 이 사건 워크숍에 참석한 직원 중 31명에 대한 2차 조사를 각 진행하였는데 국무조정실은 위 자체 진상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워크숍 참석자들을 비롯, 환경 관련 외부기관 직원, 자체 진상조사단 등 71명을 대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워크숍에서 건배사로 “천황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쳤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면분석, 일대일 문답조사, 무기명 설문조사를 차례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서면분석과 일대일 문답조사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워크숍에서 건배사로 “천황

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쳤다는 것을 들었다는 답변이 없었으나, 무기명 설문조사에서는 참석자 가운데 2명이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답변하였고, 이는 전달자가 피고 소속 기자에게 2명의 내부제보자가 있다고 한 것과 일치하는 점, ④ 국무조정실의 진상조사에서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 직원 2명이 원고가 건배사로 “천황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치는 것을 들었다고 답변한 점과 원고가 피고 소속 기자 B와 전화통화한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 따르면 ‘천황폐하 만세 구호까지 나와 워크숍 참석자들이 당황했다던데?’라는 기자의 질문에 원고가 명확하게 부정하는 답변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워크숍 회식 당일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취했었다고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건배사로 “천황폐하 만세”라는 구호를 외쳤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점, ⑤ 또한, 국무조정실의 진상조사에서 원고가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 ‘조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다녔으며, 친일파였다’고 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원고 본인도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⑥ 국무조정실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2016. 8. 23.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한국□□□□□연구원 소속 ○○○○○○○○센터장인 원고가 한국□□□□□연구원 주최로 열린 워크숍에 참석하여 “천황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쳤다.’는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 (2) 또한, 원고는 실제 “천황폐하 만세”라는 건배사가 있었던 것은 2016. 1.경 ○○도에서 있었던 워크숍이었음에도 이 사건 기사를 최초로 보도할 때는 워크숍 일시를 ‘최근’, 장소를 ‘□□시’로 한 것과 ‘건배사’로 “천황폐하 만세”라고 한 것은 그 구호를 ‘공개적’으로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는 워크숍이 끝난 후 식사자리에서 일부 인원이 있는 자리에서 그러한 구호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보도 내용은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볼 때 ‘원고가 ○○○○○○○으로 참가한 한국□□□□□연구원(XXX)이 주최한 워크숍에서 “천황폐하 만세”라는 건배사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므로 최초 보도 당시 그 일시나 장소가 사실과 달리 보도되었다 하더라도 후에 이루어진 후속 보도에서 정정이 이루어졌고, 또한 워크숍 일시나 장소는 이 사건 보도 내용에 있어 지엽말단적인 것이어서 그 부분에 진실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의 진실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일부 인원이 있었던 자리에서 “천황폐하 만세”라는 구호가 있었다는 것을 마치 워크숍에 참석한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건배사’를 하였다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중요부분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책연구기관의 센터장으로서 원고의 국가관, 도덕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이 사건 기사에 일부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5 내지 17,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소속 기자들은 제보자들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취재를 하지 않았으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토대로 제보자와 수차례 통화를 하고 관련정보를 얻기 위해 △△△△연구원에 대한 추가취재 및 국책연구기관 소관 상임위원 국회의원실과 공조취재를 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지속

적으로 후속취재를 이어간 점, ② 공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워크숍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친일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러한 사실이 이 사건 보도 후에 국무조정실의 진상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던 점, ③ 제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자에게 전달한 전달자가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피고 소속 기자들에게 ‘그분이 그때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여러 번 그랬대.’라고 표현하였는데 그 내용이 기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비추어 허위의 사실이 조작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사실 확인을 위해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 소속 기자 B가 ‘참석자들이 이게 보면은 무슨 뭐 거기서 천황폐하 만세 이런 구호까지 나와 가지고 되게 당황했다고 하던데.’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천황폐하 만세”라는 구호를 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부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설령 진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2~3〉 대상기사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가합504355 판결

신빙성이 낮은 SNS 게시물을 근거로 기사를 게재하면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도는 상당성이 없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외 1명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2016년 10월 21일 인터넷 〈한국일보〉 사이트와 자신이 운영하는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시인인 원고의 성폭력 의혹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원고는 기사 보도 이후 사과문을 게시함과 동시에 기사를 게재한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소속 기자 피고 B에게 보도내용에 대해 반론하였으나, 피고 B는 원고의 성폭력 의혹에 관한 내용을 담은 후속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 적시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가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조정성립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44051).

[판결요지]

- SNS 게시물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상당성을 결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SNS의 특성상 게시물 작성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 서버가 해외에 존재하여 작성자에 대한 추적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때문에 그곳에 등재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다고 평가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최초 기사를 인터넷상으로 처음 출고하기 이전까지 피해자로 기재된 여성들은 물론이고,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원고와도 아무런 전화 또는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 심지어 원고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 2후속기사 및 이 사건 사실, 이 사건 트윗과 포스팅을 추가하여 내보내는 등 오히려 관련 보도를 스스로 확대재생산한 점, 이 사건 익명 여성들에 대한 직접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이 보도를 강행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위 각 보도를 함에 있어 그 적시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문

사	건	2017가합504355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2. B
변론종결		2018. 6. 22.
판결선고		2018. 7. 1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가 관리하는 ‘인터넷 한국일보 (<http://hankookilbo.com/>)’의 초기 화면 우측 상단 주요 기사의 제목을 나열하는 부분에, 해당 기사 제목들과 동일한 글자 크기로 ‘A 시인 관련 정정보도문’이라는 표제어를 최초 등재 시로부터 72시간 연속하여 게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표제어를 클릭하면, 통상의 기사 본문에 쓰는 글자 크기로 [별지 1] 목록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하나의 페이지에 표시되도록 하라.

나. 위 72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별지 2-가] 내지 [별지 2-라] 표시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가 ‘인터넷 한국일보(<http://hankookilbo.com/>)’의 뉴스 기사 서버에 남아 있는 한,

- 1) [별지 2-가] 정정보도 청구 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별지 1] 목록 가.항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이 위 정정보도 청구 대상기사 본문과 동일한 글자 크기로 이어서 게재되도록 하고,
- 2) [별지 2-나] 정정보도 청구 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별지 1] 목록 나.항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이 위 정정보도 청구 대상기사 본문과 동일한 글자 크기로 이어서 게재되도록 하며,
- 3) [별지 2-다] 정정보도 청구 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별지 1] 목록 다.항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이 위 정정보도 청구 대상기사 본문과 동일한 글자 크기로 이어서 게재되도록 하고,
- 4) [별지 2-라] 정정보도 청구 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별지 1] 목록 라.항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이 위 정정보도 청구 대상기사 본문과 동일한 글자 크기로 이어서 게재되도록 하라.

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가 관리하는 각 사회관계망서비

스(SNS) 계정에 등재된 [별지 3] 목록 표시 각 게시물을 삭제하고, 위 삭제일로부터 30일간, 각 해당 계정에 통상의 글자 크기로 작성한 ‘전체공개’ 게시물로 [별지 4]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 또는 송신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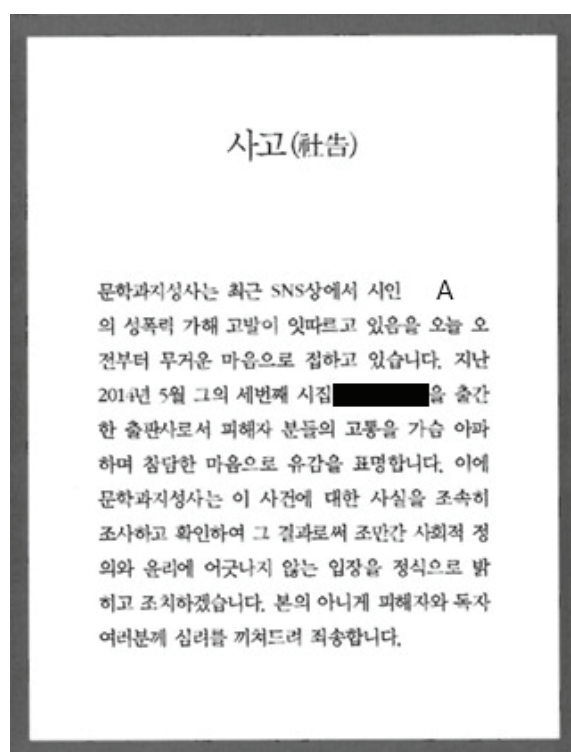
주문 제1의 다.항 및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 후 5일 이내에, 인터넷 한국일보(<http://hankookilbo.com/>) 초기 메인화면 우측 상단 기사 제목들을 나열한 란에 ‘A 시인 관련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여타 기사 제목들과 같은 크기로 14일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별지 5-가] 내지 [별지 5-마] 기재 각 정정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하고, [별지 2-가]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게재되는 동안에는 [별지 5-가] 기재 정정보도문을 함께 게재하고, [별지 2-나]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게재되는 동안에는 [별지 5-나] 기재 정정보도문을 함께 게재하고, [별지 2-다]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게재되는 동안에는 [별지 5-다] 기재 정정보도문을 함께 게재하고, [별지 2-라]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게재되는 동안에는 [별지 5-라] 기재 정정보도문을 함께 게재하고, [별지 2-마]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게재되는 동안에는 [별지 5-마] 기재 정정보도문을 함께 게재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01년경 문예지인 「○○○」에 시(詩)가 실리며 등단하여, 2014년 문학과지성사를 통하여 시집 「□□□□」을 출간한 유명 시인이다.
-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이하 ‘피고 한국일보’라 한다) 소속 기자인데, 2016. 10. 21.경 원고의 성폭력 의혹에 관하여 [별지 2-가] 기재와 같이, 「문화계 왜 이러나...이번엔 시인 상습 성추행 의혹」이라는 표제의 기사(이하 ‘이 사건 최초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한국일보는 같은 날 이 사건 최초 기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한국일보(<http://hankookilbo.com/>) 사이트에 게재하였다.

- 또한 피고 한국일보는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의 일종인 트위터 계정(<http://twitter.com/hankookilbo/>)에 [별지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시인(원고), 미성년자 등 상습 성추행 의혹 파문」이라는 제목을 달고 이 사건 최초기사의 링크를 본문에 넣은 게시물(이하 ‘이 사건 트윗’이라 한다)을 작성·게재하였다.
-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는 SNS의 일종인 페이스북 계정¹⁷⁾에도 [별지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제목으로, 이 사건 최초기사의 링크를 본문에 포함시킨 내용의 게시물(이하 ‘이 사건 포스팅’이라 한다)을 작성·게재하였다.
- 원고의 시집을 출간하였던 문학과지성사는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고(社告)’를 작성하여 자신이 운영 중인 SNS 계정에 등재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최초 기사가 보도된 다음날인 2016. 10. 22. 자신의 블로그에 ‘사죄드립니다. 저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께 사죄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의 부적절한 언행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죄문 이후로, 올해 예정되어 있던 산문집과 내후년에 출간 계획으로 작업하고 있는 시집 모두를 철회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SNS 계정을 닫겠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17) http://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265667963485979&id=157370204315766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 피고 B는 2016. 10. 23. 문단 내 성폭력 문제에 관한 후속기사로, [별지 2-나] 기재와 같이, 「C 팬 “반가워 안았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표제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1후속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한국일보는 같은 날 이 사건 제1후속 기사를 인터넷 한국일보(<http://hankookilbo.com/>) 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위 기사에는 이 사건 최초기사에서 제기된 원고의 성폭력 의혹에 관한 내용이 다시금 거론되었다.
-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일보는 [별지 2-다] 기재와 같이, 「[사설] 문화계 뼈아픈 자성 촉구하는 추악한 성추행 파문」이라는 표제의 사설(이하 ‘이 사건 사설’이라 한다)을 인터넷 한국일보(<http://hankookilbo.com/>) 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이 사건 사설에도 이 사건 최초기사에서 제기된 원고의 성폭력 의혹에 관한 내용이 그 의견 표명의 전제사실로 포함되었다.
- 피고 한국일보는 2016. 10. 27. [별지 2-라] 기재와 같이, 「[카드뉴스] “그는 우리를 ‘은교’라 불렀다”」라는 표제로, 대학생 인턴기자들이 기존에 보도된 다른 기사들(그 중에는 원고에 관한 ‘이 사건 최초기사’도 포함되어 있다)을 참고하여, 스마트폰 등에서 읽기 좋은 형식의 이른바 ‘카드뉴스’로 제작한 기사(이하 ‘이 사건 제2후속기사’라 한다)를 인터넷 한국일보(<http://hankookilbo.com/>) 사이트에 게재하였다.
- 피고 한국일보는 2017. 10. 5. [별지 2-마] 기재와 같이, 「A 시인(원고), 검찰서 성폭력 혐의 일부 ‘무혐의’ 처분」이라는 표제의 연합뉴스발 기사(이하 ‘이 사건 제3후속기사’라 한다)를 인터넷 한국일보(<http://hankookilbo.com/>) 사이트에 전재(통신사의 기사를 그대로 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매체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하였다. 이 사건 제3후속기사의 내용 중에는 아래와 같은 부분이 있다.

지난해 습작생 등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SNS를 통해 제기된 원고가 검찰에서 혐의를 일부 벗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3 내지 17, 7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최초 기사, 제1, 2후속기사, 사설, 트윗, 포스팅 등(이하 이를 모두 통틀어 이를 때는 ‘이 사건 각 보도들’이라 한다)은 모두 익명의 여성들이 SNS상에서 제기한 일방적인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된 허위의 기사이거나, 그 허위의 기사가 진실하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서 이뤄진 후속 기사, 사설 등으로서, 원고가 여성 작가 지망생들에게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가하였다는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보도이다.

또한 이 사건 제3후속기사의 경우, 원고가 실제로 고소를 당한 범위 내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성폭력 관련 혐의를 ‘모두’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혐의를 벗었다는 취지로 표현함으로써, 원고가 여전히 성폭력 관련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같이 묘사하였다.

따라서 피고 한국일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로 정한 정정보도 의무로서, 또는 원고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인터넷 한국일보 홈페이지 첫 화면에 원고 관련 정정보도문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게재하고, 그 링크를 클릭하면 [별지 5-가] 내지 [별지 5-마] 기재 정정보도문이 모두 검색되도록 하며, SNS에 [별지 3] 목록과 같이 등재한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그 뒤로부터 30일 이상 [별지 4]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개연성 있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스스로 바로 잡지 아니하고, 오히려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한 후속보도를 계속하거나 SNS를 통해 그 기사 내용이 널리 알려지도록 함으로써, 원고를 ‘문단 권력을 이용한 파렴치한 성폭력범’으로 몰아가, 심대한 정신적 손해를 가하고, 시인으로서의 활동도 사실상 할 수 없게 만드는 등의 피해를 입혔으므로, 정신적 손해와 금전으로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원고가 문제 삼는 이 사건 각 보도들은 원고로부터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여성들이 SNS에 올린 글에 나타난 공통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모두 진실한 사실이다.

- ▷ 원고는 이 사건 최초 기사 보도 이전인 2016. 9. 22.자 한겨레신문에 스스로 ‘여성들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지랄을 떨었다.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아니었을까? 불특정의 여성에게 죽어버리겠다고 하여 달려온 여성과 잠자리를 한 적도 있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위 내용은 이 사건 익명 여성들이 제보한 피해내용과 행태가 거의 유사하다.
- ▷ 이 사건 최초 기사 보도 당시에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언행을 하였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잠잠해지자 돌연 피해자들에게 보복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피해자들이 사후에 피해사실을 반복한 것은 원고의 보복이 두려워서이지 피해 진술이 허위이기 때문이 아니다.
- ▷ 자신의 시를 보고 SNS 등을 통해 관심을 표명해오는 여성들에게 ‘시를 가르쳐 준다’거나 ‘다른 시인들과 어울릴 수 있게 해준다’는 등의 말로 피어내어, 조금 친해지면 여성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거나 술자리에서 성희롱을 하다가, 여성들을 상대로 ‘자살 소동’을 벌이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들로 하여금 반강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자신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행위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고, 다수의 피해 여성들이 비슷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설령 이 사건 각 보도들의 내용 중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도들을 문단 내 성폭력 실태를 규명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등의 공익적 목적에서 작성하거나 뉴스 사이트에 게재한 것으로서, 당시 SNS 등을 통하여 문단 내 성폭력 실태가 다수 고발되고 있었던 사정, 피고 B가 다수의 SNS 게시물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사례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충분히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한 점, 그리고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언행 등을 감안하면 피고들은 그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18, 20, 23, 58, 70, 75, 7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 1) 이 사건 최초 기사에는 원고로부터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당했다고 자처하는 익명 여성들(ㄱ, ㄷ, ㄹ, ㅁ, 기타)이 등장하는데, 피고 B는 위 익명의 여성들의 진술을 전하는 형식으로 위 여성들이 원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경험을 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이하 위 익명의 여성 개개인을 이를 때는 이 사건 최초 기사에서 자음 기호를 붙여 표시한 익명 여성은 그 붙인 자음에 따라 '이 사건 ○여성'이라 하고, 나머지 여성들은 '이 사건 기타 여성'이라 하며, 그들을 통틀어 이를 때는 '이 사건 익명 여성들'이라 한다).

구분	보도내용
ㄱ여성	• 미성년자인 ㄱ여성이 그보다 나이가 스무 살 이상 많은 원고에게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이하 'ㄱ-1 사실'이라 한다) • ㄱ여성은 시 배울 사람을 구한다는 원고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ㄱ여성에게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이하 'ㄱ-2 사실'이라 한다) • 원고는 ㄱ여성에게 교복 입은 사진을 보내라고 하고, 학교를 알아내 '교문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하 'ㄱ-3 사실'이라 한다)
ㄷ여성	• 원고가 '지금 당장 자살을 하겠다. 오지 않으면 대화한 문자를 캡처해 트위터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하 'ㄷ-1 사실'이라 한다) • △△로 온 ㄷ여성에게 원고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이하 'ㄷ-2 사실'이라 한다) • 원고가 주택가를 가리키며 '가서 땀을 빼자'라고 했고, 싫다고 거부하는 ㄷ여성을 노래방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두 사람이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 (이하 'ㄷ-3 사실'이라 한다) • 이후에도 원고는 ㄷ여성에게 '다리 벌린 사진을 보내 달라'며 성희롱을 계속했고, 거부할 때마다 '자해'를 운운했다. (이하 'ㄷ-4 사실'이라 한다)
ㄹ여성	• 원고가 대학 신입생이던 ㄹ여성에게 '습작시를 보내면 읽어주겠다'며 접근한 뒤,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여부를 물으며, '좀 더 나이 많은 사람과 해보는 건 어떠냐'고 말했다. (이하 'ㄹ 사실'이라 한다)

구분	보도내용
□여성	• □여성은 낭독회 뒤몰이 자리에서 원고를 만났는데, 원고가 '즉석에서 시를 써주겠다'고 하며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하 '□-1 사실'이라 한다) •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여성에게 '오늘 죽을지도 모르니 같이 있어 달라'고 애걸했다. (이하 '□-2 사실'이라 한다) • 그 뒤에도 □여성에게 '죽고 싶다'며 대전에 내려오게 한 다음, 후미진 골목의 모텔로 데려가 □여성과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졌다. (이하 '□-3 사실'이라 한다)
기타	• 문예창작과 학생이거나 편집자 지망생인 기타 여성들은 트위터에서 원고의 시에 대해 언급하거나 칭찬한 뒤, 원고로부터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받았다. (이하 '기타-1 사실'이라 한다) • 원고는 기타 여성들에게 '시를 가르쳐주겠다', '좋아하는 시인과 만나게 해줄 수 있다'는 말로 접근해 친해진 뒤 '자신이 사는 대전으로 만나러 오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하 '기타-2 사실'이라 한다) • 21일 현재까지 원고와 관련된 고발은 열 건이 넘는다. (이하 '기타-3 사실'이라 한다)

- 2) 이 사건 최초 기사가 보도된 당일, 그와 같은 내용의 보도가 있음을 인지한 원고는 피고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 □여성과 주고받은 또 다른 카카오톡 대화(이 사건 최초 기사 보도 일로부터 약 2주 전에 이뤄진 것으로서 □여성이 작성한 습작 시에 관하여 두 사람이 통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다)와 □여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원고와 □여성이 성관계를 나누는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2016. 5. 7.경 □여성이 그 성관계시 받았던 느낌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내용이다)를 갈무리한 파일들을 전송하며, 위 여성들을 성추행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호소하였다.
- 3)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제가 강간 여부를 판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위치가 아니다. 제기된 의혹을 보도하고 거기에 대한 주변부의 맥락까지 함께 이야기하는 게 자신의 역할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뒤, 아래와 같이 원고의 반론을 일부 신는 것 이외에 이 사건 익명 여성들의 진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수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A 시인은 "성희롱은 일부 인정하지만 성추행과 성폭행은 절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C과의 성관계는) 합의 하에 가진 것이며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사실도 없다"며 "미성년자인 □도 최근까지 추석 잘 보내시라며 메시지를 보냈고, 8일에는 자신이 쓴 시를 봐달라며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SNS에서의 무분별한 고발이 한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4) 이 사건 제1후속기사는 소설가 C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관련자들의 반응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그 기사 말미에 원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최초기사에 대한 후속 보도 성격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미성년자를 포함한 작가 지망생 등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원고는 논란 사흘 만에 사과하고 활동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원고는 자신에게 시를 배우려고 연락을 주고받던 여성들에게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 "너는 색기가 도는 얼굴"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지난 19일 한 작가 지망생의 주장 이후 여러 명의 피해자가 트위터에 원고의 성폭력을 폭로한 상태다.

5) 이 사건 사실에는 원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A 시인이 했다는 행동은 더욱 충격적이다. 시를 배우겠다는 여성들에게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거나 “너는 색기가 도는 얼굴”이라고 말해 수치심을 준 것으로도 모자라 여성의 거처를 찾아가 만남을 강요하고 심지어 성관계까지 강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런 증언이 사실이라면 일종의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6) 이 사건 제2후속기사에는 원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S#2

그는 미성년자였던 나보다 20세 많은 시인이었다. 시 배울 사람을 구한다는 그의 블로그를 보고 연락했다. 그는 내게 ‘이상한’ 관심을 가졌다. 교복 입은 사진을 보내라고 했고, 다니는 학교를 용케 알아내 교문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무섭고 불쾌했지만 피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A 시인을 고발한 SNS 글 재구성)

(이어지는 다음 페이지)

“침대 위에서 시를 가르쳐 줄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작업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야” 최근 우리 문화계에서 성추문 사건들이 잇따라 폭로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유명인들은 지명도를 이용해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했습니다.

- 7) 한편, 이 사건 ㄷ여성은 2017. 5. 11. 원고를 △△지방검찰청에 감금,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였는데(고소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은 이 사건 최초기사에서 ㄷ여성과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과 거의 동일하다), 수사 도중 감금,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하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7. 9. 26. 원고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 8) 원고는 이 사건 ㄷ여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을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허위 고소하였고, 트위터에 원고로부터 강간,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ㄷ여성을 무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명예훼손)방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2017. 10. 31. 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ㄷ여성이 초범이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기소유에 처분하였다.
- 9) 피고 B는 이 사건 ㄷ여성에 대한 무고 등 수사 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문학인들의 성추문 사태를 기사화하던 중, 이 사건 ㄷ여성이 올린 트윗글이 검색되어 이 사건 ㄷ여성과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인터뷰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10) 원고는 이 사건 ㄹ여성이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ㄹ여성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7. 6. 30. 이 사건 ㄹ여성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약식기소 하였고, 이 사건 ㄹ여성은 2017. 8.

14.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원고가 2017. 12. 12.경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 11) 이 사건 ㄱ여성은 자신에 대한 위 피의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 B와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 B는 이 사건 최초기사 작성 전에 이 사건 익명 여성들 중 누구와도 실제로 전화 또는 대면 인터뷰를 하지 아니하였다.
- 12) 원고가 이 사건 ㄱ여성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인 이 사건 ㄱ여성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8. 2. 22.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의 입장

본인은 A 시인에 대한 최초 의혹 기사인 한국일보 2016. 10. 21. 기사에서 E로 언급된 당사자입니다. 2016. 10. 21. 한국일보 기사에서는 제가 같은 날 트위터에 게시한 내용을 인용하여 A 시인이 저에게 성추행과 "강제적 성관계"를 했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한국일보 기사는 저의 의사에 반하여 보도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A 시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기사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기사가 작성된 것을 확인한 즉시 게시물을 삭제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A 시인이 저를 두 차례 만나면서 각각 성추행 및 "강제적 성관계"를 행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A 시인과 본인의 만남에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으로 "강제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저의 폭로로 상처를 받으신 A 시인과 가족분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하며 실추된 A 시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끝>

나.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 정리

1) 이 사건 최초기사

위 가.의 1)항 표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허위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적시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최초기사에서 원고에 관하여 표현한 사실은 ‘ㄱ-1, 2, 3 사실’, ‘ㄷ-1, 2, 3, 4 사실’, ‘ㄹ 사실’, ‘ㄴ-1, 2, 3 사실’, ‘기타-1, 2, 3 사실’ 등이다.

2) 이 사건 제1후속기사와 이 사건 사설

이 사건 최초기사에서 적시한 사실 이외에, 원고가 여성들에게 “너는 색기가 도는 얼굴”이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이하 ‘후속-1 사실’이라 한다)이 적시되어 있다.

3) 이 사건 제2후속기사

이 사건 최초기사에서 적시한 사실 이외에, 원고가 여성들에게 “침대 위에서 시를 가르쳐 줄 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작업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야”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이하 ‘후속-2 사실’이라 한다) 및 유명인인 원고가 지명도를 이용해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이하 ‘후속-3 사실’이라 한다)이 적시되어 있다.

위 후속-2, 3 사실은 비록 피고 한국일보가 게재한 카드뉴스의 내용 중 원고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룬 페이지의 다음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 장씩 넘기듯이 읽는 카드 뉴스의 특성상 연달아 나오는 페이지에 기재된 내용도 원고에 관한 것으로 오인하기 쉽도록 편집되어 있는 점, 원고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룬 앞 페이지에도 비슷한 성희롱성 발언들이 따옴표로 처리되어 실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하고, 또 유명인으로서 여성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오인토록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4) 이 사건 제3후속기사

원고는 피고 한국일보가 연합뉴스로부터 받아다가 전제한 이 사건 제3후속기사에서 적시한 사실이 ‘원고가 다수의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그 중 일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보통의 독자들이 통상의 독해방법으로 해당 기사를 읽는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 이 사건 제3후속기사가 적시한 것은, ‘원고가 여러 건의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 사안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하 ‘후속-4 사실’이라 한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아래 허위성 판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정리한 후속-4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진실한지 여부를 보기로 한다.

5) 이 사건 트윗과 이 사건 포스팅

이 사건 최초기사의 내용을 요약한 제목을 달고, 이 사건 최초기사의 링크를 게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최초기사에서 적시된 사실과 별도의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위 적시사실의 허위성

1) 각 허위성 여부와 근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3, 4, 7, 8, 9, 11, 12, 21, 25, 26, 32호증, 을 제1, 2, 10, 12, 13, 15, 16, 18,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추론할 수 있는 아래 ‘판단 근거’란 기재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기사와 사설에 적시된 아래 ‘적시사실의 요지’란 기재 각 사실의 허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래 ‘허위성 여부’란 기재와 같다(이 사건 트윗과 포스팅의 허위성은 이 사건 최초기사의 허위성 판단에 종속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최초기사의 허위성 판단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

구분	적시사실의 요지	허위성 여부	판단 근거
ㄱ-1	미성년자인 ㄱ여성을 성희롱했다.	허위	원고와 ㄱ여성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서만 대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해당 카카오톡 대화 전문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 중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으로 해석될 만한 표현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는 점, 성희롱 발언의 내용으로 예시된 아래 ㄱ-2 및 ㄱ-3 사실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ㄱ-2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허위	원고와 ㄱ여성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전문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원고의 발언은 찾을 수 없는 점, ㄱ여성이 최초 트위터에 올린 폭로성 글에 따르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자 원고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것인데, 카카오톡 대화 전문에서 ㄱ여성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취지의 내용 역시 찾을 수 없는 점, 피고들은 ‘ㄱ여성 이 전화통화를 통해 원고로부터 그런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라고 해명하나 이 부분 기사를 보도한 피고 B는 정작 ㄱ여성과는 전화 또는 대면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ㄱ여성은 수강료를 전혀 내지 않는 자신에게 원고가 더 이상 시작(詩作) 지도를 해주지 않자 섭섭함을 느끼고 원고를 압박하기 위해 트위터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ㄱ여성은 음해성 트위터 글을 올린 뒤 원고와의 대화에서 돈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로 봄이 상당하다.
ㄱ-3	교복 입은 사진을 보내라고 하고, 학교를 알아내 ‘교문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허위	원고와 ㄱ여성이 나눈 대화의 맥락상 원고가 ㄱ여성의 학교를 언급한 것은 책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읽혀지는 점, 학교를 언급하는 대화를 나누었을 당시의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았고, ㄱ여성이 원고에 대하여 특별한 위협을 느끼는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ㄱ여성이 트위터에 올린 폭로 글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교문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점, 피고 B는 ㄱ여성과는 아무런 전화 또는 대면 인터뷰 없이 이 부분 기사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한 추가 취재의 결과라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로 봄이 상당하다.
ㄷ-1	‘지금 당장 오지 않으면 대화내용을 캡처해 트위터에 올리고 자살하겠다’고 했다.	허위라고 볼 수 없음	SNS의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원고와 ㄷ여성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을 제12호 증), 원고가 ㄷ여성에게 자신을 만나러 와 줄 것을 요청하면서 ‘죽는다’는 취지의 말과 ‘(대화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설령 그 발언의 전후 맥락상 ㄷ여성의 의사를 억압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사실로 나타나는 이상 이 부분 적시사실이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ㄷ-2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허위	원고와 ㄷ여성이 실제로 만나기 이전부터 SNS 상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 원고와의 성관계에 관하여 ㄷ여성이 보인 태도와 그에 대한 원고의 반응, ㄷ여성이 원고를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원고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반대로 ㄷ여성의 무고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 수사기관에서의 양 당사자측이 한 진술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ㄷ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거나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ㄷ-3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	허위	
ㄷ-4	‘다리 벌린 사진을 보내라’고 하고, 거부하면 ‘자해’ 운운 했다.	허위	원고가 ㄷ여성과 나눈 SNS상의 대화내용을 대부분 제출하였고, 피고들도 ㄷ여성으로부터 입수한 일부 대화내용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그와 같은 원고의 발언이나 용태를 찾을 수 없는 점, 원고와 ㄷ여성이 SNS 메시지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러한 대화를 나눈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ㄷ여성이 이 부분 적시사실과 관련하여서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구분	적시사실의 요지	허위성 여부	판단 근거
ㄹ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여부를 물으며, '좀 더 나이 많은 사람과 해보는 건 어떠냐'고 했다.	허위	이 부분 적시사실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 보도하고 있는데, 원고는 그러한 발언을 전혀 한 바 없다고 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들은 그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 근거에 관하여 ㄹ여성이 SNS와 이른바 '문단 내 성폭력' 관련 인터넷 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았다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단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ㄹ여성과의 과거 경험을 소상하게 진술하며, 단지 ㄹ여성에게 일종의 '구애'를 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들이 보도한 것과 같은 취지의 발언은 한 적이 없다는 정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피고들이 그 기사작성의 근거로 드는 ㄹ여성의 SNS와 이른바 '문단 내 성폭력' 관련 인터넷 페이지의 기재 내용이 갖는 신빙성은 충분히 타핵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적시사실도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ㄱ-1	뒤풀이 자리에서 허벅지를 만졌다.	허위	원고와 ㄹ여성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전문을 살펴보면, ㄹ여성이 '뒤풀이 자리'라고 지목한 그 모임에서 원고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개연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또한 관련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ㄹ여성 스스로가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ㄱ-2	'오늘 죽을지도 모르니 같이 있어 달라'고 애걸했다.	허위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ㄹ여성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의 전문을 보면, 원고가 ㄹ여성에게 수시로 '밤에 혼자 있는 게 무섭다'거나 '외로워서 죽고 싶다', '△△ 오면 안 되니, 갑자기 여기저기 막 아파', '선생님은 오늘 밤에 자살할지도 모른다', '△△ 놀러올래? 이리다 사람이 죽겠다' 등 이 부분 적시사실과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상당수 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적시사실이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ㄱ-3	'죽고 싶다'고 하여 오게 한 뒤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졌다.	허위	원고와 ㄹ여성이 성관계를 가졌을 무렵을 전후하여 두 사람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나눈 대화에 비추어 보면,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을 개연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성관계를 전후하여 '죽고 싶다'고 말한 사실도 없어 보인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ㄹ여성에게 '죽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며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을 무렵이 아니라, ㄹ여성이 원고를 만나러 오지 않은 시기에 집중되었다). 또한 관련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ㄹ여성 스스로가 원고와 '강제적인 성관계'는 없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기타-1	문학 지망생 등 여성들이 원고의 시를 SNS에서 언급하면 원고가 메시지를 보내왔다.	허위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ㄱ, ㄷ, ㄹ 여성들에게 보인 행태만 놓고 보더라도, 여성들이 원고의 작품에 관심을 보이면 원고는 그 여성들에게 SNS의 메신저 기능 등을 이용해 대화를 시도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2016. 9.경 한겨레신문에 '나의 여성혐오를 고발합니다'라는 기고문을 실었는데, 해당 글에서 원고 스스로 언급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글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 중 주로 여성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여 온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2	여성들에게 '시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여 친해진 뒤, '만나러 오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했다.	허위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ㄱ, ㄷ, ㄹ 여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시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며 환심을 사려고 한 점, 위 여성들이 자신이 원할 때 즉시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으면 원고가 '힘들다', '너무 아프다', '죽고 싶다', '자살할 것이다'는 등의 말을 하며, 여성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식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적시사실이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다소간의 과장된 표현('협박했다'는 표현)을 쓴 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구분	적시사실의 요지	허위성 여부	판단 근거
기타-3	21일 현재까지 원고와 관련한 고발은 열 건이 넘는다.	허위라고 볼 수 없음	이 부분 표현이 나타난 해당 기사의 전후맥락상 피고들은 ‘고발’이라는 단어를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알린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행태에 대한 SNS상의 폭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이른바 ‘사회적 고발’이라는 취지). 따라서 이 부분 표현이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후속-1	여성에게 “너는 색기가 도는 얼굴”이라는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허위	이 사건에서 ㄱ, ㄷ, ㄹ 여성과 원고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SNS 메신저 대화 등의 거의 대부분이 복원되었는데, 이를 모두 살펴보다도 원고가 어떤 여성에게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고, 다른 특정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되지 않은 여성에게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라면,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들은 그러한 사실을 보도하게 된 단서나 취재 경위 등을 제시하는 등의 소명 부담을 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이 사건 보도 당시 ㄱ, ㄷ, ㄹ, ㅁ, 기타 여성의 SNS 글이나 이른바 ‘문단 내 성폭력’ 관련 인터넷 게시물을 수동적으로 열람한 것 이외에 그 중 어느 누구와도 전화 또는 대면 인터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적시사실에 관하여는 굳이 원고의 신빙성 탄핵을 기다릴 것도 없이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후속-2	“침대 위에서 시를 가르쳐 줄게” 등의 말을 했다.	허위	위와 같다.
후속-3	원고가 지명도를 이용해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성폭행했다.	허위	위 각 구체적인 적시사실들에 대한 판단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명도를 이용하여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였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후속-4	원고가 여러 건의 성폭력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중 일부 사안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허위라고 볼 수 없음	비록 원고가 정식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은 것은 ㄷ여성의 고소건 1건이고, 이에 관하여는 ㄷ여성이 고소를 취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이 수사기관에서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SNS 등에서 의혹제기가 있는 사안은 여러 건이라는 취지라고 보는 이상, 이 부분 적시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허위성에 관한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스스로 보도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6. 9.경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나의 여성 혐오를 고발합니다’라는 글에서 ‘자신의 시와 글이 좋다고 찾아온 여성을 어떻게 해보려고 만 했고, 그런 여성들과 모텔에 들락거린 적이 있는데, 이를 온당한 의미에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며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고 불특정 여성들에게 도움을 청해 같이 있어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해서 자신을 찾아오게 하여 잠자리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 사건 최초기사가 나온 이튿날 원고 스스로 '부적절한 언행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사죄문을 올린 사실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보도들에서 핵심적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다투는 부분은, 피고들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가하였거나, 일부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는 성추행 및 강제력을 동원한 성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이다. 그런데 원고의 한겨레신문 기고문의 내용은 자신이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구애를 하는 등 여성들을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일 뿐,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과 같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행하였음을 자인하는 의미로는 읽히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최초기사에 대해 즉각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죄문을 올린 것 역시, 당시 다수 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문단 내 성폭력' 관련 폭로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단 '눈앞의 불을 끄고 보자'는 식의 생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형식적인 사과문을 올린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최초기사에 적시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최초기사가 나오기 이전에 원고가 스스로의 부적절한 행동을 자인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하고, 이 사건 최초기사 보도 이후 즉각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사과하는 글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허위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나) 피해자들이 피해 진술을 반복한 것은 원고가 보복 위협을 가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당시 다수의 문단 내 여성작가들과 기타 여성 사회운동가들이 '문단 내 성폭력' 관련 폭로자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보내주고, 또 폭로자들을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여 주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또 다른 피해자들이 심적 부담 없이 피해사례를 제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준비하거나 실행하고 있었던 점,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문인은 여성들이 폭로한 피해사례가 다소간의 개연성이라도 갖는 내용일 경우 엄청난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였던 점, 이 사건 ㄷ여성과 ㄹ여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과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두루 살펴보면, 위 여성들이 원고에 대한 섭섭하고 분한 마음에 휩싸여(원고가 언론 기고문에서 자신이 만난 여성들을 가벼운 잠자리 상대쯤으로 묘사한 것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익명의 폭로를 하였다가, 그것이 이 사건 최초기사를 통하여 언론에 널리 확산되는 바람에 이를 미처 수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까지 받기에 이르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도 그 폭로에 관하여 마땅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여성은 정서적으로 다소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원고

에 대한 폭로를 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보도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라고 자처하였던 이 사건 각 익명 여성들이 실제로 그러한 피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보복 위협에 시달리다 못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이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 다) 원고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들을 꺾어내어 성적 접촉을 하는 부적절한 행동 패턴을 반복하였고,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표현은 그러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평가의 문제라는 취지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ㄷ, ㄱ 여성들과 일부 성적으로 적나라한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나(다른 익명 여성들에 관하여는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대화를 나눈 사실 자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대화의 전후 맥락까지 함께 살펴보면, 그러한 대화 중 원고가 한 표현에 의하여 위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설령 피고들이 드는 ‘피해자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하더라도, 원고가 그 대화중에 위 여성들을 ‘성희롱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성추행, 성폭행 등의 표현은 적어도 원고가 상대방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어떤 성적 접촉을 가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는 바(피고들이 드는 ‘피해자 중심주의적 관점’ 등 어떠한 사회적 관점에서 이를 바라본다 하더라도, 이보다 낮은 수준의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만으로는, 통상의 성추행,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ㄷ, ㄱ 여성들과 일련의 성적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그 밖에 다른 익명 여성들과는 어떤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 성적 쾌락을 추구하려는 목적 하에 위 여성들에게 접근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살 운운하는 등의 부적절한 방식으로 구애하였으며, 자신의 요구가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떼를 쓰는 등 그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원고와 ㄷ, ㄱ 여성 사이에서 오간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및 위 여성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여성들은 원고와의 교류를 마다하지 아니하였고, 자발적인 의사에 기해 원고와 여러 가지 성적 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선불리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 B가 원고에 관한 이 사건 최초 기사를 작성한 취지는 원고가 위와 같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부적절한 사생활을 하고 있어, ‘여성주의적 관점’, ‘피해자 중심주의적 관점’ 등의 측면에서 비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시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작가 지망생 등에 대하여 일반적인 의미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일삼았다는 것인 바, 전자와 후자의 진술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간극이 존재하여, 이를 같은 전제사실에 대하여 평가만을 달리하는 문제라거나, 혹은 진실한 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정도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라.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도들 중 일부가 허위일지라도, 오로지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최초기사의 근거가 된 것은 피해자들이 작성한 트위터 등 SNS 게시물들인데, 그러한 SNS의 특성상 게시물 작성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 서버가 해외에 존재하여 작성자에 대한 추적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때문에 그곳에 등재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다고 평가되고 있는 점, ② 피고 B는 한국의 유서 깊은 언론사이자, 언론계에서는 이른바 ‘기자 사관학교’라고 불렸을 만큼 기본기를 강조하는 취재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피고 한국일보 소속 기자인 바, 위와 같이 SNS에 올라온 익명 폭로 내용을 ‘한국일보’의 이름을 달고 보도하는 경우, 독자들이 SNS에 올라온 글 자체보다는 훨씬 더 믿을 만한 정보로 인식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최초기사를 인터넷상으로 처음 출고하기 이전까지 피해자로 기재된 이 사건 ㄱ, ㄷ, ㄹ, ㅁ 및 그 밖의 기타 여성들은 물론이고,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원고와도 아무런 전화 또는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원고의 입장을 일부 반영한 것은 이 사건 최초기사를 인지한 원고가 먼저 연락을 해온 이후이다.), ④ 심지어 원고가 ‘성희롱만 일부 인정하고(이후 원고가 보인 용태를 보면, 위 진술은 일부 여성들과 적나라한 성적 대화를 나누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성추행, 성폭행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사실무근이다.’라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이 사건 익명 여성들에 대한 직접 확인 취재는 끝내 하지 않았고, 피고 한국일보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최초기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이 사건 제1, 2후속기사 및 이 사건 사설, 이 사건 트윗과 포스팅을 추가하여 나가는 등 오히려 관련 보도를 스스로 확대재생산한 점, ⑤ 이 사건 각 보도들의 내용 상 그러한 보도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잠재적인 타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익명 여성들에 대한 직접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이 보도를 강행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는 어려운 점(앞서 본 SNS의 특성을 고려하면 그 게시물 자체가 완전히 허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문단 내 성폭력이 만연하고 피해 호소자 중에서는 미성년자도 끼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익명 여성들에 대한 확인 취재를 모두 거르고 일단 그 내용을 옮겨 적다시피 하는 방식으로 보도를 하여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최초기사와 이 사건 제1후속 기사를 작성한 피고 B 및 그 밖의 다른 기사와 SNS 게시물을 작성한 피고 한국일보 소속 기자 또는 피고용인들이 위 각 보도를 함에 있어 그 적시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명예훼손 특유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들어,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정정보도 또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조치

1) 명예회복에 적당한 정정보도문의 내용

앞서 본 각 적시사실에 대한 개별적인 허위성 판단 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피고 한국일보가 하여야 하는 정정보도의 각 내용은 [별지 1] 목록(인터넷 한국일보 게재 기사들에 대하여) 및 [별지 4] 기재(SNS 게시물에 대하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2) 인터넷 한국일보에 대한 정정보도의 방법

피고 한국일보는 이 사건 최초기사의 내용 중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후속기사와 사설 등으로 확대 재생산하였고, 그 내용 중에는 이 사건 최초기사에 없음에도 새롭게 추가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 한국일보 초기화면에는 ‘A 시인 관련 정정보도문’이라는 하나의 링크만을 띄우되, 그것을 누르면 [별지 1] 목록 정정보도문 전체가 하나의 페이지에 72시간 동안 일괄 표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허위사실을 포함한 각 기사가 인터넷 한국일보의 뉴스 기사 서버에 남아 있는 한 각 기사마다 해당되는 정정보도문을 부기하는 방식으로 조치하는 것이, 원고의 실추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3) SNS에 대한 정정보도의 방법

또한 피고 한국일보는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 제목을 붙이고 허위 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최초기사의 링크를 본문에 게재한 각 게시물을 올려 다수의 구독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구독자들이 해당 게시물을 리트윗, 공유 등의 방법으로 재전송해 널리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실추된 원고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는, 위 각 SNS 게시물을 삭제하여 더 이상 열람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SNS에는 30일간 [별지 4]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두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최초보도, 제1, 2후속보도, 사설, SNS 게시물 등에 포함된 허위사실이 공표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보도들로 인하여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원고의 시집이 서점가에서 회수되고, 향후 다른 문학 책자의 발간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등 원고가 일부 계량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된 사실 역시 추단할 수 있다(이를 원고가 명확히 입증하여 청구하는 것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상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위자료 산정에 일부 참작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최초기사, 제1후속기사의 집필자이자 다른 기사와 SNS 게시물에 포함된 허위의 전제사실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피고 한국일보는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 위 각 보도들을 내보낸 언론사로서 서로 연대하여(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

대책임을 적용하기로 한다),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살피건대, ① 원고는, 그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작가 지망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 피고들의 각 보도와 SNS게시물로 인하여, 그동안 시인으로 활동해 온 문단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파렴치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더 이상의 시작(詩作) 활동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자체를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점, ② 그로 인해 원고의 시집이 서점에서 회수되고, 추가적인 문학 작품의 책자 출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다른 생계의 수단으로 삼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시작(詩作) 관련 개인지도 활동 등도 더 이상 하기 어려워지는 등 정확히 계량적으로 산출하기는 곤란한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를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③ 성폭력 관련 보도는 그 이슈 자체가 갖는 ‘폭발성’과 ‘휘발성’으로 인해 더욱 세심한 확인 취재가 필요할 것임에도, 피고 B와 기타 피고 한국일보 소속 취재진들은 단순히 SNS에 폭로된 게시글만을 취합하고, 그에 대한 추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마치 그 내용이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처럼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점, ④ 피고들이 원고의 극구 부인에도 불구하고 추가 취재에 나서기보다는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한 후속보도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스스로 이중 삼중의 가해를 하게 된 점, ⑤ 원고 역시 여성들을 쾌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전제에서,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부적절한 처신을 함으로써, 익명 여성들이 SNS를 통하여 손쉬운 공격대상으로 삼기에 좋은 환경을 자초한 측면도 있는 점(원고가 국내에서 손꼽히는 시집 레이블인 ‘문학과지성사’의 시선집을 통하여 소개된 유명 작가로서의 지위가 무너지는 점을 위자료에 반영하는 만큼, 스스로 그러한 지위에 걸맞지 않은 처신을 한 점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 및 그에 대하여 첫 불법행위일인 2016. 10. 2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2018. 7. 18.)까지는 민법으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인터넷 한국일보 관련 정정보도문

A 시인 관련 정정보도문

가. 2016. 10. 21.자 「문화계 왜 이러나...이번엔 시인 상습 성추행 의혹」 제하의 기사 관련 정정보도

- 본지는 인터넷 한국일보에 게재한 위와 같은 제목의 기사에서 A 시인이 ㄱ여성에게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ㄴ여성에게는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한 다음 싫다고 거부하는 ㄴ여성을 노래방으로 데려가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에도 자해를 운운하며 “다리 벌린 사진을 보내달라”며 성희롱을 계속하는 한편, ㄷ여성에게는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여부를 물으며 “좀 더 나이 많은 사람과 해보는 건 어떠냐”고 하였고, 낭독회 뒤풀이 자리에서 만난 ㄹ여성의 허벅지를 만지고 모텔로 데려가 강제적인 성관계를 갖는 등 수년간 상습적으로 여성들에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확인 결과, 위 보도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나. 2016. 10. 23.자 「C 팬 “반가워 안았는데 뭐가 문제냐”」 제하의 기사 관련 정정보도

- 본지는 인터넷 한국일보에 게재한 위와 같은 제목의 기사에서 A 시인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작가 지망생 등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A 시인이 자신에게 시를 배우려고 연락을 주고받던 여성들에게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 “너는 색기가 도는 얼굴이다”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확인 결과, 위 보도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다. 2016. 10. 23.자 「[사설] 문화계 뼈아픈 자성 촉구하는 추악한 성추행 파문」 제하의 사설에서 전제로 삼은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

- 본지는 인터넷 한국일보에 게재한 위와 같은 제목의 사설에서 A 시인이 여성들에게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 “너는 색기가 도는 얼굴이다” 등의 말을 하여 수치심을 주고, 여성의 거처를 찾아가 만남을 강요하며, 심지어 성관계까지 강제했다는 내용을 전제로 삼아, 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그러나 확인 결과, 위 사설에서의 의견 표명에 있어 전제로 삼은 위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라. 2016. 10. 27.자 「[카드뉴스] “그는 우리를 ‘은교’라 불렀다”」 제하 기사 관련 정정보도

- 본지는 인터넷 한국일보에 게재한 위와 같은 제목의 기사에서 A 시인이 미성년 학생에게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 “침대 위에서 시를 가르쳐 줄게”라는 말을 하였고,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확인 결과, 위 보도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끝.

〈별지2-가~마〉 대상기사 생략

〈별지3〉 피고 한국일보 SNS 계정 게시물 목록 생략

〈별지4〉 SNS 게재용 정정보도문

〈A 시인 관련 정정보도문〉

- 본지는 2016. 10. 21.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각 “A 시인, ‘미성년자 등 상습 성추행’ 의혹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작년 미성년자인 저는 저보다 나이가 20살 많은 시인에게 성희롱을 당하였습니다’라는 본문 글과 함께, 인터넷 한국일보에 게재된 관련 보도 내용을 링크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 게시물 내용 및 당시 링크한 기사에서 A 시인이 미성년자 등을 상습 성추행하였다고 보도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끝.

〈별지5-가~마〉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의 가치관, 세계관도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사회적 평가의 저하는 신축성 있게 수인되어야 한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조선방송 외 8명

[사실관계]

원고는 △△△당 소속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피고들은 <TV조선>, <조선일보> 등을 통해 ‘원고가 북한을 위해 간첩활동을 했고, 자신의 아들에게 주체사상을 공부하라고 했다’는 등 원고가 북한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내란음모,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법원으로부터 내란선동 및 대부분의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또한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70808), 현재 상고심 진행 중에 있다(대법원 2019다234747).

[판결요지]

□ 이 사건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와 국민생활이나 국가운영 전반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적인 영역에 관한 것이라면 국회의원의 가치관, 세계관까지도 국민의 건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마땅하다. 원고가 국회의원의 신성한 의무를 근본적으로 저버리는 내용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원고의 범죄행위 관련 보도 활동은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저하는 보다 신축성 있게 수인될 수밖에 없다.

또 원고는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의 내용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저질렀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정도로 충격적이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므로, 이러한 범죄행위 관련 각종 의혹사항을 신속하게 보도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

판결문

사	건	2016가단5205864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조선방송 2. B 3. C 4. D 5.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6.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7. E 8. F 9. G
변론종결		2018. 9. 11.
판결선고		2018.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과, ① 피고 B는 공동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② 피고 C는 공동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③ 피고 D는 공동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와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및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와, ① 피고 F, G는 공동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② 피고 E는 공동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이었다.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이하 ‘조선방송’이라 한다)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조선일보사’라 한다)는 일간지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언론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이하 ‘디지털조선일보’라 한다)는 피고 조선일보사로부터 기사를 받아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조선닷컴(chosun.com)을 통해 보도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다. 피고 B는 정치인, 피고 C, D는 각 피고 조선방송 소속 기자, 피고 E, F, G는 각 피고 조선일보사 소속 기자이다.

나. 원고는 2013. 9. 25. 수원지방법검찰청 소속 검사에 의하여 내란음모,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그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수사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방송 또는 보도의 구체적 내용’ 기재와 같은 방송 보도 또는 기사 게재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방송 또는 보도’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방송 또는 보도의 주요내용〉

순번	피고		보도 또는 발언 주요 내용	서증
	언론·방송 매체	관여 패널·기자		
1	조선방송	B (패널 ¹⁸⁾)	○ 2013. 9. 2.자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발언 - “북한을 위해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봐야” (약 2:58~3:20경 사이)	갑2
2		C (기자)	○ 2013. 9. 3.자 TV조선 [뉴스 7] “RO 조직원, 북 잠수함 지원 방안 논의” 보도 - RO 조직원들이 “북한 잠수함 지원 방안”을 준비하라는 내용 등이 등장	갑3
3		D (기자)	○ 2013. 9. 11. TV조선 [D의 SNS 댓글열전] 보도 - “A 의원은 아들에게 ‘주체사상 철저히 공부하라’ 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4

18) 방송에 나와 주요 관심사에 대한 토론을 하는 사람(panel)

순번	피고		보도 또는 발언 주요 내용	서증
	언론·방송 매체	관여 패널·기자		
4	조선일보사, 디지털 조선일보	—	○ 2013. 9. 2.자 조선닷컴 [국정원 “A RO, 北과 수시로 이메일 연락” 파악] - “국가정보원은 1일 □□□□연합의 지하조직 RO가 밀입북 등 북측과의 직접적인 접촉 외에도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을 계속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갑5, 6
5		—	○ 2013. 9. 3.자 조선닷컴 [RO 조직원들 ‘북 잠수함 지원방안 준비’ 이메일 교환] - “국정원에서 일부 메일을 복구한 결과 ‘유사시 전투기, 잠수함, 탱크 등 육해공으로 내려올 텐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강구하자’는 내용과 함께 ‘북한 잠수함 지원방안을 준비하라’는 내용 등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7
6		—	○ 2013. 9. 8.자 조선일보 [“RO, ‘공중전화’로 북 우회접촉... 국정원, 이례적 공중전화 감청”] - “국가정보원은 RO 핵심멤버인 H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I △△△△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재미교포와 통화하는 공중전화를 감청해 ‘RO-재미교포-중국측 인사’의 3각 커넥션을 파악했다”	갑9
7		—	○ 2013. 9. 17.자 조선일보 [A 의원, 아들에게 ‘주체사상을 철저히 공부해라’] - “‘주체사상을 철저히 공부해라’ 구속 중인 A(51) △△△△당 의원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들에게 지난 해 채팅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사용해 보낸 메시지이다”	갑10
8	조선일보사, 디지털 조선일보	E (기자)	○ 2013. 9. 18.자 조선일보 [A, 미 유학 아들에 ‘주체사상 공부해라’] 기사 - “△△△△당 A(51)의원이 미국에 유학 중인 아들에게도 ‘주체사상을 공부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갑11
9		F G (기자)	○ 2013. 9. 4.자 조선일보 [A의 ‘RO’ ... 재미 조직원 통해 북한과 접촉 혐의] 기사 - “△△△△당 A(51) 의원이 주도하는 지하조직 RO가 재미 조직원을 통해 북한측과 우회 접촉한 흔적을 찾아내”, “국정원은 RO 조직원에 대한 통신 감청을 통해 ‘유사시 잠수함 전투기 탱크 등 육해공으로 내려올 텐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8

다. 그 후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내란음모죄와 일부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내란선동 및 대부분의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의 형이 확정되었는데, 형사재판의 주요 경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고 원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사실은 [별지 2.]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죄명	제1심 ¹⁹⁾	항소심 ²⁰⁾	상고심 ²¹⁾
내란음모	유죄	무죄	상고기각
내란선동	유죄		상고기각
국가보안법 위반	일부 ²²⁾	무죄	상고기각
	나머지	유죄(이유무죄 ²³⁾)	
선고형(주형)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0년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	

19) 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 624(병합), 699(병합), 851(병합) 판결

20)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21)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22) 2013. 8. 28. ‘최현’으로 표기된 디브이디-알(DVD-R, PRINCD, 4.7MB)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23) 2012. 8. 10. ‘적기가’ 제창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방송 또는 보도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들이 아무런 근거나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이 없고 별다른 사실확인 노력도 없이 이 사건 방송 또는 보도를 하였으므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나. 1)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 되는 경우에 그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해당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등 국가기관의 직무집행이나 업무처리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자유的重要内容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 또는 보도 내용은 대체로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방송 또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그 내용이 진실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 또는 취재과정이나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확인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 또는 보도 내용으로 인하여 원고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 또는 보도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가) 원고는 위와 같은 내란선동 등 범죄행위 당시는 물론 이 사건 방송 또는 보도 당시에도 제19대 국회의원이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정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나아가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 등까지도 보장받는 공적인 존재이다. 이와 같은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와 국민생활이나 국가운영 전반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개인의 도덕성, 청렴성의 문제나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물론 공적인 영역에 관한 것이라면 국회의원의 가치관, 세계관까지도 국민의 건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마땅하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국회법 제24조 참조). 그럼에도 원고가 이러한 국회의원의 신성한 의무를 근원적으로 저버리는 내용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원고의 범죄행위 관련 보도 활동은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폭 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저하는 보다 신축성 있게 수인될 수밖에 없다.

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의 내용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저질렀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므로, 이러한 범죄행위 관련 각종 의혹사항을 신속하게 보도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

그리고 이 사건 방송 또는 보도 내용은 대체로 ① 북한을 위해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② 북한 잠수함 지원 방안을 준비하였다거나 ③ 북과 수시로 이메일 연락을 하거나 공중전화 또는 재미 조직원을 통해 접촉하였다거나 ④ 주체사상을 공부하라고 하였다는 등 원고가 북한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나 그 정황사실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원고의 남북한 정세에 대한 인식’²⁴⁾과 함께 ‘2013. 5. 10. 위 □□□ 청소년수련원 및 같은 달 12. 위 ○○○

24) 북한이 2012. 12.경부터 장거리 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 등에 이어 지속적으로 전쟁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며 급기야 2013. 3. 5. 조선인

○ 교육수사회 강당에서 다수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한 선동내용²⁵⁾을 고려하면, 원고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연계 또는 연결되어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다) 이 사건 방송 또는 보도가 이루어졌던 당시에는 원고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었지만, 그 후 실제로 검사는 원고에 대하여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위반죄 이외에 내란음모죄로도 공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주된 혐의내용에 의하여 이미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방송 또는 보도 내용은 북한과의 연계성에 관한 정황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공소 제기된 혐의사실의 배경이 되는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 밖에도, ① 피고 B가 방송에서 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국가정보원의 발표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 개진 또는 논평에 불과하고(앞서 본 이 사건 방송 또는 보도의 주요내용에 관한 표 순번 1 부분 관련), ②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 또는 보도를 하면서, 국가정보원 관계자의 전언에 기초하였음을 밝히거나 ‘…알려졌다.’ 또는 ‘…전해졌다.’는 형태로 소극적 인용(引用)의 표현방식을 취하였으며(위 표 순번 2, 3, 4, 5, 7, 8, 9 부분 관련), ③ 다른 언론기관의 보도내용에 대한 SNS²⁶⁾ 반응을 소개하거나(위 표 순번 3 부분 관련), 다른 언론기관이 보도한 내용 자체를 소개하는 표현방식을 취한 점(위 표 순번 4, 6 부분 관련)도 고려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1〉 대상기사 생략

〈별지2〉 범죄사실(원고 해당부분만 발췌) 생략

민군 총사령관 명의로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자, 당면한 정세를 ‘전쟁 상황 -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인식

25)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전쟁 상황’으로 도래한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여 ‘자주적 사회, 착취와 허위가 없는 조선민족 시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과 일체화된 강력한 신념체계’로 ‘전국적 범위’에서 ‘최종 결전의 결사’를 이루고,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한 자루 권총 사상’으로 무장하여 ‘물질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조국통일, 통일혁명’을 완수하자”는 취지

26) Social Network Service의 줄임말, 온라인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6가단521973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7나84664 판결

‘전문 시위꾼’, ‘억지 선동’ 등의 표현은 모멸적인 표현으로 언론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

- 원고 : A
- 피고 : 뉴데일리경제 주식회사

[사실관계]

원고는 국내 대기업 반도체부문 근로자의 백혈병 발병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피고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경제〉를 발행하는 회사로, 2015년 8월 10일부터 2016년 7월 12일까지 ‘원고가 허위의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들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표현이 모욕적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가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의 상고 역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며 위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018다284530).

[판결요지]

□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모욕적 표현의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집회가 벼슬”, “억지주장”, “꿈수를 부리고 있다”, “전문 시위꾼”, “억지 선동”, “막장”, “막말”, “알박한 술수” 등의 표현은, 원고의 활동이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문제의 제기 및 비판이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선택된 어휘라고 볼 수 없고, 모멸적인 표현에 이른다고 볼 수 있어, 언론자유 보호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6가단5219733 손해배상(언)
원	고	A
피	고	뉴데일리경제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9. 21.
		2017. 11.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1,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모든 노동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러한 권리가 법과 제도로써 온전히 보호받으며, 노동자 스스로 국가와 기업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회의 구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정관에 의거하여 정회원, 총회, 운영위원회, 대표 등 조직을 갖추고 운영되는 비법인사단이다.
- (2) 피고는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잡지 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터넷 신문 '뉴데일리경제'를 발행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보도의 배경

- (1) 2007. 3.경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 한다) 반도체부문 근로자였던 B가 백혈병으로 숨지자, 아버지 C는 B의 백혈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그 활동을 돕기 위하여 노무사, 의사 등이 모여 원고 단체를 결성하였다.
- (2) C를 비롯하여 □□전자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직원의 유족(망 D의 남편 E, 망 F의 아내 G)과 백혈병이 발병한 직원(H, I)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유족보상 또는 요양급여 신청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 또는 불승인처분 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49호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6. 23. 그 중 B, D에게 발병한 백혈병과 그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C, E에 대하여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G, H, I에 대하여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 (3) 그 후 □□전자는 2012. 11. 27.경 백혈병 피해자 및 유족(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해가족’이라 한다)에게 대화를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와 □□전자는 실무교섭을 통해 교섭의 의제를 ‘사과’, ‘보상’ 및 ‘재해예방대책’으로 정한 후, 교섭을 시작하였다.
- (4) 이후 2014. 7.말까지 총 4차례의 교섭이 있었으나, □□전자는 ‘교섭에 참여한 피해가족 8명에 대한 보상 논의를 먼저 하고, 그 이후 그 외 관계자들로 보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이었고, 이에 반해 원고는 ‘산재신청을 한 모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5) 그러던 중 피해가족 8명 중 6명은 □□전자 측 입장을 수용하기로 하고, 그 직후 그들만으로 ‘가족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와 별도로 교섭에 임하기로 하였다. 그 후 가족대책위원회는 □□전자에 ‘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였고, □□전자는 이를 즉각 수락하였으나, 원고는 반대하였다.
- (6) 원고의 반대 속에 가족대책위원회와 □□전자는 조정위원회 구성을 진행하였고, 그렇게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2014. 12. 9. ‘조정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입장’을 원고에게 보내, 교섭 주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권고안을 제안할 예정이니 원고가 독자적인 주체가 되어 조정에 참여할 것을 공식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도 2014. 12. 15. 조정절차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 (7) 조정위원회는 5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을 거쳐 2015. 7. 23. 조정권고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전자로부터 독립된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그 공익법인이 ‘보상’과 ‘재해예방대책’ 사업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 (8) 위 조정권고안에 대해 원고는 2015. 7. 24. ‘조정권고안을 큰 틀에서 수용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가족대책위원회는 공익법인에 의한 보상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고, □□전자도 2015. 8. 3. 공익법인에 의한 보상안에 반대하면서 사과, 보상,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하였다.

- (9) 그러던 중 □□전자는 2015. 9. 3.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를 발족하고, 보상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안을 기초로 □□전자가 2015. 8. 3. 발표한 보상안의 세부항목을 검토하고 보상기준을 확정하도록 하며, 개별신청자들의 기준 부합여부 심사과 증빙자료 확인을 거쳐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보상의 전 과정을 총괄하게 하였다. 나아가 2015. 9. 18.부터는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보상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다.
- (10) 이에 원고는 2015. 9. 7. □□전자에게 보상위원회 논의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전자가 자체 보상절차를 강행하자, 이에 항의하며 2015. 10. 7.부터 □□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기사의 내용

피고는, 2015. 8. 10.부터 2016. 7. 12.까지 사이에 별지 1 내지 4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8,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1) 관련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인 경우에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2) 별지 1, 3 기재 각 기사에 관한 판단

위 각 기사 중 원고가 문제 삼는 부분 즉, “공익법인의 운영비에는 원고의 활동비도 포함되므로, 원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익법인 설립을 주장한다.”, “원고가 욕설을 퍼부으며 농성을 하였다” 및 “원고가 술판을 벌이면서 담배꽂초 및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버렸다”는 내용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의 존재를 수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2015. 10. 20.자 기사는 원고의 집회 장면과는 무관한 사진을 게재한 점, 조정권고안에는 원고가 공익법인의 구성이나 운영에 관여할 수 있거나 그 운영비에 원고의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적시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허위 사실 적시는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3) 별지 2 기재 각 기사에 관한 판단

㉗ 먼저 2015. 10. 27.자 기사 중 원고가 문제 삼는 부분, 즉,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 140명이 암진단을 받고 50명이 사망했다는 A의 거짓 주장”, “이들이 밝힌 숫자는 20만 명에 이르는 □□전자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일어난 암 발생 건수를 모두 더한 규모다”라는 부분은 기사 전체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언급한 암진단 받은 140명은 20만 명에 이르는 □□전자 전현직 직원들 중 암 발병자 수를 모두 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수가 커질 수밖에 없음에도 조사대상의 규모를 일부러 감춘 채 암 발병자 수만 강조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볼 수 있다. 나아가 위 사실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전자 전현직 근로자들 중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중증질환에 걸렸다고 직·간접적으로 원고에게 제보해 온 사람들의 수를 집계하여 이를 발표하였을 뿐 거짓 발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갑 제4호증의 기재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반면, 피고는 위 기사에서 적시한 사실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적시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허위사실 적시는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㉘ 다음으로 2015. 11. 26.자 기사 중 원고가 문제 삼는 부분, 즉, “A의 주장과 반대되는 조사 결과가 최근 몇 년 동안 잇따라 발표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먼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2012년 초 □□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극미량의 발암물질을 발견 했지만 직업적 노출허용 기준치를 넘진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연 환경 수준과 큰 차이가 없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게 당시 결론이었다.”, “□□전자를 포함한 5개 반도체회사를 대상으로 2008년에 이뤄진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도 마찬가지로 결과(인과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도출됐었다.”, “2009년 서울대 산학협력단도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다.”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반도체공장의 발암물질과 백혈병 등의 발병이 서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의 조사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음에도 원고가 이와 반대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사실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5,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기사에서 언급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08년 및 2012년 조사결과, 2009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분과 유의미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추적기간이 짧은 점,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오류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이 있고 그러한 작업에 대해서는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을 뿐, 반도체 공장의 발암물질과 백혈병 등의 발병이 서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일부 내용만 발췌하여 최종 결론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사실적시도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허위사실 적시는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4) 위법성 조각 여부

한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61793 판결 등 참조).

별지 1, 2, 3 기재 각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사의 게재 당시 피고에게 위 기사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각 기사 보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

(1)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별지 4 기재 각 기사 중 원고가 문제 삼는 표현, 즉, “집회가 벼슬인 마냥 요란한 소리를 내며 억지주장을 일삼는 A의 민낯”, “가해자 □□ 상대로 싸운다는 낯 뜨거운 프레임을 세워놓고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 “시위와 싸움을 훈장으로 여기는 전문 시위꾼들이 A를 장악”, “억지 선동과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A 시위가 막장 집회로 변질되고 있다”, “연일 엉뚱한 소리와 막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변죽이라도 울려 이목을 끌해보겠다는 알팍한 술수를 부리는 것”, “놀 거 다 놀면서 벌이는 집회”라는 표현은, 피고가 언론기관으로서 가질 수 있는 비판적 시각에서 위 각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표현의 형식 및 내용이 지나치게 경멸적이고 모욕적이어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다. 소결

피고의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인격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단체의 성격, 법익 침해의 정도, 이 사건 각 기사의 표현 수위 및 표현 방식, 보도 횟수, 언론사인 피고가 차지하는 비중 및 일반인에 대한 공신력, 피고가 기사 보도 당시 사실 확인의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1~4〉 대상기사 생략

2심 판결문

사 건 2017나84664 손해배상(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뉴데일리경제 주식회사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6가단521973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8. 30.
판 결 선 고 2018. 10.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정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 제10면 제9행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제 3) 제6행의

“2015. 12. 3.자”를 “2016. 2. 3.자”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판단

1) 본안전 항변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바,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설사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원고의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갑 제2, 42,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총회는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모임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실, 원고가 2018. 7. 6. 사원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원고의 정회원 13명 전원의 결의(의결권을 위임한 정회원 포함)로 이 사건 소송행위를 추진하는 내용을 의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제기는 소급하여 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본안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명예훼손 및 모욕의 피해자 관련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 인격권을 보유하지 않아 명예훼손 및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나) 허위사실의 적시 관련

(1) 별지 2 기재 기사

별지 2 기재 기사 중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 140명이 암진단을 받고 50명이 사망했다는 A의 거짓 주장”, “이들이 밝힌 숫자는 20만 명에 이르는 □□전자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일어난 암 발생 건수를 모두 더한 규모다”라는 부분은 원고가 □□전자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암 발생 제보를 받고 있는 점, 갑 제4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리

한 문서에 불과하므로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압진단 및 사망자 숫자에 대한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또한, 별지 2 기재 기사 중 “A의 주장과 반대되는 조사 결과가 최근 몇 년 동안 잇따라 발표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먼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2012년 초 □□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극미량의 발암물질을 발견 했지만 직업적 노출허용 기준치를 넘진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연환경 수준과 큰 차이가 없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게 당시 결론이었다.”, “□□전자를 포함한 5개 반도체회사를 대상으로 2008년에 이뤄진 안전보건공단 조사에도 마찬가지로 결과(인과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도출됐었다.”, “2009년 서울대 산학협력단도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다.”는 부분은 연구결과 보고서의 특성상 이를 검토하는 시각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을 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2) 별지 3 기재 기사

별지 3 기재 기사 중 “원고가 욕설을 퍼부으며 농성을 하였다” 및 “원고가 술판을 벌이면서 담배꽂초 및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버렸다”라는 부분은 2015. 10. 7.경부터 개시한 □□전자 서초사옥 앞에서의 노숙 농성에 대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다) 위법성 조각

(1)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설령 별지 1 내지 3 기재 기사 중 허위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의 기사 내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모욕의 위법성 조각

별지 4 기재 기사 중 “집회가 벅슬인 마냥 요란한 소리를 내며 억지주장을 일삼는 A의 민낯”, “가해자 □□ 상대로 싸운다는 낯 뜨거운 프레임을 세워놓고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꾀수를 부리고 있다.”, “시위와 싸움을 혼장으로 여기는 전문 시위꾼들이 A를 장악”, “억지 선동과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A 시위가 막장 집회로 변질되고 있다”, “연일 엉뚱한 소리와 막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변죽이라도 울려 이목을 끌해보겠다는 알팍한 술수를 부리는 것”, “놀 거 다 놀면서 벌이는 집회”라는 표현은 모욕이라고 볼 수 없거나, 비판적 입장에서 쓴 다소 거칠고 험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자유 보호 범위 내에 있어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및 모욕의 피해자 여부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에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개인적 법익인 점(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 및 모욕의 피해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행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별지 2 기재 기사 관련

먼저, 별지 2 기재 기사 중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 140명이 암진단을 받고 50명이 사망했다는 A의 거짓 주장”, “이들이 밝힌 숫자는 20만 명에 이르는 □□전자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일어난 암 발생 건수를 모두 더한 규모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갑 제4호증을 통해 □□전자 전현직 근로자들 중 직·간접적으로 제보를 받은 암진단 및 사망제보자 숫자를 밝혔을 뿐이고, 그 제보자나 그 조사 대상자가 □□전자 전현직 직원 전체라고 주장한 바 없는 점, ② 위 기사의 담당 기자가 작성한 자술서(을 제1호증)에 위와 같은 제보자 숫자에 직업병과 무관한 개인질병에 기한 암 발병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자술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사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별지 2 기재 기사 중 “A의 주장과 반대되는 조사 결과가 최근 몇 년 동안 잇따라 발표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먼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2012년 초 □□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극미량의 발암물질을 발견 했지만 직업적 노출허용 기준치를 넘진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연환경 수준과 큰 차이가 없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게 당시 결론이었다.”, “□□전자를 포함한 5개 반도체회사를 대상으로 2008년에 이뤄진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도 마찬가지로 결과(인과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도출됐었다.”, “2009년 서울대 산학협력단도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기사에서 언급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08년 및 2012년 조사결과, 2009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사결과에서 반도체공장의 발암물질과 백혈병 등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바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위 각 기사는 위 각 조사결과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나아가 위 기사를 작성한 담당기자 자술서(을 제1호증)에서도 위 각 조사결과에서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거나,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직접적 결론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각 조사결과를 통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 근거를 밝히지는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사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3 기재 기사 관련

“원고가 욕설을 퍼부으며 농성을 하였다” 및 “원고가 술판을 벌이면서 담배꽂초 및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버렸다”라는 부분이 어느 시기에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를 입증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위 기사 부분이 2015. 10. 7. 경부터 개시한 □□전자 서초사옥 앞에서의 노숙 농성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이 있는바, 위 기사의 담당 기자 자술서(을 제1호증)에는 위 담당기자가 제보를 받고 다음 날 실제로 현장을 찾아가 편의점 편육, 막걸리 등 술병과 안주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확인했고, 기사 내 사진으로 이때 본 모습을 그대로 담았으며, 욕설은 증인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자술서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담당기자가 위 기사 내용에 적시된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2015. 10. 20.자 기사에 포함된 사진은 원고의 집회 내지 농성 장면과는 무관한 □□일반노조 시위 사진임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사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2, 3 기재 각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7. 23.자 조정권고안에 원고가 공익법인의 구성이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거나 공익법인 운영비에 원고의 활동비가 포함되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별지 1, 2, 3 기재 각 기사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기사 보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모욕의 위법성 조각 관련

별지 4 기재 기사 중 “집회가 벼슬인 마냥 요란한 소리를 내며 억지주장을 일삼는 A의 민낯”, “가해자 □□ 상대로 싸운다는 낯 뜨거운 프레임을 세워놓고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 “시위와 싸움을 혼장으로 여기는 전문 시위꾼들이 A를 장악”, “억지 선동과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A 시위가 막장 집회로 변질되고 있다”, “연일 엉뚱한 소리와 막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변죽이라도 울려 이목을 끌해보겠다는 알팍한 술수를 부리는 것”, “놀 거 다 놀면서 벌이는 집회”라는 표현은, 원고의 활동이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문제의 제기 및 비판이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선택된 어휘라고 볼 수 없고, 모멸적인 표현에 이른다고 볼 수 있어, 언론자유 보호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는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7가합111384 판결(확정)

‘총체적 부실’, ‘엉망’이라는 표현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 원고 : A 외 2명
- 피고 : 한국방송공사 외 1명

[사실관계]

피고 한국방송공사 소속 기자 피고 D는 2017년 7월 19일자 KBS-1TV <뉴스 7>에서 ‘○○댐의 관리 및 위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댐을 관리하는 ○○수력발전소 직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수력발전소장이었던 F는 보도 다음 날인 2017년 7월 20일 자살하였다. 망인 F의 아내인 원고 A와 자녀 원고 B, 원고 C는 피고들의 보도가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보도내용이 진실하거나, 원고의 명예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총체적 부실’, ‘엉망’이라는 표현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 보도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의 해명자료를 토대로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반론보도를 방송하였으며, 보도가 공익성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항소가 없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요지]

□ 이 사건 보도내용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도와 망인의 관련성은, 제대로 된 대처가 미흡했다는 부분에 한정된다. 댐 수위가 정상에서 5cm 아래까지 차올라 7분 정도만 비가 더 내렸더라면 댐이 넘칠 수도 있었다는 부분은, 망인의 명예와 관련된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총체적 부실’, ‘엉망’이라는 표현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이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한편 보도내용이 보도의 취지상 일부 직원들이 도망갔다는 인상을 주는 면은 있으나 ‘피신’은 자리를 비운 사실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이외 나머지 사실들은 허위로 보기 어려워 정정보도 청구에 이유 없다.

판결문

사	건	2017가합111384 정정보도청구 등
원	고	1. A 2. B 3. C
피	고	1. 한국방송공사 2. D
변	론	2018. 9. 20.
판	결	2018. 10. 2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방송되는 ‘KBS 1TV KBS 뉴스 7’ 프로그램의 첫 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상단에 주위적으로 ‘정정보도문’,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주위적으로 별지 1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예비적으로 별지 2 기재 반론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2.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7,046,800원, 원고 B, C에게 각 108,03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충청북도 지역에 2017. 7. 16.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국수력원자력'이라 한다)가 관리하는 ○○댐에서 긴급 방류를 하였고, 댐 하류 지역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17. 7. 19. 19:00경 'KBS 1TV 뉴스 7'에서 다음과 같이 ○○댐 관리가 부실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담당 기자는 피고 D였다.

〈“7분 뒤면 넘치는데” ○○댐 관리 총체적 부실〉

앵커

지난 16일 충북 지역에 내린 폭우로 ○○댐이 긴급 방류를 했는데요, KBS 취재 결과 위급한 순간에 댐 관리는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D 기자입니다.

피고 D

지난 16일 오전 6시 40분, ○○댐 상류에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시작됩니다.

댐 수위는 134.4m로 제한 수위를 넘긴 상태. 20분 뒤, 수문 2개를 열었고 낮 12시에는 댐 수문 7개 모두를 최대치로 개방합니다.

위급한 순간, 대응은 엉망이었습니다.

근무자 비상소집은 3시간이 넘게 걸렸고, 만수위를 넘긴 순간에도 홍수통제소에는 ○○댐이 흘러넘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오후 1시 10분. 수위가 더 차오르고 댐 붕괴 위기대응 주의단계가 발령됩니다.

댐 수위 자동측정 장치는 그 사이 고장이 났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위기 상황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1시 50분엔 위기 상황이 경계단계로 격상됐고, 오후 2시 30분, 수위는 댐 정상에서 불과 5cm를 남기고 차오릅니다. ○○댐의 일부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피신합니다.

○○댐 수력발전소 관계자 인터뷰

댐 상류부 상황파악과 (월류로 인한) 침수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일부 직원을 댐으로 이동시켜 수위관측 등의 업무를 하게 했습니다.

피고 D

곧 비가 그치기 천만다행, 7분 정도만 더 내렸더라면 댐이 넘칠 수도 있었습니다.

E(△△대학교 토목공학부 교수) 인터뷰

댐이 버틸 수 있는 한계치까지 도달을 한 거니까... 한계치까지 도달을 한 거죠.

피고 D

댐 붕괴라는 최악의 위기는 넘겼지만 댐 위기 대응은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KBS 뉴스 D입니다.

다. ○○수력발전소장이었던 F는 보도 다음 날인 2017. 7. 20. 오전 수력발전소 사무실 2층 옥상에 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원고 A는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 원고 B, C는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 1) ○○수력발전소 직원들은 500년 만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매뉴얼에 따른 최선의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사실을 왜곡, 과장함으로써 위기대응이 엉망인 것처럼 보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적어도 별지 2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 2) 피고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 없이 왜곡된 편집과 자극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망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고,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하게 만들었다. 망인의 일일수익 합계 173,109,600원과 위자료 100,000,000원 합계 273,109,600원을 상속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분하면 원고 A는 117,046,800원, 원고 B, C는 각 78,031,200원이 되고, 여기에 원고들이 각자 보유하는 위자료 30,000,000원을 더하면 원고 A는 147,046,800원, 원고 B, C는 각 108,031,200원이 된다. 피고들은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 1)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 취재 과정에서 망인과 접촉한 적이 없고, 보도에 망인을 특정한 적도, 망인에게 홍수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도한 적도 없다.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
- 2) 이 사건 보도에 나타난 '2017. 7. 16. 6:40경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다.' '근무자 비상소집은 3시간 넘게 걸렸고, 만수위를 넘긴 순간에도 홍수통제소에는 ○○댐이 흘러넘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되었다.', '댐 수위 자동측정장치는 그 사이 고장이 났다.', '주민들에게는 위기 상황이 전달되지 않았다.', '○○댐의 일부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피신하였다.', '7분 정도만 비가 더 내렸더라면 댐이 넘칠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은 모두 진실이다. '총체적 부실', '엉망'이라는 표현은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정당하게 도출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 3) 원고들이 구하는 반론보도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총체적 부실'과 '엉망'이라는 표현에 대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였다.' 또는 '신속히 조치하였다.'와 같이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17. 7. 20. 한국수력원자력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댐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고, 주민들에게도 대피를 요청하였다는 반론보도를

한 사실이 있다. 원고들은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 4) 이 사건 보도는 ○○댐의 잘못된 관리와 운영 실태를 바로 잡아 인근 주민들이 더 이상 위기에 노출되지 않고, 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제작되었다.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망인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나, 이 사건 보도와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도와 원고들의 관련성

이 사건 보도는 ○○댐의 관리 및 위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이는 ○○댐을 관리하는 ○○수력발전소 직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망인은 이 사건 보도 당시 ○○수력발전소장이었으므로, 이로 인해 망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와 전체적으로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관련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정보도 청구

- 1)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은 ‘○○수력발전소가 규정에 따라 댐을 운영하였고,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하였으며, 관련 법규나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에 관련 법규나 절차를 적시하고 ○○수력발전소가 규정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2)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도에 적시된 사실은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들이 문제 삼는 부분 중 사실을 적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총체적 부실’, ‘엉망’이라는 표현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아래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 ① 2017. 7. 16. 6:40경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다.
- ② 근무자 비상소집은 3시간 넘게 걸렸다.
- ③ 만수위를 넘긴 순간에도 홍수통제소에는 ○○댐이 흘러넘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되었다.
- ④ 수위 자동측정장치는 고장이 났다.
- ⑤ 주민들에게는 위기 상황이 전달되지 않았다.
- ⑥ ○○댐의 일부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피신하였다.
- ⑦ 오후 2시 30분 댐 수위는 정상에서 5cm 아래까지 차올랐다. 7분 정도만 비가 더 내렸더라면 댐이 넘칠 수도 있었다.

나) 이 사건 보도와 망인의 관련성은, 제대로 된 대처가 미흡했다는 부분에 한정된다. ① 2017. 7. 16. 오전 6:40경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다는 부분과 ⑦ 오후 2시 30분 댐 수위는 정상에서 5cm 아래까지 차올랐다. 7분 정도만 비가 더 내렸더라면 댐이 넘칠 수도 있었다는 부분은, 망인의 명예와 관련된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나머지 사실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을 제3,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근무자 비상소집에 3시간 넘게 걸렸다는 부분

2017. 7. 16. 6:40경부터 ○○댐 상류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수력발전소 근무자 비상소집이 10:10에 이루어졌다. 근무자 비상소집이 3시간 넘게 걸렸다는 표현은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

(2) 만수위를 넘긴 순간에도 홍수통제소에는 ○○댐이 흘러넘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되었다는 부분

2017. 7. 16. 만수위(EL 135.65m)는 10:30경 도달되었다. 10:37경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댐의 ‘계획홍수위(EL 136.93m) 초과가능성’을 보고하였고 그 무렵 ○○댐이 흘러넘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그 후 상황이 진정되고 15:02경 국가안보실에 ○○댐의 월류가능성이 낮다고 보고되었다.

(3) 수위 자동측정장치가 고장이 났다는 부분

원고들 또한 수위 자동측정장치가 ‘침수로 인해 작동이 멈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어 수위가 자동적으로 측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고장이 났다.”는 ‘측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4) 주민들에게 위기 상황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부분

보도의 맥락에 비추어 ‘위기 상황’이란 ‘방류 사실’이 아니라 ○○댐 수위가 높아져 월류 및 댐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위기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문 개방 전 방류사실을 방송하고 관계 기관에 이를 일부 통보했던 사실만으로 이 부분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5) ○○댐의 일부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피신하였다는 부분

보도의 취지상 일부 직원들이 도망갔다는 인상을 주는 면은 있다. 그러나 ‘피신’은 자리를 비운 사실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댐 수위가 최대 상승하였던 2017. 7. 16. 14:30경 발전소 오퍼레이터 2명이 사무실을 나와 댐 상류지역으로 올라가 수위 측정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피고 D가 ‘일부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피신을 합니다.’라고 말한 직후 발전소 관계자 인터뷰로 ‘댐 상류부 상황파악과 (월류로 인한) 침수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일부 직원을 댐으로 이동시켜 수위관측 등의 업무를 하게 했습니다.’라고 하여 ‘피신’이 아니라 ‘업무수행’이라는 반론도 실었다. 자리를 비운 사실

에 대하여 ‘피신’과 ‘업무수행’을 연이어 보도한 점에 비추어 이 부분 또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원고들의 정정보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반론보도 청구

1) 원고들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수력발전소에서 절차를 지켜 최선을 다해 신속한 조치를 다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을 제 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이 사건 보도 다음 날인 2017. 7. 20. 한국수력원자력의 해명자료 따라 다음과 같은 반론보도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지난 16일 집중호우 때 ○○댐에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해명자료를 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당일 수력관제센터에서 □□홍수통제소와 협조를 통해 수문을 개방했고, 주민들에게도 대피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수원은 그러나 홍수시 급격한 수위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댐 운영방법이나 구조개선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이 사건 보도에 ‘댐 상류부 상황파악과 (월류로 인한) 침수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일부 직원을 댐으로 이동시켜 수위관측 등의 업무를 하게 했습니다.’라는 ○○수력발전소 직원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다. ‘○○수력발전소 직원 중 일부가 댐 붕괴에 대비하여 피신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부분은 반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 보도 말미의 ‘댐 붕괴라는 최악의 위기는 넘겼지만 위기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에 해당하고, 망인의 명예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댐이 콘크리트 중력식 댐으로 일반 사력댐과 달리 댐 월류시에도 댐 안정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반론은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댐의 연한²⁷⁾, 토목공학과 교수 인터뷰²⁸⁾와 관련 논문²⁹⁾, 1996년 ☆☆댐 붕괴 사례에 비추어 그 내용이 반드시 진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원고들에게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손해배상 청구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댐 관리와 위기 대응은 주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를 한 것을 두고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7) ○○댐은 1957년 준공된 아주 오래된 댐이다. 2013년 기준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보통)을, 수문학적 안전등급에서 D등급을 받았다.

28) ‘댐이 버틸 수 있는 한계치까지 도달을 한 것’이라는 취지

29) 대부분의 콘크리트 댐은 ‘다른 나쁜 영향이 없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는’ 홍수에 의한 월류를 잘 견뎌낼 수 있다.

- 2) 을 제1,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댐 하류에 피해가 발생한 사실로 망인과 주민들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사실, 망인이 이로 인하여 상당히 힘들어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단지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 또한 부족하다.
- 3)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2〉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7가합566094 판결

트위터에서 리트윗은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그와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외 2명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와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는 각기 2017년 8월 25일자 <조선일보>와 인터넷 <조선일보>에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가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귀여축제 영상을 보여주었으며, '메갈리아' 회원으로 트위터로 '한남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남학생들을 질책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의 일부가 허위사실이며, 원고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는 등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2심 계류 중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63946).

[판결요지]

□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주로 학부모 대의위원회가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위 자료의 신빙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피고 B가 기사 작성 당시 참고하였다는 이 사건 간담회 녹취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교육방식을 옹호하는 학부모의 의견이나 원고 대신 참석한 교사가 밝힌 원고의 입장 등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이를 이 사건 기사 내용에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가 트위터에 스스로 '메갈리아' 회원이라고 밝힌 바가 없고 피고들이 실제로 원고의 회원 가입 여부를 직접 조사확인한 바 없음에도, 원고가 리트윗한 글들 중에 '나는 메갈이다'라는 해시태그가 붙어있는 글이나 '한남총'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메갈리아' 회원인 것으로 숙단하여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트위터 리트윗이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는지에 대한 판단

비록 리트윗이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한남총'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사용된 글의 내용에 동조·공감하며 이를 공유하기 위하여 리트윗한 이상, 이는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그와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트위터에서 '한남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결문

사	건	2017가합566094 정정보도 등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2.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3. B
변론종결		2018. 10. 12.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 가.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선일보 종합 8면 상단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내용은 별지 3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활자체와 크기로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위 제1의 가항 기재 기한 이내에 위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가.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선닷컴 사이트(<http://www.chosun.com>) 초기 화면 상단에 24시간 동안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로 게재하고,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내용이 별지 4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활자체와 크기로 표시되게 하며, 24시간 게재 후에도 별지 4 기사 본문 하단에 위 정정보도문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여 별지 4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가 위 제2의 가항 기재 기한 이내에 위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선일보 종합 8면 상단에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내용은 별지 3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활자체와 크기로 한다.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위 기한 이내에 위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선닷컴 사이트(<http://www.chosun.com>) 초기 화면 상단에 24시간 동안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로 게재하고,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내용이 별지 4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활자체와 크기로 표시되게 하며, 24시간 게재 후에도 별지 4 기사 본문 하단에 위 정정보도문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여 별지 4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가 위 기한 이내에 위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서울 □□구 △△동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교사이다.
-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사'라고만 한다)는 일간지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이하 '피고 디지털조선일보'라고만 한다)는 조선닷컴 사이트(<http://www.chosun.com>)에 '인터넷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B는 피고 조선일보사 소속 기자이다.
- 원고는 2017. 6.경 '닷컴페이스'라는 인터넷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초등학교에서도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2017. 7. 17. 수업시간에 퀴어축제(성 소수자 축제)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에 따라 원고의 교육관과 수업방식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어, ○○○초등학교에서 2017. 8. 23. 이와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이하 '이 사건 간담회'라고 한다)가 열렸다.
- 피고 조선일보사는 2017. 8. 25. 조선일보에 피고 B가 작성한 별지 3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고, 피고 디지털조선일보는 인터넷 조선일보에 같은 내용의 별지 4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별지 3, 4 기재 기사를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

- 이 사건 기사에는 ① 일부 학부모는 원고가 2017. 7.경 수업시간에 퀴어축제 동영상을 보여준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 ‘야, 너 게이냐?’ 등의 말이 유행하였다고 주장한다는 부분(이하 ‘① 부분’이라 한다), ② 원고는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로 알려진 ‘메갈리아’ 회원이고(이하 ‘②-1 부분’이라 한다), 트위터에서 한국남자는 별레라는 뜻의 ‘한남충’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으며(이하 ‘②-2 부분’이라 한다), 원고가 직접 ‘메갈리아’ 회원임을 트위터로 밝혔다는 부분(이하 ‘②-3 부분’이라 한다), ③ 원고는 자신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자 남성 혐오 관련 트윗 1,000여 건을 삭제했다는 부분(이하 ‘③ 부분’이라 한다), ④ 학부모들은 원고가 평소 남아아이들에게 ‘말 안 듣고 별난 것들은 죄다 남자’라며 질책한 일도 문제 삼았다는 부분(이하 ‘④ 부분’이라 한다), ⑤ 이 사건 간담회에서 학부모 220여 명이 항의하며 원고의 수업중단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이하 ‘⑤ 부분’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22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갑 3,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가 퀴어축제 동영상을 보여준 것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 ‘야, 너 게이냐?’ 등의 말이 유행한 것은 아니므로 ① 부분은 허위이다.
- 원고는 트위터에 ‘나는 메갈이다’라는 해시태그³⁰⁾가 붙어 있거나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글을 리트윗³¹⁾하였을 뿐 ‘메갈리아’ 회원이 아니고, 직접 ‘한남충’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메갈리아’ 회원이라고 스스로 밝힌 적도 없으므로, ②-1, 2, 3 부분은 허위이다.
- 원고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 때문에 트윗을 전부 삭제한 것이지 남성 혐오 트윗 1,000여 건을 선별하여 삭제한 것은 아니므로 ③ 부분은 허위이다.
- 원고는 남아아이들에게 ‘말 안 듣고 별난 것들은 죄다 남자’라고 질책한 사실이 없으므로 ④ 부분은 허위이다.
-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중 일부만 원고의 수업중단을 요구하였으므로 ⑤ 부분은 허위이다.
-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 위와 같이 허위사실인 ① 내지 ⑤ 부분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에 기하여 피고 조선일보사, 디지털조선일보를 상대로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 내용과 같은 정정보도 및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매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구한다.

30)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특정 단어 앞에 # 기호를 붙이는 것으로 그 단어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분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준다.

3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 하나인 트위터에서 다른 사람의 트윗을 인용하여 다시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사실의 적시 여부(①, ④ 부분)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내용을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① 부분은 「일부 학부모는 “이 수업 이후 학교에선 ‘야, 너 게이냐?’ 등의 말이 유행했다”고 주장한다」라고 보도하였고, ④ 부분은 「학부모들은 그(원고)가 평소 남자아이들에게 “말 안 듣고 별난 것들은 죄다 남자”라며 질책한 일 등도 문제 삼았다」라고 보도하여, 학부모들의 주장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표현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한편 ○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소제목, 기사 내용의 구성과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 문구의 연결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사는 독자들에게 ‘원고는 남성 혐오 커뮤니티 회원으로서 학생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퀴어축제 동영상을 보여주고 평소 남학생들을 차별하여, 이에 학부모들이 원고의 수업중단을 요구하였다’라는 등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원고는 교육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교사다’라는 인상을 주는 점, ○ 특히 이 사건 기사의 제목 「수업시간 ‘퀴어축제’ 보여준 여교사...그 초등교선 “야, 너 게이냐” 유행」에 ① 부분을 결합하여 보면, 원고가 퀴어축제 동영상을 보여준 것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 ‘야, 너 게이냐?’ 등의 말이 유행한 것처럼 읽혀지는 점, ○ 또한 이 사건 기사의 소제목 중 「여교사, 남성 혐오 커뮤니티 회원...한국남자는 벌레 ‘한남충’ 표현도」라는 부분과 원고가 메갈리아 회원임을 밝혔다는 ② 부분 등은 원고가 남성 혐오 성향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이를 ④ 부분과 결합하여 보면 원고가 평소 남자아이들에게 ‘말 안 듣고 별난 것들은 죄다 남자’라며 질책한 일이 실제 있었던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 중 ① 부분은 원고가 퀴어축제 동영상으로 보여준 후 학생들 사이에 ‘야, 너 게이

냐?’ 등의 말이 유행하였다는 사실을, ④ 부분은 원고가 평소 남자아이들에게 ‘말 안 듣고 별난 것들은 죄다 남자’라고 질책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암시하는 방법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적시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언론보도에 의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원고가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①, ④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

갑 7, 8, 19 내지 24, 28,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 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 중 ①, ④ 부분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들은 2017. 8. 24. ○○○초등학교의 학부모회장이었던 D로부터 학부모 대의 원회에서 작성한 ‘원고에 대한 아이들의 증언’이라는 자료(을 9호증의 2)를 이메일로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기사 중 ①, ④ 부분을 보도하였다.

○ 위 자료에는 ①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퀴어축제 동영상을 보여준) 수업 이후 학교에서 여자친구들끼리 손잡으면 ‘둘이 사귀냐?’, ‘동성연애하냐?’ 이렇게 놀리고요, 남자친구들끼리 친하게 지내거나 몸을 부딪쳐도 게이라고 놀리며 웃고 난리라네요”라는 내용, “반 아이들 중 여러 명이 서로 ‘야~ 너 게이냐?’하며 장난치고 떠드니 선생님(원고)께서 ‘너네 왜 게이를 욕해?’라고 화난 말투로 (말씀)하셨다네요”라는 내용이 있고, ④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말 안 듣고 별난 것들은 죄다

남자야. 제발 여자애들처럼 말 좀 잘 들어. 사고나 치지 말고.’ 이게 작년에 선생님(원고)이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며 한 얘기랍니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

- 그러나 위 자료는 원고가 퀴어축제 동영상을 보여준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징계 등을 요구하는 입장인 학부모회가 이 사건 간담회가 열리기 전 원고의 수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인데, 당시 여름방학 중이었으므로 조사 대상의 범위나 사례수집 기간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작성자나 진술자가 누구인지 등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진술자의 신원은 적어도 몇 학년 학생이 언제 무슨 수업에서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지 정도로는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위 자료는 이 사건 간담회 당시 18개의 사례가 담긴 형태로 간담회 일부 참석자들에게 배포되었는데, 이에 근거한 참석자들의 질문에 ○○○초등학교의 교장은 ‘그 사례집 속에 있는 내용은 지금 기관에서 조사 중인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거론했으면 좋겠다. 당사자(원고)는 아니라고 하는데 사례집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 이 사건 간담회 이후 D가 피고 B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22개의 피해 사례가 수집된 것으로 되어 있고, 학부모회에서 교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며 보낸 내용증명에는 17개의 피해 사례가 수집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자료별로 조금씩 달라지는 면도 있어, 위 피해 사례를 모은 자료의 형식, 분량, 내용 등에 있어 정확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
- 이와 같이 학부모회가 작성한 피해 사례 자료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자료에 ①, ④ 부분과 같은 사례가 언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로 원고가 퀴어축제 동영상을 보여준 후 학생들 사이에서 ‘야, 너 게이냐?’ 등의 말이 유행하였다거나, 원고가 평소 남자아이들에게 ‘말 안 듣고 별난 것들은 죄다 남자’라고 질책하였다는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 원고는 “퀴어축제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왜곡된 성교육을 하고, 남자 아이들에게 ‘말 안 듣고 별난 것들은 죄다 남자다’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라는 등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학생인권조례폐지운동본부 대표인 E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였는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4. 4.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를 호소하는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상담사를 통하여 모두 상담하였으나 특별한 피해 사례를 수집할 수 없었던 점, 피해를 당한 아동이 있었는지 여부나 원고가 수업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와 관련된 구체적 피해 진술도 확보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이유로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 원고가 2016년경 답임을 맡았던 ‘3학년 X반’ 학부모인 C, F, G, H는 원고의 교육 방식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①, ④ 부분과 같은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위 ‘2016년 3학년 X반’ 학부모들은 이 사건 간담회 직후인 2017. 8. 25. 학부모연대를 결성하고 원고의 교육방식 등을 옹호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하였다.

(2) ②-1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

원고가 트위터에 ‘나는 메갈이다’라는 해시태그가 붙어있는 글이나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글을 리트윗할 당시 메갈리아의 회원이 아니었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②-1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3) ②-2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글을 본인 트위터 계정에 리트윗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리트윗한 글의 내용이나 리트윗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평소 ‘메갈리아’ 관련 게시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내용에 동조하거나 공감하는 경우 이를 리트윗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비록 리트윗이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사용된 글의 내용에 동조·공감하며 이를 공유하기 위하여 리트윗한 이상, 이는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그와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트위터에서 ‘한남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리트윗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②-2 부분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②-2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4) ②-3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트위터에서 ‘나는 메갈이다’라는 해시태그가 붙어있는 글을 리트윗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1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가 트위터에 스스로 자신이 ‘메갈리아’ 회원이라고 밝히는 글을 작성한 사실은 없는 점, ○ 피고들은 원고가 리트윗한 글에 ‘메갈리아’ 회원들만 쓰는 말인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이는 원고가 ‘메갈리아’ 회원임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남충’이라는 표현을 ‘메갈리아’ 회원만 사용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는 점, ○ 이 사건 당시 여성 혐오를 나타낼 때 ‘메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분위기에 대항하여 ‘메갈리아’ 회원이 아니더라도 SNS 글 등에 ‘내가 메갈이다’라는 해시태그를 붙이는 경우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나는 메갈이다’라는 해시태그가

붙은 글을 리트윗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스스로가 ‘메갈리아’ 회원임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밖에 ②-3 부분에서 적시된 것처럼 원고가 트위터로 스스로가 ‘메갈리아’ 회원임을 밝혔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들이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②-3 부분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③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

갑 4, 1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갑 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의 2017. 6.경 닷페이스와의 인터뷰 영상에는 원고의 이름, 근무처 등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는 점, ○ 원고는 위 닷페이스 인터뷰 이후 인터넷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자신과 남편 등의 신상이 알려지자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여 트위터의 글들을 삭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의 트윗은 2017. 8. 4. 총 7,641개에서 2017. 8. 8. 총 6,612개, 2017. 8. 13. 총 4,219개로 줄어들었는데, 원고는 일정 기간 동안 올린 트윗을 일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기사 중 ③ 부분은 기사 전체의 흐름이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계정에 원래 남성 혐오 관련 트윗이 1,000여 건 존재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위 남성 혐오 관련 트윗만 선별하여 삭제하였다고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가 삭제한 트윗이 남성 혐오 내용인지 여부나 그러한 트윗이 1,000여 건에 달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피고 B의 진술이 기재된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는 ‘원고가 비판이 제기된 이후 삭제한 총 트윗 개수가 수천 건이고 그 과정에서 남성 혐오와 관련된 트윗과 리트윗을 삭제한 것은 사실’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그에 의하면 원고의 계정에 ‘남성 혐오 관련 트윗 1,000여 건’이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③ 부분은 주로 막연한 추측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여지도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 중 ③ 부분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⑤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

이 사건 기사 중 ⑤ 부분은 기사 전체의 흐름이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간담회에 학부모 22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그 전부 혹은 대다수가 원고의 수업중단을 요구하였다고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갑 22호증, 을 6,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간담회 당시 원고의 교육방식 등을 지지하는 입장의 학부모도 있었던 사실, 원고가 퀴어축제 동영상을 보여준 행위 등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학부모들 모두가 원고의 수업중단까지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 F, G, H를 비롯한 ‘2016년 3학년 X반’ 학급 학부모들은 이 사건 간담회 직후 학부모 연대를 결성하고 원고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여기에 ○ 피고들은 이 사건 간담회 당시 몇 명이 모였는지 여부

나 수업중단을 요구한 학부모가 220명에 이르는지 여부에 관하여, D가 피고 B에게 보낸 메일(을 9호증의 1)에 ‘이 사건 간담회에 학부모 약 220명 정도가 참석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나, 작성자 불명의 메모(을 10호증)에 ‘이 사건 간담회에 220~300명 정도의 학부모들이 항의’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소명자료로 제시하나, 학부모회 측에서 작성하거나 제공한 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 갑 24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간담회 당시 참석자의 신분이나 인원수를 제대로 파악하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학부모회 측에서 추산한 인원수가 정확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이 사건 간담회 당시 원고에 대하여 비판적인 학부모들은 ‘공교육 기관이고 아직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동성애 관련 교육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원고가 페미니즘 교육이라는 이유로 남성 차별적인 교육을 한다’, ‘원고의 발언이나 퀴어축제 동영상 교육 등 수업방식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학교나 교육청측의 대응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한편 다른 일부 학부모들은 양성평등 교육과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 금지 교육의 필요성, 학생들에 대하여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성실히 교육하려고 노력하는 원고의 평소 태도 등을 근거로 원고를 옹호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 비판적인 학부모들도 일부 학부모들은 원고의 수업중단을 요구한 반면, 다른 학부모들은 ‘동성애 교육 등의 중단’을 조건으로 원고로 하여금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에 일단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바, 그럼에도 피고들은 ⑤ 부분에서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 전부 혹은 대부분이 원고의 수업중단을 요구한 것처럼 보도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전부 혹은 대다수가 원고의 수업중단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⑤ 부분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

위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허위사실인 ①, ②-3, ③, ④, ⑤ 부분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②-1, ②-2 부분은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남성 혐오 커뮤니티 ‘메갈리아’의 회원이고 ‘한남충’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부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고, 이에 적시된 사실은 진실한 것이거나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관련 법리

언론보도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언론매체에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공익성

이 사건 기사는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가 남성 혐오 커뮤니티의 회원으로 동성애, 페미니즘 등에 관한 편향된 교육을 하거나 평소 남자아이들을 차별하여 왔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목적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진실성

이 사건 기사 중 ②-2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트위터에서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글에 동조·공감하여 이를 공유하기 위하여 리트윗하는 과정에서 ‘한남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②-1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메갈리아’ 회원이었다는 이 부분 보도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②-1 부분의 진실성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당성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중 ①, ②-1, ②-3, ③, ④, ⑤ 부분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들은 주로 학부모 대의위원회가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위 자료의 신빙성이 그다지 높지 않음은 앞서 3.의 가. 2) 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 한편 피고 B가 기사 작성 당시 참고하였다는 이 사건 간담회 녹취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교육방식을 옹호하는 학부모의 의견이나 원고를 대신하여 위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가 밝힌 원고의 입장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이를 이 사건 기사 내용에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간담회에서 원고의 교육방식 등을 옹호하는 의견도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하여 위 간담회 당시 원고의 대리인으로 나선 교사나 원고가 담임을 맡았던 학급의 학부모 등을 취재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러한 취재가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 ○○○초등학교 교장이나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의 의견을 싣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어서, 이것만으로 원고의 반론권을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②-1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트위터에 스스로 ‘메갈리아’ 회원이라고 밝힌 바가 없고 피고들이 실제로 원고의 회원 가입 여부를 직접 조사확인한 바 없음에도, 단지 원고가 리트윗한 글들 중에 ‘나는 메갈이다’라는 해시태그가 붙어있는 글이나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메갈리아’ 회원인 것으로 속단하여 이 사건 기사의 소제목에 “여교사, 남성혐오 커뮤니티 회원...”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
- 또한 피고들은 ②-3, ③, ⑤ 부분을 적시하면서 마치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①, ④ 부분은 ‘주장한다’, ‘문제 삼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기사의 내용이나 제목 등과 결합하여 보면, ①, ④ 부분을 통하여 적시된 사실 자체는 이미 밝혀진 진실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
- 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간담회로부터 이틀 뒤에 보도되었는데, 피고들이 관련자들을 추가로 취재하거나 이미 취재한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해당 기사를 보도할 만한 특별한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남성 혐오 커뮤니티 회원으로서 편향된 교육을 하고 남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하였다는 등의 이 사건 기사 내용은 교사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②-1 부분에 대해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와 같이 피고들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되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경위, 보도의 형식, 내용, 표현방법, 이 사건 기사 중 허위부분이 차지하는 정도, 원고의 피해 정도, 피고들이 보도 당시 사실확인의 노력을 어느 정도로 하였는지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4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는바, 이 사건 기사 중 ①, ②-3, ③, ④, ⑤ 부분이 진실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법원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및 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문에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 이 사건 기사 중 허위부분의 내용과 분량 및 그 표현방식,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게재시기, 게재방법, 간접강제방법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1〉 정정보도문

제목 : 「수업시간 ‘퀴어축제’ 보여준 여교사...그 초등교선 “야, 너 게이냐” 유행」 관련 정정보도문

본문 : 본지는 2017. 8. 25. 「수업시간 ‘퀴어축제’ 보여준 여교사...그 초등교선 “야, 너 게이냐” 유행」이라는 제목으로, ① A 교사가 수업시간에 퀴어축제 동영상을 보여준 이후 학생들 사이에 ‘야, 너 게이냐’ 등의 말이 유행하였고, ② A 교사는 트위터에서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의

회원이라고 밝혔으며, ③ 자신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자 남성 혐오 트윗 1,000여 건을 삭제하였고, ④ 또한 남학생들에게 ‘말 안 듣고 별난 것들은 죄다 남자’라고 질책하였으며, ⑤ 이에 학부모 220여 명이 A 교사의 수업중단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① A 교사가 퀴어축제 동영상을 보여준 이후 학생들 사이에 ‘야, 너 게이냐’ 등의 말이 유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② A 교사가 직접 자신이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이라고 밝힌 사실은 없으며, ③ 사생활 침해의 우려로 트윗을 삭제한 것이지 비판을 피하고자 남성 혐오 관련 트윗 1,000여 건을 선별하여 삭제한 것은 아니고, ④ 남학생들에게 ‘말 안 듣고 별난 것들은 죄다 남자’라고 질책한 사실이 없으며, ⑤ 학부모들 중 일부만 A 교사의 수업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별지2〉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3~4〉 대상기사 생략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판결

‘중북’, ‘주사파’ 등의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 원고 : A 외 1명
- 피고 : C 외 10명

[사실관계]

피고 C는 2012년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원고들이 중북·주사파 단체인 □□□□연합에 속해 있고, 원고들 또한 주사파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C 외 피고들은 이를 인용하여 원고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및 2심 재판부는 ‘중북’, ‘주사파’ 등의 표현이 명예훼손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3심 재판부 다수의견은 개인의 정치적 이념은 진실한지 증명해내기 어려워 진실성과 상당성을 판단할 때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중북’, ‘주사파’ 등의 표현이 의견 표명에 그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나10564).

[판결요지]

□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적 이념에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의 진실성 및 상당성 요건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외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질 때에는 일반의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증명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증명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 ‘중북’, ‘주사파’ 등의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중북’, ‘주사파’ 등 어휘들의 통상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원심이 이 사건 표현행위를 모두 사실 적시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 ‘중북’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나 북한과의 관계 변화,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입장 또는 태도 변화, 서로간의 긴장 정도 등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용어 자체가 갖는 개념과 포함하는 범위도 변한다. 따라서 ‘중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주사파’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사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대법원 2000다14613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주사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사실 적시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기사 전체의 취지, 보도 당시인 1994년을 기준으로 해당 표현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갖는 부정적 의미를 살핀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십여 년 이상 지나는 동안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발전하고, 그동안 표현의 자유가 계속 확대되어 온 시대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주사파’라는 용어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 ‘주사파’라는 용어는 ‘총북’이라는 용어와 병렬적으로 사용되어 △△△△당의 운영이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 대표 경선 과정을 둘러싸고 원고들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또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

판결문

사	건	2014다61654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A 2. B
피 고 , 상 고 인		1. C
피 고 , 피 상 고 인		2. D
피 고 , 상 고 인		3. E 4. F 5. 뉴데일리 주식회사
피 고 , 피 상 고 인		6. G
피 고 , 상 고 인		7. H
피 고 , 피 상 고 인		8. I
피 고 , 상 고 인		9. J
피고, 상고인 겸 파상고인		10.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1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8. 선고 2013나38444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0. 3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C, E, F, 뉴데일리 주식회사, H, J,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피고 D, G, I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과와 쟁점

- 가. 원고 A는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 7월경부터 ○○○○당 대표로 활동하였고,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11년 12월경부터 △△△△당 대표로 활동하였다.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으로서 법무법인(유한) □□의 공동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 C는 ‘주간 미디어 위치’를 창간하여 대표로 활동하였고, 2012. 3.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원심판결 별지 9와 같이 원고들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 D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서 2012. 3. 25.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심판결 별지 10과 같이 원고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뉴데일리’라 한다) 소속 기자인 피고 E, F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에 원심판결 별지 11, 12와 같이 원고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이하 ‘피고 디지털조선’이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라 한다) 소속 기자인 피고 G, H, I, J는 조선닷컴이나 조선일보에 원심판결 별지 13, 15, 16, 17과 같이 원고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 나. 원심은 피고 D, G, I에 대한 부분과 피고 G, I와 관련된 피고 디지털조선, 조선일보에 대한 부분은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C, E, F, 뉴데일리, H, J에 대한 부분과 피고 H, J와 관련된 피고 디지털조선, 조선일보에 대한 부분은 명예훼손 등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고들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 피고별로 판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3.가.와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심이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고, 피고 C, E, F, 뉴데일리, H, J, 디지털조선, 조선일보(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는 원심이 명예훼손 등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라.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이다. 원심은 피고 C 등의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부분과 인신공격적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판단했고, 피고 C 등의 상고이유는 주로 원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책임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관한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판단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허용되지 않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하여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나. 형법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揭示)하여야 한다. 그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형법 제311조). 민법에는 어떠한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민법상 명예훼손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법률용어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통일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상으로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에 대응하여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는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 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명예훼손

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서 서로 다르므로 표현행위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구별하여야 한다. 기사 중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표현의 문언과 함께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 하에서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등 참조).

기사 중 어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인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또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질 때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증명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충분하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 라.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그 책임의 인정 여부도 달리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 표명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명예는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뜻한다.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행위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된다.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극우’든 ‘극좌’든, ‘보수우익’이든 ‘종북’이나 ‘주사파’든 그 표현만을 들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그 표현을 한 맥락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하는 것은 이른바 공인 이론에 반영되어 있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발언자의 지위나 평소 태도도 그 발언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 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써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 마. 언론에서 공직자 등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의 적시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대법원이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고 해서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그런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외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질 때에는 일반의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증명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증명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위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방의 대상으로 된 좌와 우의 이념문제 등은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 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선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론을 봉쇄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등 참조).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은 사실문제이기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의견과 섞여 있어 논쟁과 평가 없이는 이에 대해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 토론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범위를 좁히되,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명백히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숨 쉴 공간’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표현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에 무조건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을 남겨두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든 보수든 표현을 자유롭게 보장해야만 서로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비록 양쪽이 서로에게 벽을 치고 서로 비방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은 그들의 토론과 논쟁을 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3. 피고 C, E, F, 뉴데일리, H, J, 디지털조선, 조선일보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원심은, 피고 C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별지 9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즉 원고들은 □□□□연합 그 자체이다. □□□□연합은 종북·주사파이다. 원고 B는 □□□□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이고, 종북파의 성골쫄 되는 인물로서, 6·25 남침론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 적화통일론의 허구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주사파 □□□□연합의 입장이다. 원고 B가 □□□□연합의 종북담론을 만들어냈고, 원고 A가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이 원고 A를 찍었고, 원고 B 등이

원고 A에게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명예훼손과 인신공격적 표현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정하였다. ①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로 지목되거나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중북’으로 지목될 경우 또는 주사파나 중북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연합’에 속해 있는 것으로 지목될 경우 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이라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게 되어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피고 C가 위 트위터 게시글에서 원고들이 중북·주사파인 □□□□연합 그 자체라고 한 것에 의혹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게시글의 표현 내용은 부부인 원고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데올로그인 원고 B가 지적 능력이 부족한 때부터 원고 A를 조종하고 이용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서 사실을 왜곡하여 원고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이다.

(2) 피고 H, J, 디지털조선, 조선일보에 대한 청구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피고 H는 피고 디지털조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에 피고 C의 위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하는 내용의 원심판결 별지 15의 기사를 작성·게시하였다. ② 피고 J는 조선닷컴 및 피고 조선일보가 발행하는 일간지 ‘조선일보’에 피고 C의 위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하는 내용의 원심판결 별지 17의 기사를 작성·게시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H, J, 디지털조선, 조선일보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 H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 H는 기자로서 특히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타인의 말을 보도할 때에는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의 내용은 다른 표현들과 결합하여 부부인 원고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데올로그인 원고 B가 지적 능력이 부족한 때부터 원고 A를 조종하고 이용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서, 사실을 왜곡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이다. ② 피고 J에 대하여는, 피고 C의 위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원고 B가 □□□□연합보다 북한에 더 우호적으로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 ○○○○ ○○연대’와 가깝다고 함으로써, 원고 A와 원고 B가 중북·주사파임을 암시하거나 강조한 기사이다.

(3) 피고 E, F, 뉴데일리에 대한 청구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피고 E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에 피고 C의 위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하는 내용의 원심판결 별지 11의 기사를 작성·게시하였다. ② 피고 F는 위 뉴데일리에 원고들을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중북·주사파로 단정 짓고, 나아가 이들을 국가

보안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원심판결 별지 12의 기사를 작성·게시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E, F, 뉴데일리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 E에 대하여는, 앞서 본 피고 H에 대한 판단 부분과 같은 취지에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사실을 왜곡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이다. ② 피고 F에 대하여는, 원고들을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종북·주사파로 단정 짓고, 나아가 이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표현도 인격을 존중하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이무기, 순 새빨간 세력, 간첩 등 다른 신문에서는 볼 수 없는 혐오, 경멸, 모욕적 표현을 쓰고 있다. 피고 F가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 확인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들이 아무리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F가 작성한 위 기사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인격을 모멸하는 모욕적 표현이다.

나. 피고 C 등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1) 원심은 피고 C 등이 작성·게시한 위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판단의 전제로 원고들을 ‘종북 세력’이라고 한 부분, ‘주사파’라고 한 부분, ‘□□□□연합’에 속해 있다고 한 부분이 개별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원고들이 북한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이라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원심의 판단 중 상고이유로 삼은 부분은 종북, 주사파, □□□□연합 등을 사용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부분이고 인신공격적 표현으로 인한 부분은 명시적인 상고이유로 삼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신공격적 표현 부분은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 C 등이 위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서 한 표현행위(이하 ‘이 사건 표현행위’라 한다)는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원고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표현행위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경우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따져보고 그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손해의 정도를 달리 보아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표현행위가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표현행위에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인인 원고들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 원심은 피고 C 등의 이 사건 표현행위의 의미를 확정하면서 ‘종북’, ‘주사파’, ‘□□□□연합’

이라는 용어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단정하였다.

표현행위의 의미를 확정할 때,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가 주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위 어휘들의 통상적인 의미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이 사건 표현행위를 모두 사실 적시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

먼저 ‘중북’이라는 말은 과거 ○○○○당의 이른바 ‘평등파’가 당의 정책이나 이념적 방향에 관하여 북한에 대한 독자성과 자주성이 없다는 취지로 이른바 ‘자주파’를 비판하면서 사용된 이래,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태도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중북’이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반사회 세력’이라는 의미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중북’이라는 말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나 북한과의 관계 변화,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입장 또는 태도 변화, 서로간의 긴장 정도 등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용어 자체가 갖는 개념과 포함하는 범위도 변한다. 또한 평균적 일반인뿐만 아니라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중북’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 또는 감수성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중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렵다.

이 사건 표현행위에 사용된 ‘주사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주사파’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사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만을 근거로 사실 적시로 본 것이 아니라 해당 표현의 문언과 함께 기사 전체의 취지, 보도 당시인 1994년을 기준으로 해당 표현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갖는 부정적 의미를 살펴보고,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본 다음 사실 적시로 판단한 것이다. 즉 단순히 ‘주사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사실 적시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십여 년 이상 지나는 동안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발전하고, 그 동안 표현의 자유가 계속 확대되어 온 시대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주사파’라는 용어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 ‘주사파’라는 용어는 ‘중북’이라는 용어와 병렬적으로 사용되어 △△△△당의 운영이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경선 과정을 둘러싸고 원고들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또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

- (3) 이 사건 표현행위 당시 원고 A는 국회의원이자 공당의 대표로서 공인이었다. 그의 남편인 원고 B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그간의 사회활동 경력 등을 보면, 공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고 A는 면책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으로서 ‘□□□□연합’이라는 표현 등에 대응하여 이를 반박하고 비판하는 등 상호 정치

적 공방을 통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표현행위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 언론보도도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과거 ○○○○당 소속이었고 2012. 3.경에는 △△△△당의 공동대표였던 K와 2012. 5.경 당시 △△△△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L도 △△△△당 내에 ‘□□□□연합’으로 지칭되는 당권파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사건 표현행위가 있을 무렵인 2012. 3. 21. 판지일보는 <우리 안의 괴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A 본인이 자신이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인정하고 사퇴할 수 있을까? 없다. 그에게는 출마 그리고 사퇴 등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의사가 최우선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자신의 의사보다 더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집단의 결정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A라는 젊은 정치인이 ○○당에 이어 △△△△당의 대표 자리에 있는 것조차 그들이 결정할 거다.”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2012. 3. 23. 동아일보는 원고 A가 □□□□연합에 속해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고, 2012. 5. 4. 경향신문과 2012. 5. 8. 한겨레신문은 원고 A가 △△△△당의 당권파인 □□□□연합과 △△△△연합의 계파에 속한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2012. 5. 3. 한국경제신문은 18대 국회에서 □□□□연합 출신 현역 의원은 A 공동대표 한 명뿐이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더구나 과거 ○○○○당에 있었던 언론 논객인 M은 2012. 5. 14. 원고 A에 대하여 “이 분이 진보의 아이들이었는데 □□□□연합이라는 정파의 마리오네트로 드러난 거죠. 저는 너무 안타깝고 왜 이 분이 대중적으로 정말 아껴서 애써서 가꾼 이미지 아닙니까. 왜 이렇게 버렸을까 생각할 때 이번엔 당권파란 세력이 정말 권력욕이 그만큼 강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언론보도 내용이나 당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C 등이 이 사건 표현행위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4) 중복이나 주사파와 같은 표현에 사실의 적시가 없다고 하여 명예훼손책임을 부정하더라도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욕 등을 이유로 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다시 면밀하게 심리해야 한다[위에서 보았듯이 모욕적 표현으로 인격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원심판결문 33면)이나 성차별적 모욕을 부정한 부분(원심판결문 35면) 등은 상고이유 주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음을 분명히 해둔다.]. 이때에도 이 사건 표현행위가 정치적이 넘적 논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 도덕적 또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법적 책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 판단해야 한다.
- (5)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C 등의 이 사건 표현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원심은 피고 D가 발표한 원심판결 별지 10의 성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성명은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으로서, 원고 A가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용인하는 정파 또는 계파인 □□□□연합의 영향을 받고 □□□□연합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선정 과정에 상당히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의혹의 제기는 상당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 I에 대한 청구와 이와 관련된 피고 디지털조선에 대한 청구 부분

원심은, 피고 I가 보도한 원심판결 별지 16의 기사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I는 피고 디지털조선의 기자로서, 피고 D가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서 발표한 위 성명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위 성명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보도한 위 기사 역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피고 G에 대한 청구와 이와 관련된 피고 디지털조선, 조선일보에 대한 청구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디지털조선, 조선일보의 기자인 피고 G가 작성한 원심판결 별지 13 기사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위 기사 중 원고 A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은 원고 A가 □□□□연합의 실제 리더가 아니라는 부분뿐이다. 위 기사의 주요 내용은 □□□□연합의 수장이 누구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② 설령 원고 A가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부분이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원고 A는 공적 인물인 정치인으로서 의혹과 비판을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한다. 공적 인물과 사안에 관한 문제제기나 의혹은 널리 허용되고 공개토론을 거쳐야 한다. 위 기사는 □□□□연합의 실제 리더가 누구인가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그 성질상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이 극히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질 때에는 일반의 경우처럼 엄격하게 증명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피고 C 등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C 등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D, G, I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피고 C 등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한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6. 피고 C 등의 상고이유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

가. 다수의견의 의미에 대하여

다수의견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법리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수의견은 사실 적시와 의견 진술이 혼합된 경우 인정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사실 적시와 의견 진술을 구분할 경우 참작할 사유에 관한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등, 공적인 존재인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 관련 사실 적시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과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조정 기준에 관한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을 모두 인용하고 있다.

다수의견이 파기 사유로 삼고 있는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별기준, 표현의 자유 보장과 그 한계에 관한 법리는 이미 대법원이 여러 사건에서 다양한 측면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다수의견은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였을 뿐이다.

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의의와 한계

(1)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공적 인물이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경우’ 등에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불법행위가 된다. 결국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모두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공적 인물이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 (2) 표현의 자유와 그에 더 잡은 민주주의의 전제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것이다. 생각과 이념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전제 위에서 표현의 자유는 비로소 숨 쉴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을 아예 토론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배제’와 ‘매도’는 민주적 토론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 존재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종북’, ‘주사파’, ‘□□□□연합’이라는 용어는 그러한 입장으로 규정된 사람들을 민주적 토론의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한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하여 위와 같은 극단적 표현들은 자제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토론이 가능한 표현이라면 얼마든지 최대한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고 토론 자체를 봉쇄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민주주의가 질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 (3) 이 사건은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사건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진행되는 형사절차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은 국가권력이 국민에 대해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후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반면, 민사절차와 민사책임은 원칙적으로 개인 간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으로서 일방의 권리침해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와 민사책임을 묻는 경우 그 위법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행위를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한 한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민사책임을 묻는 것은 일방이 위법하게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모욕을 당했다면 인정될 필요가 있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별하는 것은 확립된 법리이기도 하다.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총기사용행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과 무관하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서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1) 다수의견은 피고 C의 청구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면서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라고 함으로써 애매모호하게 대법원의 판단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다수의견은 원심이 ‘종북’, ‘주사파’, ‘□□□□연합’이라는 용어만으로 사실 적시라고 판단한 것으로 단정하고 다의적인 개념(종북), 수사학적 과장(주사파)으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엔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실 적시가 없다고 한다. 다만, 다수의견도 ‘□□□□연합’이라는 용어는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2) 다수의견은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에 반한다.

피고 C가 22회에 걸쳐 게시한 트위터 글은 ‘종북 주사파’ ‘주사파 □□□□(연합)’ ‘□□□□(연합)의 종북담론’ 등 위 3개의 단어들을 결합하여 사용하였고, 이와 더불어 특정 정당명 및 관련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게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뒤를 이을 주사파 차세대 아이돌 N이 당선된 △△당 청년비례 선거조작,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종북 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A에게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을 겁니다.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연합에서 A로 버티고 가겠다고 결정했으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A 남편 B가 2004년 12월에 발표한 6·25 남침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 적화통일론의 허구성>이란 논문, 이게 주사파 □□□□의 입장이지요.”, “A가 □□□□연합의 마스코트에 불과하다면, A는 남편과 함께 □□□□ 그 자체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에서 A를 찍었고, 남편 B 등이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했습니다.”, “□□□□연합이 실제로 머리 역할하는 B, O 대신 이들의 부인인 A, N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는 건, 김정일이 미녀응원단 돌리는 것과 똑같은 발상으로 보입니다.”, “A 남편 B가 □□□□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라는 점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6·25 남침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인물이죠.”, “A 남편이 자신은 □□□□의 이데올로그란 게 코메디라는데, P 가짜론, 6·25 남침 부인론 만들어내는 게 이데올로그의 역할이지 뭡니까?”, “저는 B가 이데올로그라 표현했어요, □□□□의 종북담론을 만들어낸 건 팩트니, 문제 없죠.”

피고 F가 작성한 기사도 마찬가지로 “□□□□연합이라는 종북좌파 주사파 조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A ... 낙마를 하면서 B가 소속되어 있는 □□□□연합이라는 종북좌파 주사파 조직이 도마에 오르면서 ...”, “A 부군인 B 변호사는 여러 부분에서 종북좌파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연합이라는 주사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에서도 아마 지도자급이라는 설이 있다.”라는 등의 내용이다

피고 E가 작성한 기사는 앞서 본 피고 C의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한 것으로서 보도한 내용은, “A-B 부부와 N-O 부부의 관계가 너무 똑같다. 남편이 머리고, 부인이 입 역할을 하죠. 또 다른 아이돌 기획입니다.”, “N △△△△당 비례대표 후보는 △△△△당 당권파인 □□□□연합이 만들어낸 원고 A 대표에 이은 기획상품이다.”,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에서

A를 찍었고, 남편 B 등이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했다.”라는 등의 내용이다.

피고 H가 작성한 기사 역시 피고 C의 글을 인용한 것에 더하여 “N 후보의 남편 O은 지난해 ‘○○○○연구회’라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되었다.”, “A 대표의 남편인 B 변호사 역시 □□□□연합 소속으로 알려져 있으며”를 추가하였다.

원심은 트위터 게시글에서 중복과 주사파 그리고 □□□□연합을 병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위 트위터 게시글의 문맥, 작성 및 전파 경위 등을 종합하면, 특정인이 주사파 또는 중복 세력으로 인식되는 □□□□연합에 속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이라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 적시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심공동피고 Q가 작성한 칼럼은 사실 적시가 없는 순수 의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고, 원고들이 이 부분을 다투지 않아 확정되었다. 피고 D에 대하여는 정치적 논평이라는 등의 이유로 다수의견이 제시한 바로 그 기준에 따라 명예훼손을 부정하였다.

이와 같이 원심은 적법한 사실인정을 기반으로 중복, 주사파, □□□□연합이라는 단어들이 각 게시글에서 사용된 표현의 문언과 함께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 하에서 전체적으로 사실 적시 여부를 판단하여 사실 적시가 인정되는 게시글과 부정되는 게시글을 구분하였고, 비판이나 과장으로 치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만 명예훼손을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이 막연히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 또는 수사학적으로 과장된 글로 볼 수 있음에도 이러한 측면을 간과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3) 다수의견은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과 배치된다.

다수의견은 ‘주사파’라는 용어 사용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미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이 ‘주사파’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사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위 대법원 판결은 해당 표현의 문언과 함께 그 기사 전체의 취지 등을 살펴본 다음 사실 적시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 대법원 2000다14613 판결은 ‘주사파’라는 표현이 순수 의견으로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된 기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 적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언론사의 기사가 전국○○○○○○○○연맹의 투쟁방법을 ‘공산계릴라식 빨치산전투’라고 표현한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위 두 대법원판결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피고 C 등이 주사파 등의 표현을 사용한 맥락과 글 전체의 취지를 보면, 원고들이 주사파 또는 중복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연합에 속해 있음으로써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4) 다수의견은 판단의 기준시점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다수의견은 주사파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앞서 본 대법원 2000다14613 판결이 선고된 이후 십여 년이 지나는 동안 민주정치가 발전하였고, 그동안 표현의 자유가 계속 확대되어 온 시대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주사파’라는 용어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야 할 것이고 ‘주사파’라는 용어는 수사학적 과장이거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 특정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를 판단할 때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 하에서 당해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위 선례들이 밝힌 바이고, 사실 적시인지 여부의 판단은 그 표현이 사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과 흐름을 살펴야 한다.

이 대법원판결을 선고하는 현재는 이 사건 표현행위로부터 6년, 원심 변론종결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이다. 피고 C 등의 이 사건 표현행위들은 소위 보수정권으로 평가되는 당시 정부와 피고들이 표방하는 정치이념이 국회 다수당을 점하고 있던 상황 하에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012. 3.경에 피고 C가 트위터에 게시하고 보수 성향의 신문으로 평가되는 피고 뉴데일리와 피고 조선일보가 받아쓰며, 당시 여당의 당직자가 이를 받아 성명을 발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원고 A가 국회의원이자 정당의 대표이고, 원고 B가 공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는 하나, 당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소수자의 위치에 있었다. 당시 이 사건 표현행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당의 득표를 저지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반공주의가 강고하게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던 소위 보수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특정인이 ‘중북’, ‘주사파’로 낙인찍히게 될 경우 느끼는 두려움이나 공포는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다. 다수의견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느끼는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 너무도 무감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표현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집권세력과 다수가 소수의 정치세력을 공격하기 위해 이 사건 표현행위들을 했다는 맥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사회적 맥락 하에서 이루어진 표현행위를, 그 이후 두 번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고 남북회담이 열린 대법원판결 선고일 현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

(5) 다수의견은 증거 없이 이 사건 표현행위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다수의견은 일부 정치인의 진술, 2012. 3. 21.자 판지일보 기사, 2012. 3. 23.자 동아일보 기사, 2012. 5. 4.자 경향신문과 2012. 5. 8.자 한겨레신문 기사, 2012. 5. 3.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언론 논객인 M의 2012. 5. 14.자 의견 표명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언론보도 내용이나 당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C 등이 이 사건 표현행위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원심은 다수의견이 적시한 언론보도를 포함하여 그 무렵의 여러 언론 보도 내용들을 인정한 다음, 2007. 4. 16. R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면서 ‘□□□□연합’이라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원고 A가 □□□□연합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은 점, 또한 □□□□연합에 속해 있다고 혐의를 받는 S 등이 내란음모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원고 A가 □□□□연합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 C가 위 트위터 게시글에서 원고들이 종북·주사파인 □□□□연합 그 자체라고 한 것에,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고 F의 경우에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 확인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H 역시 의혹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고 D, G에 대하여는, 의혹 제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수의견은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어떠한 점도 적시하지 않고 있다.

(6) 원심의 결론은 정정보도를 명한 부분에 압축되어 있다.

원심은 ‘위 피고들이 원고들은 종북·주사파 단체인 □□□□연합에 속해 있고, 원고들 또한 주사파라고 표현하였으나, 원고 A, B가 이적단체로서의 □□□□연합에 속해 있다거나,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라고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정정보도를 하도록 명하였다.

이 사건 표현행위에서 ‘종북’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주사파와 같은 계열에 들 수 있다는 의미로, ‘주사파’라는 용어는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과 행동지침으로 내세우면서 북한의 남한혁명노선이라고 하는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론을 추종하는 집단이라는 의미로, ‘□□□□연합’이란 용어는 주사파와 종북 인사들로 구성된 단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로 지목되거나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또는 주사파나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연합’에 속해 있는 것으로 지목될 경우 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이라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게 되어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

라.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 부분에 대하여

(1) 모욕에 관한 다수의견의 표현들은 판단 범위를 벗어난 오류가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라고 명시하였고, 피고 C 등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법리오해의 위

법이 있다'고 명백히 하였다. 모욕적 표현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도 부기하였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위와 같이 명예훼손에 관한 원심의 위법만을 판단한다면서도 그 이유 중에서 명예훼손과 더불어 모욕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면서 “...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 “...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범위를 좁히되 ...”,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 ... 법적 책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등으로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까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 부분은 상고심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2) 모욕적·인신공격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아니면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제307조 제1항, 제2항에, 모욕은 제311조에 각 규정되어 있어서 검사가 기소한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양자를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법상으로는 사실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 표명에 불과한지에 대한 법적 평가의 차이에 불과하고,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인 이 사건 표현행위도 동일하며, 그 근거규범도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같으므로 양자는 동일한 소송물이고 청구권원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형법상으로는 엄밀하게 구분되지만, 민법상으로는 모두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고, 어떤 글이 사실 적시가 포함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든,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서 모욕, 모멸적인 표현이든 이는 모두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하나의 청구권원을 이룬다. 법원은 표현들이 ‘명예훼손이거나 모욕이어서 사회적인 명예감, 개인의 인격권이 모두 침해되었다’라고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그 전체에 대하여 위자료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원심도 피고 C, H, 디지털조선, E, F, 뉴데일리 등에 대하여는 명예훼손과 모욕적 의견 표현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합하여 피고별로 위자료 금액을 정하였다. 이 사건 트위터 게시물 및 기사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볼 부분과 모욕적 표현으로 볼 부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 (3) 대법원판례도 이러한 입장과 다르지 않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판결은 원심에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표현을 사실 적시로 볼 수 없어 파기환송하면서 그 부분이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

시하였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은 원심에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표현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더라도 그 부분이 모욕적인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문제만 남아 있고 이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므로 결국 불법행위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4) 환송 후 원심의 심리 및 판단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더라도 원심이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부분은 위법이 없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 환송 전 원심이 모욕적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환송 전 원심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였던 표현에 대하여 다수의견에 따라 사실 적시를 부정하더라도 당해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격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 다음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 모욕 등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견은 상고심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님에도 모욕 등에 의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판단하는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모욕 등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 C, E, H의 이 사건 표현행위는 부부인 원고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데올로그인 원고 B가 지적 능력이 부족한 때부터 원고 A를 조종하고 이용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서, 진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원심은 피고 F의 이 사건 표현행위는 그 표현도 인격을 존중하는 아무런 노력 없이 이무기, 순 새빨간 세력, 간첩 등 다른 신문에서는 볼 수 없는 혐오, 경멸, 모욕적 표현을 쓰고 있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견 중 ‘모욕 등을 이유로 하는 법적 책임의 인정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분이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의 위 판단 부분에는 미칠 수 없다. 한편, 다수의견은 원심이 피고 F의 이 사건 표현행위가 모욕적 표현으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도 표시하지 않았는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피고 C, E, H의 이 사건 표현행위 중 부부인 원고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데올로그인 원고 B가 원고 A를 조종하고 이용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평가한 부분은 여성비하적인 관점을 전제로 원고 A가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사고능력이 없다고 폄하하는 것으로서 원고 A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정치적이념적 논쟁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표현행위에 나타난 것과 같은 여성비하적 관점에서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은 그 허용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결론

결국 피고 C 등의 이 사건 표현행위에 대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인신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 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사상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사실적시에 관한 법리오해, 위법성 조각사유 및 상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 적대 그리고 배제하는 표현을 삼가고 성숙한 민주적 토론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의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취지를 밝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가합32463 판결

수사기관의 불기소결정에도 성추행 사실 확인을 위한 별도의 취재노력을 하지 않아 상당성이 없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2명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2018년 3월 13일자 <PD수첩>에서 ‘△△대학교 대학원생 D가 지도교수인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해당 프로그램 제작 및 기획 PD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 및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보도내용의 일부가 허위이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후 피고들이 항소하여 현재 2심 계류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02139).

한편, 원고는 위 소를 제기한 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2018서울조정1076·1077·1078).

[판결요지]

□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이 사건 보도 전 원고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불기소결정에 D가 항고하였으나 기각된 점,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를 위한 취재과정에서 같은 내용을 다룬 타 언론사가 반론보도를 이행했던 사실 및 불기소결정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성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라도 암시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당시 동석하였던 제3자인 E가 ‘원고가 D의 손목을 잡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사건 보도 전 E를 취재하거나 그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이미 제출·조사된 증거들 외에는 성추행 사실 확인을 위한 별도의 증거확보, 취재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문

사	건	2018가합32463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문화방송	
		2. B	
		3. C	
변 론 종 결		2018. 11. 7.	
판 결 선 고		2018. 12. 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PD수첩” 프로그램 첫머리의 화면 상단에 별지1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1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하되, 원고의 성추행을 연상하게 하는 화면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1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을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2. 만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PD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2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되, 원고에 대한 성추행 등을 주장하는 사람의 자료가 화면이나

이를 연상케 하는 화면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2. 만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이라 한다)은 ‘MBC TV’를 방영하는 지상파 방송사로서 ‘PD수첩’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 방송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기획 PD이며, 피고 C는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의 담당 PD이다. 원고는 △△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이고, D는 2016. 11.말까지 원고의 연구조교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8. 3. 13. 방송된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에서 “미투 그 후, 피해자만 떠났다”라는 제목 하에,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아래 표의 ①, ②항과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아래 표의 ③, ④항과 같은 사실적 주장을 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에 따라 아래 표의 ①, ②항이 허위라는 점 및 아래 표의 ③, ④항에 관한 원고의 반론을 밝히는 내용의 별지2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 시작 직전에 방송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정정 및 반론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표]

번호	적시사실
①	△△대학교 대학원생 D가 지도교수인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
②	D가 원고의 성추행 사실을 △△대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알리고 지도교수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학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번호	적시사실
③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당시 동석하였던 조교가 진술을 번복하고, CCTV가 삭제되어 내려진 잘못된 처분이다.
④	원고가 D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 3건, 무고 2건의 고소를 남발하였다.

3. 판단

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의 적시 여부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표현하였지만,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2)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의 특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도에서는 원고를 ‘D의 지도교수’라고 지칭하면서 실명, 소속 단과대학이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원고를 고소한 D의 실명, 얼굴을 공개한 점, ② △△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D의 모습이 보도되어 해당 대학교가 △△대학교임이 확인되는 점, ③ 2017. 7.경 타 언론사들은 이 사건 보도에서 D가 주장한 피해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방영하거나 기사화하였는데, 당시 당사자를 ‘△△대학교 A 교수’, ‘△△대 체육교육과 대학원생 이X혜(가명)’ 등으로 지칭하여 원고의 성, 소속 단과대학을 특정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도 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이 사건 보도가 원고에 관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의 대상이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대학교에 4,401명의 교수진이 근무하고, 최근 △△대학교 교수들의 성폭력 사건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표 ①항의 사실 적시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에서 ‘△△대학교 대학원생 D가 지도교수인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제1 적시사실’이라 한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① 이 사건 보도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불거졌을 때 조직 안에서 제대로 해결되는 일은 드뭅니다. 누구보다 어렵게 졸업식을 맞이한 D씨 역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오랜 시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조교로 근무하던 D씨에게 2016년 11월 24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지도교수는 D씨의 논문을 봐주겠다며 술자리로 불렀습니다’라는 해설에 이어, “‘당신 교수가 총각이니까 가끔 좀 만져주고 그래’라는 친구 교수의 말에 (원고가) 제 팔목을 끌어당기면서 “어디 만져달라 그럴까, 어디?” 이러면서 저는 원치 않는 신체접촉까지 당했어요’라는 D에 대한 인터뷰 내용, ‘성희롱과 성추행이 있었다는 겁니다’라는 해설, 대역을 통해 남성이 여성의 손을 억지로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이끄는 화면이 함께 방영되었다.
 - ② 이 사건 보도에서는 ‘해당 교수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모두 부인했습니다’라는 해설과, ‘저는 너무 억울하니까. D가 주장하는 곳에서 뭘 한 적도 없고요. 집에 가자고 말린 사람도 저예요’라는 원고와의 통화 내용, ‘분명 폭언과 성희롱하는 말까지 들었다던 목격자는 검찰 조사에서는 말을 바꿨습니다.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증언한 겁니다. 검찰은 지도교수를 증거 부족으로 결국 불기소처분 내렸습니다’라는 해설, ‘누가 봐도 이거는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교수(원고)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 실제로는 사과뿐만 아니라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도 어떤 식으로든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라는 학과장과의 통화 내용이 방영되었다.
 - ③ 이 사건 보도는 D의 입장에서 D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였고, 성추행 혐의에 관한 원고의 반박 주장이나 불기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채 단순히 ‘모두 부인했다’, ‘목격자가 말을 바꿨다’는 취지로만 언급하였다. 또한 사건 당시 원고, D와 함께 있지 않아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학과장과의 통화 내용을 방영하면서 ‘원고가 잘못을 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하였다.
 - ④ 위와 같은 이 사건 보도의 내용, 구성, 표현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에서 ‘△△대학교 대학원생 D가 지도교수인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4) 표 ②항의 사실 적시 여부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에서 ‘학교는 해당 교수에게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D씨는 학교 양성평등센터, 교육부에도 문을 두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라는 내용을 방영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내용의 취지는 ‘△△대학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 원고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에서 표 ②항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예훼손 내지 정정·반론보도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 내지 ‘원고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 ②항의 사실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표 ③항의 사실 적시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에서 ‘당시 원고, D와 동석하였던 조교가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제2 적시사실’이라 한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보도에는 ‘당시 그 자리에는 조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는 D씨에게 그날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폭언과 성희롱하는 말까지 들었다던 목격자는 검찰 조사에서는 말을 바꿨습니다.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증언한 겁니다’라는 내용이 방영되었으므로, ‘당시 원고, D와 동석하였던 조교가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CCTV가 삭제된 상태다’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고, 이 사건 보도에서 ‘결국 (CCTV) 복구는 되지 않았습니까’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으나, 이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 내지 ‘원고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잘못된 처분이라는 점을 직접 언급한 바 없고, 설령 위와 같은 내용이 암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 내지 평가로 봄이 타당하다.

6) 표 ④항의 사실 적시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가 D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 3건, 무고 2건의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제3 적시사실’이라 한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보도에서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도교수가 D씨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한 겁니다. D씨는 소송에만 벌써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도교수는 D씨를 무고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D씨에게 3건의 명예훼손과 2건의 무고를 건 지도교수, 이렇게까지 소송을 남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내용이 방영되었으므로, ‘원고가 D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 3건, 무고 2건의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가 D를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였다’는 사실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고소를 ‘남발’하였다는 것은 원고의 고소 사실에 관한 단순한 의견 내지 평가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11, 25, 26호증, 을 제6, 7, 11, 19, 24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적시

사실은 허위이고, 원고는 피고들의 위 사실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문화방송은 이에 관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 ① D는 2017. 1.경 원고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고소내용은 이 사건 보도에서 D가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다. 검사는 2017. 10. 24. ‘당시 동석한 E는 “원고가 (D는) 운전을 해야 하니 술잔을 받지 말라며 손으로 D의 손목을 누르는 것을 보았을 뿐 D의 손목을 잡고 원고 쪽으로 가지고 가는 등의 신체적 접촉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D도 “원고가 손목을 잡고 원고 쪽으로 가지고 갔으나 원고 몸에 닿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D는 이와 같은 불기소결정에 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8. 1. 5.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다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8. 4. 20.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 D는 위 기각결정에 재항고하여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2018모1377).

위와 같은 불기소결정은 원고, D 뿐만 아니라 당시 동석하였던 동료교수인 F, 대학원생인 E의 진술을 모두 듣고 내려진 점, 불기소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항고기각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 ② 피고들은, 원고가 사건 당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16. 11. 28. D를 연구조교에서 해임한 점,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원고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 ‘고소인(D)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D에게 원고를 무고할 동기가 없는 점, 원고가 다른 지도 제자들에게도 폭행, 폭언을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1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들은, 원고가 사건 당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16. 11. 28. D를 연구조교에서 해임한 점을 성추행 사실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조교 해임시 D가 입는 불이익은 2016년 2학기 조교장학금 중 약 2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 외에 없고, 조교 여부와 무관하게 지도교수, 제자의 관계는 유지되므로 조교 해임이 D의 무고 동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마찬가지로 원고가 성추행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D를 연구조교에서 해임한 것이거나 위와 같은 해임 사실이 성추행 사실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은, D가 수사 과정, △△대학교 체육교육과 학과장 G와의 통화, △△대학교 양성평등센터 조사 과정,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서의 민원 절차에서 진술한 원고의 성추행 내용 즉, ‘원고가 “어디 만져달라할까, 어디”라고 말하며 D의 손을 잡아 끌었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주장하나, 원고 역시 일관되게 ‘D의 손목을 잡거나 끈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당시 동석하였던 대학원생인 E는 D와의 대화 및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D의 손목을 잡은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한 바 없다.

원고가 과거 제자였던 자들에게 폭언, 폭행을 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제1 적시사실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 외 원고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서 D의 무고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한 점이나 D에게 무고의 동기가 없다는 사정 내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적시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9, 18, 19, 21, 22,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제1 적시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를 통해 허위 사실인 이 사건 제1 적시사실을 보도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① 이 사건 보도의 주된 내용은 성폭력 신고를 한 이후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2차적 어려움에 관한 것으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취지인데, 이 사건 제1 적시사실은 D가 고소 이후 겪은 어려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 ② 2017년경 D가 주장하는 원고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타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고, 원고га 이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위와 같은 보도에 관한 반론보도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보도 전 원고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불기소결정,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이 있었던 점,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를 위한 취재과정에서 위와 같은 반론보도 사실 및 불기소결정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보도를 할 때 성추행 여부에 관한 원고의 반론을 충분히 균형 있게 다루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며, 표현 방식, 내용 선택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등 ‘원고가 성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라도 암시하지 않도록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보도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 ③ 피고들은 당시 동석하였던 제3자인 E가 D와의 대화(을 제7호증), 수사과정(갑 제10호증)에서 ‘원고가 D의 손목을 잡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사건 보도 전 E를 취재하거나 그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이미 제출·조사된 증거들 외에는 성추행 사실 확인을 위한 별도의 증거 확보, 취재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④ 이 사건 제1 적시사실의 내용은 성범죄에 해당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매우 심한 반면 이러한 보도가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속보를 요할 만큼 시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의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2 적시사실

이 사건 보도에 ‘당시 원고, D와 동석하였던 조교가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실적 주장이 포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인해 원고는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반론보도 청구는 이유 있다.

2) 이 사건 제3 적시사실

이 사건 보도에 ‘원고가 D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 3건, 무고 2건의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적 주장이 포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에서 고소에 관한 원고의 입장으로서는 ‘D씨의 성추행 관련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D씨가 먼저 2차례 고소하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라는 원고가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여주는 화면과 함께 ‘D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라는 해설이 방영된 사실도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제3 적시사실과 관련하여 ‘D씨에 대한 고소를 남발한 것이 아니라 D씨의 지속적인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는데, 그 중 ‘고소를 남발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 내지 평가에 불과하여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보도에 이미 그 내용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제3 적시사실에 대한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참조).

3) 그 외 원고의 반론보도 청구

원고가 구하는 아래 가) ~ 다)항과 같은 반론보도의 내용은 이 사건 보도에 그와 다른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보도에 대한 반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아래 라)항과 같은 반론보도의 내용 중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정보도의 내용에 포함되었으며, 나머지 ‘추가 피해가 존재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의견 내지 평가에 불과하므로, 아래와 같은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가) 불기소처분 이유서에는 지도교수의 주장뿐만 아니라 D씨의 주장에 의하더라도(또는 D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성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CCTV의 경우 지도교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센터에서는 학교 외부의 식당은 조사할 권한이 없어서 조사를 할 수 없었고, D씨의 지도교수가 먼저 식당에 찾아 간 이유는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다) 불기소처분의 의미를 ‘무죄가 아니라거나 무고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변호사는 D씨의 민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라) D씨의 지도교수는 D씨에 대한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최초 피해는 물론이고 추가 피해 역시 존재할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고 문화방송은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보도에 적시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실과 실제 적시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실이 다소 상이하고, 원고가 구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의 내용, 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정정 및 반론보도의 내용, 시기를 별지1과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보도의 내용, 표현 방식, 영향력, 허위 사실의 적시가 차지하는 정도,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액수는 2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일인 2018. 3. 13.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 : “[1146회] 미투 그 후, 피해자만 떠났다”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문 : 본 방송은 2018. 3. 13. “미투 그 후, 피해자만 떠났다”에서 △△대학교 대학원생 D씨가 지도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고, 2016. 11. 24. 모임에 동석하였던 조교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D씨의 지도교수는 D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D씨의 지도교수는 당시 목격자는 조교가 아니라 대학원생으로 지도교수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별지2〉 요구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생략

〈별지3〉 대상기사 생략

음성권 침해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548478 판결

공익을 목적으로 할지라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는 통화내용의 보도는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

- 원고 : A
- 피고 :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외 1명

[사실관계]

피고 B는 피고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소속 기자로, 2011년 6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C 의원의 문건 폭로에 따른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고와의 통화를 바탕으로 ‘원고가 C 의원이 폭로한 녹취록은 KBS가 만든 것이 맞고 원고도 이를 직접 보았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2017년 6월 8일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사전 동의 없이 피고 B와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 피고들에 대해 명예훼손, 음성권 및 사생활 침해에 따른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고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반론보도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사적인 통화 내용을 익명 처리하지 않은 채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음성권 침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방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결과가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39448, 대법원 2019다220922).

한편, 원고는 소 제기예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불성립된 바 있다(2017서울조정1000).

[판결요지]

□ 음성권 침해 여부 판단

피고 B가 원고와의 통화를 녹음한 뒤 이를 보도에 사용하여 원고의 음성이 재생되게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B가 이 사건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나 이를 보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거나 원고에게 고지한 바 없다. 또 보도에서 통화내용이 재생될 때 원고의 음성이 변조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실명 및 얼굴 사진도 보도 화면에 노출되어 피고들은 원고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피고 B는 원고를 ‘A 선배’라고 칭하며 통화를 하였고 원고는 후배인 피고 B와의 개인적인 통화라고 생각하고 원고의 의견 등을 거침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거나 비속어 내지 다소 과격한 표현을 쓰기도 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사항들이 공개됨으로써 원고의 음성권 등이 침해된 정도가 가법지는 아니하다.

판결문

사	건	2017가합548478	반론보도 등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1.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2. 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6. 20.
			2018. 7. 6.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는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뉴스타파 홈페이지(<http://newstapa.org>) 초기화면의 언론 탭에 링크된 언론개혁 부분에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반론대상 보도와 같은 형태, 크기의 글자와 이미지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이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글자로 표시되도록 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반론대상 보도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반론대상 보도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48시간이 지난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피고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반론보도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1년 6월경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고 한다)의 보도국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이하 '피고 한국탐사'라고 한다)는 인터넷뉴스인 '뉴스타파'를 제작·보도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며, 피고 B는 피고 한국탐사 소속 기자이다.
- 원고가 KBS 보도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 6. 23. KBS 수신료 인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당시 야당인 ☆☆당 최고위원들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당 국회의원들의 연석회의가 비공개로 개최되었는데, 그 다음날인 2011. 6. 24. 당시 여당인 ◇◇◇당의 C 국회의원은 위 연석회의 참가자들의 발언내용이 기재된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하였다. 이에 C 의원이 입수한 이 사건 문건이 만들어진 과정에 KBS 내부인사의 불법도청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이하 이를 '도청의혹' 사건이라 한다), C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졌으나 검찰은 2011년 12월경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 피고 B는 2017년 5월경 도청의혹 사건에 관하여 취재를 하던 중 위 사건 당시 KBS 보도국장이었던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화(이하 '이 사건 통화'라고 한다)를 하면서 이를 녹음하였다.

- 원고 : C한테 봤지. “야, 이게 이제 ☆☆☆당 야당에서 이렇게 대책회의를 했는데, 이러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아마 이게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 여기에 대해서 좀 잘 대응을 해달라.”

- 피고 B : 예.

- 원고 : 그 얘기는 이미 그 D인가?

- 피고 B : 예.

- 원고 : 그 때가 아마 정치부장이 D인가?

- 피고 B : 예, 맞습니다.

- 원고 : 그러니까 D가 다 얘기한 거야, 그건. 우리한테. 우리가 봤다고.

- 피고 B : 우리가 봤다고?

- 원고 : 그렇지.

(중략)

- 피고 B : 아니, 그런데 그 때 C 의원이 이렇게 손을 잡고 흔들면서 녹취록 비슷한 거를 한 네다섯 장 가지고 이렇게 흔들었는데.

- 원고 : 그러니까 그 문건을 우리가 만든 거야. 그건 맞아.

- 피고 B : 아, 그건 KBS, KBS에서 만든 거예요?

- 원고 : 예, 예. 우리가 보고서를 만든 거지.

(중략)

- 원고 : 그게 녹취록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뭐 누구 누구 의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언한 내용을 대충 써놨어, 이렇게.

(중략)

- 피고 B : 아니요, 그, 그 녹취록은 그러니까 보신 거 아니에요? 그, 그 녹취.
- 원고 : 아 그렇지. 그건 봤지, 나도.

(중략)

- 원고 : 나도, 나도 얼핏 봤는데.
- 피고 B : 예.
- 원고 : 그게 그 발언록이야, 발언록. 발언록. 어?
- 피고 B : 네.
- 원고 : 녹취록 그러면 또 오해할라, 이게. 응?

(중략)

- 원고 : 그거 그거야 뭐 평상시에 우리가 보고하는 거지, 그런 내용을.
- 피고 B : 예.
- 원고 :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좀 보니까. 어?
- 피고 B : 예.
- 원고 : 간단하게 쓴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좀, 응? 저 인용하는 형태로 돼 있어. 어?
- 피고 B : 예.
- 원고 : 근데 이게 C가 그걸 들고서 녹취록이라고 한 거야. 어?

(중략)

- 원고 : 무슨 공식적으로 넘겨줬다는 게 아니라, 그 때 D 얘기로는, 마지막 단계니까 C 보고 야당을 설득할 때,
- 피고 B : 예.
- 원고 : “요런 요러한 것들을 야당에서 이렇게 논의를 한 것 같다, 내부에서.” 어?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야당하고 얘기할 때 이걸 참고를 좀 해달라.”고 하면, 하면서 뭐 그거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C가 “아 그거 좀, 좀 달라고.” 어? 아마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라고 이렇게 내가 들었어, 얼핏. 어?

- 피고들은 2017. 6. 8. 16:52경 뉴스타파 홈페이지(<http://newstapa.org>)에 「☆☆당 도청의혹 사건...KBS 전 보도국장 ‘우리가 ◇◇◇당에 줬다’」라는 제목으로 21분 55초 분량의 동영상 뉴스(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를 게재하였고, 이와 함께 「당시 KBS 보도국장, 뉴스타파에 당시 상황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위 홈페이지에 원고와의 이 사건 통화내용을 바탕으로 한 인터뷰 형식의 기사도 게재하였는바, 이 사건 보도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 B : 당시 보도국장(원고)은 C 의원이 폭로한 녹취록은 KBS가 만든 것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을 직접 봤다는 말도 했습니다(이하 ‘① 부분’이라 한다).
- 피고 B : A 당시 보도국장의 말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11년 ☆☆당 대표 회의실에 휴대폰 같은 걸 부탁해 갖다놓고 녹음한 것 같더라. C 의원이 국회에서 폭로한 문건은 KBS가 만든 것이다. 나도 그 문건을 봤다. 또 이를 ◇◇◇당 C 의원에게 전달한 것도 KBS 인사였다는 사실을 당시 정치부장에게 들었다(이하 ‘② 부분’이라 한다)”는 겁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원고는 2011년 6월 당시 도청의혹 사건에 대하여 개입한 바 없어 이 사건 문건의 작성 경위나 내용, 위 문건이 C 의원에게 전달된 과정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원고는 2011년 6월 당시 정치부장이었던 D의 인터뷰 기사를 본 기억을 토대로 ①, ② 부분을 피고 B에게 이야기하면서 관련 기사를 확인해보라고 했을 뿐인데, 피고 B는 'KBS가 불법으로 이 사건 문건을 만들어 C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원고가 인정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보도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부분은, 원고는 이 사건 통화 당시 보고서 형식의 이 사건 문건을 봤다고 하였을 뿐 녹취록은 아니라고 강조하였음에도, 피고 B는 이 사건 문건이 마치 불법도청을 한 뒤 작성한 녹취록인 것처럼 보도하였으므로 허위이다. ② 부분은, 원고는 이 사건 통화 당시 KBS의 내부인사가 이 사건 문건을 C 의원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은 D의 인터뷰 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이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 B는 이를 원고가 D로부터 직접 들은 것처럼 보도하였으므로 허위이다.

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피고 B는 동의 없이 원고의 사적인 전화 통화를 녹음한 뒤 이 사건 보도에서 이를 그대로 재생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음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인격권(이하 '음성권 등'이라 한다)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와 같이 피고 B는 이 사건 보도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통화를 녹음한 뒤 이를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음성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한국탐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한국탐사에 대한 반론보도 및 간접강제청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한국탐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매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행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①, ② 부분은 피고 B가 이 사건 보도에서 앞서 나온 내용 또는 앞으로 나올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하여 발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설령 ①, ② 부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허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하며, 설령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음성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 B가 원고와의 이 사건 통화를 녹음하여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반론보도 및 간접강제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부분이 아니거나, 원고에게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①, ② 부분 관련 명예훼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사실의 적시 여부

언론매체의 기사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근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 아니라,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도 중 ①, ② 부분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정리발언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언론보도에 의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원고가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인데,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54225 판결 등 참조).

2) ①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보도 중 ‘원고가 C 의원이 폭로한 녹취록은 KBS가 만든 것이 맞고 원고도 이를 직접 보았다고 말했다.’라는 ①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B와의 이 사건 통화 당시 “그 문건(이 사건 문건)을 우리(KBS)가 만든 거야.”, “우리(KBS)가 보고서를 만든 거지.”, “그건 봤지, 나도.”, “근데 이게 C가 그걸(이 사건 문건) 들고서 녹취록이라고 한 거야.” 등의 발언을 한 사실, 이 사건 보도에는 원고가 “녹취록 그러면 또 오해할라.”, “녹취록이 아니고 그 참석한 사람의 발언록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거야 뭐 평상시에 우리가 보고하는 거지.” 등의 발언을 한 내용도 가감 없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①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녹취록’이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발언록’이나 ‘보고서’가 맞다는 취지의 원고의 해명 역시 이 사건 보도에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 B가 이 사건 보도 말미에 시청자들이 알기 쉽도록 일부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는 과정에서 ‘발언록’이나 ‘보고서’ 대신 ‘녹취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사소한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① 부분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3) ②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보도 중 ‘원고는 이 사건 문건을 C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 KBS 인사라는 것을 당시 정치부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라는 ②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와의 이 사건 통화 당시 “(이 사건 문건을 KBS 인사가 C 의원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 때 아마 어딘가에 나와, 나왔던데? 신문인가 어딘가에. 그래서 내가 나도, ‘아 이거는 D가 얘기했구나!’ 그렇게 생각한거지.”, “그거는 뭐 D가 얘기를 한 거를 신문에서 내가 봤지.”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통화 당시 “D가 다 얘기한 거야, 그건. 우리한테. 우리(KBS)가 쫓다고.”, “그 때 D 얘기로는, 마지막 단계니까 C 보고 야당을 설득할 때...(중략)...‘이걸(이 사건 문건) 참고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뭐 그거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C가 ‘아 그거 좀, 좀 달라고.’ 아마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라고 이렇게 내가 들었어.” 등으로

이 사건 문건이 C 의원에게 전달된 경위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면서 원고 자신이 D로부터 직접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② 부분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이 사건 보도 중 ①, ② 부분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보도에 의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경우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명예훼손’이란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품성,德行,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 언론보도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을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것이며(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43632 판결 등 참조),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대상이 된 사람의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도 중 ① 부분의 내용은 ‘원고는 이 사건 문건을 KBS가 만든 것이 맞고 원고도 이를 직접 보았다고 말했다.’는 것이고, ② 부분의 내용은 ‘원고는 이 사건 문건을 C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 KBS 인사라는 것을 당시 정치부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는 것인바, 이는 원고가 위와 같이 발언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으로서 위 ①, ② 부분이 적시한 원고의 발언내용인 ‘이 사건 문건을 KBS가 만들었다거나 원고가 그 문건을 직접 보았다는 점’, ‘이 사건 문건을 KBS측 인사가 C 의원에게 전달하였거나 원고가 그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점’ 등은 모두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에 영향을 주는 사실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①, ② 부분의 보도로 인하여 KBS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은 있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보도 중 위 ①, ② 부분에 ‘원고가 KBS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전파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적시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면, 이를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가사 그 점에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는 공영방송인 KBS가 수신료 인상이라는 자사의 이익을 위하여 야당의 비공개 회의를 도청하고 그 회의내용이 담긴 문건을 여당 측에 전달하였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보도 중 ①, ② 부분은 원고가 스스로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이 사건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거나 피고 B의 이 사건 보도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및 간접강제청구

가. 관련 법리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의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써,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언론사는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인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여기서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 함은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등 참조), 또한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먼저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의 제2항 -아래- 부분 중 첫째 문단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반론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보도자의 사실적 주장 부분이라기보다 원고의 발언 자체인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전해들은 것을 바탕으로 개인적 추측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구하는 것은,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둘째 문단 중 ‘원고는 KBS가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를 당시 상황이 정리된 지 한참 뒤에 본 적이 있다고 말했을 뿐이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통화 당시 ‘KBS가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통화 당시 ‘이 사건 문건을 한참 뒤에 봤다.’라고는 말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론보도청구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둘째 문단 중 ‘이 사건 문건은 불법 녹취록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고서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문건을 피고 B가 ① 부분에서 ‘녹취록’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소한 표현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문건이 녹취록이 아닌 발언록이나 보고서라고 말하는 부분도 이 사건 보도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끝으로 셋째 문단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통화 당시 ‘KBS가 C 의원에게 이 사건 문건을 전달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통화 당시 피고 B에게 ‘D 관련 기사를 확인해보라.’거나 ‘이 사건 문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는 말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론보도청구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한국탐사에 대한 반론보도 및 간접강제청구는 이유 없다.

5. 음성권 등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불법행위의 성립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 자기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가 원고와의 이 사건 통화를 녹음한 뒤 이를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하여 원고의 음성이 재생되게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B가 이 사건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나 이를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거나 원고에게 고지한 바 없는 사실, 이 사건 보도에서 이 사건 통화내용이 재생될 때 원고의 음성이 변조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실명 및 얼굴 사진도 보도 화면에 노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로써 피고 B는 원고의 음성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피고 한국탐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가 피고 한국탐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위법성 조각 여부

가) 관련 법리

음성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 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통화내용은 도청의혹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당시 KBS 보도국장 지위에 있었던 원고와 대화하며 녹음된 것이므로 공익을 위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고, 원고의 당시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진술을 확보하여 이를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할 필요성도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가 이 사건 통화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한 것이나 그 녹음내용을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보도에서 재생한 것은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B는 이 사건 통화 당시 “뉴스타파의 B라고 합니다.”라고 자신의 소속을 밝히고, “11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때 보도국장을 하셔가지고요.”, “이른바 그 ☆☆당 도청 사건이라는 거 있었잖습니까?”라고 말하여 도청의혹 사건 때문에 전화를 걸었다는 취지를 밝히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 B는 보도를 위한 취재로 녹음을 하고 있다는 점이나 원고의 진술을 추후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은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원고를 ‘A 선배’라고 칭하며 통화를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언론계 후배인 피고 B와 사적인 통화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보도를 전제로 하는 취재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 B는 원고에게 공식적인 인터뷰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고, 만약 그러한 방법으로는 도청의혹 사건에 관한 원고의 가감 없는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사건 통화를 몰래 녹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화 내용을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하게 되었다면 최소한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사후에라도 알리고 반론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의 음성을 변조하거나 비실명화 처리를 하는 등 이 사건 통화내용이 보도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도청의혹 사건 당시 KBS 보도국장이었던 점이나 원고의 실명 등은 널리 알려진 것이어서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 음성을 변조하거나 비실명화 처리를 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음성권 등 침해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의 실명이나 음성, 얼굴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도청의혹 사건을 재조명한다는 위 보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와 같은 사항들이 공개됨으로써 원고의 음성권 등이 침해된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다.
- 이 사건 통화는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도청의혹 사건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기는 하나, 음성권 등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정보의 내용이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통화 자체는 원고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점, 원고는 후배인 피고 B와의 개인적인 통화라고 생각하고 원고의 의견 등을 거침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거나 비속어 내지 다소 과격한 표현을 쓰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통화 내용은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원고의 입장에서 볼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이전에 공개된 바 없는 것으로 그것이 공개될 경우 불쾌감을 가질 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음성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통화가 녹음된 목적과 경위, 위 녹음을 공개한 피고들의 행위 태양, 이 사건 통화의 내용, 이 사건 통화를 녹음한 부분이 이 사건 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보도의 방식 및 파급력,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4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6.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사생활 침해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7가단233620 판결(확정)

주한미군의 불륜관계에 대한 보도는 사적 영역에 관한 사항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한국미디어네트워크 외 7명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한국미디어네트워크는 2015년 8월 15일자 <주간한국> 및 <데일리한국>에, 피고 주식회사 일요신문사는 2015년 9월 2일자 <일요신문>에 '주한미군인 원고가 외부 계약직 H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원고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한국미디어네트워크, B, C,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E, F, G에 대해서는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없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요지]

□ 주한미군의 불륜사실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해당되는지 판단

피고 일요신문사 등은 기사 보도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해당 기사 내용은 원고의 사적 영역에 관한 사항의 보도에 해당하고, 그러한 기사내용 및 정보가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 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문

사 건 2017가단233620 손해배상(기)

위 고 A

1. 주식회사 한국미디어네트웍스

2. В

3. C

4. D

5.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6. E

7. F

8. G

변론종결 2018. 10. 30.

판 결 선 고 2018. 12. 1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E, F, G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E, F, G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미디어네트워크, B,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E, F, G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원고가, 50%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국미디어네트워크,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한국미디어네트워크, B, C, D는 공동하여 50,00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일요신문, E, F, G는 공동하여 5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관계 및 이 사건 기사 보도

- 1) 원고는 주한미군사령부 ○○국 소속 ○○처의 □□□□운영소의 직책을 맡아 군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H는 주한미군사령부 ○○국에서 외부 계약직 민간인 신분으로 애널리스트(분석담당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 2) 피고 주식회사 한국미디어네트워크는 ‘주간한국’과 ‘데일리한국’을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신문 발행업체, 피고 B는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주간한국에서 인턴기자로, 피고 C는 주간한국의 정치부 차장, 피고 D(위 4명의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한국미디어네트워크 등’이라고 칭한다)는 주간한국의 편집국장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위 피고들은 2015. 8. 15. 주간한국 및 데일리한국에 “주한미군 고위인사 불륜사건 전말, 유부녀 여비서와 애정행각 소송전”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와 관련하여 별지 1 내용과 같은 기사를 취재·작성하거나, 취재를 승인하여 편집·게재하였다.
- 3) 피고 주식회사 일요신문사는 ‘일요신문’이라는 주간신문을 발간하는 신문발행업체, 피고 E는 일요신문의 온라인부 기자, 피고 F는 일요신문의 온라인부 팀장, 피고 G(이하 위 4명의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일요신문사 등’이라고 칭하고,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는 일요신문의 편집국장으로 재직 한 사람이다.
위 피고들은 2015. 9. 2. 일요신문에 “주한미군 고위급 인사 ‘불륜스캔들’ 진실게임, ‘방귀 뀌고 성낸다더니...’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와 관련하여 별지 2 내용과 같은 기사를 취재·작성하거나, 취재를 승인하여 편집·게재하였다.

나. 이 사건 경위 등

- 1) 원고는 2009. 9.경부터 주한미군 부대 내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민간인으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H를 알게 되었다. 주한미군 부대 내에 근무하던 H는 2007. 7.경부터 한국인 I와 교제하다가 2009. 12.경 혼인신고를 마친 후 한국과 미국에서 각 결혼식을 마친 부부사이로서, 슬하에 2014.생 자녀를 1명 둔 상태였다.
- 2) H는 I와의 혼인기간 중에 원고와 서로 성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데 배우자인 I가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 3) H는 2015.초 가정폭력 등 이혼사유를 주장하여 남편인 I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I는 2015. 6.경 H와 원고가 공모하여 불륜사실을 숨긴 채 마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이혼소장을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으려 한다는 내용으로 H와 원고를 고소하였다. 위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과정에서 2015. 7. 27.

당사자들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 이후 원고와 I의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상황 및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H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이 별지 1, 2 각 내용과 같이 기사로 보도되었다.

다. 형사사건 경과

- 1) 원고는 별지 1 기재 주간한국, 데일리한국 기사 보도에 의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여 피고 B, C, D를, 별지 2 기재 일요신문 기사 보도에 의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여 피고 E, F, G를 각 고소하였다. 검사는 위 피고들을 피해자 원고에 대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여, 이 법원 2016고정1077호로 형사사건이 진행되었다.
- 2) 위 형사사건 1심 진행 중 검사는 피해자 원고와 관련된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 B, C, D가 별지 1 주간한국, 데일리한국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그 공소를 취소하였다.
- 3) 위 사건에서 피고 E, F, G의 별지 2 기재 일요신문 기사 보도에 의한 사실적시에 의해 피해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위 피고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이에 위 피고들이 불복하여 항소·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을가 1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한국미디어네트워크 등에 대한 청구 판단

- 1) 언론매체가 수개의 보도를 한 경우에도 그 기사들이 연재기사로 기획되어 게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기사 별로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이를 전제로 피고 한국미디어네트워크 등의 불법행위 책임 여부에 관하여 본다.
- 2) 별지 1 기사로 원고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 가) 언론보도가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명예 또는 그 밖의 인격권을 훼손하였다고 인정하려면, 먼저 보도 내용이 그 특정 피해자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성명이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머리글자이니셜 또는 약칭·애칭·가명을 사용하는 등으로 기사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명백히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그 독자나 시청자들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특정의 정도는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같은 업계에

있거나, 피해자의 지인·주변인이 해당 기사가 피해자에 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피해자의 특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도 당시와 그 이전의 상황만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사후의 언론 보도 내용 등 사정까지 종합하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피해자 특징이 불가능하도록 신중하게 보도하였는데 후에 확인된 다른 사정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여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 등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도록 한다면 개인책임의 원리에 반하기 때문이다.

나) 별지 1 기사 보도로 원고가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해당 기사에서는, 원고의 실명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이니셜로 지칭하고, 원고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정보로 ‘주한미군 고위인사, 주한미군 정보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A씨, 50대 후반 유부남인 A씨는 한국에서 근무한지 10년이 넘는 미군으로 미국인 부인과 함께 한국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적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사 속 정보만으로는 원고의 지인이나 주변인 등도 해당 기사 내용 속의 인물이 원고라는 것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역시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서, 해당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기사 속 인물이 원고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별지 1 기사 보도 내용만으로는 해당 기사의 인물이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피고 한국미디어네트워크, B, C,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일요신문사 등에 대한 청구 부분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일요신문사 등은 별지 2 일요신문 기사 보도에 의해³²⁾ 원고의 사적 영역에 관한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사생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 일요신문사 등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일요신문사 등의 주장 판단

가) 피고 일요신문사 등은 별지 2 기사에 의해 피해자인 원고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다룬다. 그러나 해당 기사의 내용 중 원고가 주한미군부대 군무원으로 근무하기 이전의 군인 출신

32) 매체를 운영하는 주체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그 발행, 배포(때에 따라서는 판매까지)를 담당하는 자,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국을 운영하는 방송 사업자, 기타 언론매체, 예를 들어 인터넷신문사는 그 매체별 특성에 따라 법인 혹은 사업체 대표가 될 수 있고, 이들이 출판물 등의 발행인으로서, 방송 담당자로서, 보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사용자로서 각자 언론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을 지게 된다.

경력이었다는 점, 한국 내 근무경력과 당시 담당하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연령을 비롯하여, 특히 한국국적의 아동을 입양한 사실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특히 위와 같은 전·후 경력 등과 아울러 한국인 아동 입양 등의 추가 사항 적시로 인해 그와 같은 기사가 보도될 당시 일반 독자 또는 적어도 원고와 같이 미군부대에서 근무한 군인들, 군무원들이나 원고의 주변 사람들로서는 ‘이니셜로 지칭된 사람’이 원고를 지목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 원고의 주변 지인들은 이 부분 해당 기사가 게재되자, 그러한 보도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 위 피고들의 피해자 불특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일요신문사 등은 별지 2 기사 보도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다룬다. 그러나 해당 기사 내용은 원고의 사적 영역에 관한 사항의 보도에 해당하고, 그러한 기사내용 및 정보가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자료 액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도의 경위와 기사의 게재 방식, 게재된 기사의 제목과 내용, 원고의 사회적 지위, 해당 기사 보도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 정도, 피고 일요신문사가 언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일요신문사, E, F, G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일요신문사 등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한국미디어네트워크 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1~2〉 대상기사 생략

재산권 침해 사례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확정)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은 기사형 광고와 광고에 따른 독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언론사는 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

- 원고 : A 외 35명
- 피고 : 주식회사 한경닷컴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한경닷컴은 경제뉴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로, 소셜커머스 업체를 운영하는 B의 요청에 따라 2011년 12월 5일 B의 업체를 2011년 하반기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소셜커머스 부문 수상자로 선정하고 '오프라인에서부터 소비자층에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잘 알려지지 않은 알짜기업'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후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2011년 12월 5일부터 2012년 1월 9일까지 □□□□ 사이트를 통하여 상품권을 주문하고 B에게 상품권 대금을 입금하였으나, 주문한 상품권 중 일부만 배송 받거나 전혀 배송 받지 못하여 그 입금액과 상품권 수량액의 차액 상당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기사를 신뢰하여 광고주인 B 측에게 상품권 대금을 선입금하였다가 이를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 및 2심 재판부는 기사형 광고를 실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2086,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0602), 최종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 언론사가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고 기사형 광고를 게시할 경우, 독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1기사는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차용한 기사형 광고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제1기사에는 광고라는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 피고는 B의 사기범행이 알려진 후 이 사건 제1기사를 삭제하였는데, 그 자리에도 삭제된 '기사'로 표시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제1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 광고와 기사의 구분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들은 키워드 검색광고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결과 표시된 이 사건 제1기사를 통하여 B의 업체가 신뢰할 만한 지를 확인하였다고 보인다. □□□□의 상품권 구매 주문은 2011년 12월 5일 이전까지는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가 이 사건 제1기사가 게재된 2011년 12월 5일부터 2011년 12월 20일까지는 약 10억 원으로 치솟은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이 사건 제1기사 게재와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판결문

사	건	2015다210231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A 외 35명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경닷컴	
원 심 종 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200060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광고란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 그런데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 이른바 ‘기사형 광고’도 광고의 일종이다. 이러한 기사형 광고는 그 구성이나 내용, 편집 방법 등에 따라서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쉽게 오인하게 할 수 있다. 즉, 일반 독자는 광고를 보도기사로 알고 신문사나 인터넷신문사 등(이하 ‘신문사 등’이라 한다)이 그 정보 수집 능력을 토대로 보도기사 작성에 필요한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서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여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사형 광고를 게재

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그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여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로 게재하거나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내용을 작성하여 보도기사로 게재함으로써 이를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그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기사형 광고 게재행위와 독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신문사 등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기사가 ‘기사형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이를 신뢰한 원고들이 광고주인 B 측에게 상품권 대금을 선입금하였다가 이를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인터넷 경제뉴스 사이트인 “www.hankyung.com”(이하 ‘한경사이트’라 한다)을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이다. 한경사이트는 일간지 한국경제신문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겸하고 있다.

B는 2011년 10월경 공범들과 허위의 상품권 할인 판매 광고로 고객을 모집하여 상품권 대금을 받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할 계획을 세운 다음, 2011년 11월 초순경 의류·잡화 전자상거래를 업종으로 하여 ‘소셜커머스 XX’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12. 1.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인터넷 주소 생략”(이하 ‘□□□□ 사이트’라 한다)을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 사이트를 통하여 상품권 할인 판매를 시작하였다.

피고 측으로부터 □□□□에 관한 기사를 내 주고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B는 2011. 12. 2. 피고에 □□□□을 위 대상 수상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파트너 요청서’와 기사 초안을 보냈다.

피고는 2011. 12. 5. □□□□을 피고의 2011년 하반기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소셜커머스 부문 수상업체로 선정하고, 같은 날 한경사이트에 “믿을 수 없는 소셜커머스…해결책은?”이라는 제목으로, 소셜커머스가 무엇인지 소개하면서 “소셜커머스 업체 중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유명회사가 있는 등 부작용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같은 상황에서 소셜커머스 업체에도 ISO9001 인증을 받은 기업이 등장해 화제다. ‘소셜커머스 XX’의 ‘□□□□’이 바로 그것. ‘□□□□’은 오프라인에서부터 소비자층에 두터운 신뢰를 받아 온 잘 알려지지 않은 알짜기업이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제1기사를 게재하였다. B는 이 사건 제1기사 게재와 관련하여 피고에 240여 만 원을 지급하였다.

B는 □□□□ 사이트 개설 이후 2012년 1월 초순경까지 위 사이트에 “상품권을 최저 12%에서 최고 25%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상품권 대금을 선입금하면 상품권은 할인판매율에 따라

최단 3개월에서 최장 6개월 간격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분할 배송하겠습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원고들은 2011. 12. 5.부터 2012. 1. 9.까지 □□□□ 사이트를 통하여 상품권을 주문하고 B에게 상품권 대금을 입금하였으나, 주문한 상품권 중 일부만 배송 받거나 전혀 배송 받지 못하여 그 입금액과 상품권 수령액의 차액 상당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나. 신문사로서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제1기사의 중간이나 주변에는 광고라는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기사본문’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B의 사기범행이 알려진 후 이 사건 제1기사를 삭제하였는데, 그 자리에도 삭제된 ‘기사’로 표시하였다. 이 사건 제1기사는 그 목적과 내용이 보도나 논평이 아니라 상품과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차용한 기사형 광고이다. 피고는 광고의 형식이 아니라 기사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제1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광고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 광고와 기사의 구분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이 사건 제1기사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의 부작용이 많고 유명회사도 있는데 □□□□은 오프라인에서부터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기업이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B가 피고에 제공한 기사 초안에 “□□□□은 홈페이지가 생겨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라고 기재되어 있고, 파트너 요청서에도 “2011. 12. 1. □□□□ 온라인 마켓 리뉴얼 오픈”, “신생기업이기에 혹시 믿을 수 있는 기업일까? 라는 의구심을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4일 전에 개설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불과한 □□□□이 오프라인에서부터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기업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다.

라. B가 키워드 검색광고를 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통하여 B와 거래하였음은 피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키워드 검색광고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결과 표시된 이 사건 제1기사를 통하여 B의 업체가 신뢰할 만한지를 확인하였다고 보인다. B가 피고에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신청하고 기사 게재를 부탁한 것은 애초부터 사기범행을 기획하면서 이를 본 소비자들에게 □□□□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의 상품권 구매 주문은 2011. 12. 5. 이전까지는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가 이 사건 제1기사가 게재된 2011. 12. 5.부터 2011. 12. 20.까지는 약 10억 원으로 치솟았다. 이러한 사정 등과 피고의 주의의무 내용, 그 위반 정도 및 B의 사기범행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제1기사 게재와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한 B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제1기사 게재와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3.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사형 광고와 순수한 광고의 구별기준, 광고 게재와 관련한 신문사 등의 주의의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부, 상당인과관계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원고 명단 생략

제2장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청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가합107637 판결

생방송 중 출연자의 발언은 인터뷰를 통한 언론사의 사실 적시로 보아야 한다

- 원고 : 주식회사 채널에이
- 피고 : 재단법인 씨비에스 외 1명

[사실관계]

원고는 2017년 3월 12일과 2017년 3월 26일자 <먹거리 X파일>에서 '대왕카스테라에 업체의 설명과 달리 첨가제가 다량 들어가고 그중에서도 식용유가 과다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보도하였고, 피고 재단법인 씨비에스는 2017년 3월 28일자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을 통해 위 방송을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보도하였다. 해당 인터뷰는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를 통해 <노컷뉴스> 사이트에도 게재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의 보도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반론의 이익이 없고 명백히 사실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반론보도청구는 기각하였다. 1심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진행 중 조정성립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11488).

한편, 원고는 소 제기 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불성립된 바 있다(2017서울조정769·770, 2017서울조정771·772(병합)).

[판결요지]

□ 생방송 출연자의 발언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 여부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라디오 방송이 업주와의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진바, 인터뷰의 즉시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출연자의 발언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생방송에 의한 인터뷰 방식으로 방송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출연자와 방송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조율을 한다거나 진행자가 허위 보도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개입을 해야 한다는 점, 피고들도 이 사건 2017년 3월 12일자 방송에 대한 비판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은 업주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 허위사실을 적시한 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판결문

사	건	2017가합107637 정정보도등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채널에이
피	고	1. 재단법인 씨비에스 2.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변 론 종 결		2017. 11. 23.
판 결 선 고		2018. 1. 18.

주 문

1. 피고 재단법인 씨비에스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CBS라디오 FM 98.1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의 본방송 서두에서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인용)을 원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진행 속도와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 가. 노컷뉴스 홈페이지(<http://www.nocutnews.co.kr>) 초기 메인화면 및 사회면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인용)의 제목을 [] 안에 통상의 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인용)이 별지7 기재 인터넷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활자체 및 줄간격으로 표시되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별지7 기재 인터넷기사 본문 하단에도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인용)을 이어서 게재하며,
 - 나.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인용)이 게재되는 즉시 별지7 기재 인터넷 기사를 매개한 포털사이트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인용)을 송부하고, 각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별지7 기재 인터넷기사의 본문 하단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인용)이 표시되도록 요청하라.
3. 피고들이 제1, 2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1, 2항 기재 각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재단법인 씨비에스(이하 ‘피고 씨비에스’라고 한다)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CBS라디오 FM 98.1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의 본방송 서두에서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2 기재 정정 및 반론보도문(청구)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게 하는 방식으로 1회 방송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이하 ‘피고 씨비에스아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 가. 노컷뉴스 홈페이지(<http://www.nocutnews.co.kr>) 초기 메인화면 및 사회면 기사 순서 상위 3번째 이내로 별지3 기재 정정 및 반론보도문(청구)을 48시간 이상 게재하되,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이 별지7 기재 인터넷기사의 제목 “결국 폐업한 대왕카스테라 고발프로, 한 맺힌다”와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안에 표시되도록 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3 기재 정정 및 반론보도문(청구)이 표시되도록 하며, 별지7 기재 인터넷기사의 본문 상단에 별지3 기재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게재되도록 하고, 48시간 게재 후에는 별지3 기재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정정 및 반론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되도록 하며,
 - 나. 피고 씨비에스아이와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별지3 기재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전송하고, 각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별지7 기재 인터넷기사의 본문 상단에 별지3 기재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게재되도록 각 포털사에 요청하라.
3. 피고 씨비에스는 제1항의 의무를,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제2항의 의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의무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의무이행 완료일까지 1일당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TV채널을 통해 ‘먹거리 X파일’이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TV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방송한 방송사업자이다.

- 2) 피고 씨비에스는 방송, 언론 등 미디어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라디오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방송하는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방송업(인터넷방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인터넷신문 “노컷뉴스(홈페이지 <http://www.nocutnews.co.kr>)”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씨비에스의 각 방송 및 피고 씨비에스아이의 인터넷 기사 게재 등

- 1) 원고는 2017. 3. 12. 이 사건 TV 프로그램을 통해 별지4 기재 방송보도문(2017. 3. 12.자)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대왕카스테라에 관한 방송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이라 한다), 같은 달 26. 별지5 기재 방송보도문(2017. 3. 26.자)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대왕카스테라에 관하여 재차 방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7. 3. 26.자 방송’이라 하고,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먹거리 X파일 방송’이라 한다).
- 2)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큰 크기 때문에 일명 대왕카스테라라고 불리고, 대만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어 대만카스테라라고도 불리는 카스테라가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 ② 사람들이 대왕카스테라를 자주 사먹는 진짜 이유는 무엇보다 식재료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 ③ 대왕카스테라의 제조 과정을 점검해 보니 놀랍게도 대왕카스테라를 만드는 데 많은 양의 식용유가 우유나 달걀에 버금가는 주재료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 ④ 대왕카스테라를 만드는 데 유화제, 팽창제, 착향료 성분이 포함된 믹스가루 등을 사용하는 업체도 있었다.
- ⑤ 대왕카스테라에 계란과 밀가루 이외에 베이킹파우더가 조금 들어가고 화학첨가제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매장들이 있었는데, 해당 브랜드의 본사에서는 화학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을 하였다.
- ⑥ 제빵전문가들은 대왕카스테라 제조 과정에 첨가제가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는데, 제빵전문가들이 가장 놀랐던 것은 제조 과정에 사용된 기름이었다.
- ⑦ 시중에 판매되는 대왕카스테라 7종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빵전문가들은 대왕카스테라에서 과도하게 기름 맛이 난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고, 기름종이에 대왕카스테라를 묻혀보니 대부분의 제품에서 다량의 기름이 묻어나왔으며, 9대 영양성분 분석 결과 대부분의 대왕카스테라에서 일반 빵집에서 파는 카스테라의 지방량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8배에 달하는 수치의 지방이 검출되었다.
- ⑧ 먹거리 X파일이 단독 확인한 4대 프랜차이즈 업체 중 3개 업체가 대왕카스테라 한 판에 평균 700ml에 가까운 기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 ⑨ 전통적인 카스테라에는 기름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 ⑩ 대왕카스테라를 제조하는 업체 중에는 기름 대신 버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업체들이 다량의 식용유와 첨가제를 사용해 대왕카스테라를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이 사건 2017. 3. 26.자 방송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을 통해 일부 업체의 대왕카스테라 제조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예상보다 많은 양의 식용유가 들어가고, 겉으로는 무첨가 마케팅을 하면서 사실은 여러 종류의 첨가제를 사용하는 업체도 있는 사실을 전했는데, 소비자와 업계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 ②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한 대왕카스테라 매장에서 10개짜리 카스테라 한 판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밀가루의 양은 1,000g, 식용유는 700ml이고, 다른 브랜드의 대왕카스테라 매장에서는 같은 양의 카스테라를 만드는 데 650ml의 카놀라유가 들어가며, 먹거리 X파일이 확인한 4개의 프랜차이즈 업체 중 3개 업체가 카스테라 한 판에 평균 700ml에 가까운 식용유를 사용하고 있었다.
- ③ 식용유 사용량이 적은 나머지 업체의 한 매장에서는 유화제와 팽창제, 착향료가 들어간 믹스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 ④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 이후 방송에 나오지 않았던 매장들은 방송과 무관한 곳이라는 문구들을 써 붙여 놓았고, 카스테라에 들어가는 재료를 일일이 표기해 붙여놓은 곳도 많아졌다.
- ⑤ 식용유 사용이 문제없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는데, △△대 A 교수가 개인 SNS에 “방송을 보지는 않았지만, 빵을 만들 때 식용유를 쓰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한 글을 매체에서 인용하여 기사화하였다. A 교수는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을 보고도 식용유 과다사용을 지적한 방송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였다.
- ⑥ 과자 회사와 향료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식품 상식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한 식품공학자인 B는 식용유 덕분에 식감이 부드러워졌다면 좋은 일이라고 주장하였는데, B는 위와 같은 주장의 글을 쓸 때 방송을 보지는 않았으며, 그의 글에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에서 지적한 식용유의 사용량과 업체의 마케팅 행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 ⑦ B는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을 보고 난 후에도 “제품 품질로 봤을 땐 소비자를 배신할 정도의 품질은 아니고 훌륭한 제품이었고, 그 과정에서 첨가물은 넣지 않았다고 하면서 넣었으니 분명히 거짓말을 한 잘못이 있지만, 식용유 자체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 그걸 강조할 회사는 없을 것이다. 식용유가 과다하게 들어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 양도 다른 카스테라에 비해 많은 것이지 과다하지 않았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당은 확실히 줄어들었으므로 좋은 점이며, 지방도 그 정도 양이 절대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 ⑧ 그러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대왕카스테라에 대하여 (밀가루 대비 식용유가) 70%가 식용유라면 좋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주기는 꺼려진다고 한다.
- ⑨ 현재 대왕카스테라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총 29개인데, 먹거리 X파일 제작진은 한 달 동안 매장수가 가장 많은 10개 브랜드의 약 30개 매장을 무작위로 방문하여 그중 4개 브랜드의 레시피를 입수하여 확인하였다. 이 중 700ml의 식용유를 사용했던 한 업체는 한 판에 사용되는 식용유가 700ml이고, 한 조각에는 70ml가 사용되니 많은 양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으며, 650ml의 카놀라유를 사용한 한 업체 역시 식용유 양이 많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 ⑩ 식용유 700ml를 사용한 업체의 우유 사용량은 750ml이었는데, 매장 곳곳에는 계란과 무방부제에 관한 홍보뿐이었고, 카놀라유를 사용한 업체 역시 매장에서 카놀라유 사용에 관한 문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 ⑪ 대왕카스테라 열풍이 시작된 대만 현지에서는 카스테라에 우유만큼 식용유가 들어간다는 것을 누구나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사용량을 공개하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었다.

- ⑫ 대만에서는 대왕카스테라를 ‘카스테라’가 아니라 ‘케이크’라고 부르고 있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선정한 2016년 제과제빵 명장인 C는, “카스테라는 원래 순수하게 계란, 설탕, 꿀이나 물엿, 밀가루를 기본으로 만들고,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해 식용유나 우유를 조금 쓰는 경우가 있는데 밀가루 대비 비중이 보통 8% 내외이므로, 대왕카스테라가 카스테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였다.
- ⑬ 경기도에 있는 한 대왕카스테라 매장의 업주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식용유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소비자들한테 너무 안전한 먹거리로만 홍보하는 것이 분명히 문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 4) 피고 씨비에스는 2017. 3. 28. 이 사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과 관련하여 별지6 라디오 방송 녹취록 기재 내용과 같은 방송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라디오 방송’이라 한다),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2017. 3. 28. 노컷뉴스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라디오 방송과 동일한 내용으로 별지7 기재 인터넷기사와 같은 내용으로 「결국 폐업한 대왕카스테라 “고발프로, 한 맺힌다”」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 5) 이 사건 라디오 방송은 폐업을 하였다는 대왕카스테라 업체 업주와의 인터뷰 형태로 이루어졌고,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앵커 : 지난 2017. 3. 12.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대왕카스테라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대왕카스테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유와 계란 양보다 식용유가 더 많이 들어간다. 심지어 어떤 가게에서는 700ml의 식용유를 들이붓기도 한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이 방송이 나간 후 대왕카스테라 가게들은 큰 타격을 받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양심적으로 운영하던 업체들까지 덩달아 곤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왕카스테라 가게 사장님을 직접 만나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앵커 :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고 분노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대부분의 매장들이 밀가루와 달걀만 들어가고 화학첨가제는 넣지 않는다고 홍보를 했는데, 알고 보니 식용유를 들이붓더라, 700ml나 들어가더라, 이렇게 보도(고발)를 한 거예요. 이걸 듣고서 시청자들이 실망한 것이거든요. 이거 사실 아닙니까?

업주 : 700ml를 사용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 회사는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고, 그 외에 우리나라에 대왕카스테라 프랜차이즈 업체가 20군데가 넘거든요.

앵커 :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왕카스테라는 1개가 500g 정도 되잖아요. 손바닥 한 4개 합쳐놓은 것 정도 크기. 거기 안에 700ml의 식용유가 들어가는 업체가 있기는 한 거예요?

업주 : 없죠. 20개 만드는 데 700ml가 들어가는 것이고, 1개를 만드는 데 식용유를 700ml를 넣으면 식용유 700ml가 얼마인지 아세요? 빵값보다 더 비싼데 그걸 700ml를 넣어서 빵을 어떻게 팝니까? 7,000원 받고.

앵커 : 아 그러니까 500g짜리 카스테라 20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식용유가 700ml이다?

업주 : 그럼요.

앵커 : 그런데 마치 방송에는 1개 만드는 데 700ml를 들이붓는 것처럼 지금 많이들 오해하고 계신다(?).
그럼 700ml의 식용유를 넣으면 빵 1개당 얼마나 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죠?
업주 : 35ml 정도 들어가겠네요.
앵커 : 식용유 큰 손갈로 한 손갈 정도가 우리가 대왕카스테라 1개 살 때 들어가는 양이다?
업주 : 그렇죠.
앵커 : 700ml를 넣는 업체다 쳤을 때도.
업주 : 네. 20개 만드는 데 700ml 들어갔다고 했으면 소비자들이 700ml를 1개당 35ml? 35ml라면 얼마 되지 않아요.
앵커 : 게다가 그런 업체도 프랜차이즈 업체 한 개밖에 없는데 마치 전체인 양 호도가 됐다 이 말씀이세요?
업주 : 네, 그렇죠.
업주 :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줬으면 적어도 소비자들이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 설명은 생략하고, 그냥 제가 방송을 봐도 식용유를 넣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위주로만 방송이 나왔잖아요. 식용유가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업주도 한 명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빵을 만드는 데는 무조건 유지가 당연히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제과점도 마찬가지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1) 피고 씨비에스, 씨비에스아이는 이 사건 라디오 방송 및 이 사건 기사(이하 ‘이 사건 각 보도’라고 한다)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

- ① 이 사건 TV 프로그램이 대왕카스테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유와 계란 양보다 식용유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방송하였다.
- ② 이 사건 TV 프로그램이 대왕카스테라에 식용유를 넣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방송하였다.
- ③ 이 사건 TV 프로그램이 대왕카스테라 1개 만드는 데 식용유 700ml를 들이붓는 것처럼 방송하였다.
- ④ 대왕카스테라에 식용유 700ml를 사용하는 회사는 한 군데 뿐이다.
- ⑤ 500g짜리 카스테라 20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식용유가 700ml로서, 500g짜리 카스테라 1개에 약 35ml의 식용유가 들어가는 것이다.
- ⑥ 빵을 만드는 데는 무조건 유지가 당연히 들어간다.

- 2) 그러나 이 사건 TV 프로그램에서는 대왕카스테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유와 계란 양보다 식용유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방송한 사실 자체가 없고, 대왕카스테라에 식용유를 넣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방송한 사실도 없으며, 대왕카스테라 1개 만드는 데 식용유 700ml를 들이붓는 것처럼 방송한 사실도 없다. 또한, 원고가 확인한 결과 식용유를 약 700ml 사용하는 업체

가 4군데 중 3군데였고, 대왕카스테라 한 판은 보통 약 500g짜리 카스테라 10개로 구성되는 바, 대왕카스테라 한 판에 700ml의 식용유가 사용되었다면 1개에 약 70ml의 식용유가 들어가는 것이며, 빵을 만드는 데에 유지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3) 따라서 이 사건 각 보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위와 같이 허위인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TV 프로그램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피고 씨비에스, 씨비에스아이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및 간접강제를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 1)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에서는 대왕카스테라 업체에서 식용유를 사용하는 장면을 반복하여 보여주었는데, 화면에 나타난 밀가루, 우유의 양과 비교할 때 식용유가 다량 사용되는 것으로 보였고, 위 방송 이후 게재된 기사들에서도 “우유나 달걀보다 많은 식용유”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TV 프로그램이 대왕카스테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유와 계란 양보다 식용유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방송하였다”는 부분은 허위가 아니다.
- 2) 이 사건 라디오 방송의 인터뷰에 참여한 업주는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에 관하여 “식용유를 넣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위주로 방송이 나왔다”라는 시청 소감 내지 의견을 밝혔을 뿐이고,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에 관한 언론과 전문가들의 반응도 대부분 식용유 사용에 주목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TV 프로그램이 대왕카스테라에 식용유를 넣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방송하였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할 수도 없다.
- 3) “이 사건 TV 프로그램이 대왕카스테라 1개 만드는 데 식용유 700ml를 들이붓는 것처럼 방송하였다”는 부분은 앵커가 업주와의 인터뷰 진행 중 업주가 말한 내용의 취지를 요약해 재확인하는 과정에 언급된 것으로서,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을 보고 1개의 카스테라를 만드는 데 700ml의 식용유가 사용되는 것처럼 많이 오해하고 있다고 정리한 것이고,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의 전체적인 인상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오해할 여지도 존재하므로 이를 허위라고 할 수 없다.
- 4) “대왕카스테라에 식용유 700ml를 사용하는 회사는 한 군데 뿐이다”라는 부분은 인터뷰에 참여한 업주의 주장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2017. 3. 26.자 방송에 근거해 보면 당시 대왕카스테라 프랜차이즈 업체는 29개였으며, 이 사건 TV 프로그램 제작진이 식용유 약 700ml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한 업체가 3개에 불과하였으므로, 약 89.7%의 업체의 경우에는 식용유를 과다하게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과다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인바, 업주가 700ml 정도의 식용유를 사용하는 업체가 한 군데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할 뿐이므로 허위라고 할 수 없다.

- 5) “500g짜리 카스테라 20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식용유가 700ml로서, 500g짜리 카스테라 1개에 약 35ml의 식용유가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부분은 인터뷰에 참여한 업주가 자신이 제작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왕카스테라 한 판이 20개의 대왕카스테라로 구성되므로, 한 판에 700ml의 식용유가 사용되었다면 1개당 35ml가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허위라고 할 수 없다.
- 6) 빵을 만들 때에는 버터, 마가린, 식용유, 쇼트닝, 올리브유 등의 유지가 대부분 들어가고, 이 사건 라디오 방송의 인터뷰에 참여한 업주는 제빵 과정에서 버터, 마가린, 쇼트닝 등의 유지가 사용되며, 식용유도 그중 한 가지라는 취지로 “빵을 만드는 데는 무조건 유지가 당연히 들어간다”라고 발언을 했을 뿐인바, 그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인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그 내용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 따라서 “빵을 만드는 데는 무조건 유지가 당연히 들어간다”라는 부분 역시 허위라고 할 수 없다.
- 7) 원고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하는데, 원고의 TV 프로그램은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보다 건강한 프로그램으로 재탄생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TV 프로그램의 신뢰도나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적시된 사실 및 허위성 여부

1) 관련 법리

언론중재법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는데,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2) 적시된 사실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도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먹거리 X파일 방송을 대상으로 보도를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보도에 서는 첫머리에 “지난 3월 12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대왕카스테라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다”라고 언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피고들은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에 참여한 업주는 이 사건 2017. 3. 26.자 방송 이전에 폐업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보도의 대상은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이라고 할 것이다).

- ①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은 대왕카스테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유와 계란 양보다 식용유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방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①사실’이라 한다).
- ②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은 대왕카스테라 1개 만드는 데 식용유 700ml를 들이붓는 것처럼 방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②사실’이라 한다).
- ③ 대왕카스테라에 식용유 700ml를 사용하는 회사는 한 군데 뿐이다(이하 ‘이 사건 ③사실’이라 한다).
- ④ 500g짜리 카스테라 20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식용유가 700ml로서, 500g짜리 카스테라 1개에 약 35ml의 식용유가 들어가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④사실’이라 한다).
- ⑤ 빵을 만드는 데는 무조건 유지가 당연히 들어간다(이하 ‘이 사건 ⑤사실’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보도를 통해 “이 사건 TV 프로그램이 대왕카스테라에 식용유를 넣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방송하였다”는 사실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라디오 방송에 참여한 업주가 인터뷰 과정에서 “제가 방송을 봐도 그냥 이 식용유를 넣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위주로만 방송이 나왔다”라고 발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업주의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에 대한 소감 내지 의견(평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이를 두고 피고들이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에서 대왕카스테라에 식용유를 넣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방송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설령 피고들이 업주의 발언을 통해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에서 대왕카스테라에 식용유를 넣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위주로만 방송하였다”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에서 진행자는 “카스테라를 만드는 데 식용유가 들어가는 것도 신기했지만”이라거나 “대왕카스테라 전문점에선 대체 왜 버터를 두고 기름을 사용했을까요?”라는 언급을 하는 등 식용유 사용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기름이 사용되지 않는 정통 카스테라의 제조과정을 상세하게 방송한 점, ②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에 관하여 대왕카스테라에 사용된 식용유의 양에 대한 언급 없이 대왕카스테라에서 기름이 검출된 사실이 나 버터 대신 식용유가 사용된 것을 지적하는 내용의 기사들이 보도되기도 한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이 대왕카스테라에 식용유를 넣은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내용 위주로 방송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③사실은 업주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라디오 방송에서 업주는 그러한 업체가 한 군데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점, ② 앵커는 업주에게 “식용유 700ml를 사용하는 업체가 한 곳 밖에 없는데 마치 전체인 것처럼 호도되었다는 것이냐”는 취지로 재차 확인하기도 한 점 등과 전체적인 방송의 흐름, 이 사건 라디오 방송이 시청자들에게 주는 인상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업주의 발언이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허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①사실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에서 “대왕카스테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유와 계란 양보다 식용유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방송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대왕카스테라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 장면에서는 밀가루 1kg, 우유 750g, 노른자 1kg, 카놀라유 650g이 들어간다고 방송하기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①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에서는 대왕카스테라 업체에서 식용유를 사용하는 장면을 반복하여 보여주었는데, 그 화면에 나타난 밀가루, 우유의 양과 비교할 때 식용유가 다량 사용되는 것으로 보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 장면상으로 보이는 밀가루, 우유의 양보다 식용유의 양이 더 많은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대왕카스테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유와 계란 양보다 식용유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일반 시청자들이 그러한 인상을 받았을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 직후 방송 내용을 소개한 기사들에서도 빵의 주재료인 우유나 달걀보다 많은 식용유가 사용되었다고 보도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해당 기사들이 위 방송의 취지를 오해하여 잘못된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원고가 대왕카스테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유와 계란 양보다 많은 양의 식용유를 사용한다고 방송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②사실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에서는 “반죽을 할 때마다 무려 700ml씩 들이부어지는 식용유”, “3개의 업체가 카스테라 한 판에 평균 700ml에 가까운 기름을 쓰고 있었습니다”라고 방송하였고, 대왕카스테라 한 판이 몇 개 분량인지, 대왕카스테라 한 판 또는 1개(1조각)의 중량이 얼마

인지, 대왕카스테라 1개에 들어가는 식용유 양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을 본 일반 시청자의 입장에서 대왕카스테라 1개에 식용유 700ml가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은 대왕카스테라 1개를 만드는 데 700ml의 식용유가 사용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방송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2017. 3. 26.자 방송에서 대왕카스테라 10개짜리 한 판에 식용유 700ml가 사용되고, 대왕카스테라 1개에는 70ml가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방송하였으므로, 대왕카스테라 1개에 700ml가 사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방송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보도의 대상은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에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을 시청한 사람들이 모두 2017. 3. 26.자 방송을 시청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2017. 3. 26.자 방송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방송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으로 인해 대왕카스테라 1개 만드는 데 식용유 700ml가 사용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2017. 3. 26.자 방송에서 “10개짜리 빵 한 판을 만드는 데 식용유는 700ml가 들어간다”거나 “700ml를 사용했던 업체는 한 판에 들어가는 식용유가 700ml이고, 한 조각은 70ml로 많은 양이 아니라고 반박한다”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음은 앞서 보았는바,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에서는 이 사건 2017. 3. 26.자 방송에서와 같이 명확히 대왕카스테라 1개당 식용유의 양을 특정하지 않고 방송하였다가, 이 사건 2017. 3. 26.자 방송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는 것은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 후 피고 측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오해 내지 논란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③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자체적으로 4개의 업체를 취재하여 확인한 결과 3개 업체에서 대왕카스테라를 만드는 데 식용유 700ml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을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을 통해 보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취재한 대상 업체들의 브랜드명이나 매장명 또는 소재지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2017. 3. 26.자 방송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식용유 700ml를 사용한 업체라며 인터뷰를 진행한 한 업체의 대표는 자신의 브랜드 대왕카스테라에서 그와 같이 많은 기름이 들어갔는지 의심스럽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 내용만으로 3개 이상의 업체가 대왕카스테라를 만드는 데 700ml의 식용유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③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대왕카스테라에 식용유 약 700ml를 사용하는 회사는 한 군데가 아니라 최소한 세 군데 이상으로서 여러 군데이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으나 대왕카스테라에 식용유 약 700ml를 사용하는 회사가 세 군데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④사실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대왕카스테라 한 판이 정확히 몇 개의 대왕카스테라로 구성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피고는 대왕카스테라 한 판으로 10개의 대왕카스테라를 만드는 업체가 있는 반면, 20개의 대왕카스테라를 만드는 업체도 있다고 하고 있고, 원고 스스로도 ‘보통 10개로 구성된다’고 하고 있어 언제나 한 판이 10개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② 이 사건 라디오 방송에 참여한 업주는 자신의 경우 한 판에 20개의 대왕카스테라를 만들기 때문에 한 판에 700ml의 식용유가 들어갈 경우 1개의 대왕카스테라에는 35ml(= 700ml / 20개)의 식용유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 판에 10개의 대왕카스테라를 만드는 업체만 존재하고 20개를 만드는 업체가 없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④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⑤사실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보면,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 카스테라를 만들 경우 유지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⑤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⑤사실은 이 사건 라디오 방송에 참여한 업주가 빵을 만드는 경우 버터, 마가린, 쇼트닝 등의 유지가 들어가고, 식용유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유지임을 밝히려는 정도의 의미이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그 내용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라디오 방송에서 업주는 빵을 만드는 데는 당연히 유지가 무조건 들어간다고 하면서 마치 빵에 유지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는바, 이를 두고 업주가 식용유도 빵에 사용 가능한 유지임을 밝히고자 한 것이었다거나, 그 내용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론

허위인 이 사건 ①, ⑤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이 실제 사실과 다른 허위 내지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비춰짐으로써 원고의 방송사업자로서의 신뢰도 등 사회적 가치와 평가가 저하되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은 이 사건

라디오 방송이 업주와의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진바, 인터뷰의 즉시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출연자의 발언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문제 삼는 부분들은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생방송에 의한 인터뷰 방식으로 방송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출연자와 방송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조율을 한다거나 진행자가 허위 보도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개입을 해야 하고, 이 사건 라디오 방송의 경우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업주의 입장을 전하는 내용으로서 피고들도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에 대한 비판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은 업주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 ①, ⑤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①, ⑤사실은 대왕카스테라에 사용된 식용유의 양 및 빵을 만드는 경우 유지의 사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 내용에 있어서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이나 분량, 표현방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정보도문의 내용, 글자 크기, 실행방법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하고, 피고들의 각 정정보도의무이행에 대한 강제로서, 정정보도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정정보도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각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4.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반론제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나 허위성의 인식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케 함이 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법성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다만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으로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언론사 등은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반론보도 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보도에서 충분히 반영되었거나 원보도 이후 원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루어져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반론보도에 기재된 내용과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3다2843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주장의 반론보도 내용

- 1) 먹거리 X파일은 대왕 카스테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제과제빵 레시피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식용유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이하 ‘반론①’이라 한다).
- 2) 먹거리 X파일은 카스테라 1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식용유가 70ml 정도라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카스테라 1개 만드는 데 식용유 700ml를 들이붓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없다(이하 ‘반론②’라고 한다).
- 3) “식용유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업주는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빵을 만드는 데는 무조건 유지가 당연히 다 들어가는 겁니다”라는 노컷뉴스의 기사는 모든 빵에 식용유가 들어간다는 오인을 야기할 수 있다(이하 ‘반론③’이라 한다)

다. 판단

- 1) 반론① 부분은 이 사건 ①사실에 관한 것이고, 반론③ 부분은 이 사건 ⑤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는 반론①, ③ 부분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2) 반론② 부분의 경우, 이 사건 각 보도의 대상은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이고,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에서는 카스테라 1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식용유가 70ml 정도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2017. 3. 12.자 방송을 본 일반 시청자의 입장에서 대왕카스테라 1개에 식용유 700ml가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은 앞서 보았는 바, 원고가 주장하는 “먹거리 X파일은 카스테라 1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식용유가 70ml 정도라고 하였으므로, 이 방송으로 인해 카스테라 1개 만드는 데 식용유 700ml를 들이붓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는 없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는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정정보도문

제목 : 2017. 3. 28.자 김현정의 뉴스쇼 「결국 폐업한 대왕카스테라 “고발프로, 한 땀한다”」 관련 정정보도문

본문 : 2017. 3. 28.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결국 폐업한 대왕카스테라 “고발프로, 한 땀한다”」라는 제목 하에 ‘2017. 3. 12.자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이 “대왕카스테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유와 계란 양보다 식용유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방송하였다’, ‘빵을 만드는 데에는 무조건 유지가 당연히 다 들어간다’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2017. 3. 12.자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에서 대왕카스테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유와 계란 양보다 식용유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방송한 사실이 없고, 모든 빵에 유지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빵을 만드는 데에 유지가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별지2~3〉 요구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생략

〈별지4~7〉 대상기사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6가합571037 판결(확정)

반론보도 게재를 조건으로 소 취하를 합의했다면, 반론보도 게재로 소 취하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 원고 : 대한민국
- 피고 : 주식회사 통일뉴스

[사실관계]

피고는 2016년 8월 2일자 <통일뉴스> 홈페이지에 원고의 사드 배치 결정을 비판하는 취지의 만평을 게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만평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8년 8월경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피고가 반론보도를 이행하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기로 하고 양 당사자는 그 내용대로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한 바, 법원이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고는 2018년 8월 17일 <통일뉴스>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으나 원고는 본래 협의한 바와 달리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재판부는 소 취하 합의 조건이 충족되어 소의 이익이 없고 신의칙에도 반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한편, 원고는 소 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불성립된 바 있다(2016서울조정1246).

[판결요지]

□ 이 사건 소 취하 조건 충족 여부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요청의 취지로 이 사건 의견서를 제출한 2018년 8월 14일 이전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지조건부 소 취하 합의가 성립되었고, 위 소 취하 합의에 따라 ‘법원이 이 사건 문안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피고가 화해권고결정 송달로부터 지체 없이 이 사건 반론보도 등을 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2018년 8월 17일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반론보도문을 통일신문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소 취하 합의는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소송행위에 관하여 자신의 합의 이행에 관한 정당한 신뢰를 피고에게 부여하고 이에 따라 합의된 피고의 의무를 이행받고도 스스로 취한 선행행위에 반하여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고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며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소송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판결문

사	건	2016가합571037	정정보도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통일뉴스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0. 17.
			2018. 11. 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기사 순서 상위 5번째 이내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별지 1 정정보도문을 이 판결 송달 후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이후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이 사건 소송 대상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만일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인터넷 신문, 잡지 등 발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인터넷 사이트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이하 ‘통일뉴스 홈페이지’라 한다)를 운영하며 위 사이트에 기사를 게재하는 언론사이다.
- 원고 소속 국방부는 2016. 2. 7.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 THAAD, 이하 ‘사드’라 한다)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

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 피고는 2016. 8. 2. 통일뉴스 홈페이지에 원고의 사드 배치 결정을 비판하는 취지의 별지 2 만평 (이하 ‘이 사건 만평’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갑 6, 9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1) 항변 요지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만평에 대한 원고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그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조건부 소취하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9571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의 소송상의 합의에 관한 의사해석이 문제로 되는 경우, 소송행위의 해석은 일반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가 아닌 철저한 표시주의와 외관주의에 따라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표시된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다만 당해 소송제도의 목적과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전체를 고찰하고 그 소송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송행위를 해석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4. 22.자 2002그26 결정 등 참조).

3)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 내지 17호증, 을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만평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오던 중, 2018. 8.경 이 사건 소송 진행에 관한 원고 소속 국방부 내부 검토 결과 당시까지의 소송 경과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증거자료의 내용, 이 사건 소송 유지에 따른 원고 측 이익과 손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원고의 제의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원고가 제시하는 별지 3 반론보도문(이하 '이 사건 반론보도문'이라 한다)을 게재하기로 합의하였다.
-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합의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할 경우 향후 피고 측에 이 사건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원고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위 합의 사항은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여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할 경우 피고가 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행하기로 하였다.
- 위와 같은 논의 과정에서 '원고의 소 취하 의무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원고가 소 취하를 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피고 측 입장에 따라 원고의 소 취하 기한을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 내'로 하는 문구가 화해권고결정 요청 문안에 포함되었다.
- 원고는 위와 같은 합의 및 논의 결과에 따라 2018. 8. 14. 이 법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건진행에 관한 의견서'(이하 '이 사건 의견서'라 하고, 이 사건 의견서에 기재된 화해권고결정 문안을 '이 사건 문안'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1. 원고와 피고는 사건 진행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제시 반론 보도문을 피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데에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2. 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 |
|--|
| <p>1. 피고는 피고 홈페이지(http://www.tongilnews.com/)에 별지 '반론보도문'을 통상의 기사와 같은 글씨크기 및 형식으로 게재하고, 해당 기사를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p> <p>2. 피고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한 뒤에 원고는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 내에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p> <p>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p> |
|--|

- 이 법원은 2018. 8. 16. 다음과 같은 결정사항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 |
|---|
| <p>1. 피고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통일뉴스 홈페이지에 이 사건 반론보도문을 통상의 기사와 같은 글씨 크기 및 형식으로 게재하고, 위 반론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한다.</p> <p>2. 피고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p> <p>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p> |
|---|

○ 피고는 2018. 8. 17.경 위 결정사항 제1항에 따라 통일뉴스 홈페이지에 이 사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 원고는 2018. 8. 29.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반론보도문을 통일뉴스 홈페이지에서 검색될 수 없도록 조치하였고, 2018. 8. 30.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4) 판단

가) 조건부 소 취하 합의의 성립과 조건의 성취

(1)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고,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의 표시는 그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를 인정하려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의견서 제1항에 “원고와 피고는 사건 진행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제시 반론 보도문을 피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데에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위와 같은 기재는 원고 자신이 피고의 이 사건 반론보도문 게재를 조건으로 한 소 취하 합의를 인정한 취지로 보인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문안도 피고와의 협의를 통하여 작성하여 이 사건 의견서에 기재하였다.

○ 한편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이 사건 반론보도문 게재와 원고의 소 취하를 상호 임의 이행하지 않고 이 사건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이 법원에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은 원고의 내부적 검토 사항, 피고 측 입장, 원고와 피고의 협의 과정과 이 사건 의견서의 제출 경위 및 이 사건 문안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화해권고결정 요청 당시 원고와 피고는 최종적으로 「피고가 우선 이 사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그 반론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이하 피고의 위 의무의 내용을 ‘이 사건 반론보도 등’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그 소 취하에 동의할 것」을 합의하였으나, 다만 위와 같이 합의된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일방의 의무만 그 이행이 강제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소 취하

의 합의는 중간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매개로 하기로 약정한 것인바, 화해권고 결정 요청은 법원에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므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위 소 취하 합의에는,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인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및 그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반론보도 등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원고의 소 취하 의무의 발생 여부가 좌우되는 정지조건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또한 위 화해권고결정 요청 당시 원고와 피고는 각 상대방의 의무 이행 없이 자신만 의무 이행이 강제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① 피고가 이 사건 반론보도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는 피고의 그 의무이행시까지 이의신청권을 보유하고, ② 반면 피고가 선이행의무인 위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전에 소 취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의무이행시까지 이의신청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의사였으며, 그러한 쌍방의 의사가 서로 합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피고의 이의신청권의 경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될 경우에는 원고가 소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소송이 종료되는 것이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전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차피 소송이 종료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가 보유한 위 이의신청권이 소송절차상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이의신청권을 유보하여 둠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소 취하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려는 의사였다고 보인다).
- 위와 같이 본다면, 피고가 그 선이행의무인 이 사건 반론보도 등을 이행함으로써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이후에는 원고의 소 취하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피고의 이의신청권만 남게 된다고 보는 것이 위 소 취하 합의 당시 쌍방의 의사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며, 그와 달리 당시 쌍방의 의사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송달 후에 피고가 이 사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더라도, 원고로 하여금 여전히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소 취하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에게만 의무의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로 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 (3) 위에서 인정한 여러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늦어도 원고가 이 법원에 화해권고 결정 요청의 취지로 이 사건 의견서를 제출한 2018. 8. 14. 이전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지조건부 소 취하 합의가 성립되었고, 위 소 취하 합의에 따라 ‘법원이 이 사건 문안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피고가 화해권고결정 송달로부터 지체 없이 이 사건 반론보도 등을 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2018. 8. 17.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반론보도문을 통일신문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소 취하 합의는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소 취하 합의의 묵시적 합의해제 여부

- (1) 원고는 ‘원고 뿐 아니라 피고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협의는 그 효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은 소 취하 합의가 존재하였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설회할 수 있다.
- (2) 소취하 계약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계약의 합의 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후1202 판결 참조).
-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피고 또한 이 사건 반론보도 등 의무의 이행으로 게재하였던 이 사건 반론보도문을 통일뉴스 홈페이지에서 검색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뿐 아니라 피고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반론보도문이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 취하 합의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 취하 합의에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후에 피고가 이 사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음에도, 원고의 소 취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에게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소 취하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소 취하 합의의 계약실현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반론보도문을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후에도 ‘이는 소 취하 합의를 이행할 것을 강제하려는 취지였을 뿐 소 취하 합의를 종료시키는 데에 동의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 전 항변을 주장·유지하고 있다.
-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반론보도문을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을 뿐 원고의 소 취하 합의 이행시 언제든지 통일신문 홈페이지의 기사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될 수 있

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소 취하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 쌍무계약에서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에는 구두 제공만으로도 이행 제공의 효과가 발생하는바(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반론보도문을 통일신문 홈페이지의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원고에 대하여 합의에 의한 소 취하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피고가 원고와 피고의 소 취하 합의에 정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 취하 합의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건부 소 취하 합의 및 그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이 사건 소송 유지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직권으로 본다.

- 1)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당사자 일방이 과거에 일정 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를 구축하였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 지극히 모순되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 25875 판결 참조).

- 2)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송 유지는 스스로 취한 선행행위와 모순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선행행위에 대한 피고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계속 진행 여부에 관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피고가 이 사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면 원고가 소를 취하할 것’을 피고에게 먼저 제안하였고, 그 후 피고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 법원에 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기로 하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 원고는 이에 따라 이 법원에 이 사건 의견서를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피고가 반론보도 의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할 것으로 믿게 하였다.

- 이에 이 법원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의 소 취하 합의를 신뢰한 피고는 그 합의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반론보도 등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의견서 제출 이후 합의 이행 여부에 관하여 피고 측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던 중, 위와 같은 반론보도문 게재 및 보관으로부터도 12일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이후 위와 같은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의 유지 여부에 관하여 소송 수행의 주무부서인 국방부의 의견과 화해 및 소 취하의 소송행위에 관한 지휘권자인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의 의견이 다르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원고의 내부적 사정만으로 원고가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소송 당사자가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소송 상대방의 이익에 반하여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가 소송행위에 관하여 자신의 합의 이행에 관한 정당한 신뢰를 피고에게 부여하고 이에 따라 합의된 피고의 의무를 이행받고도 스스로 취한 선행행위에 반하여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고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며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소송상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3) 따라서 이 사건 소를 유지하는 것은 소송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 취하 합의의 조건이 성취되어 소의 이익이 없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유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가합105720 판결

직접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게 아니라면 사과문을 게시했다고 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반론을 구할 정당할 이익이 없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사실관계]

피고는 2018년 2월 26일 및 2018년 2월 27일자 <SBS 8시 뉴스>와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원고가 후배 작가를 성추행, 성희롱하였고, 한국□□□□학교 학생들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방송을 보도하였고, 원고는 사과문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2018년 5월 23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반론보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사과문이 후배작가 B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의미라거나 현재 원고가 반론을 구할 정당할 이익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보아 보도 내용과 무관한 부분을 제외한 반론보도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조정성립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72520).

[판결요지]

□ 보도내용 관련 원고의 사과문에도 불구하고 반론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뉴스 및 라디오 인터뷰가 방송된 이후 2018년 2월 28일 사과문을 게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과문은 이 사건 뉴스 보도 및 라디오 인터뷰가 있었던 때부터 1~2일 만에 발표된 것이고, 직접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원고는 그때부터 약 3달이 지난 2018년 5월 23일 무렵에는 입장을 정리하고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과문이 B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의미라거나 현재 원고가 반론을 구할 정당할 이익이 없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판결문

사 건 2018가합105720 반론보도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변 론 종 결 2018. 11. 1.
판 결 선 고 2018. 11. 22.

주 문

1.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 가. 에스비에스 텔레비전(SBS-TV) <SBS 8시 뉴스>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화면 상단에는 “A 화백의 반론보도”라는 제목을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1 반론보도문을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 나. 에스비에스 라디오(SBS-RADIO, FM 103.5MHz)의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별지 2 반론보도문을 청취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2. 피고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불이행한 날부터 이행한 날까지 매일 1,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별지 3, 4 기재와 같고, 이행강제금으로 1일당 1,000만 원을 구하는 외에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8. 2. 26. 및 2018. 2. 27. 20:00경 'SBS 8시 뉴스'에서 <[단독] 만화계에도 '미투'... "시사만화 거장 A 화백이 성추행">, <만난 기억 없다더니...대화 내용까지 또렷한 A>, <A 성희롱 추가 폭로 잇따라...□□□ 수업 배제>라는 제목으로 3회에 걸쳐 '한국□□□□학교 교수이자 시사만화 거장으로 알려진 원고가 주례를 부탁하러 온 후배 작가 B(여성)를 성추행, 성희롱하였고, 한국□□□□학교에 학생들에게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보도 전문은 별지 5 내지 7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뉴스'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2. 27. 18:05경 '김성준의 시사전망대'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원고가 B를 성추행, 성희롱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B와 약 11분에 걸쳐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보도 전문은 별지 8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라디오 인터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반론보도 의무

이 사건 뉴스 및 라디오 인터뷰에는 원고가 후배 작가를 성추행, 성희롱하였고, 한국□□□□학교 학생들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피고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한 것임은 분명하다. 원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방송사인 피고에게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가) 원고가 B를 성추행, 성희롱하고 한국□□□□학교 학생들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원고의 반론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1) 이 사건 뉴스에는 원고가 성추행 및 성희롱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스스로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이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뉴스 및 라디오 인터뷰 이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하였다.

다) B가 주례를 거절하였는데 다시 부탁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고, 이 사건 뉴스 및 라디오 인터뷰에 보도된 부분과 관련이 없다.

2) 판단

가) 반론보도 제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나 허위성의 인식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케 함이 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등 참조). 특히 성추행, 성희롱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면 관련 반론보도는 원천봉쇄될 수밖에 없다. 원고가 보도 이후 사과문을 게재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이 부분은 아래 나) (2)항 참조] 원고의 반론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는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뉴스에는 원고가 B를 성추행, 성희롱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언급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성추행, 성희롱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없다.’는 것이고, 보도의 맥락에 비추어 주로 원고가 변명한다는 인상을 준다. 원고가 반론보도로써 구하는 반론이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을 제10호증(가치번호 있는 것은 각 가치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을 제2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뉴스 및 라디오 인터뷰가 방송된 이후 2018. 2. 28. 별지 9 기재와 같은 사과문을 게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과문은 이 사건 뉴스 보도 및 라디오 인터뷰가 있었던 때부터 1~2일 만에 발표된 것이고, 직접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원고는 그때부터 약 3달이 지난 2018. 5. 23. 무렵에는 입장을 정리하고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다(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뉴스 및 라디오 인터뷰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도 제기하였다). 이른바 ‘미투 운동’이 전개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시사만화 거장으로 알려진 원고가 심각한 압박을 받았을 것임을 고려하면, 위 사과문이 B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의미라거나 현재 원고가 반론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주례 부탁을 거절하였음에도 B가 이를 후 다시 주례를 부탁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B가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하였다면 주례를 다시 부탁하였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다시 주례를 부탁받았다고 기억한다.’는 반론이 이 사건 뉴스 보도 및 라디오 인터뷰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을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것이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론보도 제도의 취지상 그렇게 기억한다는 원고의 반론 제기까지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반론보도의 범위

- 1) 원고가 이 사건 뉴스에 관하여 구하는 반론보도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한국만화가협회 사례집(2016년) 내용이 원고와 관련이 없다는 반론
원고는 위 사례집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 B를 성추행, 성희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론에는 사례집 내용이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반론까지 포함된다.
 - 나) 학생이 수업 배제 민원을 넣어 강의에서 배제된 사실이 없다는 반론
이 사건 뉴스 보도에는 학생이 수업 배제 민원을 넣었음에도 한국□□□□학교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SBS 보도가 나간 뒤 학교 측은 뒤늦게 A 화백을 수업에서 제외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민원으로 수업에서 배제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는 없다.
 - 다) 원고 강좌를 수강 신청한 학생이 많다는 취지의 반론
이 사건 뉴스 보도 중 ‘그 분 수업을 너무너무 듣기가 싫어서… 그런데 올해도 또 수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라는 학생 인터뷰(별지 7 참조)에 대한 반론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뉴스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원고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지 ‘학생들이 원고의 수업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 보도의 핵심과 관련이 없는 반론에 불과하다.
- 2) 이 사건 라디오 인터뷰에는 한국□□□□학교 학생들 관련 언급이 전혀 없음에도 원고는 별지 4 기재와 같이 그 내용이 포함된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다. 해당 부분 반론보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3) 법원은 반론보도의 내용 및 실행방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 반론을 구하는 대상 언론보도의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별지 1, 2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을 발송하도록 하고, 나머지 게재 방법 및 간접강제 등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반론보도문

○ 제목 : A 화백 관련 방송에 대한 반론보도

○ 본문 : SBS-TV는 2018. 2. 26.과 그 다음 날 <SBS 8시 뉴스>에서 시사만화의 거장으로 알려진 A 작가의 성추행과 성희롱에 대하여 보도하였습니다. 후배 작가로부터 주례를 부탁받으며 허벅지를 주무르거나 치마 아래 다리로 손을 집어넣었고, 호텔에서 단 둘이 춤출 수 있느냐고 하였으며, 그럼에도 2017년 주례 부탁을 받기 위해 만났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통화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국□□□□학교 학생들에게 “너는 몸매 자체가 남자에게 관심이 많게 생겼다.”라거나 “치마가 짧아진다, 남자 만나고 다니냐, 너 같은 애들이 남자한테 좋다, 너 같은 몸매가 남자한테 좋은 몸매다.”라는 등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A 작가는 주례를 부탁받는 과정에서 후배 작가를 성추행, 성희롱한 사실이 없고, 주례 부탁을 거절하였으나 이를 후 다시 주례 부탁을 받았으며, 2017년 성추행을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통화하였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학교 학생들에게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방송 후 발표한 사과문도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인정한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반론보도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방송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별지2〉 반론보도문

제목 : A 화백 관련 방송에 대한 반론보도

본문 : SBS는 2018. 2. 27.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프로그램에서 시사만화의 거장으로 알려진 A 작가가 후배 작가로부터 주례를 부탁받으면서 허벅지를 주무르거나 치마 아래 다리로 손을 집어넣어 성추행하고, 호텔에서 단 둘이 춤출 수 있느냐고 하는 등 성희롱하였다는 후배 작가의 인터뷰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A 작가는 주례를 부탁받으며 성추행, 성희롱한 사실이 없고, 주례 부탁을 거절하였으나 이를 후 다시 주례 부탁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 반론보도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방송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별지3~4〉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생략

〈별지5~8〉 대상기사 생략

〈별지9〉 사과문 생략

제3장

기사삭제청구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가합5465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나2007953 판결(확정)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할 별도의 취재노력 없이 성추행 혐의를 사실인 것처럼 암시한 보도는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뉴스1

[사실관계]

피고는 2016년 5월 9일자 <뉴스1> 웹사이트에 ‘해군법무관인 원고가 △△구 클럽에서 외국인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과 기사삭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가 단순히 원고의 혐의를 보도하는 데서 더 나아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으로 기사삭제청구 또한 인용하였다. 피고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 역시 손해배상 금액을 감액하는 것 외에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 및 피고의 상고가 없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요지]

□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여부

이 사건 기사가 현직 법무관의 범죄 혐의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범죄의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단순히 ‘원고가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원고가 실제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의 사실을 강하게 암시한 점, 피고가 이 사건을 보도하기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7가합546519	기사삭제 등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뉴스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2. 6.
			2018.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뉴스원 웹사이트(<http://news1.kr>)에 게시되어 있는 별지 기재 기사를 삭제하라.
3. 만일 피고가 위 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위 기한의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군법무관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고, 피고는 '뉴스원'이라는 인터넷신문 웹사이트

(<http://news1.kr>)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 8. 3:30경 서울 △△구 소재 클럽에서 피해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에 관하여 피고는 2016. 5. 9. '△△ 클럽서 현직 법무관 외국여성 강제추행'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기사를 뉴스원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행범으로 체포당한 직후부터 범죄혐의를 부인하였고, 당시 피해 여성과 그 친구의 진술서 작성 등 간단한 조사만이 진행되었을 뿐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 '원고가 술에 취해 춤을 추다가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억 원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기사를 뉴스원 웹사이트에서 삭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단신 형태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표현에 있어 다소의 과장을 한 것에 불과하여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가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고,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기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피고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원고가 다수의 언론사들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들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특정의 정도는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같은 업계에 있거나, 피해자의 지인·주변인이 해당 보도가 피해자에 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53425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특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기사는 원고를 ‘현직 해군법무관’, ‘법무관 A 씨(XX)’라고 표현하여 원고의 직업과 성, 나이를 특정하고 있는 점, 해군법무관의 규모에 비추어 해군법무관 중 나이가 XX세로서 ○씨 성을 가진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원고의 지인·주변인이 라면 이 사건 기사가 원고에 관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므로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내용을 압축하여 표현한 것인데, 이 사건 기사의 제목에서 피고는 ‘△△ 클럽서 현직 법무관 외국여성 강제추행’이라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 바, 기사를 접하는 일반 독자들로서는 실제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점, ② 피고는 위 제목 바로 아래에 기사 내용과 거의 유사한 분량으로 삽화를 삽입하였는데, 위 삽화에서 무엇에 도취된 듯 입을 벌린 남성이 주변에 있는 여성의 몸을 향해 손을 뻗으려는 듯한 모습을 붉은 톤으로 어둡게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기사 속의 사건이 의도적인 성범죄임을 암시하였던 점, ③ 기사 내용에서도 ‘현직 해군법무관이 황금연휴 클럽에서 외국인 여성을 강제추행해 경찰에 붙잡혔다’며 원고가 실제로 강제추행행위를 하여 체포되었다고 단정적으로 기재한 점, ④ ‘서울 △△경찰서는 클럽에서 술에 취해 춤을 추다가 20대 일본인 여성 ㄱ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현직 법무관 A씨(XX)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 30분쯤 △△구의 한 클럽에서 ㄱ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 부분은 원고가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건의 경과만을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곧이어 기사의 말미에 ‘해군 관계자는 “(경찰의 설명은) 대부분 사실”이라며 “다만 아직 조사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임으로써 마치 해군 관계자를 통해 위 혐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단순히 ‘원고가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

다’는 사건의 경과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원고가 강제추행죄를 실제로 저질렀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는 방법으로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제1심에서 ‘원고는 피해 여성의 앞을 빠르게 지나가던 중 피해 여성에게 범인으로 지목되어 붙잡혔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 여성의 근처를 계속 배회하던 제3자가 있어, 그 사람이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원고를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 여성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2016. 12. 29. 무죄가 선고된 사실(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16고8호), 이에 검찰관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17. 6. 1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고등군사법원 2017노28호) 그 무렵 무죄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는 위 기사의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기사내용 중 일부를 이루는 ‘원고가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기사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위법성 조각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행위를 한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에 있다 할 것이고,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보도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범죄혐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범죄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언론매체의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범죄혐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범죄혐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범죄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보도한 범죄혐의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오인에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보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하지만 보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의 수사과정과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야 보도시점에서의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보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상당성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기사가 현직 법무관의 범죄 혐의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범죄의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단순히 '원고가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원고가 실제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사를 통해 강하게 암시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기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사를 작성한 피고 소속 기자가 해군 공보관의 연락처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피고가 이 사건 기사로써 '원고가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여 원고의 명예, 사회적 가치 및 평가가 저하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하고,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누구보다도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법조인으로서 위 기사로 인해 그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위 사회적 활동 제약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운 점, 다만 피고가 실명으로 보도하지는 않아 제한된 범위의 주변 사람들만이 기사 속의 법무관이 원고임을 알았을 것인 점 등과, 피고가 위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행위 당시 사용된 표현의 수위, 해당 부분이 전체 보도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 정도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5.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기사삭제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德行,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가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는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바, 이 사건 기사의 삭제는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뉴스원 웹사이트(<http://news1.kr>)에 게시되어 있는 별지 기재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대상기사 생략

2심 판결문

사 건 2018나2007953 기사삭제 등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뉴스1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가합54651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0. 18.
판 결 선 고 2018. 12.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위자료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0.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나.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뉴스원 웹사이트(<http://www.news1.kr>)에 게시되어 있는 별지 기재 기사를 삭제하라.
- 다. 만일 피고가 위 나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항 기재 기한의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누구보다도 도덕성 및 윤리성이 요구되는 법조인으로서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그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원고는 법조인으로서의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다만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실명으로 보도하지는 아니하여 제한된 범위의 주변 사람들만이 이 사건 기사 속의 법무관이 원고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가 위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행위 당시 사용된 표현의 수위, 해당 부분이 전체 보도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의 피고 태도 등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5.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시 판결 선고일인 2018.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자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위자료청구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대상기사 생략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가합108418 판결(확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원고의 마약류 투약혐의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고, 검찰의 수사권 행사에 감시와 비판기능을 수행한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 원고 : A
- 피고 : 한국방송공사 외 4명

[사실관계]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17년 7월 26일자 <추적60분>에서 '전 대통령 이명박의 아들인 원고가 G 등이 마약류를 투약하여 오던 클럽 등에서 함께 어울려 다녀 원고의 마약류 투약혐의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데 검찰은 원고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방송을 보도하였다. 원고는 위 보도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증언 등으로 보건대 원고의 마약류 투약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소 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불성립결정된 바 있다(2017 서울조정1286).

[판결요지]

□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들은 다방면으로 취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방송이 제기한 의혹에는 근거가 있으며, 원고가 마약류를 투약하였다고 단정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악의적'이라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방송은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하여 감시와 비판기능을 수행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의 명예보호의 법익침해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문

사	건	2017가합108418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1. 한국방송공사 2. B 3. C 4. D 5. E
피고보조참가인		F
변 론 종 결		2018. 7. 19.
판 결 선 고		2018. 8.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최초로 방송되는 KBS2 추적60분 프로그램 방송 시작 전에, 진행자가 통상적인 해당 프로그램에서 멘트의 속도와 같은 속도로, 또는 그보다 느린 속도로 낭독하되, 낭독하는 동안 별지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고, 낭독 중 배경화면은 이 사건 보도대상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도메인 주소 <http://www.kbs.co.kr>의 '다시보기'란에 올라와 있는 2017. 7. 26.자 추적60분 2부작 “검찰과 권력”편의 제2부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제하의 제목을 포함한 방송내용 전체를 삭제하라.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이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17. 7. 26. 23:10경부터 약 50분간에 걸쳐 〈추적 60분〉 프로그램에서 “검찰과 권력 제2부작 -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전 대통령 이명박의 아들 원고가 마약사범 G(프로그램에서 서○○), H, 노○○, 배○○ 등(이하 필요에 따라 ‘G 등’이라 지칭한다)이 마약류를 투약하여 오던 클럽 등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는데, 그들의 마약사건 수사 과정에서 원고의 마약류 투약혐의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검찰의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수사무마 또는 은폐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하였다. G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 피고 B, C, D, E는 피고 한국방송공사 소속 PD들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한 책임자들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공동 취재한 프리랜서 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 1) 원고는 마약류를 소지·투약한 사실이 없다. H와는 알고 지내던 사이이긴 하나 연락을 하지 않은지 7~8년이 지났고, 나머지 G 등과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다. 이 사건 방송은 원고가 G, H 등과 어울리며 마약류를 투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전제한 후, 위 허위사실이 진실임에도 검찰이 원고의 아버지인 전 대통령 등의 정치권력에 굴복하여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원고의 마약류 투여가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 2) 이 사건 방송으로 원고는 마약류를 투약하고도 검찰 수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받은 것이 되었다. 이는 진실과 다르고 원고의 명예 또한 훼손되었으므로,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한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정정 보도를 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방송 내용을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아울러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5억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

- 1) 피고들은 원고가 마약류를 소지·투약하였다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G, H 등뿐만 아니라 G의 마약공급책 I(방송에서 정○○), G의 변호인이었던 변호사 J, 수사관계자 및 마약류 사건 수사 전문가 인터뷰 등 취재를 통해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G 등의 마약류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 2) 이 사건 방송은 어디까지나 전 대통령이 아들인 원고가 마약류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견제·비판이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3. 판단

- 가. 이 사건 방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원고가 마약사범 G 등과 친분관계가 있다. 원고는 G 등이 마약류를 투약하여 오던 클럽 등에서 함께 어울려 다녔다. G 등의 수사과정에서 원고의 마약류 투약혐의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데 검찰은 원고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처음 약 5분〉

G의 검거 및 유죄 판결, G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H(국회의원 O의 사위), 노○○(대형병원장 아들) 등에 대하여 검찰이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을 구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선처 받았다는 내용

〈약 36분경까지〉

원고가 G 등과 마약류를 투여하였다는 의혹 관련 부분

〈나머지 부분〉

검찰에 관한 비판[원고가 수사대상이 되지 않은 데에 H의 변호인이었던 전 서울중앙지검장 K가 영향력을 미친 것은 아닌지에 관한 의혹,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 박○○이 동기들 중 가장 빨리 부장검사로 발령 받았다는 부분 등]

- 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 공적 존재이다. 검찰이 공적 존재에 대해 수사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였는지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므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

- 다. 이 사건 방송에는 원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인터뷰

기자에게 들은 바로는, 수사 대상에 원고 이름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

재미 언론사 선데이저널의 보도

- 원고가 G, H 등과 친분이 있음(SNS 팔로우)
- 정부기관 등에서 입수한 내부수사 문건에는 G 등과 함께 원고가 수사대상이라는 점이 적시되어 있음

원고 인터뷰 시도

- 인터뷰 실패
- 원고는 열흘 가량 뒤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없고, G를 전혀 모른다는 서면 답변을 보내왔음

G 인터뷰

G는 H 등 모두 절친한 친구들이고, 원고도 친구라고 답변, 다만 원고는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았다고 답변

G 마약공급책(I)의 진술

- JTBC 기자 L의 클럽 잠입 취재영상(2015년)
- G의 마약공급책이 자신이라고 진술
- 원고를 포함하여 H 등을 옛날부터 잘 알았다고 진술

G 변호인(변호사 J)의 진술

수사과정에서 G가 진술한 인물에 원고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

위 방송 내용과 을가 제10호증, 을나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을 통해 원고가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를 투약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 1) G는 원고가 78년생, 자신이 빠른 79년생으로 친구라고 진술한다. 또한 원고는 노○○, 배○○ 와도 SNS(페이스북) 친구 관계에 있었다(을나 제3호증 페이스북 화면 캡처).
- 2) G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I도 원고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 3) 마약 사건에서 G를 변호한 변호사 J는 G가 H, 노○○, 배○○ 외에도 원고에 대하여도 진술하였다고 한다.
- 4) G 등은 여러 명에서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개의 주사기가 발견되었다. 이 사건 방송에서 변호사 M(전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장),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N(전 검사)은 ‘마약사건은 관여자의 진술과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5) 이를 종합하면, G, H 등의 마약류 투약에 관한 수사대상에 ‘원고도 포함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다.

라. 갑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0. 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모발 및 소변 검사를 받았는데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던 사실, 원고의 DNA는 H의 마약사건 당시 압수된 주사기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한 마약류 투약기간은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이다. 일반적으로 마약류는 소변 검사에서는 1주일, 모발 검사에서는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투약사실이 검출된다. 원고가 2017. 10. 19. 받았던 소변 및 모발 검사는 ‘이 사건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한 마약류 투여기간’에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압수된 주사기는 H와 관련된 일부 특정범죄와 관련된 것이므로 원고가 ‘그 주사기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뒷받침할 뿐이다.

‘원고가 자신의 마약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H의 진술(갑 제8호증의 1), 원고의 마약류 투약에 대한 수사개시의 단서를 찾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대검찰청의 답변(갑 제9호증의 2)은 이 사건 방송 이후에 제출된 것이다. 이 사건 방송에 원고가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았다는 G의 진술도 있고, 검찰은 수사를 개시하지 않아 이 사건 방송의 비판대상이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것만으로 앞에서 본 의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수는 없고, 합리적 의심을 뒤집을 다른 증거나 자료도 부족하다.

마. 이 사건 방송의 주된 취지는 ‘전 대통령의 아들인’ 원고가 마약류를 투약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수사대상으로 삼지 않은 검찰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다. 피고들은 다방면으로 취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방송이 제기한 의혹에는 근거가 있으며, 원고가 마약류를 투여하였다고 단정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악의적’이라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방송은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하여 감시와 비판기능을 수행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원고의 명예보호의 법익침해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110978 판결(확정)

시일이 지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실명을 밝히며 보도한 경우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추단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원고 : 주식회사 A
- 피고 : 주식회사 한국증권신문사 외 2명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한국증권신문사는 2017년 8월 2일자 〈한국증권신문〉 인터넷 사이트에 원고의 전 대표였던 D의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한국증권신문 편집국장인 피고 B를 원고가 공갈미수로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의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기사삭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후 원고 및 피고의 항소가 없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만 피고 C만이 추완항소하였으나, 각하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66129).

[판결요지]

□ 이 사건 기사가 원고를 비방할 의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D의 성추행 사건은 2014년 7월 및 10월경에 발생하였고, 2016년 1월경부터 다수의 언론매체에 기사화되었다.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2017년 8월 2일에 새삼스럽게 D 사건이 재조명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교육계의 성추문 사례들은 모두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들인데, D의 성추행 사건은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어서 다른 사례들과는 이질적이다.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사례의 대부분은 성추문 발생기관과 가해자가 비실명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원고와 D의 경우 부제, 소제목, 본문에서 거듭하여 실명이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결문

사	건	2017가합110978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1. 주식회사 한국증권신문사 2. B 3. C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한국증권신문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한국증권신문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ksdaily.co.kr>)에서 별지1 기재 기사 중
가. 부제 “A D 성추행까지” 부분,
나. 소제 “‘구직자·비서 강제추행’ D A 대표 사임” 부분,
다. 본문 내용 중 별지2 기재 부분을
각 삭제하라.
2. 피고 주식회사 한국증권신문사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한국 증권신문사는 이행 기한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2018. 8. 30.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국증권신문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 회사 한국증권신문사가 각 부담하고,
나.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C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는 공무원 및 각종 자격증 시험 대비 인터넷교육 서비스업, 학원 운영 및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2) 피고 주식회사 한국증권신문사(이하 ‘한국증권신문사’라 한다)는 한국증권신문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sdaily.co.kr>)에 언론 기사를 게재하는 언론사이다. 피고 B는 피고 한국증권신문사의 편집국장이고, 피고 C는 피고 한국증권신문사의 사회부 기자이다.

나. 피고들의 기사 게재

피고들은 2017. 8. 2. 『‘아수라장’ 교육계, 스승부터 교육기업 대표까지 성추행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별지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한국증권신문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이 사건 기사의 제목 아래에는 「여고생 집단 성추행 불안 교사부터 A D 성추행까지」라는 부제가 기재되어 있고, 「‘구직자·비서 강제추행’ D A 대표 사임」이라는 소제목 아래에 원고의 과거 대표이사였던 D의 성추행 사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 피고 한국증권신문사,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1) 원고의 과거 대표이사였던 D는 2014년 7월경 면접에서 만난 입사지원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피고 한국증권신문사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는 2016년 1월경부터 D의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였다.
- 2) 피고 B는 2017. 7. 19. 원고를 방문하여 홍보팀 직원인 E 실장을 만나, “피고 한국증권신문사

가 2017년 6월경 원고 측으로부터 D 관련 기사 삭제에 대한 대가로 1년에 2회, 회당 200만원의 광고 게재를 약속받은 후 관련 기사를 삭제하였음에도 원고 측에서 광고 게재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출하면서 원고에게 광고비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7. 7. 21. 서울구로경찰서에 피고 B를 공갈미수로 고소하였고, 피고 B는 2017년 7월 말경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 B는 원고의 형사 고소에 대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C와 공모하여 2017. 8. 2.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교육기업으로서 명예를 크게 훼손당하였고, 수강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 3) 원고는 피고 한국증권신문사를 상대로 침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할 것을 구하며, 기사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매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행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 B, C에 대하여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피고 B, C의 사용자인 피고 한국증권신문사에 대하여는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한국증권신문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 1) 피고 한국증권신문사, C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 2) 피고 한국증권신문사는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의 삭제는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처분이므로, 피고 한국증권신문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일 이내에 이 사건 기사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 한국증권신문사가 이 판결 확정일부터 3일이 지난 후에도 기사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피고 한국증권신문사가 기사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 기한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한다.
- 3) 피고 C는 피고 B와 공모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한국증권신문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경위, 보도의 형식, 내용, 표현방법,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한국증권신문사, C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3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피고 한국증권신문사,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한국증권신문사, C에게 송달된 날 다음 날인 2017. 10.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명예훼손 성립 여부

이 사건 기사의 서두에는 교육계에 만연한 성범죄를 지적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기사 중간에서 감독 시스템이 취약한 사교육 분야에서 나타난 성추문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 사건 기사의 부제, 소제목, 본문에는 원고의 상호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원고의 전 대표 이사의 성추행 사건을 사교육 분야에 나타난 성추문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사교육 업체인 원고의 영역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위법성 조각 여부

가) 피고 B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기사는 최근 교육계에 만연하고 있는 성추행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 사건 기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관련 법리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 또는 귀책사유가 없으나,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등 참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타인을 비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나 동기가 된 경우에는 그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 551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5, 6,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피고 B는 2017. 7. 19. 원고를 방문하여 홍보팀 직원인 E 실장을 만나, 원고 측이 2017년 6월경 피고 한국증권신문사에 D 관련 기사 삭제에 대한 대가로 1년에 2회, 회당 200만 원의 광고 게재를 약속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피고 B는 대화 과정에서 광고 게재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D 사건을 다시 기사화하여 원고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암시를 하였다. 원고는 2017. 7. 21. 서울구로경찰서에 피고 B를 공갈미수로 고소하였고, 피고 B는 2017년 7월 말경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으며, 2017. 8. 2. 한국증권신문 인터넷홈페이지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 (2) D의 성추행 사건은 2014년 7월 및 10월경에 발생하였고, 2016년 1월경부터 다수의 언론매체에 기사화되었다.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2017. 8. 2.에 새삼스럽게 D 사건이 재조명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교육계의 성추문 사례들은 모두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들인데, D의 성추행 사건은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어서 다른 사례들과는 이질적이다.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사례의 대부분은 성추문 발생기관과 가해자가 비실명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원고와 D의 경우 부제, 소제목, 본문에서 거듭하여 실명이 언급되고 있다.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원고를 비방할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3) 피고 B는 2018년 3월경 원고에 대한 공갈미수 범죄사실로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B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경위, 보도의 형식, 내용, 표현방법,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3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B는 피고 한국증권신문사,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 다음 날인 2017. 10. 20.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2〉 대상기사 생략

원고의 반론을 확인하지 않고 익명의 제보와 간접적 정황만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면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 : A 주식회사
- 피고 : 주식회사 기호일보 외 1명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기호일보는 2017년 11월 17일부터 2018년 1월 29일까지 <기호일보> 및 인터넷 <기호일보> 사이트에 4차례에 걸쳐 '원고가 불법으로 토석을 반출했으며, 건축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시 공무원과 유착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얻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정정보도, 손해배상, 기사삭제 및 보도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 할 수 없고,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후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조정성립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69265).

한편, 원고는 소 제기예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불성립된 바 있다(2017경기조정314·315, 2017경기조정316·317(병합)).

[판결요지]

□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들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의 제보, 간접적인 정황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기사에서 '불법 토석반출에 따른 사전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이 건축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질적 시행이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 취임한 D 부시장을 상대로 이 같은 자충수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원고 측이 이 사건 적시사실을 부인한다는 추상적 내용만을 밝혔을 뿐, 원고 측의 구체적인 반론을 확인,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문

사	건	2018가합30405 손해배상(기)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1. 주식회사 기호일보 2. 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9.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기호일보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 가. 일간 <기호일보> 1A면 상단 부분에 별지1 정정보도문을 각 제목 및 본문은 각 정정보도 대상 기사와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게재하고,
 - 나. <기호일보> 홈페이지(<http://www.kihoilbo.co.kr>) 초기 화면에 72시간 동안 별지1 정정보도문을, 각 제목 및 본문은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그 중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중 본문 기재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고,
 - 다. <기호일보> 홈페이지(<http://www.kihoilbo.co.kr>)에 게시되어 있는 별지2 목록 기사 및 별지3 목록 기재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들(동영상 포함)을 삭제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s://www.naver.com/>)와 다음(<https://www.daum.net>)에게 별지2 목록 기사 및 별지3 목록 기재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들의 삭제를 요청하라.
3. 만일 피고 주식회사 기호일보가 제2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그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들은 별지3 목록 기재의 내용을 출판물,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보도, 전달, 제공, 유포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면 원고에게 각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2,000,000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기호일보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간 <기호일보> 1A면 상단 부분 및 이 판결 확정 후부터 1개월 간 <기호일보> 홈페이지(<http://www.kihoilbo.co.kr>) 초기 화면 부분에 별지4 정정보도문을 각 제목 및 본문은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그것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각 게재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 주식회사 기호일보는 위 각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각 이행완료일까지 원고에게 1일 1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기호일보는 이 판결 확정 후 1일 이내에 <기호일보> 홈페이지(<http://www.kihoilbo.co.kr>)에 게시되어 있는 별지5 목록 기사 및 별지6 목록 기재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들(동영상 포함)을 삭제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s://www.naver.com/>)와 미디어다음(<https://www.daum.net>)에게 별지5 목록 기사 및 별지6 목록 기재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들의 삭제를 요청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 주식회사 기호일보는 원고에게 위 각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각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4. 피고들은 별지6 목록 기재의 내용을 출판물,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보도, 전달, 제공, 유포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각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토목, 건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기호일보(이하 ‘기호일보’라 한다)는 일간신문 ‘기호일보’(이하 ‘이 사건 일간신문’이라 한다)를 발행하고 인터넷신문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이하 ‘이 사건 인터넷신문’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B는 피고 기호일보 소속 기자이다.
- 나. 원고는 2016년경부터 △△시 ○○ □□지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진행하고 있다.
- 다. 피고들은 2017. 11. 17.부터 2018. 1. 29.까지 이 사건 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아래 표1과 같이 4차례에 걸쳐 기사를 게재하였다(아래 표1의 순번 1 기사를 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 하고, 나머지 순번의 각 기사에 관하여도 같다. 이하 각 기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

[표1]

순번	게재 일자	제목	내용
1	2017. 11. 17.	“△△ □□지구 아파트 시공사가 부지 내 토석 무단 반출”	별지7-1과 같음
2	2017. 11. 20.	A건설, 우회로 해결 없이 사업 강행 □□지구 건축 승인조건 불충족 논란	별지7-2와 같음
3	2017. 11. 22.	□□지구 실시계획 인가 뒤 업체·공무원 유착설 ‘모락모락’	별지7-3과 같음
4	2018. 1. 29.	A건설산업(주) 회장 “□□지구 도와달라” △△시 부시장 찾아가 부정청탁 시도	별지7-4와 같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가치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아래 표2의 ‘보도 사실’과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①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고, ②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처분으로서 또는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③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각 기사 삭제 및 보도 금지를 구한다(원고는 아울러 정정보도, 삭제 및 보도금지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표2]

번호	해당 기사	보도 사실
①	이 사건 제1 기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토석을 외부로 무단 반출하고, 산림을 불법 훼손하였다.
②	이 사건 제2 기사	-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국도 XX호선 우회도로를 건설하라는 △△시의 조건부 승인을 위반하였다. - 원고가 △△시 공무원과 유착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③	이 사건 제3 기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시 공무원들과 유착하여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④	이 사건 제4 기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부정한 청탁을 시도하였다.

3. 판단

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의 적시 여부

1) 위 표2의 ①항 보도 사실 적시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기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토석을 외부로 무단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 ① 이 사건 제1 기사에는 ‘원고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해당 사업부지에서 엄청난 양의 토석을 채취해 사업장 밖으로 몰래 빼내는 등 불법 토석반출에 따른 사전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였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10만m²의 토석이 반출되었고, 이는 당장이라도 측량을 해보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의) 신고 내용과 다르게 2배 이상 많은 토석이 반출됐다는 내부자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위법성 여부에 대한 행정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라는 기재가 있다.
- ② 이 사건 제1 기사에서는 ‘원고가 불법 토석반출을 하였다’는 기재와 함께 ‘원고는 토석 4만 8천m²을 반출하겠다고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2배 이상 초과하는 10만m²를 반출하였다’는 이 사건 공사 관계자의 주장을 인용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토석을 외부로 무단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③ 이 사건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이 사건 제1 기사에 △△시 ○○ □□지구 부지 사진이 있고 그 아래 ‘산림훼손 및 토석 무단 반출 의혹이 제기된 △△시 ○○ □□지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단지 건설 부지’라는 기재가 있으나 그 외 기사 본문에는 ‘원고가 산림을 불법훼손하였다’는 기재가 없고, 위와 같은 불법 토석반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산림 불법훼손까지 암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산림을 불법훼손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위 표2의 ②항 보도 사실 적시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제2 기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국도 XX호선 우회도로를 건설하라는 △△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 ① 이 사건 제2 기사에는 ‘이 사건 사업이 건축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질적 시행이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의 조건부 승인문서에는 “국도 XX호선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관련해 ○○지방국토관리청과 토지보상 등 용지 확보계획, 공사 범위 및 시기, 사업 주체, 단계별 시공계획 상하수도관망 처리 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우회도로는 보상 등의 문제로 아직 공사 발주도 못한 상태여서 아무리 빨라도 개설까지 10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라는 기재가 있다.
- ② 이 사건 제2 기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건축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단정적 기재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따르면 원고가 국도 XX호선 우회도로를 건설해야 건축승인이 가능하나,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위 도로는 보상 문제로 개설까지 빨라도 10년 이상은 걸린다’는 취지의 설명을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국도 XX호선 우회도로를 건설하라는 △△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제2 기사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던 업체에서도 국도 XX호선 우회도로가 먼저 개설돼야만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냈는데, 용역 결과가 무색할 정도로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별 무리 없이 났다”며 “당시 A건설 경영진이 직접 나서 해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런 경우 시 공무원과 유착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란 의혹이 제기됐었다”고 귀띔했다’는 기재가 있으나, 위와 같이 업계 관계자 말을 인용하는 외에 원고가 △△시 공무원과의 유착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내용이 없는 점, 위 인용부분 전에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국도 XX호선 우회도로의 개설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건이 있다’는 내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제2 기사에서 ‘원고가 △△시 공무원과 유착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암시되었다거나 적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위 표2의 ③항 보도 사실 적시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제3 기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시 공무원들과 유착하여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제3 기사에는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과정에서 원고와 △△시 공무원간 유착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정 지역 연고를 고리로 원고의 회장과 인맥을 형성한 도시주택국장 출신의 ㄱ 전 ○○○구청장이 원고 측에 인허가 업무가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도움을 줬다는 게 내부와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ㄱ 전 구청장은 2016년 6월 명예퇴직 후 원고의 인허가 담당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여기에 또 다른 ㄴ, ㄷ, ㄹ 등 특정 지역 출신 간부 공무원들이 원고 회장과 카르텔을 형성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던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가 나는데 상당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기재가 있다.

② 이 사건 제3 기사에서 ‘원고 회장과 동향 출신인 △△시 공무원들이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가 나도록 도와주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 원고 회장과 동향인 ㄱ 전 ○○○구청장이 퇴직 후 원고의 임원으로 재취업했다’는 정황을 소개하고, ‘이로써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던 인가가 났다’는 설명을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시 공무원들과 유착하여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위 표2의 ④항 보도 사실 적시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제4 기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시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이하 위 1) ~ 4)항의 각 적시사실을 ‘이 사건 적시사실’이라

한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 ① 이 사건 제4 기사에는 ‘원고의 C 회장이 최근 △△시 인허가 담당 최고위직 공무원을 상대로 부정청탁 로비를 펼친 의혹이 불거졌다’, ‘새로 취임한 D 부시장을 상대로 이 같은 자충수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C 회장은 지난해 12월 수 차례에 걸쳐 △△시 D 제2부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 줄 것을 요청했다’, ‘C 회장은 이달 초 △△시청 2층 D 부시장 집무실을 찾아와 “난항을 겪고 있는 이 사건 사업 등 원고가 지역에서 펼친 사업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정청탁을 시도했다’, ‘이 부시장은 “이달 초 오전에 불쑥 집무실로 찾아와 깜짝 놀랐다”며 “진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당시 보인 행태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고 밝혔다’는 기재가 있다.
- ② 이 사건 제4 기사에서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하고, ‘원고의 회장이 △△시 부시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줄 것을 요청하고, 불쑥 집무실로 찾아가 사업 정상화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와 같은 행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D 부시장의 언급을 인용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시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③ 이 사건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이 사건 제4 기사에는 기사와 함께 돈을 건네는 듯한 사진이 함께 있으나, 기사 본문에는 부정한 청탁 외에 뇌물을 주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달리 원고가 △△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거나 주려고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나. 이 사건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9,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시장, ○○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인정되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은 2017. 9. 6. △△시장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7. 3.부터 2017. 5.까지 토석 48,768m³을 외부로 반출하였다는 내용의 토사운송용역계약내역서 등 자료를 제출하였다. △△시청 녹지와 소속 공무원은 2018. 1. 24. □□□산업개발, □□□산업개발의 현장관리소장인 E를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공사 현장 임야에서 채취한 토석 59,688m³을 외부로 반출했다’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18. 2. 19. ‘이 사건 공사 현장 임야에서 5만m³ 이상의 토석이 반출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 ② △△시장은 2014. 12.경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서, ‘국도 XX호선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관련하여 ○○지방국토관리청과 토지보상 등 용지확보계획, 공사범위 및 시기, 사업주체, 단계별 시공계획, 상하수도 관망 처리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을 도시개발사업 착공 전까

지 별도 협의하고, 협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추진 후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하 '이 사건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그 승인조건 중 하나로 부과하였다. □□□산업개발은 2015. 6.경 위 승인조건을 이행하고자 ○○지방국토관리청, △△시청 도로정책과에 국도 XX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지방국토관리청과 △△시청간에 토지보상주체에 관한 의견이 대립하자 관련기관 통합회의 개최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2015. 7. 22. △△시청, ○○지방국토관리청, □□□산업개발간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에 따라 2016. 4. △△시청, ○○지방국토관리청, □□□산업개발간 국도 XX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업무분담, 방음시설 설치 등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승인조건은 '도시개발사업 착공 전까지 협의, 협약체결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사 착공 또는 건축심의를 위하여 국도 XX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착공되거나 완공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계획은 자치단체장 등이 수립하는 것이고, 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이 인가의 대상인데(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 참조),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에 관하여 △△시 공무원이 수뢰 등의 혐의로 징계를 받거나 형사고발된 바 없고, 피고들은 원고가 △△시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 ④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르면, 원고 회장 C가 2017. 12.경 △△시 제2 부시장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한 후 2018. 1.경 제2 부시장실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방문 당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다. 이 사건 적시사실 보도의 위법성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적시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이 사건 적시사실은 원고의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반출 여부, 실시계획 인가의 적법성 여부 등 이 사건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 ② 피고들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의 제보, 간접적인 정황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기사에서 '불법 토석반출에 따른 사전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이 건축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질적 시행이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 취임한 D 부시장을 상대로 이 같은 자충수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 ③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원고 측이 이 사건 적시사실을 부인한다는 추상적 내용만을 밝혔을 뿐, 원고 측의 구체적인 반론을 확인,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통해 허위 사실인 이 사건 적시사실을 보도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기호일보는 정정보도를 하며, 이 사건 각 기사를 삭제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적시사실을 보도, 전달, 제공, 유포 또는 광고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사 내용, 표현 방식, 영향력, 허위 사실의 적시가 차지하는 정도,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액수는 7,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기사의 마지막 게재일인 2018. 1. 2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보도사실’과 실제 적시된 것으로 인정하는 ‘이 사건 적시사실’이 다소 상이하고,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 시기, 기간 및 방법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정정보도의 내용, 시기, 기간 및 방법을 별지1 정정보도문과 같이 일부 수정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정정보도문

제목 : A건설산업(주)의 △△시 ○○ □□지구 지역주택조합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본문 : 본사는 2017년 11월 17일 [“△△ □□지구 아파트 시공사가 부지 내 토석 무단 반출”] 기사와 같은 달 20일 [A건설, 우회로 해결없이 사업 강행 □□지구 건축 승인 조건 불충족 논란] 기사, 같은 달 22일 [□□지구 실시계획 인가 뒤 업체·공무원 유착설 ‘모락모락’] 기사 및 2018년 1월 29일 [A건설산업(주) 회장 “□□지구 도와달라” △△시 부시장 찾아가 부정청탁 시도] 기사에서 A건설산업(주)가 △△시 ☆☆구 ○○동 □□지구에서 지상 8~16층, 1천 885가구 규모로 ‘XX실크밸리’ 아파트 건설 공사의 시공사로 공사하면서 부지 내 토석을 무단 반출하였고, 국도 XX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하라는 △△시의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시 고위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시도하였다는 등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건설산업(주)는 △△ ○○ □□지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공사를 하면서 토석을 무단 반출한 사실이 없고, 관할 국토관리청과 국도 XX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관한 협의를 마쳤으며, △△ ○○ □□지구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변경) 인가과정에서 △△시 공무원들과 위법하게 유착하거나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별지2~3〉 목록 생략

〈별지4〉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5~6〉 목록 생략

〈별지7-1~4〉 대상기사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7가합589370 판결

검찰 수사관과 통화를 했음에도 제보자의 주장에 경도되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원고 : 주식회사 A저축은행 외 2명
- 피고 : 주식회사 위클리오늘신문사 외 2명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위클리오늘신문사는 2017년 11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원고 저축은행 및 그 관계자들이 G, H 등 소외 거래상대방에게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우선권을 주는 것을 대가로 이 사건 인접 부동산에 관련한 채무의 대위 변제에 따른 이득만 취하고, 토지 매매 계약은 제3자와 맺는 일종의 사기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명예훼손과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과 기사삭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가 진실성, 공공성, 상당성이 모두 결여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만,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 B의 실명을 적시하고 사진을 게재한 것은 이 사건 기사의 보도 행위에 포함되거나 이에 부수하여 이뤄진 행위일 뿐이라 하여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이 사건은 피고 D, E의 항소로 항소심 계류 중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01020).

[판결요지]

□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 D는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를 통하여 원고 B, C에 대한 고소 건이 검찰에 최종 송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였다. 그럼에도 당초 자신이 짜놓은 틀에 맞춰 기사를 쓰기 위해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는 눈감고 제보자에게 받은 자료를 강조했다. 저축은행의 관계자에게 보낸 질의서를 보더라도 이미 H 등 고소인 측 주장에 경도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재에 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질의에 관하여 원고 저축은행으로부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받고도, 추가적인 확인 취재는 하지 않거나, 취재기자가 설정해놓은 틀에 맞춰 보도하기 위한 의도의 취재만을 한 뒤에 보도를 강행하였던 점, 더구나 피고 위클리오늘은 이 사건 보도 당시 원고 저축은행과 분쟁 중인 H가 운영하는 회사와 같은 건물에 입주해있는 상태에 있는 등 소외 거래상대방 측과 ‘언론기관-취재원’의 통상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가 오로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거나, 혹은 피고들이 위 각 적시사실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문

사	건	2017가합589370 손해배상(기)등 청구의 소
원	고	1. 주식회사 A저축은행 2. B 3. C
피	고	1. 주식회사 위클리오늘신문사 2. D 3. E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0. 12.
		2018. 11. 2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위클리오늘신문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 가. 자신이 운영하는 뉴스사이트 위클리오늘 홈페이지(<http://www.weeklytoday.com/>)의 서버에서 [별지 1] 표시 기사를 삭제하고,
 - 나. [별지 2] 목록 표시 각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운영사에 위 가.항 표시 기사에 관한 검색 결과 삭제를 요청하라.
2. 만약 피고 주식회사 위클리오늘신문사가 위 제1항의 기간 안에 위 제1항 기재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위클리오늘신문사는 원고에게 위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 가. [별지 1] 표시 기사 삭제 완료일까지 매일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별지 2] 목록 표시 각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각 운영사에 [별지 1] 표시 기사에 관한 검색 결과 삭제 요청을 모두 완료하는 날까지, 잔존 검색결과 1건 당 매일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저축은행, B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주문 제1항의 청구 및 피고들이 주문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저축은행, B에게 각 20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 주식회사 A저축은행(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원고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용계, 신용부금, 예·적금의 수입 및 대출 업무 등을 영위하는 저축은행이고, 원고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원고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미합중국인이며, 원고 C는 원고 저축은행의 전무로 있는 사람이다.
- 피고 주식회사 위클리오늘신문사(이하 '피고 위클리오늘'이라 한다)는 시사 문제를 다루는 주간지를 발행하는 한편, 인터넷 뉴스사이트(<http://www.weeklytoday.com/>)도 운영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D는 피고 위클리오늘 소속 기자이며, 피고 E는 아래에서 보는 원고들 관련 이 사건 기사의 출고 당시 피고 위클리오늘의 편집국장으로서 일하였던 사람이다.
- 피고 D는 2017. 11. 30. [별지 1] 기재와 같이, 「[단독] ○○○ □□ IDC 부지 매매 사기혐의 피소 A저축은행 대표 등 '기소의견' 송치」라는 제하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E는 이 사건 기사의 최종 편집 후 위클리오늘 인터넷 뉴스사이트로의 출고를 승인하였으며, 피고 위클리오늘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 및 출고된 이 사건 기사를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게재하였다.
-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기사는 위클리오늘 홈페이지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형태로 임시 접근 제한 조치가 된 채, 뉴스 서버에 보관되어 있다.
- 또한, [별지 2] 목록 표시 각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에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을 입력하면, [별지 3-1] 내지 [별지 3-1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리드(lead)'³³⁾에 해당하는 부분

33) 기자가 뉴스 기사를 쓸 때, 기사의 첫머리에 그 내용의 핵심을 한 두 문장으로 요약해서 내세운 부분을 말한다.

['○○○에 □□시 소재 클라우드 데이터센터(IDC) 부지 4만평을 매각하기로 한 일본계 금융회사 A저축은행의 B 대표와 C 전무, F 팀장이 사기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의 일부가 검색 결과로 표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 34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기사에서 피고들은, 마치 원고 저축은행이 □□시 XX구 ☆☆동 산 XX 및 같은 동 XXX-X, XXX-X, XXX, XXX 토지(이하 위 각 필지의 토지를 모두 합쳐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일동포 G와 △△파트너스 H 대표 등(이하 '소외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거기에 인접한 ☆☆동 XXX-X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저축은행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토록 요구하여 이득을 얻었으면서도, 정작 매매계약은 ○○○와 맺는 등 명백한 사기행위를 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들 사이에 민사 분쟁이 벌어졌고, 원고 B, C는 각 경찰의 수사를 받은 끝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러나 원고 저축은행은, ①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우선협상권을 부여하였다가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누구와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상태에서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② 소외 거래상대방에게 이 사건 인접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대위변제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③ 원고 B와 C가 위와 같은 사안과 관련하여 소외 거래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고소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도 없고, 결국 해당 고소 건에 대해서 원고 B는 해당 사안과 관련 없음을 이유로 ‘각하’ 처분을, 원고 C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④ 또한 소외 거래상대방은 원고 저축은행을 상대로 가처분 등 보전소송 절차만 진행 중이었고 민사 본안 사건은 제기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D는, 위 내용과는 배치되는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고, 피고 E는 위클리오늘의 편집국장으로서 해당 기사를 최종 편집 및 출고 승인하였으며, 피고 위클리오늘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피고들은 명예 회복에 적당한 조치로서 위클리오늘 홈페이지에 등재된 [별지 1] 기재 기사를 삭제하고, [별지 2] 목록 각 포털 사이트에 각 검색 결과가 표출되는 것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기사에 각 세부사항은 피고 위클리오늘 소속으로 법조계를 담당하는 기자인 피고 D가 경찰, 검찰, 소외 거래상대방, 원고 저축은행 관계자 등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 취재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서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일부 진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원고 저축은행의 사회적 기능이나 그 대표이사, 임원 등이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며, 피고 D의 취재 경위 등을 종합하면 그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4, 15, 16, 18, 19, 22 내지 33호증, 을 제4, 5,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 1) 소외 G는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을 순차 매수하여 각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원고 저축은행은 2006. 11. 1.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삼아,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의 각 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20,000,000원, 채무자 G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채권최고액 3,900,000,000원, 채무자 G로 하는 5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 3) 위 채무자 G가 원고 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이 사건 제정 부동산에 대한 매각 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 저축은행은 2016. 10. 25. 이 사건 제정 부동산의 각 필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4) 원고 저축은행은 2016. 11. 24. 주식회사 △△△홀딩스 및 □□산업개발글로벌 주식회사(소의 거래상대방이 지배하는 회사들이다. 이하 '제1차 매수희망 회사들'이라 한다) 사이에, 원고 저축은행이 위 제1차 매수희망 회사들에 이 사건 제정 부동산을 매각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장차 확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본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의 계약 교섭 과정에서 쌍방의 권리·의무 기타 준수 사항을 정하기 위한 양해각서(이하 '제1차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각 기명 또는 서명 날인하였다. 위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본건 부동산(이 사건 제정 부동산)의 매매예정가격 및 매매조건]

- (1) 본건 부동산의 매매예정가격은 금오백십억(51,000,000,000)원(이하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 (2) 부동산매매 본 계약 체결시, 매수희망자는 부동산매매 본계약 체결시 매도자에게 매각대금 중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부동산매매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6월 내에 매도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부동산매매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4월 이내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주택사업계획변경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택사업계획변경 승인일로부터 2월 내에 매도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5) 채무자 I 또는 제3자의 대위변제에 의해 매도자에게 금이십팔억이천만(2,820,000,000)원이 상환될 경우 매도자는 I 소유 경기도 □□시 XX구 ☆☆동 XXX-X(이 사건 인접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매도자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및 수원지방법원 XXXX타경XXXX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즉시 취하고, 경기도 □□시 XX구 ☆☆동 XXX에 설정되어 있는 매도자 명의의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 및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하여 주기로 한다.

제4조 (배타적 우선협상기간)

- (1) 매도자는 매수희망자에게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이하 '배타적 우선협상기간') 동안 본건 거래에 관하여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한다.
- (2) 매도자는 제(1)항의 기간 동안 매수희망자를 제외한 다른 제3자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각할 의향을 표시하거나 다른 제3자와 본건 거래에 관한 접촉, 협의, 협상, 양해각서 또는 매매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교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당사자들은 배타적 우선협상기간 동안 부동산매매 본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노력한다.

제6조 (유효기간)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약은 당사자들이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2016. 12. 12.까지 유효하다.

- 5) 제1차 양해각서 제3조 (5)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6. 12. 15.경 이 사건 인접 부동산에 설정된 원고 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과 관련한 피담보채무가 일부 변제되었고, 이 사건 인접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되고 있던 경매 절차도 취소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제정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1차 양해각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1차 매수희망 회사들이 본 계약 체결에 필요한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 6) 원고 저축은행은 2017. 4. 4. 다시 △△파트너스 주식회사 및 □□산업개발글로벌 주식회사(위와 마찬가지로 소외 거래상대방이 지배하는 회사들이다. 이하 위 각 회사들의 명칭 변경 또는 계약 당사자 지위 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틀어 '제2차 매수희망 회사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양해각서(이하 '제2차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총 매매대금 등 그 주요 내용은 제1차 양해각서와 거의 동일하고, 원고 저축은행이 2017. 5. 4.까지 제2차 매수희망 회사들에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되, 다만 계약금 지급 관련 조항이 다소 변경되어 제2차 매수희망 회사들이 계약금을 원고 저축은행에 현실 지급하는 대신 원고 저축은행의 수신계좌에 계약금 상당액(51억 원)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 7) 제2차 양해각서에서 정한 배타적 우선협상권 부여 기간 중 원고 저축은행과 제2차 매수희망 회사들 사이에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본 계약은 체결되지 못하였고, 제2차 매수희망 회사들은 2017. 5. 4.까지 약속한 51억 원을 원고 저축은행의 수신계좌에 예치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제2차 매수희망 회사들은 원고 저축은행에 자금 예치 액수를 51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기도 하였다.
- 8) 본 계약 체결이 성사되지 못한 채 제2차 양해각서에서 정한 우선협상 기간이 경과한 이후, 원고 저축은행과 소외 거래상대방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조건과 관련하여 몇 차례 공문과 이메일 등으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소외 거래상대방 측이 기존 제1, 2차 양해각서 등에서 정하였던 계약금 지급 조건 및 잔금 미지급시 계약금 몰취 조건 등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원고 저축은행은 시종일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 9) 원고 저축은행은 2017. 6. 19. ○○○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계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7. 10. 31.에는 ○○○ 주식회사 앞으로 그에 따른 본등기까지 모두 마쳐주었다.
- 10) 그 무렵 제2차 매수희망 회사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들이 여전히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자 혹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2017카합80841), 위 법원은 2017. 9. 11. '양 당사자 사이에서 매매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제2차 양해각서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2차 매수희망 회사들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제2차 매수희망 회사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제2차 매수희망 회사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12. 29. 그 항고를 기각하였고(2017라21091),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11) 피고 D는 위 가치분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7. 6. 26. 원고 저축은행의 F 부장(인사총무팀)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위클리오늘 사회팀 법조담당 D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 22일 [redacted]파트너스 외 1명이 A 저축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가치분 신청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redacted]시 [redacted]구에 약 4만평의 토지를 소유한 G 씨가 채무 미지급으로 인해 지난해 A 저축은행에 경매(410억원 낙찰)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A 저축은행은 G 씨에게 510억원 상당의 금액에 다시 매각하기로 하고 올해 5월 4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습니다.
2. 이후 G 씨는 [redacted], [redacted] 등의 업체들과 [redacted]를 설립하고 A 외 수십차례 협상을 진행하며 올해 6월 17일까지도 매매계약서를 주고 받는 등의 실질적인 매매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3. 가치분신청서에 따르면 당시 [redacted]는 계약금을 A 저축은행에 예치하고, 인근 땅을 매입하는 등 A 가 원하는 모든 요건을 들어줬으며 A 는 매매의향서까지 발부하며 사실상 [redacted]측에 토지를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4. 하지만 지난 17일 갑자기 연락을 끊은 A 측은 19일 [redacted]에 해당토지를 매각했으며, 오늘자로 가등기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redacted]측은 A 가 실질적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있는 [redacted]와의 신의를 무시하고 대기업에 해당 부지를 매각했다며 '갑질'이라 주장했습니다.
5. 이번 사건은 그 동안 A 측의 요구에 따라 매입 준비를 충실히 해온 [redacted]측을 무시하고 대기업에 넘긴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A 측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6. 대기업과 일반 중소기업들 사이에 두고 저울질하다, 결국 자신에게 이득이 된 쪽에 땅을 매매하기 위해 그동안의 신의를 깨버린 '갑질'로도 묘사되는 이번 사건에 대해 A 가 갑작스럽게 [redacted]에 해당 토지를 매각한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12) 위와 같은 질의서에 대하여 원고 저축은행 F 부장은 이튿날 피고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귀사가 보낸 메일에 답신을 드립니다.
2. 먼저 귀사의 질의취지는 민원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이고,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3. 당행은 경기도 ■■■시 ■■■구 ■■■동 토지(이하, '본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의향을 밝힌 ■■■파트너스주식회사(이하, ■■■파트너스) 및 ■■■산업개발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산업)와 두 차례에 걸쳐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건 부동산 매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4. 그러나, 당행이 ■■■파트너스 및 ■■■산업에게 두 차례에 걸쳐 MOU를 체결하면서까지 기회를 주었으나, ■■■파트너스 및 ■■■산업은 MOU에서 정한 배타적 우선협상기간을 도과하기까지 당행의 매매조건을 수용하지 못하였고, 이로써 ■■■파트너스 및 ■■■산업의 배타적 우선협상권은 소멸하였습니다. 그 후 당행은 ■■■파트너스 및 ■■■산업에게 향후 복수의 매수의향자들과 본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다고 고지한 바 있습니다.
5. 위 MOU의 효력기간이 도과한 이후, 당행은 복수의 매수의향자들과 본건 부동산 매각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파트너스 및 ■■■산업은 당행이 수차례 협상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행과의 계약조건을 실행하지 못하여 계약조건 변경요청 등을 하였으며, 에스스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한 자금 또한 입금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에, 당행은 그 동안 협상해온 매수의향자 중 계약 협의가 완료된 ■■■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6. 즉, 당행과 ■■■가 체결한 본건 토지매매계약은 ■■■파트너스 및 ■■■산업의 배타적 우선협상기간이 경과한 이후 체결된 것이고, 당행은 합리적 판단과 선택에 따라 매매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3) 소외 거래상대방 중 한 사람인 H는 2017. 6.경 '원고 저축은행 대표이사과 직원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제정 부동산을 소외 거래상대방에게 매도할 생각이 없으면서 단지 이 사건 인접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금을 변제 받기 위하여 마치 소외 거래상대방에게 매도하여 줄 것처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대출금 대위 변제만 받은 뒤 이 사건 제정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서울서초경찰서에 원고 B, C 및 원고 저축은행의 다른 직원들인 J, K, L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붙여 고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소 건'이라 한다).

- 14) 서울서초경찰서장은 2017. 10. 31. 이 사건 고소 건에 관하여, 고소인 H에게 ‘귀하의 사건과 관련 일부 기소, 일부 혐의없음으로 검찰 인계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사건처리결과 통지를 보냈다.
- 15) 피고 D는 2017. 11. 30. 위 사건처리결과 통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과 통화를 하였는데, 해당 수사관은 이 사건 고소 건의 처리 경과와 관련하여 묻는 피고 D의 질문에 대하여 ‘아, 예. 송치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여 ‘송치는 이제 저희한테 끝나는 건데요. 경찰관들이 조사해서 올리면 검사가 보고 다시 또 수사지휘 내려 보내고 그러거든요. 송치라는 개념은 아니에요.’라며, ‘(이 사건 고소 건은) 다시 수사지휘 내려 보내셨네요.’라고 답변하였다.
- 16) 이 사건 기사는 피고 D가 위와 같이 검찰 수사관과 통화한 당일 출고되었으며, 당시 피고 위클리오늘의 주소지는 서울 ○○구 △△△로 XXX, 13층(○○동, □□□타워)으로서, 이 사건 고소 건의 고소인이었던 H가 운영하는 □□산업개발글로벌 주식회사의 주소지와 같았다. 피고 위클리오늘은 위 본점 주소지 사무실을 H로부터 소개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상태였다.
- 17) 서울서초경찰서장은 2018. 5. 23. 이 사건 고소 건에 관하여, 원고 B가 해당 사건에 관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각하’ 의견으로, 원고 C 및 소외 K, L이 각 고소인인 H를 기망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각 검찰에 인계하였다는 취지의 사건처리결과 통지를 피고소인들에게 발송하였다.
- 18) 한편 G가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을 원고 저축은행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이 사건 계쟁 부동산 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인·허가 문제에 대한 것이다)에 관하여, 소외 거래상대방 측은 2018. 3. 1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원고 저축은행을 상대로 ‘매수자 지위보전 및 계약이행금지 가처분’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가등기상의 권리처분 금지 가처분’을 각 신청할 당시 원고 저축은행이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그것은 저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주식회사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관련 소송, 신청 등도 모두 취하하였으므로, G 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잘 검토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기사의 적시사실

원고들의 주장을 기초로,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중 허위성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려 내어 보면, ① ‘원고 B, C가 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취지의 부분(이하 ‘이 사건 제1적시사실’이라 한다), ② ‘원고 저축은행 및 그 관계자들이 소외 거래상대방에게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우선권을 주는 것을 빌미로, 이 사건 인접 부동산에 관련한 채무의 대위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부분(이하 ‘이 사건 제2적시사실’이라

한다), ③ ‘원고 저축은행이 위와 같이 대위 변제에 따른 이득만 취하고, 토지 매매 계약은 제3자와 맺는 일종의 사기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이 사건 기사에 나타난 계약 교섭 과정에 대한 경위 설명, 우선협상 시한 만료 후 원고 저축은행의 태도에 관한 서술, H의 발언을 인용한 내용 등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기사는 위와 같은 사실이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이하 ‘이 사건 제3적시사실’이라 한다), ④ ‘검찰 기소와 별개로 해당 토지에 대한 민사 분쟁도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제4적시사실’이라 한다)을 꼽을 수 있다(이 사건 기사에 나타난 그 밖의 기재는 원고들이 특별히 허위성 여부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 부분이거나, 위 각 적시사실을 전제로 한 기사 작성자의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허위성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각 적시사실의 허위성 여부

- 1) 이 사건 제1적시사실(‘원고 B, C가 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가.항의 인정사실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보도는 H가 서울서초경찰서장으로부터 받은 사건처리결과통지(을 제5호증)를 1차적 근거 자료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거기에는 단지 이 사건 고소 건을 ‘일부 기소, 일부 혐의 없음으로 검찰 인계하였다’라고 되어 있을 뿐, 피고 소인들 중 특별히 원고 B와 C에 대해 경찰이 각 어떤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것인지는 파악할 수 없는 점, ② 그 뒤 피고 D가 검찰 수사관과 통화한 내용을 더하여 보아도, 이 사건 기사에 언급된 바와 같이 ‘원고 저축은행의 B 대표, C 전무(원고 C를 말한다), F 팀장’이 모두 사기 혐의에 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는 대화는 없는 점, ③ 피고 D는 위 통화를 통하여 원고 B, C 및 기타 원고 저축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 건은 이른바 ‘송치(경찰 단계의 수사 과정이 일단락된 것을 의미한다)’ 처리가 마쳐진 것이 아니라, 담당 검사의 수사 지휘로 경찰이 다시 사건을 되돌려 받아 보강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관계에는 애써 눈감고, H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사건처리결과 통지의 송치란에 ‘○’ 표시가 된 것, 그리고 ‘일부 기소’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을 근거로, 원고 B, C 등에 대한 혐의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사실상 인정된 것과 같은 취지의 단정적인 보도를 강행한 점, ④ 이 때문에 이 사건 기사를 접하는 표준적인 독자들로 하여금 적어도 위 세 사람에게 대해서는,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 경찰로부터 일응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인식되게 하였던 점, 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원고 B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으로, 원고 C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의견으로 이 사건 고소 건을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 C가 ‘H 등에 대한 사기 혐의에 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이 사건 제1적시사실은 허위임이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기사에서는 원고 C에 관하여 단지 ‘X모 전무’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원고 저축은행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X 씨’ 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원고 저축은행에서 전무의 직위에 있는 이

가 원고 C 이외에 더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일부 익명 보도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 적시의 대상은 충분히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이 사건 제2적시사실(‘원고 저축은행이 이 사건 인접 부동산에 관련한 채무의 대위변제를 요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가.항의 인정사실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인접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 관련 약정은 제1차 양해각서(갑 제14호증)에 그 세부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위 피담보채무의 변제는 H 등 소외 거래상대방에 대한 우선협상권 내지는 우선매수권 부여의 조건 또는 선이행 의무의 개념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소외 거래상대방의 사업 목적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인접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채무자 I 또는 다른 제3자가 변제할 경우, 원고 저축은행이 등기상 되어 있는 제한을 신속하게 풀어주기로 한다는 것을 규정한 취지인 점, ② 위 피담보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가 있는 뒤 원고 저축은행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을 가지는 등기상의 제한 해제 조치를 약정대로 모두 취한 것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는 점, ③ 소외 거래상대방의 우선협상권 내지는 우선매수권이 소멸된 것은 소외 거래상대방이 각 양해각서에서 정한 선행 또는 동시이행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마치지 못하였기 때문일 뿐, 이 사건 인접 부동산과 관련한 어떤 제약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저축은행이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는 것을 빌미로 이 사건 인접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기사 내용은 허위임이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이 사건 제3적시사실(‘원고 저축은행이 일종의 사기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 1), 2)항에서 본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 즉 원고 저축은행은 가급적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의 원소유자였던 G 및 그와 협력하여 이 사건 계쟁 부동산에 주택신축사업을 추진한 H 등에게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을 매각하여 주기 위해 두 차례나 우선협상권 내지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던 점,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의 매도인의 입장에서 원고 저축은행이 매매계약의 본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있어 어떤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소외 거래상대방 측이 매매대금 상당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본 계약 체결 무산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원고 저축은행은 소외 거래상대방의 우선협상자로서의 지위가 기한 만료 등으로 소멸한 상태에서 ○○○ 주식회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저축은행과 그 관계자들이 소외 거래상대방과 계약 교섭의 과정에서 응당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경찰의 잠정적인 수사 결과 통지를 부풀려 마치 원고 B와 C의 사기 혐의가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일응 인정된 것과 같은 내용의 보도에 덧붙여, 원고들의 행태가 명백한 사기행위라는 취지의 H의 일방적인 진술을 인용함으로써, 마치 원고 저축은행이 대위 변제에

따른 이득만 취하고, 토지 매매계약은 제3자와 맺는 일종의 사기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므로, 이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4) 이 사건 제4적시사실(‘검찰 기소와 별개로 해당 토지에 대한 민사 분쟁도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가처분 사건이기는 하지만 소외 거래상대방과 원고 저축은행 사이에 이 사건 제정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매수인 지위 혹은 우선협상자로서의 지위에 관한 민사적 분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법률전문가가 아닌 언론사의 기자가 민사 본안 소송과 보전처분에 관한 신청 절차 등을 엄밀히 구별하여 인식하고 보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보전 소송을 ‘민사 분쟁’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당사자들에 대하여 독자들이 가지는 부정적인 인상이 심화된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이 부분 보도가 다소 간의 과장을 넘어 그 주요한 부분에서 진실과 배치되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5)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제1, 2, 3적시 사실을 보도한 것에 관하여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명예훼손 특유의 위법성 조각사유 인정여부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 3적시사실에 관한 보도는 오로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들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① 피고 D는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를 통하여 원고 B, C에 대한 고소 건이 검찰에 최종 송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당초 자신이 짜놓은 틀에 맞춰 기사를 쓰기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유도 질문까지 하는 등 진지한 사실 확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그가 원고 저축은행의 관계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보낸 질의서를 보더라도, “이번 사안은 그동안 원고 저축은행 측의 요구에 따라 매입 준비를 충실히 해온 소외 거래상대방 측을 무시하고 대기업에 넘긴 사건입니다”라고 규정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단을 여과 없이 보여주거나, “대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사이에서 두고 저울질하다, 결국 자신에게 이득이 된 쪽에 땅을 매매하기 위해 그동안의 신의를 깨버린 ‘갑질’로도 묘사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원고 저축은행이 갑작스럽게 ○○○에 해당 토지를 매각한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등 이미 H 등 고소인 측 주장에 경도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재에 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질의에 관하여 원고 저축은행으로부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받고도, 소외 거래상대방 측 이외의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취재는 하지 않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취재기자가 설정해놓은 틀에 맞춰 보도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이는 내용의 취재만을 한 뒤에 보도를 강행하였던 점, ④ 원고 저축은행과 소외 거래상대방 사이의 분쟁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보충 취재가 다소 미흡한 상태에서라도 일단 이 사건 고소건의 진행 상황을 빠르게 대중들에게 알려야 할 어떤 급박

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⑤ 더구나 피고 위클리오늘은 이 사건 기사 출고 당시 원고 저축은행과 분쟁에 휩싸여 있는 대립 당사자인 H의 주선으로, H가 운영하는 회사와 같은 건물에 입주해있는 상태에 있는 등 소외 거래상대방 측과 ‘언론기관-취재원’의 통상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오로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거나, 혹은 피고들이 위 각 적시사실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및 간접강제 필요성

이 사건 기사에 포함된 허위 사실로 인하여 원고 저축은행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대외적인 신용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원고 B와 C의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 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피고 위클리오늘이 관리하는 뉴스사이트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하고, [별지 2] 목록 각 포털 사이트의 검색 결과에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주요 부분이 더는 검색 결과로 표출되지 않도록 삭제 요청을 할 것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다만, 원고들은 피고들 전부를 상대로 위 각 행위의 이행을 구하므로 보건대, 피고 D는 취재기사로서, 피고 E는 이 사건 기사를 최종 편집하여 출고를 승인한 편집국장으로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기사의 보도에 대한 민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이 원고들이 구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이 사건 기사를 서버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별지 2] 목록 각 포털 사이트 운영사와 일정한 계약관계에 의하여 기사 송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추단되는 피고 위클리오늘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위클리오늘 이외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각 행위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원고들이 그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취재, 편집, 출고하게 되기까지의 과정과 관련하여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 그리고 보도 이후 이 사건 기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며 원고들의 수정 또는 삭제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보인 피고 위클리오늘 측의 용태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법원이 피고 위클리오늘의 뉴스 사이트에 보관된 기사 삭제와 [별지 2] 목록 각 포털 사이트 운영사에 대하여 검색 결과 삭제 요청을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더라도 피고 위클리오늘이 이를 임의 이행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행위 의무에 관하여는 판결 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절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만일 피고 위클리오늘이 [별지 1] 표시 기사를 뉴스 사이트 서버에서 삭제하지 않을 경우, 삭제 완료일까지 매일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2] 목록 표시 각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각 운영사에 [별지 1] 표시 기사에 관한 검색 결과 삭제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요청을

완료하는 날까지, 잔존 검색결과 1건 당 매일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간접강제를 붙이기로 한다.

바.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

피고들은 허위 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기사에 취재, 편집, 게재에 관여한 주체로서 원고 저축은행이 입은 사회적 평가와 대외적인 신용의 훼손 및 원고 B, C가 입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 B의 실명을 적시하고 사진을 게재한 것은 이 사건 기사의 보도 행위에 포함되거나 이에 부수하여 이뤄진 행위일 뿐이므로, 이 사건 기사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원고 B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그와 구별되는 행위로서 원고 B의 성명권이나 초상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위 사실을 포함한 기사에 피해자의 실명을 적시하고 사진까지 게재한 행위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하는 데 고려하면 족하다). 따라서 성명권,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원고 B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 저축은행은 고객들로부터 예적금 등을 받아 이를 포함한 재원으로 금융업을 하는 회사인 바, 그 대표이사가 사기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1차로 그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을 경우 저축은행의 신용도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B의 경우 최종적인 수사 결과에서는 아예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기사에서 실명이 적시되고 사진까지 함께 실려, 마치 그가 소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사기 행위의 주범의자인 것처럼 인식될 위험에 노출되었던 점, ③ 원고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하였지만, 일부 익명으로 언급되어 피해의 정도가 다른 원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 저축은행의 정신적 손해는 자연인인 다른 원고들에 비해 적을 것이지만, 반면 대외 신인도 하락과 신용 훼손 등의 무형의 손해는 자연인이나 일반 기업에 비해 오히려 클 수 있는데, 그 손해의 특성상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위자료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보도의 전반적인 내용, 취재 과정, 피고들과 이해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취재와 보도를 하여야 할 언론의 사명을 저버린 채, 민사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 이해관계자의 입장에만 치우친 보도를 함으로써 위법성의 정도가 일반적인 허위 보도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하여 할 위자료는 원고 저축은행과 원고 B에 대하여 각 2,000만 원, 원고 C에 대해 500만 원으로 정함이 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서로 연대하여, 위 각 원고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가 뉴스 사이트를 통해 출고된 2017. 11. 30.부터 피고들이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2018. 8. 22.)까지는 민법으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대상기사 생략

〈별지2〉 포털 사이트 및 그 운영사 목록 생략

〈별지3-1~11〉 포털 사이트 기사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가합538126 판결

‘한심한 언론’ 등의 표현은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 : 주식회사 뉴시스
- 피고 :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외 2명

[사실관계]

뉴스통신사인 원고는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보수 일각의 주장을 인용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오늘은 2018년 4월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위 기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기사삭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가 피고들의 의견제시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충분한 반론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됐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74588).

[판결요지]

□ 이 사건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 기사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근거로 원고 기사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전달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댓글을 인용한 점, ‘한심한 언론’, ‘언론계를 떠나라’ 등의 표현을 사용하자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 기사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기사는 원고 기사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 기사가 게재된 당일인 2018년 4월 29일 「미디어오늘 기자의 한심한 왜곡」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 기사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게재하였는바, 이로써 언론사인 원고는 피고 기사를 충분히 반박하여 피고 기사로 인한 일방적인 여론의 형성을 어느 정도 방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판결문

사	건	2018가합538126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뉴시스		
피	고	1.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2. A 3. B		
변	론	종	결	2018. 9. 12.
판	결	선	고	2018. 11.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기사삭제요청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미디어오늘 홈페이지(www.mediatoday.co.kr)에 게시되어 있는 별지 1 기재 기사를 삭제하고, 위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회사들에 대하여 위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라. 피고들이 위 기사삭제 및 삭제요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의무이행 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오늘(이하 ‘피고 미디어오늘’이라 한다)은 인터넷 뉴스 제공 등을 목

적으로 하는 언론사들이고, 피고 A는 피고 미디어오늘 소속 기자이며, 피고 B는 피고 미디어오늘의 대표이사로서 편집책임자이다.

- 원고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18. 4. 27. [‘금단의 선’ 넘은 문 대통령 국보법 위반? ... “통치행위”]라는 제목 하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보수 일각의 주장을 인용하여 소개하면서, 이에 대하여 고도의 외교행위이자 통치행위라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변호사의 의견 등을 함께 소개하는 내용의 별지 2 기재 기사(이하 ‘원고 기사’라고 한다)를 보도하였다.
- 피고 A는 원고 기사에 대하여 [문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 한심한 언론]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 기사(이하 ‘피고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2018. 4. 29. 위 기사를 ‘미디어오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사삭제요청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본안 전 판단)

원고는, 피고 기사가 현재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피고 기사가 게재된 포털사이트에 피고 기사의 삭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³⁴⁾에서,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와 같은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로서는 피고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침해된 사실을 소명하여 포털사이트의 운영자들에게 피고 기사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러한 직접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에서 기사삭제요청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기사삭제요청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4)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본안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들은 피고 기사에서 ‘원고가 문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고 보도하였다’라는 전제사실을 간접적, 우회적으로나마 암시하고 있는데, 원고 기사는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중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보수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이는 통치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내용이므로 피고 기사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여기에 원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한심한 언론’, ‘언론계를 떠나라’ 등의 표현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원고가 신뢰할 수 없는 언론이라는 인상을 주어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명예훼손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기사의 삭제 및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들

피고 기사는 ‘기자수첩’이라는 칼럼 형식의 글로서, 피고 A가 원고 기사에 대하여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화해의 국면을 맞이한 시기에 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오히려 기존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논의를 언론이 주도해야 할 때이다’라는 취지의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의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 기사에서 일부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실이고, 공익성도 인정되며, 비판의 수인 범위가 넓은 언론사에 대한 표현행위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사실의 적시 여부

가)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지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거기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4, 5, 7, 8호증, 을 1,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피고 기사에서 ‘원고가 문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기사는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 기사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 기사 중 ‘원고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는 점을 암시하였다고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표현은 ① 제목의 ‘문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 ② 소제목의 ‘국보법 위반을 따지는 것보다...’ 부분, ③ 본문의 ‘지금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인지 변호사에게 워딩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부분이다. 그런데 ① 피고 기사의 제목은 ‘문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의문문 형식을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였다. ② 소제목의 ‘국보법 위반을 따지는 것보다...’라는 표현도 그 자체로 원고 기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았다는 의미로 읽히며, 소제목 전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위 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부합한다’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의견을 표명한 것임이 명백하다. ③ 또한 본문에서 ‘지금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인지 변호사에게 워딩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기재한 부분도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읽힌다.

이와 같은 피고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독자에게 주는 인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기사는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시기에 위 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행위에 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논의하는 원고 기사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피고들의 의견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기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원고 기사를 비판하면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원고가 문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논의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다’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기사에 달린 부정적인 댓글을 피고 기사에서 인용하고 원고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언론인으로서의 자질이 없고, 소위 기사팔이용으로 원고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원고가 국가보안법에 집착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언론이다’라는 등의 허위사실도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 기사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근거로 대중의 공감도 얻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원고 기사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전달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댓글을 인용한 것인 점, 피고들이 ‘한심한 언론’, ‘언론계를 떠나라’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 기사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면서 이를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과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기사는 원고 기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까지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암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평가적 의견으로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피고 기사의 나머지 부분은 원고 기사 중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남북정상회담 내지 국가보안법에 대한 피고 A 또는 제3자의 의견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 피고 미디어오늘 소속 C 기자가 피고 기사가 게재된 것에 대하여 원고 측에 사과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 기사를 한심하다고 표현한 것에 관한 도의적인 사과로 보일 뿐 피고 기사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피고 기사에서 ‘원고 기사가 문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그 대상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인바, 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주관적인 법률적 평가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고는 문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입장이다’라는 내용 자체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위법성 조각 여부

가) 관련 법리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되고, 수사적인 과장표현도 언론기관이 서로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 757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기사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 4,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기사는 언론사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으로 보호되어야 할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피고 기사는 다른 언론사의 보도 태도나 언론사의 역할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
- 피고들은 피고 기사에서 원고 기사를 비판하면서 원고 기사 중 ‘문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 부분만 인용하고, ‘통치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보도 부분을 누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 기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논의한 것 자체를 비판하면서 직접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해당 부분만 인용한 것으로, 피고 기사의 칼럼으로서의 성격, 목적, 전체적인 맥락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적극적이고 악의적인 왜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 기사에서 ‘한심한 언론’, ‘언론계를 떠나라’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 기사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면서 이를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과장으로 보일 뿐,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피고 기사가 게재된 당일인 2018. 4. 29. [미디어오늘 기자의 한심한 왜곡]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 기사는 철저한 왜곡에 다름 아니다’, ‘원고 기사가 마치 문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했다고 주장했거나 그 같은 주장을 옹호한 것처럼 시종일관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고 기사 어디에 국가보안법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내용이 있든가’, ‘원고 기자들은 팩트도 논리도 없는 피고 A의 여론몰이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 독해조차도 안 된다면 언론계를 떠나라’ 등의 내용이 담긴 기사를 게재하였는바, 이로써 언론사인 원고는 스스로 가진 매체를 통하여 피고 기사를 충분히 반박하여 피고 기사로 인한 일방적인 여론의 형성을 어느 정도 방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기사에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만한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고 그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기사삭제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원고의 명예를 침해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허위사실의 적시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사인 원고는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으므로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는 점, 피고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표현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기사가 언론자유에 한계를 넘어서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 없이 원고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비판을 가하는 것이거나, 모멸적이고 악의적인 인신공격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기사삭제의 필요성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기사삭제요청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1〉 대상기사 생략

〈별지2〉 원고기사 생략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가합22446 판결

유명 작가인 원고가 공인에 해당할지라도 ‘과거에 문학소녀들과 혼숙을 하였고
혼외자를 두었다’는 허위 사실의 적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뉴스타운 외 1명

[사실관계]

피고 B는 2018년 2월 19일자 <뉴스타운> 인터넷 사이트와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 사이트에 ‘유명 작가인 원고가 과거 문학소녀들과 혼숙을 하였고, 혼외자도 두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동영상 뉴스로 만들어 2018년 9월 13일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에 따른 정정보도,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 내용의 허위성을 인정하였으며, 원고가 공인이라 하더라도 지극히 사적인 내용을 다룬 경우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강제조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05619).

[판결요지]

□ 이 사건 기사 및 동영상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혼숙부분에 대한 기사 등을 작성할 당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지 1988년에 발간된 기사의 제목만을 근거로 오하여 그 제목을 과장하여 원고가 어린 소녀들과 혼숙한 것처럼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동영상의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작가로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은 원고가 문학소녀들과 혼숙을 하였거나 혼외자가 있다는 내용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인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원고 관련 내용이 보도의 일부분에만 해당함에도 기사 전체 삭제를 요하는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동영상 중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부분이나, 해당 부분만을 분리하여 삭제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설령 분리하여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일부만을 삭제할 경우 원고에 대한 침해상태의 해소가 완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동영상 전체의 삭제가 합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인격권 침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적당한 처분 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는 차원에서, 피고는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

판결문

사	건	2018가합22446	정정보도청구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뉴스타운	
		2. 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1. 8.
			2018. 12. 2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뉴스타운은,
 - 가.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 (1) 피고 주식회사 뉴스타운의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http://www.newstown.co.kr>)에 게재한 2018. 2. 19.자 제목 [들통난 빨갱이 우상들, C A] 기사를 홈페이지 및 기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 (2) 피고 주식회사 뉴스타운의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http://www.newstown.co.kr>)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 중간 부분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중 제목을 별지2 원보도기사의 제목과 같은 표시로 □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 (3) 유튜브에 게재한 2018. 9. 13.자 제목 [뉴스타운TV A가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 민사소송 재판 후 B 박사 인터뷰 -뉴스타운TV 스페셜-] 영상물(<https://www.youtube.com/watch?v=-t-VzHa77mQ>)을 삭제하고,
 - 나. 제1의 가.항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위 각 의무에 대하여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 가.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피고 B의 홈페이지(<http://www.systemclub.co.kr>)에 게재한 2018. 2. 18.자 제목 [들통난 빨갱이 우상들, C A] 기사를 삭제하고,
 - 나. 제2의 가.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뉴스타운은 2018. 5. 2.부터, 피고 B는 2018. 6. 27.부터, 나머지 5,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뉴스타운은 2018. 10. 16.부터, 피고 B는 2018. 10.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2년 □□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소설 ‘○○○○○○’로 데뷔한 유명 작가이고, 피고 주식회사 뉴스타운(이하 ‘피고 뉴스타운’이라 한다)은 신문 및 인터넷 신문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평론가 등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http://www.systemclub.co.kr>) 인터넷 사이트(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와 피고 뉴스타운의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http://www.newstown.co.kr>)의 ‘홈 - 뉴스 - 오피니언 - B의 국민의 함성’란에 2018. 2. 19.자로 별지2 원보도기사 표지와 같이 ‘들통난 빨갱이 우상들, C A’라는 제목의 글(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 B는 2018. 5. 15. 이 사건 홈페이지 및 피고 뉴스타운의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 ‘A가 걸어온 민사소송에 대한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피고 B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 전문과 피고 B의 이 사건 기사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내용 및 A에 대한 과거 기사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8. 9. 13. 유튜브 사이트에 ‘[뉴스타운TV A가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 민사소송 재판 후 B 박사 인터뷰 - 뉴스타운TV 스페셜-]’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B가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인터뷰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피고 뉴스타운은 2018. 9. 13.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 ‘A가 걸어온 민사소송에 대한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동영상을 ‘동영상 뉴스’로 게시하였으며, 피고 B는 이 사건 홈페이지에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 전문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마. 피고 B는 피고 뉴스타운의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홈 - 뉴스 - 오피니언 - B의 국민의 함성’란에 2018. 10. 15. ‘허탈하다’는 제목의, 2018. 10. 23. ‘A의 청구취지 확장에 대한 답변서’라는 제목의 각 원고와의 이 사건 소송에 대한 내용이 담긴 글(이하 위 다.항 기재 글과 위 글을 통틀어 ‘이 사건 추가기사’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동영상에서 아래 표 ‘내용’란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원고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문학소녀들과 혼숙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한다) 및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며, 원고를 ‘빨갱이’, ‘좌파’, ‘동물’, ‘잡놈’, ‘수치심이 없다’, ‘난잡하다’, ‘저잣거리 인생보다 못하다’, ‘지저분한 것’(이하 통틀어 ‘이 사건 모욕부분’이라 한다)이라고 모욕적으로 표현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기사를 작성하여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구분	내용
1	이 사건 기사	- 대마초 피우고 어린 문학소녀들과 여관에서 뒹굴어 - 대마초 향을 맡으면서 영계들을 거느리고 난잡하게 뒹굴었던 - 여관을 전전하면서 D와 아들을 낳았다는 지저분한 기사들과 함께 - 들통난 빨갱이의 우상들 - 좌빨 A 휘하엔 국군 3개 사단이 있다. - 보수우익의 표현을 빌리자면 좌빨에게 국군 상담을 맡긴 셈이다. - 빨갱이들은 두 마리의 붉은 동물을 노벨문학상 수상 후보자들로 띄웠다. - 이 두 동물들에 빨갱이들은 빛나도록 화려한 옷을 만들어 입힌 후 세계적인 문호행세를 하도록 했다. - 박근혜, 화천 잡놈 찾아가 표 구걸
2	이 사건 동영상	〈모욕적인 표현의 사용으로 인한 명예훼손〉 - (생략) 이거는 뭐 난잡하고, 이거는 뭐 저잣거리 인생보다도 못하고 지저분하고.... 이게 난잡하고 이런 거예요. - (생략) 그니까 저 사람들이 수치심이 없는 거야. - □□□ 예술 실용 전문학교에 학장으로 취임을 한 거야. 이게 이런 난잡한 사람이. -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무위키에 보면 이것보다 더 난잡하게 나왔어. 더 난잡한 사람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있어. - 딴 사람이 보면 아, 이거 잡놈이네 이러지 - 그러니까 이 문화 황제라는 것들이 전부 이게 전부 이 짓들을 하는 것야. 아주 지저분한 것들이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그 여기에 보면 몇 년도야. 1988년, 동아일보. 내가 이거를 확보를 했던 말이야. 여기 보면은 대마초하는 여성들하고 말이야. 뭐 여관을 전전하면서 응? 소녀들과 여관 전전. - 여기는 자기 결혼을 했으면서도 혼외 아들을 낳았다는 게 여기(나무위키) 있고

- 나.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원고가 대마초 흡연 당시 문학소녀들과 혼숙을 하였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혼숙부분’이라 한다)은 허위사실이다. 따라서 피고 뉴스타운은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처분으로서 민법 제764조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 다. 원고는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동영상의 삭제를 구한다(원고는 아울러 정정보도, 삭제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또는 모욕적 표현인지 여부

1) 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

가)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의 경우에도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동영상 중 ‘원고가 혼외자를 낳았다’는 부분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

2)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

가) 관련 법리

허위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인 경우에,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

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 60950 판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이 사건 혼숙부분은 1988. 4. 14. 동아일보 기사에 ‘대마초 상용 문학지망 소녀들과 여관전전 작가 A씨 영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원고는 1987년에 혼외자식도 있었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 사건 혼숙부분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다른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혼숙부분에 대한 기사 등을 작성할 당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지 1988년에 발간된 기사의 제목만을 근거로 오히려 그 제목을 과장하여 원고가 어린 소녀들과 혼숙한 것처럼 기재한 점, ③ 피고들이 이 사건 혼숙부분과 관련하여 날짜나 장소, 상대 여성이 누구인지 등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 없고, 이에 원고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혼숙부분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혼숙부분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혼숙부분의 내용이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한다는 점은 경험직상 명백하다.

3) 모욕적 표현

가) 관련 법리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판결 등 참조)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나)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동영상에서 원고에 대하여 ‘빨갱이’, ‘좌파’, ‘동물’, ‘잡놈’, ‘수치심이 없다’, ‘난잡하다’, ‘저장거리 인생보다 못하다’, ‘지저분한 것’이라고 표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동영상 중 이 사건 모욕부분이 사용된 맥락, 이 사건 모욕부분의 형식이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모욕부분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것으로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법성조작사유의 존부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동영상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고, 이에 적시된 사실은 진실한 것이거나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언론보도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 35199 판결 등 참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언론매체에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원고가 작가로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은 원고가 문학소녀들과 혼숙을 하였다거나 혼외자가 있다는 내용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인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동영상은 그 형식과 내용, 기사 제목, 사용된 어휘 및 문구, 그 내용의 근거 및 공익성의 정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들의 공익적 활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를 비하하고 원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들은 원고는 공인으로 피고들의 표현은 원고가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에 있는 비판적인 표현이라고도 주장하나, 이 역시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와 같이 피고들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동영상을 게재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되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경위, 보도의 형식, 내용, 표현방법, 이 사건 기사 중 허위부분이 차지하는 정도, 원고의 피해 정도, 피고들이 보도 당시 사실확인의 노력을 어느 정도로 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소 제기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동영상 및 이 사건 추가기사를 추가로 게시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그 중 500만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종료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날인 피고 뉴스타운은 2018. 5. 2.부터, 피고 B는 2016. 6. 27.부터,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날인 피고 뉴스타운은 2018. 10. 16.부터, 피고 B는 2018. 10.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는 바, 이 사건 기사 중 이 사건 혼숙부분이 진실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 이 사건 기사 중 이 사건 혼숙부분의 내용과 분량 및 그 표현방식,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별지1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게재시기, 게재방법, 간접강제방법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5. 기사 및 동영상 삭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德行,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

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들은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에 대한 인격권 침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적당한 처분 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동영상 삭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동영상 중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부분이나, 해당 부분만을 분리하여 삭제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설령 분리하여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일부분을 삭제할 경우 원고에 대한 침해상태의 해소가 완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동영상 전체의 삭제를 명한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또 다시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 들어 있는 이 사건 동영상 및 이 사건 추가 기사를 추가로 게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들에 대하여 부대체적 작위 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피고들이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집행에 관하여서도 간접강제를 붙여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뉴스타운에게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동영상을, 피고 B에게 이 사건 기사를 각 삭제하도록 하고, 위 삭제 의무에 대한 간접강제방법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정정보도문

1. 제목 : [들통난 빨갱이 우상들, C A] 관련 정정보도문
2. 본문 : 뉴스타운(피고 주식회사 뉴스타운)은 2018.2.19. B의 국민의 함성 코너에서 위 제목의 칼럼을 통하여 소설가 A가 대마초 흡연 당시 어린 문학소녀들과 혼숙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끝.

〈별지2〉 대상기사 생략

〈별지3〉 인터뷰 생략

언론중재위원회 안내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15층
대표전화 : 02) 397-3114
상담전화 : 02) 397-3000, 3010, 3100
F A X : 02) 397-3089

지역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 6층
전화 051) 759-7083~4 / FAX 051) 759-7093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1402호
전화 053) 763-0020~1 / FAX 053) 763-0242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5층
전화 062) 676-0360~1 / FAX 062) 676-0362

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61 대전MBC 8층
전화 042) 525-0778~9 / FAX 042) 525-0768

경기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8층
전화 031) 211-9027, 9022 / FAX 031) 212-0223

강원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8층
전화 033) 255-2878~9 / FAX 033) 255-2872

충북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404호
전화 043) 286-8083, 8081 / FAX 043) 286-8084

전북사무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405호
전화 063) 288-0010, 0981 / FAX 063) 288-0980

경남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번길 5, 601호
전화 055) 263-1787, 1780 / FAX 055) 263-1769

제주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복5길 6, 4층
전화 064) 722-3328, 3352 / FAX 064) 726-3201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19년 7월 26일 인쇄

2019년 7월 31일 발행

발 행 인 이석형

발 행 언론중재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5층

편 저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연구팀

전 화 02) 397-3041~5

팩 스 02) 397-3049

홈페이지 <http://www.pac.or.kr>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이 책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